공공기관연구자료 16-01

www.mosf.go.kr
www.kipf.re.kr

2016
공공기관 현황 편람

공공기관 현황 편

2016. 9.



기획재정부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공공기관 현황 편람

- 공공기관 현황 편 -

2016. 9.

기 획 재 정 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 간 사

2016년 8월 현재 321개의 기관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공항·항만, 의료·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생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고용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인력(임직원 정원)은 2015년 말 현재 약 28만 7천여 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약 2,627만 명) 중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 경찰, 일반행정 등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2만 5천명)의 45.9%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2014년 말 비중(44.8%)보다 다소 증가한 모습입니다. 경제적 규모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총 예산은 2015년 말 약 627.1조원 수준으로 정부예산의 약 1.7배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40.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국민경제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일반국민의 공공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인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공공기관은 약 523.2조원이라는 과도한 부채, 교육비·의료비 등 복리후생비의 과다한 지원 등 방만한 경영, 그리고 민간 대비 60~80% 수준의 낮은 생산성이라는 문제에 봉착하여 국민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었으며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의 누적된 비효율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2013년에『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2013.7.8.)』과『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11.)』이라는 공공기관 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자산매각 및 주요 사업 정비 등을 통한 부채 감축과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 개선 및 불합리한 단체협약사항 개정 등 방만 경영적 요소 차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이래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5년에는 부채비율(183%)이 당초 2017년 목표치인 200%를 조기에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불합리하고 방만한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의 적극적인 개선 독려를 통해 연 2천억 원 상당의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를 감축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전직원 확대 도입,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등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에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인력 관리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기획재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기관 통합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의 12개 부채 중점관리기관 상세 부채정보 항목와 방만경영과 관련한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예: 유가족특별채용, 보육비 및 학자금 등)을 통해 관련 정보가 자세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현황 편람』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중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유의미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을 선별하여 제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본 책자는 1장에서 2016년 8월 현재 공공기관 지정현황,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그리고 공공기관 전체의 주요 경영정보(인력・손익・재무현황, 보수수준 및 외부평가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총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2장에서는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의 본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최근의 경영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알리오시스템의 37개 경영정보 항목 중 20개 항목과 이와 별도로 추가 조사한 항목을 기관개요, 인력 및 조직현황, 경영현황, 보수수준, 외부평가결과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최근 5년간(2011~2015년)의 기관별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공공기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최근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공공기관에 시달한 주요 관리정책을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으로 정리하여 『공공기관 현황 편람』에 반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발간되는 『2016 공공기관 현황 편람』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3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과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부채감축계획 등 공공기관의 인력관리, 성과관리, 재무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반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 현황 편람을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책자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공공기관 주요정보로의 접근용이성과 경영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보다 제고하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확대시켜 향후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실행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 차

Ⅰ. 공공기관 현황 개요 ····· 17

1.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 17
가.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 17
1) 공공기관의 지정 ····· 17
2)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 18
3)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 20
나.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 ····· 21

2.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 31
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주요 정책 ····· 31
1) 공공기관 기능조정 개요 ····· 31
2) 1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 32
3) 2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 40
4) 3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47
나. 공공기관 인력관리 관련 주요 정책 ····· 56
1)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향 ····· 56
2)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 61
3) 공정인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 ····· 66
다. 공공기관 재무관리 관련 주요 정책 ····· 69
1)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 69
2)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 75
3) 구분회계 ····· 84
라. 공공기관 성과관리 관련 주요 정책 ····· 87
1)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 도입 ····· 87
2)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 90
3)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 101

3. 2016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 106
가. 일반현황 ····· 108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 108
2) 공공기관 설립형태 ····· 112
3)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 119
4)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 121
5)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 ····· 124
6)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 132
7) 상장 공공기관 현황 ····· 147
나. 인력현황 ····· 162
1) 임직원 수 현황 ····· 162
2) 신규채용 현황 ····· 168
3)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 ····· 173
다. 재무현황 ····· 177
1) 총평 ····· 177
2) 부채 현황 ····· 180
3) 자산 현황 ····· 192
라. 손익현황 ····· 197
마. 보수수준 ····· 203
1) 직원 평균보수 수준 ····· 203
2) 상임임원 연봉 수준 ····· 209
3) 복리후생비 수준 ····· 215
바. 외부 평가결과 ····· 221
1)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 221
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42
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 265
4)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 287

참고문헌 ····· 300

〈부록 1〉 기관명 색인 ····· 307
〈부록 2〉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321개, 2016.8월 현재) ····· 319
〈부록 3〉 공공기관 설립근거(2016.8월 기준) ····· 325
〈부록 4〉 공공기관 소재지 및 홈페이지(2016.8월 기준) ····· 339
〈부록 5〉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2016.8월 기준) ····· 358
〈부록 6〉 2016년 기금현황(65개 기금) ····· 363
〈부록 7〉『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 369
〈부록 8〉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 ····· 372
〈부록 9〉 2015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 407
〈부록 10〉 2015년도 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 사례 ····· 411

표 차 례

<표 I -1> 공공기관 유형 분류 ····· 20
<표 I -2> 2016년도 지정 공공기관(321개, 2016.8월 기준) ····· 22
<표 I -3>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16.8월 기준) ····· 26
<표 I -4>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16.8월 기준) ····· 27
<표 I -5> 2016년도 신규지정 공공기관 현황 ····· 29
<표 I -6>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현황 ····· 32
<표 I -7> 해외자원개발 분야 부채감축계획(2013~2017년) ····· 33
<표 I -8>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개선안 ····· 34
<표 I -9>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후 기관별 정원·예산 변동 ····· 35
<표 I -10>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전후 변화 ····· 36
<표 I -11> 고용·복지 분야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 조정 내역 ····· 37
<표 I -12> 중소기업 지원분야 기능조정 전후 변화 ····· 39
<표 I -13> 2차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40
<표 I -14> SOC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완료과제(2016.3월말 기준) ····· 43
<표 I -15>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완료과제(2016.3월말 기준) ····· 45
<표 I -16>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완료과제(2016.3월말 기준) ····· 46
<표 I -17>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 47
<표 I -18> 환경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 51
<표 I -19>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 통합안 ····· 52
<표 I -20>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사·중복기능 조정 ····· 53
<표 I -21> 교육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 53
<표 I -22> 에너지·환경·교육 3대 분야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시기 ····· 55
<표 I -23> 비정규직 업무 구분 ····· 61
<표 I -24> 2015년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계획(2016.2월 기준) ····· 65
<표 I -25> 정부 공정인사 지침상 관련내용 ····· 68
<표 I -26> 공공기관 부채 및 부채비율 추이 ····· 80
<표 I -27> 주요 기관별 2015년 부채 및 부채비율 ····· 81

<표 I -28> 구분회계 시범기관 분류(13개) ····· 84
<표 I -29> 구분회계 추가도입기관(26개) ····· 86
<표 I -30> 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 88
<표 I -31> 기관장 중기성과급 지급(안) ····· 89
<표 I -3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47개 기관) ····· 93
<표 I -33> 연봉제 구조 설계 ····· 96
<표 I -34>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방법 예시 ····· 97
<표 I -35> 성과연봉제 관련 기획재정부 권고안과 금융위원회 권고안 비교 ····· 104
<표 I -36>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16.8월 기준) ····· 109
<표 I -37> 전년대비 2016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 111
<표 I -38>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인 공공기관 ····· 114
<표 I -39>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 115
<표 I -40> 개별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상법상 주식회사 ····· 115
<표 I -41>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 116
<표 I -42>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출자주체 기준) ····· 117
<표 I -43>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 기준) ····· 118
<표 I -44>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 120
<표 I -45>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 122
<표 I -46>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16.8월 기준) ····· 124
<표 I -47> 2016년도 신규지정 공공기관 소재지 ····· 124
<표 I -48> 2015~2016년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율 비교(309개 기관 기준) ····· 125
<표 I -49>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 126
<표 I -50>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128
<표 I -51> 2015~2016년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율 비교 ····· 129
<표 I -52>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미매각 현황(2016.6.10.일 기준) ····· 131
<표 I -53>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 134
<표 I -54>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분포(2016년 기준) ····· 136
<표 I -55>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 137
<표 I -56>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기금 운용 및 조성 규모) ····· 141
<표 I -57>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 142

<표 I -58>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 규모 비중(기금 자산 규모) ····· 146
<표 I -59> 상장 공공기관 개요 ····· 148
<표 I -60>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현황 ····· 149
<표 I -61> 상장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주식의 총수 ····· 150
<표 I -62>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3~2015년) ····· 151
<표 I -63>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2013~2015년) ····· 154
<표 I -64> 상장 공공기관의 매출액 및 총포괄손익 변화 추이(2013~2015년) ····· 156
<표 I -65>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2013~2015년) ····· 158
<표 I -66>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 ····· 162
<표 I -67>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 ····· 164
<표 I -68>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 ····· 165
<표 I -69> 2015년 전년대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 167
<표 I -70> 2015년 전년대비 인력이 감원된 기관 ····· 167
<표 I -71> 최근 5년간 신규채용 현황 ····· 168
<표 I -72>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 170
<표 I -73> 2015년도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 171
<표 I -74>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2015년 기준) ····· 172
<표 I -75> 최근 5년간 열린 채용 규모 ····· 172
<표 I -76>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기간제) ····· 174
<표 I -77>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 ····· 174
<표 I -78>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 175
<표 I -79>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실적 ····· 176
<표 I -80>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 178
<표 I -81>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 181
<표 I -82>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 189
<표 I -83> 2015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 190
<표 I -84>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 192
<표 I -85>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 ····· 195
<표 I -86> 2015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 196
<표 I -87> 최근 5년간 당기순손익 현황 ····· 198

<표 I -88> 2015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 200
<표 I -89> 36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 202
<표 I -90> 최근 5년간 소관 회계별 정부배당수입 실적 ····· 203
<표 I -91>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현황(정규직 기준) ····· 204
<표 I -92>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대상 ····· 208
<표 I -93>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 ····· 210
<표 I -94> 최근 5년간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무상지원 기준) ····· 215
<표 I -95>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 ····· 219
<표 I -96>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 ····· 220
<표 I -97> 2015년도 기관 평가 및 기관장 평가대상 기관 ····· 226
<표 I -98>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 229
<표 I -99>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 현황 ····· 230
<표 I -100> 전년대비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요약 ····· 234
<표 I -101> 전년대비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현황 ····· 235
<표 I -102>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 ····· 237
<표 I -103>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 238
<표 I -104>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상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한도 ····· 241
<표 I -105> 2015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분포 ····· 241
<표 I -106> 2015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 242
<표 I -107> 기획재정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그룹분류(2015년 기준) ···· 244
<표 I -108>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 245
<표 I -109>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 항목 ····· 246
<표 I -110>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수검기관(2016.1월 기준) ····· 249
<표 I -111> 2015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 251
<표 I -112>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 254
<표 I -113> 전년대비 2015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 255
<표 I -114> 전년대비 2015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 256
<표 I -115> 2015년도 고객만족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 ····· 258
<표 I -116> 2015년도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현황 ····· 259
<표 I -117> 2015년도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분포 ····· 262

<표 I -118> 전년대비 2015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현황 ····· 262
<표 I -119> 전년대비 2015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내역 ····· 263
<표 I -120> 2015년도 청렴도 조사대상 공공기관(2016.1월 기준) ····· 271
<표 I -121> 전년대비 2015년도 종합청렴도 점수 변동 현황 ····· 275
<표 I -122> 전년대비 2015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변동 현황 ····· 278
<표 I -123> 2015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 279
<표 I -124> 2015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 280
<표 I -125> 2015년도 종합청렴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 ····· 283
<표 I -126> 2015년도 종합청렴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 284
<표 I -127>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16.3월 기준) ····· 289
<표 I -128> 2015년 통합공시 점검 벌점 부과 체계 ····· 289
<표 I -129> 공공기관 통합공시 벌점 현황 ····· 291
<표 I -130> 2015년 통합공시 점검결과 우수공시기관 및 불성실공시기관 현황 ····· 292
<표 I -131> 2015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구간 현황 ····· 293
<표 I -132> 2015년 통합공시 점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벌점 분포 ····· 295
<표 I -133> 2015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대비 변동 현황 ····· 296

그림 차례

<그림 I - 1> 공공기관 지정 추이 ····· 25
<그림 I - 2>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 ····· 103
<그림 I - 3>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 113
<그림 I - 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 추이 ····· 139
<그림 I - 5>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 추이 ····· 140
<그림 I - 6>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상 기금 유형별 비중 ····· 141
<그림 I - 7>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비교 ····· 146
<그림 I - 8>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 변동 현황 ····· 153
<그림 I - 9> 상장 공공기관의 주당순이익 변동 현황 ····· 153
<그림 I -10>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국가행정공무원 대비 비중 ····· 163
<그림 I -11> 최근 5년간 열린 채용 규모 ····· 173
<그림 I -12>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실적 ····· 176
<그림 I -13>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추이 ····· 179
<그림 I -14>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 ····· 179
<그림 I -15>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추이 ····· 182
<그림 I -16> 최근 4년간 부채 증감 추이 ····· 182
<그림 I -17> 최근 5년간 부채비율 추이 ····· 183
<그림 I -18> 최근 4년간 부채비율 증감 추이 ····· 184
<그림 I -19>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 185
<그림 I -2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 ····· 186
<그림 I -21>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 ····· 187
<그림 I -22>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가율 추이 ····· 187
<그림 I -23>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 193
<그림 I -24>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 ····· 194
<그림 I -2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 ····· 199
<그림 I -26>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추이(정규직 기준) ····· 204
<그림 I -27> 최근 4년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정규직 기준) ····· 206

<그림 I -28>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추이 ····· 212
<그림 I -29> 최근 4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감율 ····· 214
<그림 I -30>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무상지원 기준) ····· 217
<그림 I -31>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율 추이(무상지원 기준) ····· 218
<그림 I -32>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 219
<그림 I -33>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 ····· 221
<그림 I -34> 최근 5년 평균 대비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 ····· 231
<그림 I -35> 전년대비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 ····· 232
<그림 I -36>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 233
<그림 I -37> 전년대비 평가유형별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비교 ····· 233
<그림 I -38> 주요 주무부처 소관 공공기관의 2015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 240
<그림 I -39> 공공기관 유형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분포 ····· 254
<그림 I -40> 그룹유형별 전년대비 2015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개선기관 비중 분포 ····· 264
<그림 I -41>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268
<그림 I -42> 공공기관 유형별 2015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 280
<그림 I -43> 주요 주무부처 소관 공공기관의 2015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 287
<그림 I -44> 201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벌점 및 불성실공시기관 수 ····· 292
<그림 I -45> 2015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구간 분포 ····· 293
<그림 I -46> 2015년 통합공시 점검결과 기관유형별 벌점 구간 분포 ····· 294
<그림 I -47> 2015년 통합공시 벌점 구간별 주요 주무부처 소관 공공기관 분포 ···· 296

Ⅰ. 공공기관 현황 개요

1.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3. 2016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 Ⅰ 공공기관 현황 개요

1.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가.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1) 공공기관의 지정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개별기관의 설립근거 및 설립주체, 개별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형태와 규모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6조 및 <별표1>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요건별 산정기준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제1호에 의한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1회 이상)한 기관

○ 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

○ 제3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5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6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그러나 공운법 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관리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통적으로 동 법 제11조의 경영공시, 제12조의 통합공시, 제13조의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조사, 제14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그리고 제15조의 공공기관의 혁신 등의 적용대상이 됨.

○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관하는 공통된 관리·감독대상이 되지 않아 공공기관에 비해 기관 운영상 자율성이 보장되고 주무부처의 재량적 관리가 용이한 편임.

2)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 공운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동 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됨.

○ 여기서,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목적은 공공기관의 업무특성과 중요도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수준을 설계하기 위함임.

○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공운법상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짐.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기한 공통사항 이외에도 이사회, 임원 임명 및 구성, 예산회계, 경영감독 등 공운법 제16조에서 제52조의2에 이르는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 기타공공기관은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운법 조항(제11조~제15조)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중 먼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고 이외 나머지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유형에 대한 구분기준 및 방식은 공운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및 <별표2>에서 명문화 되어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자체수입액 비중, 자산규모, 기금관리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함.

○ 공기업: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으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을 세분함.

-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세분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직원정원이 50인 미만인 공공기관

○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

〈표 Ⅰ－1〉 공공기관 유형 분류

유형구분		지정요건
①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②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③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공공기관 현황' 참고

3)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 제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함.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나.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1)]

□ 2016년 8월말 현재 공운법에 따라 2016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21개 기관임.

○ 2016년 1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총 323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지정됨.

○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이 2개 기관으로 통합하여 신설 출범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공공기관 수시지정(2016.7.15.)』을 심의·의결하여 2016년도 공공기관을 323개에서 321개로 변경함.

- 2016년 3월 21일자로 舊 대한체육회(기타공공기관)와 舊 국민생활체육회(기타공공기관)가 통합하여 통합 대한체육회로 신설 출범하였으며 7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시지정됨.
- 2016년 7월 1일자로 舊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舊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통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신설 출범하였으며 7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수시지정됨.

○ 공운법이 시행된 2007년 298개 공공기관이 지정된 이래 가장 많은 수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그림 Ⅰ-1>)[2)].

---

1)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6.1.29일자)』 보도자료 및 『2016년 공공기관 수시지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18호)』(2016.7.1.일자) 참조

2) <그림 Ⅰ-1>은 매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바, 매년 발생한 연중 수시지정 또는 변경지정 건을 반영하지 않아 연도말 기준 공공기관 수와 차이가 있음(예: 2016년 공공기관 수 는 1월 기준 323개, 8월 기준 321개임).

〈표 Ⅰ－2〉 2016년도 지정 공공기관(321개, 2016.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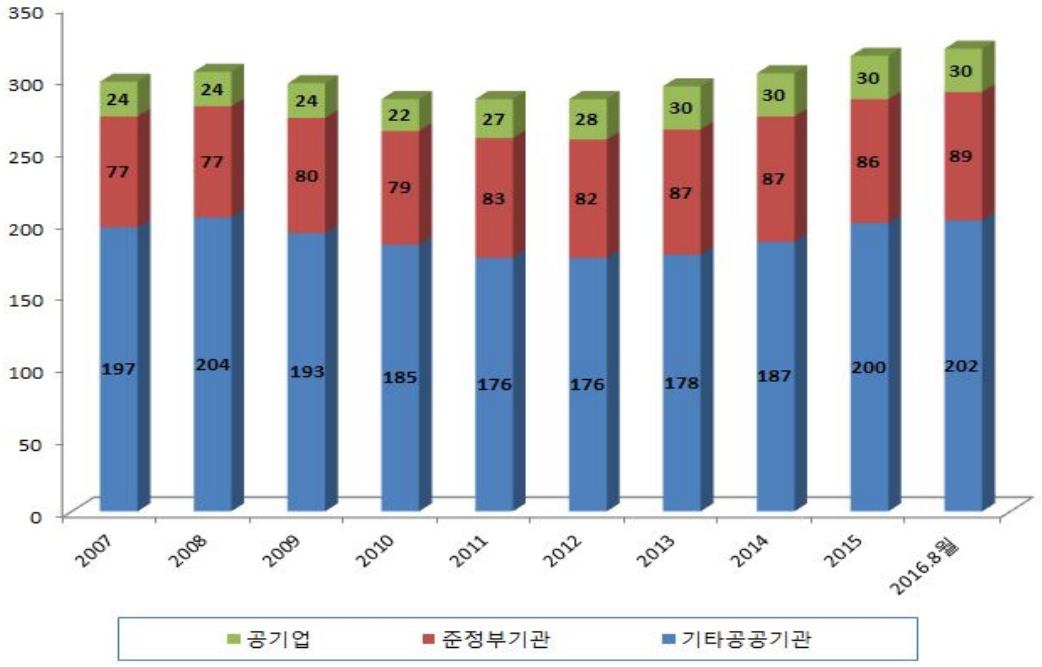
유형구분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개)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유형구분	기관명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기타공공기관 (202개)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유형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02개)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미래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공공기관 현황' 참고(2016.8.31. 기준)

〈그림 Ⅰ－1〉 공공기관 지정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15)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6.8월 현재)을 참고하여 작성

□ 2016년 8월말 현재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은 총 30개 기관으로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이 14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16개 기관임.

○ 준정부기관은 총 89개 기관으로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6개 기관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73개 기관임.

- 1월 공공기관 지정 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74개였으나 7월 공공기관 수시지정(舊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舊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라 73개로 조정됨.

○ 기타공공기관은 202개 기관임.

- 1월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은 203개였으나 7월 공공기관 수시지정(舊 대한체육회+舊 국민생활체육회→통합 대한체육회)에 따라 202개로 조정됨.

□ 2015년 말 공공기관 현황과 2016년 8월 기준 공공기관 현황을 비교하면, 2016년 8월 현재 공공기관의 수는 321개로 2015년 12월 기준의 공공기관 수(316개)보다 5개 기관이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2015년과 동일하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신규지정, 유형변경 및 통합기관 수시지정결과 등이 반영되어 2015년보다 각각 3개, 2개씩 증가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유형변경에 따라 17개에서 16개로 변동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신규지정(통합 신설출범기관 포함 4개 기관), 지정해제(통합 이전 2개 기관), 유형변경(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등으로 인해 2015년 86개에서 2016년 8월 현재 89개로 변동됨.
- 기타공공기관은 신규지정과 지정해제 등으로 인해 2015년보다 2개 기관이 증가한 202개로 나타남.

〈표 Ⅰ-3〉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16.8월 기준)

(단위: 개)

유형구분		2015년말	2016.8월	증감	신규	해제	유형변경
①	공기업	30	30	-	-	-	-
	시장형	14	14	-	-	-	-
	준시장형	16	16	-	-	-	-
②	준정부기관	86	89	+3	+4	△2	+1
	기금관리형	17	16	△1	-	-	△1
	위탁집행형	69	73	+4	+4	△2	+2
③	기타공공기관	200	202	+2	+10	△7	△1
계		316	321	+5	+14	△9	-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6.1.29.일자)』보도자료,『2016년 공공기관 수시지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18호)(2016.7.1일자)』

〈표 Ⅰ－4〉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16.8월 기준)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비고
신규 지정 (14개)	국민안전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6.7월 수시지정 (舊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통합) 대한체육회	기타공공기관	2016.7월 수시지정 (舊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대한체육회)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울산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한국나노기술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보건복지부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해제 (9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정해제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지정해제	
		아시아문화개발원	지정해제	
		대한체육회	- (기관해산)	2016.7월 수시지정 (기관통합에 따른 이전기관 청산)
		국민생활체육회	- (기관해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정해제	
	국토교통부	㈜ 해울	지정해제	
	국민안전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기관해산)	2016.7월 수시지정 (기관통합에 따른 이전기관 청산)
	고용노동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기관해산)	
유형 변경 (2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5) 기금관리형 → (2016) 위탁집행형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5) 기타공공기관 → (2016) 위탁집행형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6.1.29.일자)』 보도자료, 『2016년 공공기관 수시지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18호)(2016.7.1일자)』을 참고하여 작성

□ 2016년에 신규 지정된 기관(<표 Ⅰ-5>)은 14개 기관으로 2016년 1월 신규 지정된 12개 기관과 7월 수시 지정된 통합 신설 출범 2개 기관 등이 포함됨.

○ 2016년 1월 신규지정 기관 중 2015년 신설 출범한 기관은 7개 기관이며 나머지 5개 기관은 2015년 이전 설립된 기관으로 2016년 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기관임.

- 아시아문화원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2015년 공공기관인 舊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되고 동법에 근거하여 2015년 신설 출범한 기관임.
- 울산과학기술원은『울산과학기술원법』제정에 따라 舊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해산되고 동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16년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2016년 7월 수시 지정된 (통합)대한체육회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에 따라 유사·유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하여 신설한 기관임.

○ 2016년 신규지정된 14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머지 10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분류됨.

- 직원 정원 50인 미만인 3개 기관(국방전직교육원, 식품안전정보원, 국립해양박물관)은 공운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자동 구분되었으며 나머지 7개 기관은 교육·연구기능 수행, 법적지위 변동 등을 사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

〈표 Ⅰ-5〉 2016년도 신규지정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설립시기	기관규모 (2015년말기준)	
					직원 정원	자산
2016.1월 신규지정 (12개)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기타공공기관	2015.1월	24	976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5.10월	95	47,676
	미래창조과학부	울산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2015.9월	464	271,478
	미래창조과학부	한국나노기술원	기타공공기관	2003.12월	64	81,991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5.5월	104	1,921
	보건복지부	(재)한국장기기증원	기타공공기관	2011.3월	84	3,271
	보건복지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기타공공기관	2007.1월	58	6,46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기타공공기관	2009.7월	35	946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2.12월	160	13,136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기타공공기관	2015.4월	41	1,967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타공공기관	2015.4월	106	10,494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기타공공기관	2015.6월	107	4,740
2016.7월 수시지정 (2개)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대한체육회	기타공공기관	2016.3월	192	-
	국민안전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6.7월	1,016	-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6.1.29.일자)』 보도자료,『2016년 공공기관 수시지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18호)(2016.7.1일자)』 및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경영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주: 2016년 통합 신설출범한 대한체육회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직원정원은 2016년 2분기 기준이며 자산 규모는 관련 정보가 알리오에 공시되어 있지 않아 공란으로 처리

□ 2015년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이 공운법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지정요건 미해당, 기관 통폐합, 기관 특수성 등을 사유로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소규모 기관(직원 정원 20인 미만)으로 지정실익이 크지 않아 지정해제 됨.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아시아문화개발원,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 4개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국민안전처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고용노동부 산하)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됨.

- (재)체육인재육성재단은 2016년 1월자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흡수 통합됨.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2016년 3월 통합되어 (통합)대한체육회로 신설 출범함.
- 아시아문화개발원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해산되고 아시아문화원으로 신설 출범함.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양성 등 유사 기능을 수행하던 기관으로 두 개 기관이 해산되고 2016년 7월자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합 신설 출범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인 ㈜해울(국토교통부 산하)은 국제학교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기관의 특수성을 사유로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8조 제1항은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해울에 대한 자율성·독립성 보장이 요구됨.
- 또한 조직·예산 등 학교의 자율적 학사운영 보장을 전제로 본교와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국제계약의 특성상 ㈜해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운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관 운영에 제약요건임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함.

□ 2015년 공공기관 중 2개 기관은 변경지정 되어 공운법의 적용을 달리 받게 됨.

○ 2015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일부 사업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사업비 집행 비율이 하락하여 2016년 공공기관 지정 시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

○ 한국국제협력단은 기관규모(직원 50명 이상)와 ODA 사업규모 확대로 인한 경영관리 중요성 부각 등을 고려하여 종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함.

-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 됨에 따라 종전과 달리 2016년부터 공운법에서 규정한 지배구조, 임원임명, 예·결산, 경영평가 등을 적용받게 됨.

2.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주요 정책

1) 공공기관 기능조정 개요

□ 기획재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제시됨.

○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 확대',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추진체계마련'임.

○ 정상화 대책 중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주요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기능점검을 상시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 비핵심 기능, 민간경제 저해요소, 유사·중복 기능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됨.

□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추진근거는 공운법 제14조 제1항임.

○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재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기본방향은 공공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축소, 기관 간 유사·중복 해소 등을 통한 공공기관 기능재편, 절감된 자원의 미래 지향적 활용임.

○ (유사·중복기능 조정) 기관 통·폐합 및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

○ (비핵심업무 축소) 설립목적외 사업, 단순위탁 업무 등 축소

○ (민간개방 확대) 공공부문 독·과점 수행분야 민간개방 확대

○ (민간경합 축소) 민간시장 성숙분야 업무·기능의 축소·폐지

○ (경영효율화) 재무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및 부실정리

□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2014년 추진된 1단계 정상화 대책과 2015년 추진된 2단계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 1단계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능조정은 해외자원개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4대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됨.

○ 정부는 1단계 정상화 대책의 후속으로 2015년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하였으며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의 기능조정을 추진할 것을 발표함.

○ 기획재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서 이미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7개 분야 이외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2016년 6월 기준 에너지, 환경, 연구・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이 발표되어 추진중이며 연내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분야의 기능조정도 추진할 계획임.

〈표 Ⅰ-6〉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현황

단계	발표시기	대상분야
1차	2014. 2. 25.	해외자원개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2차	2015. 5. 27.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3차	2016. 6. 13.	에너지, 환경, 교육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2013.12.31.)』,『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현을 위한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안)(2014.2.)』,『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2015.5.27.)』 및『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너지・환경・교육 분야(2016.6.13.)』 보도자료 참고하여 작성

2) 1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1) 해외자원개발 분야[3)]

□ 해외자원개발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연계하여 다른 분야보다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됨.

○ 해외사업은 비핵심사업 중심으로 축소하였으며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조달 등을 위해 일부 지분매각을 추진하기로 함.

-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유연탄, 우라늄 광산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석유공사는 해외광구 내 일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자회사 지분을 일부 매각하기로 함.

3)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투자 및 부채감축계획(2015. 7. 29.)』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해외사업 사업조정(약 15.2조원 규모)은 <표 Ⅰ-7>과 같으며 주로 해외자원개발 3사(약 11.1조원 규모)[4]와 한국전력공사 등의 해외·자원사업(약 3.6조원 규모)의 조정을 통한 부채감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됨.

〈표 Ⅰ－7〉 해외자원개발 분야 부채감축계획(2013~2017년)

(단위: 조원)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해외사업	1.6	2.1	3.6	3.9	4.0	15.2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투자 및 부채감축계획(2015. 7. 29.)』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자료

(2) 정보화 분야[5]

□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점검은 정보화 연구개발(이하 'R&D') 전 주기 관리 추진, 정보화 신산업 유사·중복 기능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됨.

○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R&D 정책, 기술 기획·평가·관리, 성과 확산, 기술거래로 연결되는 ICT R&D 전 주기를 한 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ICT R&D 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6]에 따라 정보화 R&D을 다른 산업의 R&D로부터 분리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통합함.

- 현재 ICT R&D가 정책[7], 기획·평가·관리[8], 기술사업화[9]로 분산관리 되던 것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여 ICT R&D 전 주기를 일관되게 관리함.

○ 그간 산업통상자원부(ICT 일반),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 및 미래창조과학부(ICT 일반, 전파통신) 산하 여러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기능이 통합됨으로써 관련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4)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 7.8조원, 한국광물자원공사 2.1조원, 한국석유공사 1.2조원 등임

5) 기획재정부『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4. 5. 1.)』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6)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사업을 위해서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 , 2013년 8월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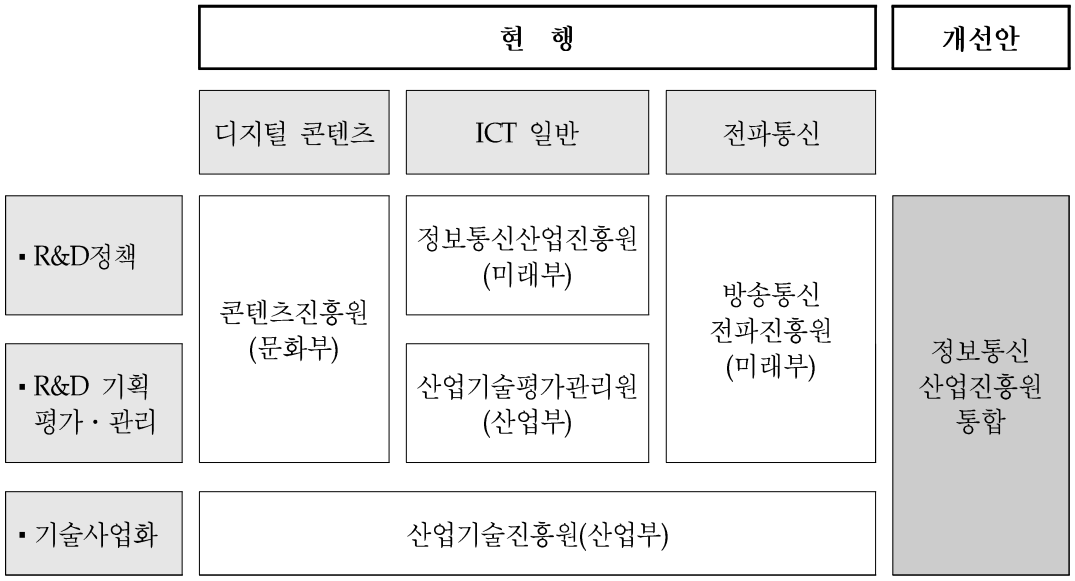
7) 관련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등이 있음

8) 관련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등이 있음

9) 관련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있음

○ 또한, 관련 공공기관에 분산된 ICT R&D 인력(총 137명)[10]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ICT R&D 전담조직으로 통합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세부적 사항은 <표 Ⅰ-8>과 같음.

〈표 Ⅰ－8〉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개선안



자료: 기획재정부『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4. 5. 1.)』 보도자료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45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40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25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1명), 한국콘텐츠진흥원(6명) 등임.

〈표 Ⅰ-9〉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후 기관별 정원·예산 변동

(단위: 명, 억원)

	구 분	조정전	조정후	증 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 원	303	387	84
	예 산	4,485	10,851	6,36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 원	260	215	△45
	예 산	21,768	17,741	△4,0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 원	262	237	△25
	예 산	13,452	13,452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 원	288	274	△14
	예 산	3,919	2,254	△1,665
한국콘텐츠진흥원	정 원	205	186	△19
	예 산	2,484	1,971	△513
한국인터넷진흥원	정 원	350	369	19
	예 산	1,664	1,503	△161
한국정보화진흥원	정 원	328	328	-
	예 산	3,091	3,091	-

자료: 기획재정부『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4. 5. 1.)』 보도자료

□ 한편, ICT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사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이하 'IoE') 등 ICT 신산업육성을 위해 핵심역량 위주로 공공기관 간 기능을 조정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임.

○ 다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IoE, M2M(Machine to Machine, 이하 'M2M') 등 인터넷 신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서 IoE, M2M, 클라우드 등 유사 사업을 중복 수행 중임.

○ 정보통신기술(ICT) R&D 정책, 기술 기획·평가·관리, 성과 확산, 기술거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표 Ⅰ-10〉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전후 변화

기관명	조정 前	조정 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 SW산업/ICT 정책 육성 · 정진기금 관리(-) · 전자거래/전자문서(-) · ICT 해외진출 지원	· SW산업/ICT 정책 육성 · ICT R&D 全주기 관리(+) · ICT신사업 육성(+) · ICT해외진출 총괄(+)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KEIT)	·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	·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 (ICT R&D 제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산업기술 연구/기획 · 산업기술 이전/사업화(-) · 산업기술연구기반조성	· 산업기술 연구/기획 · 산업기술 이전/사업화 (ICT R&D 제외) · 산업기술연구기반조성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KCA)	· 전파산업/활성화 · 방송산업진흥 · 방송통신 R&D 기획관리(-)	· 전파산업/활성화 · 방송산업진흥 · 방발/정진기금관리(+)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 문화산업정책 개발/평가 · 콘텐츠/게임산업 육성 · 디지털 콘텐츠 R&D(-)	· 문화산업정책 개발/평가 · 콘텐츠/게임산업 육성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 개인정보보호/인터넷 윤리 · 방송통신 해외진출지원(-)	·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 개인정보보호/인터넷윤리 · 전자거래/전자문서(+)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 국가정보화 · 개인정보보호/정보윤리 · 전자정부지원	· 국가정보화 · 개인정보보호/정보윤리 · 전자정부지원

자료: 기획재정부『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4. 5. 1.)』 보도자료

(3) 고용 · 복지 분야[11)]

□ 고용 · 복지 분야 기능조정은 그간 분리되어 있던 고용정보망과 복지정보망이 상호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와 고용센터 모두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One-stop 민원처리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토록 함.

○ 고용 · 복지 통합정보 제공과 더불어 온라인 상호지원 기능을 마련하여 고용정보망에서 보육 · 아이돌봄 등 복지서비스 신청을 가능토록 하고 제출서류도 통합정보망을 통한 확인으로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1) 기획재정부『고용 · 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5. 1. 11.)』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이와 함께, 고용센터와 지자체가 민원인에게 고용 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상담해주도록 통합컨설팅기능을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할 예정임.

○ 2015년 중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후, 남양주시 등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마련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민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표 Ⅰ-11>과 같음.

○ 그동안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훈련성과 및 품질의 하락, 부정수급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훈련과정 심사, 훈련기관 평가 등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하여 직업훈련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Ⅰ－11〉 고용·복지 분야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 조정 내역

(단위: 명, 백만원)

현 행					통 합	
역할 및 기능	수행주체	현원	'15년 예산			
훈련과정 심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원격)	18	2,681	➡	한국기술교육대학	①훈련과정심사 ②훈련기관 평가·인증 ③타 부처 훈련평가 ④훈련이수자 평가 ⑤훈련기관 감사 (부정훈련 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집체)	19	3,878			
훈련기관 평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	3,399			
타부처 훈련평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	1,162			
신규기관 사전평가	('15년 신규)	-	689			
훈련이수자 평가	('15년 신규)	-	1,248			
훈련기관 지도점검	고용센터	47	-			
총계		119	13,057			

자료: 기획재정부『고용·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5. 1. 11.)』보도자료에서 발췌

□ 한국잡월드가 직업체험서비스 뿐 아니라 청소년진로지도 전문기능도 수행하도록 역할·기능을 강화하기로 함.

○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체험 외에 1:1 진로설계·직장체험·진로멘토링, 직업훈련 등 종합 진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고하고자 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보장정보원(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복지시설·프로그램 평가업무를 통합하여 복지시설 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한구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보장정보원의 평가업무 관련 인력은 총 14명 수준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아동, 노숙인 등 11종 사회복지시설 평가인력이 7명임.
-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재단 등의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평가인력이 7명임.

(4) 중소기업 분야[12)]

□ 중소기업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기관별로 기능을 전문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됨.

□ 첫째,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을 통폐합하였는데 현재 3개 기관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R&D 관리를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민간의 산학연협회의 중소기업 R&D 기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인력양성 등 R&D 이외의 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함.

○ 이를 통해 중소기업 R&D가 동일기준으로 전주기 관리되어 효율성·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둘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창업지원업무 관련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됨.

12) 기획재정부『고용·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5. 1. 11.)』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이는 그간 창업관련 예산 확대 등으로 신설 법인 수 증가 등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음에도 선진국 대비 낮은 생존율 등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임.

○ 창업준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업정보와 신청 및 법인설립 등을 통합하도록 창업시스템(창업넷)을 개편하였음.

- 유망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창업진흥원 내에 창업전문가(가칭 '창업코디네이터') 과정을 신설함.
- 우수 창업기업에는 자금[13]·보증·판로를 연계한 '맞춤형 One-Stop'서비스를 지원하여 창업 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로 함.

□ 마지막으로 지방 중소기업청 내 수출지원센터 입주기관 간 협업을 통해 수출희망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현재 일부 센터는 입주기관 간, 입주기관과 본사와의 시스템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수출역량진단 후 지원을 위해 본사를 재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음.

○ 시스템 연계를 통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출역량진단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수출희망기업에 대한 수출역량진단과 지원이 One-Stop으로 처리되도록 센터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표 Ⅰ-12〉 중소기업 지원분야 기능조정 전후 변화

(단위: 명, 억원)

기 관	구 분	조정전	조정후	증 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정 원	77	100	+23
	예 산	4,284	9,006	+4,722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정 원	233	209	△24
	예 산	23,273	16,665	△3,608
산학연협회	예 산	1,685	-	△1,685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 원	893	903	+10
	예 산	835	1,406	+571

자료: 기획재정부『고용·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5. 1. 11.)』보도자료에서 발췌
주: 정원 및 예산은 '15년 기준, 중소기업진흥공단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13)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창업 후 사업화 자금 250억('15년)을 지원함

3) 2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14)]

□ 2차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SOC 분야 32개 기관, 농림・수산 분야 16개 기관, 문화・예술 분야 39개 기관 등 총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함.

○ 2차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한 과제(<표 Ⅰ-13>)는 총 96건으로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전체 과제 중 37.5%가 완료되었으며 50.4%의 과제가 추진 중이고 나머지 3.1%의 과제는 지연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4개 기관을 폐지하고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관련 인력 약 5,700명, 예산 7.6조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분야별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음.

- SOC 분야: LH의 민간과의 중복・경합 기능을 축소 및 폐지하는 방안과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 확대, 코레일 3개 부문(물류, 차량정비, 유지보수) 책임사업부제 도입 등이 추진됨.
- 농림・수산 분야: 농어촌공사의 지역개발 등 민간개방, 안전관리・농업경쟁력 부문 확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HACCP인증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추진됨.
- 문화・예술 분야: 체육인재육성재단과 업무연관성이 높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통합,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국립박물관문화재단・한국문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국문화재재단 등 3개 기관에서 수행하던 문화상품개발 기능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통합 등이 추진됨.

〈표 Ⅰ－13〉 2차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 분	과제수	세부추진계획				추진 실적('16.3월말)		
		'15(실적)	'16말	'17말	'18이후	완료	정상추진	지연
SOC	65	17	10	23	15	18	47	-
농림・수산	14	6	3	2	3	6	7	1
문화・예술	17	11	5	1	-	12	3	2
합 계	96	34	18	26	18	36	57	3

자료: 기획재정부『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기능조정 추진현황 점검결과 보고(2016.5.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발췌

14) 기획재정부『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기능조정 추진현황 점검결과 보고(2016. 5.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1) SOC 분야

□ SOC 분야 기능조정은 주택,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분야 전반에 걸쳐 유관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비효율을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됨.

□ 주택시장 과열은 해소하면서 주택시장에서의 공공부문이 해야 할 역할을 지속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기능에 중점을 두고 중대형 분양 기능은 폐지하도록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임대주택 관리상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관리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주고 종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됨.

□ 철도물류분야는 2020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철도물류부분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역 127개를 80개로 통·폐합하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영업수지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철도차량·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정비부실, 유지보수 비효율 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전문정비업체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유지보수비 기획·집행·정산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평가 등 철도이용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속도로 재난대비 강화 차원에서 도로의 대형 재난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재난안전처를 신설하고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로 안전을 위한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부동산 조사·통계, 민간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공적기능에 주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고자 함.

○ 민간시장 성숙으로 감정평가 업무의 민간이양이 수차례 추진되었으나 한국감정원-민간업계 간 이견으로 지연 또는 무산되어 왔음.

□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민간부문의 확정측량·공간정보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보유기술, 운영노하우 등을 민간에 제공하는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공사의 본부·지사를 통폐합 및 축소 등 기관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함.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핵심기능을 지적측량에서 공간정보업무로 전환 중이나 여전히 민간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고 조직운영상 비효율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임.

□ 여객운항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 기능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민간→공공기관)하며 운항관리자 주기적 교육 및 재평가 등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국해운조합의 선원 안전교육, 선박점검 등 안전 및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관련 분야 기능조정과 개선이 요구됨.

□ 2016년 3월말 기준 SOC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완료과제)을 살펴보면, <표 Ⅰ-14>와 같음.

〈표 Ⅰ－14〉 SOC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완료과제(2016.3월말 기준)

	과제명	주요 내용
1	(선박안전공단) 여객운항관리 이관	▪ 운항관리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여객선 운항관리 기능을 해운조합→선박안전공단으로 이관('15.7월)
2	(코레일테크) 테마파크 이관	▪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테마파크(정동진 레일바이크) 운영기능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관
3	(코레일유통) 온라인쇼핑몰 철수	▪ 민간과 경합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 철수('15.5월)
4	(선박안전공단) 여객선 운항관리자 자질 향상	▪ 선박안전운항 全과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 수행을 위해 운항관리자 교육훈련 신설 및 전문성 강화('15.9월)
5	(코레일관광개발) 열차내 판매 효율화	▪ (고속열차) 무인판매 서비스로 전환('15.7월) (일반열차) 무인판매 확대 시행(48회→84회, '15.10월)
6	(한국철도시설공단) 차량구매업무 폐지	▪ 철도 차량 구매 업무를 철도공사로 일원화('15.12월)
7	(한국도로공사) 재난대비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	▪ 4km 이상 터널·비탈면 등 고속도로 취약분야 집중관리 - 재난안전혁신 추진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15.7월)
8	(한국철도공사) 책임사업부제 도입	▪ 물류, 정비, 유지보수 3개 부문 책임사업부제 도입('15.12월)
9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관리권 추가 설정	▪ 일반철도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설정, 등록하여 철도 시설공단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15.12월)
10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특별실태점검 방안 수립('15.12월) * 특별실태 점검 대상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추가
11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실점검 사전예방	▪ 부실점검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시범사업 수립, 지도 완료 및 효과 분석('15.12월)
12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 이관	▪ 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15.12월 공단 업무종료)
13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민간이양 및 공적기능 강화	▪ 감정원 기능조정을 위한 3개 법(부동산가격공시법, 감정평가법, 한국감정원법) 제·개정안 국회 통과('15.12월)
14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유지관리 참여 제한	▪ 민자노선 유지보수에 도공의 참여 제한('15.12월, 위수탁 계약 해지)
15	(코레일네트웍스) 외부 주차장, 레스토랑 운영 폐지	▪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 철수('15.12월)
16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 민간개방	▪ 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진단하는 시설물 규모를 축소 (191개 → 152개, '15.12월)
17	(인천·한국공항)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 상생 프로그램 시행 및 협력사 운영관리 개선대책 수립 ('15.6월), 성과평가 실시('15.12월)
18	(교통안전공단) 기계식 주차장 사용검사 일원화	▪ 교통안전공단, 승강기관리원, 주차설비협회 → 교통안전공단으로 검사주체 통합('16.3월, 고시)

자료: 기획재정부『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기능조정 추진현황 점검결과 보고(2016.5.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발췌

(2) 문화 · 예술 분야

□ 문화 · 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체육인재 육성기능 통합, 문화상품 개발기능 일원화, 한국관광공사 인증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함.

○ 체육인재 육성기능 통합을 위해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함.

-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소규모 인력으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개발원은 교육 현장과의 협업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문화상품 개발 기능을 일원화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능 중복으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 문화상품개발기능이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박물관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3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인력 · 예산 · 품질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 주도로 '관광품질 통합인증시스템'을 구축 · 운영함으로써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증관리 창구 일원화를 통해 인증 품질의 향상을 모색하고자 함.

-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유관협회 등에서 각각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여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인증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품질보증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지적됨.

□ 2016년 3월말 기준 문화 · 예술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완료과제)을 살펴보면, <표 Ⅰ-15>와 같음.

〈표 Ⅰ－15〉 문화 · 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완료과제(2016.3월말 기준)

	과제명	주요 내용
1	명동 · 정동극장 분리, 국립극단 이관	▪ 명동예술극장을 분리하여 국립극단으로 이관하고, 정동극장은 단독 운영하도록 조기 이관 완료('15.4월)
2	(한국관광공사) 조사 연구센터 폐지	▪ 관광공사 조사연구센터 폐지 등 조직 개편('15.10월)
3	(한국관광고사) 관광 인증기능 강화	▪ 관광품질 통합인증시스템을 구축으로 인증기능 강화 * 관광품질 통합인증제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15.10월)
4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운영관리 폐지	▪ 인천공항, 부산항, 인천2항 등 면세점 운영 · 관리 폐지 * 인천공항 및 부산항('15.8월), 인천2항('15.12월)
5	(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통합	▪ 체육인재 양성기관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 통합 완료('15.12월)
6	(한국박물관문화재단 등) 문화상품 개발 일원화	▪ 한국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재재단,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의 문화상품 개발기능을 공예디자인 진흥원으로 일원화('15.12월)
7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사 수출지원 기능 일원화	▪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사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사업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15.12월)
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법정법인화를 위한 설립근거 마련
9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통계 기능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관	▪ 한국문화정보원의 통계기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이관 완료 ('15.12월)
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전문 인력 교육의 한국관광공사 이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아카데미, 문화동반자, 문화 이모작 사업을 한국관광공사 등 타 기관으로 이관('15.12월)
11	(한국박물관문화재단, 예술의전당) 식음료사업 민간 위탁	▪ 한국박물관문화재단 및 예술의전당의 식음료사업을 민간에 위탁('15.12월, 사업자 선정)
12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통합체육회 설립 등기 완료('16.3월)

자료: 기획재정부『3대 분야(SOC, 농림 · 수산, 문화 · 예술) 기능조정 추진현황 점검결과 보고(2016.5.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발췌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스포츠센터와 한국문화진흥(주)의 뉴서울 골프장 매각은 2016년 완료예정과제이나 지역주민 반발, 업계불황 등 경쟁력 약화로 매각에 애로가 있으나 2016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의할 계획임.

□ 이외에도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 중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당초 2015년말 완료예정과제)과 88골프장 매각 등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3) 농림·수산 분야

□ 농림·수산 분야 기능조정의 대표적 사례는 '직불제 이행점검 일원화' 임.

○ 그간 직불제 정보관리와 이행점검이 분산[15]되어 있어 직불금 지급 및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해 옴.

○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DB관리)으로 일원화 하여 직불제 관련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적 지원, 부정·중복 수급 적발 등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농림·수산 분야 기능조정 과제 중 2016년 3월 기준으로 완료된 과제는 <표Ⅰ-16>과 같음.

〈표 Ⅰ－16〉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완료과제(2016.3월말 기준)

과제명		주요 내용
1	(농업실용화재단) 지원 인력 슬림화	▪ 기획운영본부의 지원인력(7명)을 사업부서인 기술사업 본부와 창조기술경영본부로 재배치 완료('15.8월)
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미디어 홍보 일원화, 기관별 교육 분야 전문화	▪ 미디어 홍보기능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일원화 ▪ 교육 기능 → 기관별 전문분야로 특화('15.12월)
3	(aT) aT센터 운영 민간위탁	▪ aT센터 전시장 운영사업 민간위탁 완료('15.12월) * 운영기관: COEX / 위탁운영시기: 16.1.1일부터
4	(aT) 곡물조달 시스템 조정·축소	▪ 유통공사 곡물조달시스템 사업 조정·축소('15.12월) * 출자금 잔액(642억원) 전액 반납 완료
5	(한국농어촌공사) 직불제 이행점검 일원화	▪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 일원화(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개정완료('15.12월)
6	(한국마사회) 조직개편	▪ 한국마사회 말산업 중심 조직개편 완료('15.11월) - 말산업 심사·연구기능 등 강화, 지원, 승마강습 등 기능 축소

자료: 기획재정부『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기능조정 추진현황 점검결과 보고(2016.5.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발췌

15) 정보관리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 업무는 논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밭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 2016년 중 완료예정과제로 녹색사업단의 기능 중 산림경제 업무를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이관하고, 산림복지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할 예정임.

○ 이외 HACCP 인증기관 통합(한국식품안전인증원+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식품 모태펀드와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통합 등이 2016년 완료 예정 과제임.

4) 3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16)]

□ 정부는 2016년 6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의 기능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로 유관 기관별 기능 분류 및 운영실태 점검,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 현재 발표된 기능조정(안)을 통해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단계적 구조조정, 29개 기관의 업무가 조정될 예정임.

- 통·폐합 기관: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2017년 예정), 호남권생물자원관(2018년 예정)
- 단계적 구조조정 기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1) 에너지 분야

□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은 총 27개 기관(<표 Ⅰ-17>)으로 정원 약 6만 9,000명, 예산 174조원 규모이며 발전·송배전, 석유·가스·광물·석탄 등 주요 자원 개발과 비축 및 에너지 안전·기술·홍보가 주요 업무임.

〈표 Ⅰ－17〉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분류	기관명
공기업(12개)	▪ 한국전력공사,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준정부기관(7개)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기타공공기관(8개)	▪ 한전KPS, 한전KDN,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 에너지·환경·교육 분야(2016.6.14.)』에서 발췌

16)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 에너지·환경·교육 분야(2016.6.14.)』를 활용하여 작성

□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은 기관간 유사·중복 업무 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독과점적 산업구조와 재무구조 악화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발전 해외진출, 전기 안전점검, 댐관리 등 기관간 유사·중복 업무 수행으로 비효율이 발생하여 개선이 요구됨.

○ 전력(판매), 가스(도입·도매), 발전 정비 등에서 독·과점 지속으로 경쟁을 통한 사회적 편익 제고가 미흡한 실정임.

○ 채산성 악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부실이 누적되어 대한석탄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임.

□ 정부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민간개방 확대, 부실 정리,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핵심기능 강화 및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능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 전력연구, 발전 해외진출, 전기점검, 댐관리 등 기관 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음.

○ (전력연구) 전력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하고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함.

○ (발전 해외진출) 기관간 중복진출,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기관별 진출분야를 특화[17]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을 강화함.

○ (전기점검) 일반용 전기의 '사용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함[18].

○ (댐관리)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한수원 발전용 댐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여 일괄 운영함.

□ 대한석탄공사의 부실정리, 해외자원개발 효율화, 발전원료 해외개발 매각,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 전신주 관리 민간이관, 에특회계 관리 등을 통해 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고 비핵심 업무를 축소하고자 함.

○ (부실정리)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대한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함.

---

17) 한국전력공사는 대형사업 및 에너지 신사업 분야로 특화하고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O&M 분야에 특화

18) 산업용·교육용은 전기안전공사가 담당중이나, 주택용·농사용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병행 수행 중임

○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해외자원개발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발전원료 해외개발) 발전기능 이관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원료 해외개발기능을 폐지하고 보유자산은 순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임.

○ (전기용품 시험·인증) 민간·공공 부문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을 폐지함.

○ (전신주 관리) 전신주 관리는 정보통신기술과 무관한 비핵심 업무로서 민간수행이 가능하므로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업무를 철수하고 민간으로의 이관을 추진할 계획임.

○ (에특회계 관리) 융자 집행·상환 등의 업무는 단순 자금중개기능으로 기관 핵심기능과 무관하므로 에특회계의 회계사무(한국석유공사) 및 융자(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함.

□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전력판매, 가스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원전 상세설계, 광통신망 구축 등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은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함.

○ (전력판매)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부문의 규제완화 및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고자 함.

○ (가스 도입·도매)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 조성 후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민간개발로 전환함[19].

○ (화력발전 정비) 한전KPS의 신규발전기 정비 독점 폐지 등을 통해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원전 상세설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를 민간으로 확대 개방할 예정임[20].

---

19)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이 가능하며, 현재 포스코, GS에너지, SK E&S, 중부발전 4개사가 직수입중임('15년 총 LNG 수입량의 5.7%)

20) 원전설계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1차 수주 후, 상세설계의 약 50%를 다시 민간에 하도급하는 구조로 민간 개방비율을 '17년 60%로 상향하고 점진적으로 개방비율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자 함

○ (광통신망 구축)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한국전력공사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2017년부터 중단함.

□ 공공기관 상장, 지역난방 유상증자,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도 추진될 예정임.

○ (공공기관 상장) 투명성 확보,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임[21].

○ (한국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를 추진함[22](현행 공공지분 65% → 51%).

○ (출자회사 정리) 설립목적을 달성한 한국지역난방기술을 매각하고[23]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9개 출자회사 지분을 정리함[24].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조직·인력을 효율화하고, 학회·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기능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함.

□ 원전사업,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임.

○ (원전사업)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수출의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25],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관을 추진할 계획임.

○ (에너지 신산업)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기술개발 확대 등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

21) 대상기관은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8개 기관이며 지분의 20~30%만을 상장하여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할 계획임

22) 공공지분 51% 한도 내 유상증자 시 부채비율 20%p 내외 하락 전망

23) 국내 집단에너지 기술보급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 집단에너지 설계 등의 분야에 4개의 민간기업이 활동중임

24) 지분 정리대상 출자회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한국알루미나, 세아M&S, 에너켐, 영우자원, 대한광물, 혜인자원 등 6개 회사이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완에너지 등 3개 회사임.

25) 해외 프로젝트별로 한전 또는 한수원이 총괄하되, 정부→기관간 협의를 통해 기관간 경합을 방지

(2) 환경 분야

□ 환경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은 총 10개 기관(<표 Ⅰ-18>)이며 정원 4,300여명, 예산 2.4조원으로 환경보전, 환경오염 피해구제, 환경·기상 분야 R&D 등을 주요 업무로 함.

〈표 Ⅰ－18〉 환경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주무부처	분류	기관명
환경부	준정부기관(4)	▪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기타공공기관(3)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낙동강생물자원관, 상하수도협회
기상청	준정부기관(1)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2)	▪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단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 에너지·환경·교육 분야(2016.6.14.)』에서 발췌

□ 환경 분야 공공기관은 기관 간 업무중복 및 이원화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민간이 수행 가능한 비핵심 업무의 직접 수행, 민간시장이 성숙한 사업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관계에 있음.

○ 환경피해구제, 생태·생물 보전·연구 등 기관 간 업무중복 및 이원화로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음.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국립공원 주차장, 기상콜센터 등 민간이 수행 가능한 비핵심 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민간영역 침해라는 지적이 있음.

○ 민간시장이 성숙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이나 하수도 진단 등에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관계에 있음.

□ 정부는 환경 분야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 업무 정리 등으로 환경 분야 공공기관의 업무를 핵심기능 위주로 개편하는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함.

○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중) 4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유사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하여 생물조사·연구기능도 일원화하고자 함[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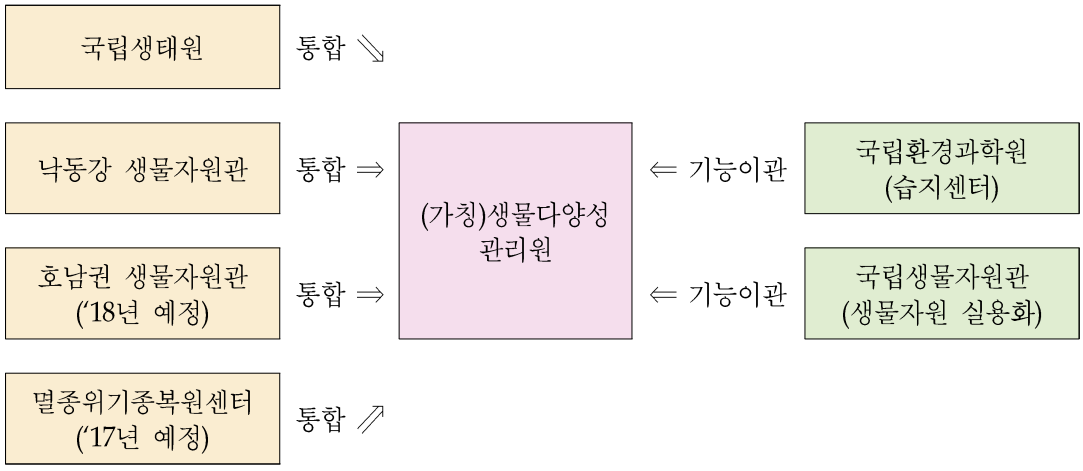
26)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실용화, (국립환경과학관) 습지생태 연구

○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업무를 정리하여 화학물질관리·환경보전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제품안전관리·피해구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하고 상하수도협회·한국환경공단으로 이원화된 상·하수도 통계생산 기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할 계획임.

○ 법상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환경시설(폐기물처리,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운영업무는 위탁기간 만료 시 철수하는 것으로 하고[27], 국립공원 내 주차장, 휴게소·매점 운영의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28].

○ 기상청이 사용하는 레이더, 지진계 등 핵심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 업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며[29] 한국환경공단이 민간과 불필요하게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등의 업무에서 2017년부터 철수하는 방안이 마련됨[30].

〈표 Ⅰ-19〉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 통합안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 에너지·환경·교육 분야(2016.6.14.)』에서 발췌

27) 하남시 펌프장·복합환경 기초시설('16.11월 만료), 비점오염저감시설 35개소('16.12월),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관리 9개소('21.6월 만료)

28) 전체 민간위탁 시설(주차장, 휴게소·매점 등): 61 → 77개소

29) 진흥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상콜센터(☎131) 민간위탁

30) '18년 이후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시설 설치사업 등 참여를 중단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소규모 하수도(3,000m3/일 미만) 기술 진단 분야에서도 '17년부터 철수하여 민간기업이 전담하도록 함

〈표 Ⅰ-20〉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사중복기능 조정

구분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정안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 등록지원	⬅	화학물질 등록지원	환경공단
제품 안전관리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기 술 원
토양오염 조사	토양오염조사 · 평가 지원	⬅	토양환경평가	환경공단
특성화대학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원	⬅	폐자원특성화대학원 지원	환경공단
환경 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	➡	환경오염피해구제	기 술 원
환경산업 통계	환경산업실태조사	➡	환경기술실태조사	기 술 원
국제 협력	해외사무소	➡	해외 환경협력센터	기 술 원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 에너지 · 환경 · 교육 분야(2016.6.14.)』에서 발췌

(3) 교육 분야

□ 교육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은 총 8개 기관으로 정원 1,200여명, 예산 21.3조원으로 국가장학사업, 사립교직원 복지사업, 역사 · 한국학 조사 · 연구, 평생교육 사업 지원 등이 주요 업무임.

〈표 Ⅰ-21〉 교육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분 류	기 관 명
준정부기관(3개)	▪ 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타공공기관(5개)	▪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고전번역원, 사학진흥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 에너지 · 환경 · 교육 분야(2016.6.14.)』에서 발췌

□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고전번역 등 기관별 유사 · 중복기능 수행으로 재정지원 효과 저하, 지원조직 과다, 비핵심 업무 수행 등 핵심역량 분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사 · 중복기능 조정, 비핵심 · 민간경합 축소, 교육 · 직업훈련 간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원화 된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사학진흥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재정정보시스템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임.

○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고전번역원의 유사·중복기능을 일원화함.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을 한국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하고 한국고전번역원은 국가고전번역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임.

○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에서 수행 중인 세무·회계교육 등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지원인력을 축소함.

○ 수요자 편의제고 및 직업훈련 활성화 유도를 위해 학점은행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대상에 포함되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학습이력관리시스템(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직업훈련정보(HRD-net, 고용정보원) 간 연계를 통해 학습이력 통합관리 및 구직자 편의 제고를 모색하고자 함.

〈표 Ⅰ－22〉 에너지 · 환경 · 교육 3대 분야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시기

추진과제	주무부처	추진시기
1. 에너지 분야	-	
1-1.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전력연구원으로 통합	산업부	‘16.下
1-2. 발전사업 해외진출 기관별로 특화	산업부	‘16.下
1-3.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산업부	‘16.下~‘17.上
1-4. 한수원 발전용 댐 관리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운영	산업부 국토부	‘16.下~‘17.上
1-5. 석탄공사 연차별 감산 및 단계적 정원 감축	산업부	‘16.下~
1-6. 해외 자원개발 기능 효율화	산업부	‘16.下~
1-7. 한전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 폐지	산업부	‘16.下~
1-8. 전기안전공사 전기용품 시험 · 인증기능 폐지	산업부	‘17.上
1-9. 한전KDN 전신주 관리업무 철수	산업부	‘16.下
1-10. 에특회계 사무 · 융자 업무 이관	산업부	‘16.下~‘17.上
1-11. 전력판매 시장 단계적 민간개방	산업부	‘16.下~
1-12. 가스 도입 · 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단계적 민간개방	산업부	‘16.下~
1-13.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 민간개방 확대	산업부	‘17.上~
1-14. 원전 상세설계 기능 민간개방 확대	산업부	‘17.上~
1-15. 한전 광통신망 구축사업 중단	산업부	‘17.上
1-16.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기재부	‘16.下~
1-17.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산업부	‘16.下~
1-18. 출자회사 정리	산업부	‘16.下~
1-19. 원자력문화재단 조직 · 인력 효율화	산업부	‘16.下~‘17.上
1-20. 한수원의 원전 해외수출 기능 강화	산업부	‘16.下
2. 환경 분야	-	
2-1. 생태 · 생물자원 관련 공공기관 통 · 폐합	환경부	‘16.下~‘17.下
2-2. 환경공단-환경산업기술원 유사 · 중복기능 정리	환경부	‘16.下~‘17.下
2-3. 상하수도 통계관리 업무 일원화	환경부	‘16.下
2-4. 환경공단 비핵심 업무 축소, 민간경합 축소	환경부	‘16.下~
2-5. 국립공원 시설운영 민간개방 확대	환경부	‘16.下~‘17.下
2-6. 기상산업진흥원 비핵심 업무 축소 · 민간개방 확대	기상청	‘16.下~‘18.上
3. 교육 분야	-	
3-1.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일원화	교육부	‘16.下~‘17.上
3-2. 대학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일원화	교육부	‘16.下~‘17.上
3-3. 국가 고전번역사업 기능조정	교육부	‘16.下~‘17.下
3-4.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사업 축소	교육부	‘16.下
3-5. 사학연금공단 경영지원 인력 축소	교육부	‘16.下~
3-6. 학점은행제와 직업훈련 과정 연계 강화	교육부 고용부	‘16.下~‘17.上
3-7. 학습이력관리시스템 · 직업훈련 정보 연계 강화	교육부 고용부	‘16.下~‘17.上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 에너지 · 환경 · 교육 분야(2016.6.14.)』에서 발췌

나. 공공기관 인력관리 관련 주요 정책

1)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향[31]

□ 정부의 2015년, 2016년 인력운영방향은 신규채용 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 직무능력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직무능력중심(NCS) 기반의 채용을 확대하고 경력직 채용을 활성화 하는 등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과 더불어 고졸자, 지역인재, 여성,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함.

○ 능력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또는 정원내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채용절차의 사전공개 및 임직원 가족의 채용우대금지 등 인력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함.

□ 2015년 1.7만명(전년대비 2.9% 증가), 2016년 1.9만명(전년대비 4.3% 증가)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공공기관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을 활성화하여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 2016년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청년의무고용비율 3%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에너지·SOC 공공기관 중심으로 교육·훈련 및 채용연계 등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추진함.

○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을 활용하여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32].

---

31) 기획재정부『2015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안)(2015.2.13.)』와 기획재정부『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2016.2.25.)』을 활용하여 작성함

32)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은 4,441명임

□ 정부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고졸채용 기반구축 매뉴얼을 제공하고 고졸적합직무를 발굴하도록 적극 유도하였으며 고졸이 조직 내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도록 채용후 보직경로, 승진제도, 보수, 교육훈련, 후진학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함.

○ 기관 신규채용의 20% 수준까지 고졸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졸채용 계획 20% 미만인 기관은 추가 채용계획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였음.

○ 고졸채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14년도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수·승진·교육 등 지원방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준수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다음과 같음.

- (보수) 고졸초임을 대졸의 70% 이상으로 최저 기준 설정
- (승진) 근속승진 최소기간(통상 4년) 후 대졸과 동등한 직급으로 승진
- (교육) 대졸 수준의 근무 능력 확보와 충분한 교육 훈련 보장
- (후진학 지원) 직무유관 분야 중심으로 후진학 프로그램 발굴·운영

○ 이밖에도 고졸채용의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고, 고졸자 수준에 맞는 채용방식을 권고하였으며 응시기준에 '군필'을 배제하도록 함.

□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인력을 인턴을 거쳐 채용하는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 도입하고,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형 인턴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인턴기간 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최저교육이수제, 최종 업무발표회 도입을 의무화 하도록 함.

○ 2014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채용 자격·절차는 신규채용에 준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함.

- 2014년 한국철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동발전(주) 등 43개 기관에서 시범도입 하였으며, 2015년에는 76개 기관이 도입함.

○ 보수수준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규직 채용비율은 70%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인턴 근무기간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음.

- 인턴 근무기간이 기존 4~5개월인 것을 2~5개월로 조정하여 기관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체험형 인턴제는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학교장 추천, 지역학교 연계 등 다양한 채용방식을 권장하였으며 근무기간은 1~5개월 범위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함.

- 그동안 체험형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온 전환형(4~5개월)을 2015년부터 종전 체험형(1~3개월)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 청년인턴의 권장 보수수준을 월 130만원에서 2015년 월 132만원으로, 2016년 월 13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채용규모를 전년도말 공공기관 정원의 약 5%로 하고, 정규직 채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공공기관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까지 기관별 여성관리자 확대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각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 중 남는 정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2014년 10월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로 연도별 여성관리자 확대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기 수립한 목표비율 달성여부 등을 2015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2015년 여성관리자 비율 40% 이상인 기관 등을 제외한 258개 기관에서 기관별 여성관리자 확대계획을 수립함(257개 기준 2013년 12.7% → 2017년 18.6%).
- 2016년 기준 관리대상기관은 267개 기관으로 대상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확대계획을 수립함.

○ 경력단절 여성의 공공기관 취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공공기관 대체인력 통합 인력은행을 구축하도록 함.

-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잡알리오)에 경력단절여성, 퇴직인력 등을 중심으로 인력은행을 구축하여 기관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33].

○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권고하고, 초과현원의 해소기간을 2년 유예하도록 함.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신규채용과 전환수요 등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였으며 유연근무제 모범사례 전파, 교육·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함.

3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채용정보시스템(Job-Alio) http://job.alio.go.kr

○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자에 불리하지 않게 인사·복무 등 관련규정을 운영하도록 함.

○ 신규채용 및 전환 인원이 2015년 신규채용의 5% 수준, 2016년 신규채용의 7% 수준이 되도록 기관 자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함[34].

○ 유연근무제 제도의 설계와 도입, 활용과 정착을 위해 유연근무제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

○ 유연근무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사발전재단,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 스마트워크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연계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장려하고, 인증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초과근로 감소, 연차휴가 활성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유도하고자 함.

○ 2016년에는 육아휴직, 질병·사고, 퇴직준비 등과 연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운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시 '공공기관 대체인력풀'을 활용하도록 추진함.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경영평가 등 정책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이전지역 인재채용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기관별 채용실적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경영평가 실시 등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35].

-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비율을 관계 법령 제정에 따라[36], 종전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함.
- 특히, 2014년도 채용규모가 권장기준에 미달한 기관의 경우 2015년 말까지 35%를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미달한 기관은 2016년 말까지 단계적 채용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함.

---

34) 연도별 시간선택제 확대 계획: ('14) 3% → ('15) 5% → ('16) 7%

35)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 재학생 또는 졸업생(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3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 채용인원이 소규모(10명 미만)이거나 전문적인 인력확보가 필요하여 사실상 35% 달성이 곤란한 기관의 경우 채용확대 계획을 검토한 후 달성기한 유예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기관별 채용여건 등을 고려한 이전지역 인재 채용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이전기관 이전인원비율, 시도별 졸업자 비율,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채용을 확대하도록 함.
-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이전지역 채용할당제, 채용목표제, 가점부여 등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확대정책을 1개 이상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 함.
- 채용여건 등에 맞는 적정 채용목표설정 여부와 이행상황을 2015년 경영평가부터 반영하고[37], 채용실적을 통합공시 항목에 추가함.
-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권역별로 이전지역 인재를 관리하도록 하여 현재 10개 시·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6대 권역별로 관리하도록 함.

□ 상시·지속적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전환 이후 비정규직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함.

○ 전환 후 인력관리를 위하여 비정규직 인력 규모 및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함.

- 전환된 비정규직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기존 사업비 등에 포함된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은 감액함.
- 또한 공공기관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부서별·직종별 정원관리, 보수·수당·복무관리 등을 시행하도록 함.

○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인원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여[38]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을 제외하고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에 대해 다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각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2016년 4월말까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목표관리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

---

37) 『조직 및 인전자원 관리』 등 세부평가시 채용 노력도, 정책 도입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함

3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일부기관은 별도 비율을 적용하도록 함

○ 전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 정원관리, 비정규직 사용한도 내용의 지침 반영 및 정규직 전환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종전의 정규직 위주 계획에서 2016년부터 비정규직·간접고용까지 포함하는 계획으로 개편하도록 함.

〈표 Ⅰ-23〉 비정규직 업무 구분

비정규직 목표관리 대상 업무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
□ 상시·지속 업무 - 연중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한시적 업무(기간이 정한 업무) □ 일시·간헐 업무(일일근로 등) □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나, 업무성격이나 인력활용의 특수성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정년퇴직자 활용 - 정규직으로 채용시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성이 낮아지는 경우 - 정부 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2016.2.26.)』에서 발췌
주: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되면 목표관리제 대상에 포함

2)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39)]

(1)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및 추진 경과

□ 정부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절약한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5년 5월 7일『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음.

□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39)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 논의(2015.4.12.)』,『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 간 6700여 명 청년 고용 전망-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2015.5.7.)』,『313개 전(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2015.12.6.)』,『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신규채용 착수(2016.2.24.)』 활용하여 작성함

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 2013년 이전 일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2013.5월)에 따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함.

○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일부 보완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5년 5월 기준으로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56개 기관(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22개)에서만 도입하여 도입실적은 18% 수준에 그침.

□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1년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확산이 시급하여 2015년 4월 23일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5월 7일 논의내용을 토대로 권고안을 최종 확정됨.

○ 5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제도도입에 대한 이해부족, 노조반발 등으로 도입이 부진하였으나 정부·기관장·노조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5년 12월 3일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313개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함[40].

○ 이를 통해 2016년 약 4천4백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2016년 전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약 1.8만명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주요 내용

□ 임금피크제의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이며 정년을 종전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현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함.

○ 직급별 정년이 상이하여 일부 직급만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함.

○ 임금피크제를 기도입한 기관은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수정·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직급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전 직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

40) 통폐합 3개 기관(녹색사업단, 아시아문화개발원, 체육인재육성재단) 제외

○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 등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함.

○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정년을 종전 60세 이하에서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으며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기관도 직급별 정년일치를 이유로 60세 미만 직급의 정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도록 함.

□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운영을 통해 청년일자리창출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정년연장 기관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을 기준으로, 기정년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도래 1년전 인원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매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함.

○ 다만 연령별 인원분포, 신규채용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간 임금격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경우에 한해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신규채용 규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41].

○ 정부는 매년 신규채용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목표 초과달성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일정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로 허용하고,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차감하도록 함.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 세부사항은 기관의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도록 함.

○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설정한 신규채용 목표 인원의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설계해야 함.

○ 임금지급률은 간부직과 비간부직, 직급별, 직종별 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 등에 따라 달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금조정 기간도 정년연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함.

□ 매년 설정하는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며[42],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모두 정원 내 인력으로 관리해야 함.

---

41)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며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해야 함

42) 별도정원 = 별도직군 정원 + 초임직급 정원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별도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임금수준 설정시 해당 직무에 다라 별도직군 정원을 설정하도록 함.

○ 별도정원 중 별도직군 정원을 차감한 수만큼은 초임직급의 별도정원으로 설정하도록 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별도직군 전환인력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직급(1,2급 등)에서 제외하고, 그 외 인력은 종전 직급에 포함하도록 함.

○ 특히 정년이후 재고용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정년도래 전에 정원외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불가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는 능력과 경험이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개발되어야 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능력 및 기관별 직위·직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위와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동기부여와 직무 등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해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차등이나 직무급, 역할급 등이 지급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연단위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3) 기대효과

□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근로자, 청년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상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신규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청년구직자에 일자리 제공이 가능해짐.

□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2016년 증가한 신규채용 규모는 4천4백여명으로 이를 포함한 2016년 총 신규채용 규모는 총 1.8만명이 될 전망이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주요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표 Ⅰ-24>와 같음.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전체 채용인원 1,070명 중 절반 이상인 567명이 임금피크제로 늘어난 신규채용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임금피크제 관련 채용이 전체 신규채용의 각 80%, 65%를 차지하고 있어 임금피크제가 채용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43].

○ 특히, 지난 3년간 신규채용이 전혀 없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2016년 115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임.

〈표 Ⅰ-24〉 2015년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계획(2016.2월 기준)

(단위: 명)

기관명	2015년 전체채용	2015년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계획(안)
전체 공공기관	18,518	4,403
한국철도공사	1,070	567
국민건강보험공단	803	382
한국수력원자력(주)	809	261
한국전력공사	1,255	248
한국농어촌공사	353	228
한국국토정보공사	168	140
한전KPS(주)	300	131
한국토지주택공사	115	109
한국도로공사	206	87
국민연금공단	230	69
한국중부발전(주)	130	68
한국수자원공사	291	62
한국가스공사	248	61
한국전기안전공사	233	60
한국조폐공사	65	60
한국전력기술(주)	70	59
한국동서발전(주)	87	56
한국남동발전(주)	100	53
한국남부발전(주)	80	52
대한적십자사	228	51
기타	11,677	1,599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신규채용 착수(2016.2.24.)』에서 발췌

4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83%(임금피크제 신규채용 140명/전체채용 168명)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65%(임금피크제 신규채용 228명/전체채용 353명)임

3) 공정인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44]

□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정규직·직접고용 관행을 형성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임.

○ 이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은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용안정,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 정부는 9.15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인력운영의 패러다임을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1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하였음.

○ 2대 지침의 기본 방향은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률과 그간의 판례에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임.

○ 전문가 간담회, 현장 노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노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 마련하였음.

○ 노사가 자발적으로 정년 60세 시대에 대비하고 선진적 인력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갈등과 불확실성을 예방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공정인사 지침은 크게 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② 근로계약 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부분은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인력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소개하고 있음.

□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부분에서는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인력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있음.

○ 기업들이 경쟁력도 확보하고 일하는 사람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하도록 그 기법을 소개함.

○ 공정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급여·승진 등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 능력향상을 위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등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적재적소 배치전환이 필요함.

---

44)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발표(2016.1.22.)』 보도자료 및 『공정인사 지침(2016.1.22.)』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2016.3.18.)』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퇴직 시에는 기업의 전직지원 등이 가급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

○ 법과 판례에 있는 징계·정리·통상해고 등의 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음.

○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각 사업장에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하여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 공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한 경우 공정한 평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해 능력 개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는 2016년 3월 공정인사 지침과 연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을 지원하는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함.

○ 이번 방안은 2015년 1월 발표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성과중심 인력운영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2016년 1월 발표한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을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임.

○ 공공기관은 조직 내 경쟁이 적고 고용안정성이 높아 경영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공공기관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유연성 확대와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방안의 마련이 시급해짐.

〈표 Ⅰ－25〉 정부 공정인사 지침상 관련내용

절차	주요 내용
근거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해고사유 등 근거 마련
평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우선 시행 * 평가기준의 객관성, 평가내용의 적합성,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결과 공개
고용유지 노력	교육훈련 기회 제공, 적합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노력
해고	교육훈련, 배치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개선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2016.3.18.)』 보도자료

□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을 지원하는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권고안은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되어 2016년부터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함[45].

○ 공공기관별로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 등의 역량 및 성과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여부를 평가함.

- 기관별로 개인별 업무성과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내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함.
- 기관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상자 역량제고 및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 배치전환 등 단계적 관리방안을 운영함.
- 교육훈련 등의 최종 평가결과 우수자는 직위를 재부여하고 부진자는 직권면직 등을 검토하도록 함.

○ 기타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의 직권면직 등 관련기준과 절차 등은 정부 공정인사 지침에 따르도록 함.

○ 각 기관은 2016년 중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관련제도를 구비하도록 해야 함.

45) 기타공공기관은 기관 자율 하에 권고안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기관 재무관리 관련 주요 정책

1)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46]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운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예산편성과 집행과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고 있음[47].

○ 예산편성지침은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등을 내용으로 하며[48], 차년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확정되어 시달됨.

○ 예산집행지침은 기획재정부가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일반지침과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등을 내용으로 함.

○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모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함.

- 기타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른 지침 적용대상은 아니나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에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준용을 명문화하고 있음.

(1) 201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가 2014년 12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시달한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부채감축 및 방만 경영 해소의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기활성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양극화 해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 공공기관은 부채 초과 감축 및 방만 경영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과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제시함.

---

46)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4.12.23.일자.)』 보도자료,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5.1월),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5.12.20.일자)』 보도자료,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6.1월) 등을 활용하여 작성

47) 공운법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8) 주요 항목으로는 인건비, 경비(경상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사업비, 자금 및 기타예산, 예비비 등이 포함됨

□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기관 정상화의 제도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당초 계획한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며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관련 경영정보의 공개를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2015년도 부채비율이 21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2015년 도입되는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49], 공공기관 부채를 원인별로 구분하여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에 따라 재무 정보를 산출하여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함.
-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업단계별로 총사업비가 30%이상 증액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하여야 함.

○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등으로 폐지된 복리후생 항목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액된 항목의 증액 편성을 금지하여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절감하려고 노력해야 함.

- 2014년 말까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인건비를 동결해야 함.
- 다만, 정상화된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출하는 한도 내에서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 등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상향조정하고[50], 출연율 기준 구간을 세분화(3개 구간→5개 구간)하여 운영함.

○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2015년에 전면 개편된 알리오시스템에 부채 및 방만경영 정보 등을 충실히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예산편성지침은 부채 초과 감축 및 방만 경영 감축 재원 등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으로부터 발생한 절감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함.

○ 공공기관 자체 자금 이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투자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하는 방향도 제시함.

---

49) 2014~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설정된 기관별 공사채 총량의 범위 내에서 공사채 잔액을 관리하여야 함

50) 1인당 기금누적액을 종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한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3.8%로 설정하되, 소비 촉진·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고임금기관과 저임금기관에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경력직 채용을 활성화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인사적체·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제도 설계를 허용하고,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신규채용을 촉진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비정규직의 고용여건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함.

- 2015년도 기관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 없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51].

○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경력직 및 기타 사회형평적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신규채용 시,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도 활성화하는 등 선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2015년 회계연도 중 2015년도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일반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에 따른 방만경영 개선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및『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등에 따라 개선 필요사항이 누락되거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관리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함.

---

51) 비정규직 전환계획을 살펴보면, 2013~2015년간 총 11,784명을 전환할 계획이며 2015년 중 5,197명을 전환하기로 함

- 각 공공기관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물가변동 상황에 대응하는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2) 2016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주요 내용

□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 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운영 등 임금체계 개편,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순환보직개선 등 인력운용의 효율화 향상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향은 2015년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 및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과 관련한 사항이 추가·보완된 것이 특징임. 201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함.

-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은 2015년 197%이고 2016년은 191%, 2017년은 177%임.

○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증액되지 않도록 함.

- 이를 통하여 매년 약 2,000억원 상당의 복리후생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 기대됨.

○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함.

-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능조정이 추진 중이며(5,700명, 7.6조원 재조정), 2016년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 등 신규 3대 분야 기능조정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될 예정임.

○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함.
- 부채 초과 감축 및 방만 경영 감축 재원 등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에 따른 절감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함.
- 공공기관의 자체자금 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투자 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함.

○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 및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개방형 계약직제 등을 도입함.
- 기관의 인력구조와 임금체계 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절히 설계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이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호봉제적 요소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함.
-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순환보직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직위를 선정하는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능력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재설계하고, 고졸·경력자 등 채용을 확대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고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함.

□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주요 항목별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5년도 물가상승률, 민간 임금상승률 2016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대비 3.0%로 설정함.
-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건비 상한(3.8%)보다 하향 조정됨.
-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2015년과 동일하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p ~△1.0%p 차등 적용하도록 함.

○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를 총인건비에서 제외함.
-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하고 약 1천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 청년취업난 해소에 기여함.
-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공공기관이 인건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52].

52) 2016년 최저임금인상률은 8.1%이며, 2016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3.0%임

○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함.

□ 2016년도 예산집행지침의 일반지침의 주요 골자는 2015년과 동일하며 항목별 집행지침 중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정부 예산집행지침의 준용을 제외할 수 있으나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차감하도록 함.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르면, 매년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목표 초과달성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일정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로 허용하고,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수지급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5년 이상 근속하고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당월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53].

○ 공공기관 사택의 공용관리비(관리실 직원 인건비,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소독·수선유지비 등 포함)는 사용자의 주거편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함[54].

○ 종전 정부투자기관 중 준정부기관(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비중을 여타 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종전 300%에서 100%로 조정함.

- 경영평가 성과급 한도 축소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을 산출하여 내부성과급(퇴직금 영향 등 감안)으로 전환하도록 함. 단, 기관별 경영평가 성과급의 내부성과급 전환은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53) 감사원 지적사항 및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14.1.8)사항 반영

54) 임대·전세주택 및 공무원 관사의 경우도 입주자가 공용관리비 부담

2)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55]

(1)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가재정 부담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함.

□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공공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였음.

○ 공운법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관련 자료의 제출)[56]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현황과 5년간의 재무관리방안 등을 보여줌으로써 공공기관 재무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건정성을 유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됨.

□ 2013년 들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11.일자)』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보다 강도 높은 부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부채감축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함.

□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인 39개 기관이 제출대상이며[57] 기관별 비핵심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것임.

---

55)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2013.12.11.일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확정(2013.12.31.)』,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마련(2013.12.31.)』, 2015년 공공기관 결산(2016.4.26.)』 등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56)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5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자본잠식,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부채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95%를 차지함

○ 39개 부채감축계획 제출대상기관은 2014년부터 부채감축계획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

○ 특히, 과거 5년간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증가율이 높은 12개 기관[58]을 부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관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함.

○ 2013년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채감축계획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수준으로 낮추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59].

- 이는 통상적인 민간기업의 채권발행이 가능한 수준(신용등급 BBB수준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2015년에는 2014년의 부채감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4년 실적과 그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2015년 작성대상기관은 2014년 결산 기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9개 기관임.

(2) 부채감축계획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로 2013년 12월말에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을 시달함[60].

○ 운용지침은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채감축계획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운용지침에서는 2017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부채감축이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부채감축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당초 전망보다 부채증가율이 30%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도록 함.

---

58)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공사, 한국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59) 2013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20%임

60)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마련(2013.12.31.)』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가 시달한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은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부채감축계획을 우선 수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구조조정, 자산 매각, 경영효율 화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채감축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사업의 규모 축소, 시기 조정, 방식 변경 및 기존 사업 중단 등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립해야 함.

-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함.
-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근거인 각종 기본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해야 함.
- 주요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와는 별도로 기관 내부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반영해야 함.

○ 공공기관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매각 가능 자산을 발굴하여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 이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각계획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여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부채감축계획은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사업비 절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함.

- 공공기관은 보유자산의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출자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각종 금융기법 활용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정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제도적 담보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부채 감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함.

○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가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함.

○ 경영실적평가에서 부채감축계획 이행실적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계획보다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성과급을 제한하는 등 부채감축을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

-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2013.12월)』에 부채규모, 부채비율 등 재무 위험도가 높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0개 기관의 경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부채 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의 평가 결과(계량과 비계량을 포함)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61].
- 실제로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0개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등 4개 기관(평가등급 D등급으로 성과급 지급률 0% 적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관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토록 함.

□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구분회계제도 도입, 공사채 총량제 도입, 부채과다 기관의 자산매각 활성화, 경영성과협약 체결, 예비타당성제도의 내실화 및 사후평가 제도 도입 등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구분회계제도는 공공기관의 사업, 조직 등 사업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단위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제도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기관에 시범 도입하였고, 2016년부터 중장기재무관리기관 39개로 확대도입 함.

○ 공사채 총량제는 불필요한 공사채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채 잔액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금융 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됨[62].

- 총량제 적용대상은 공사채와 단기유동성(CP, 전자 단기사채 등), ABS 등 모든 종류의 채권을 포함하며 16개 기관 공사채의 총량은 기관별 금융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의 최근 3개년 평균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정함.

---

61)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4.6.18.일자)』 보도자료

62) 기획재정부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5.9.16.)』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2014~2018년 중장기 방식[63]이 금융비용 증가 우려 등 비합리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2015년부터 총량의 경우 실적점검 등을 기준으로 2015년 초 확정된 기관별 총량을 적용토록 함.

○ 정부는 부채과다 기관의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감축계획에서 매각대상으로 포함된 자산은 충분한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

- 다만,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나 감사에서 불이익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여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함.

○ 또한 공공기관의 기관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3년 단위로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임기 중 1회 평가하여 연임여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는데, 협약의 경영목표에 기관장의 부채감축 노력을 포함하여 주무부처가 상시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공공기관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내실화하고[64] 사후심층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함.

(3) 부채감축계획 이행성과

□ 위와 같은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2015년 공공기관의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공공기관 결산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가 505.3조원으로 전년보다 14.4조원 감소했으며 부채비율은 18%p 하락한 183%로 2011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함.

○ 2015년 부채비율(183%)은 2013년 말 부채감축계획 발표 당시 계획했던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것임.

○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부채비율 추이를 살펴보면[65], 부채비율이 2011년 196%에서 2012년 220%까지 크게 상승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가 2014년 201%, 2015년 183%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63) 총부채대비 공사채 비율을 매년 1%씩 감축하는 방식

64)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공공기관부담분 3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65) ('10)165% → ('11)196% →('12)220% → ('13)217% → ('14)201% → ('15)183%

- 2014년 부채비율 대비 2015년 부채비율 개선수준은 18%p이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던 2012년과 비교해보면 37%p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Ⅰ－26〉 공공기관 부채 및 부채비율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11	'12	'13	'14	전년비	'15	전년비
전체 공공기관	460.3 (196%)	496.1 (220%)	520.4 (217%)	519.7 (201%)	△0.7 (△16%p)	505.3 (183%)	△14.4 (△18%p)
· 공기업	328.7 (192%)	353.2 (207%)	373.7 (214%)	377.1 (207%)	3.4 (△7%p)	365.0 (194%)	△12.1 (△13%p)
· 준정부기관	120.6 (248%)	131.2 (335%)	135.1 (283%)	130.2 (227%)	△4.9 (△56%p)	125.6 (184%)	△4.6 (△43%p)
· 기타공공기관	11.0 (72%)	11.7 (72%)	11.6 (65%)	12.4 (65%)	0.8 (-)	14.7 (73%)	2.3 (8%p)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39개)	436.3 (206%)	474 (235%)	498.8 (233%)	497.6 (216%)	△1.2 (△17%p)	480.9 (194%)	△16.7 (△22%p)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 공공기관 결산(2016.4.26.)』 보도자료에서 발췌
주: 1. 2016년 1월 기준 323개 전체 공공기관 중 은행(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중소기업은행)을 제외
2. ( )은 부채비율

□ 2015년 공공기관 결산결과, 2014년 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이며 부채비율이 상승한 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임.

○ 한국철도공사(411%→283%)는 공항철도 매각과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손익현황이 개선됨.

○ 한국가스공사(381%→321%)는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매입채무 등이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토지주택공사(409%→376%)는 택지 등 토지매출 증가로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개선됨.

○ 한국전력공사(연결 199%→158%, 별도 130%→100%)는 삼성동 부지 매각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발전원가 하락 등이 원인이 되어 부채비율이 감소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들의 경우, 전년대비 부채가 16.7조원 감소하였고 부채비율은 22%p 하락함.

- 이를 『'15~'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2015년 전망치와 비교할 경우, 부채가 15.7조원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3%p 감소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Ⅰ－27〉 주요 기관별 2015년 부채 및 부채비율

(단위: 조원)

구분	기관명	구분	'14년(A)	'15년(B)	증감(B-A)
1	공무원연금공단	부채	71,820	71,546	△274
		부채비율	84%	82%	△2%p
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	69,961	70,582	621
		부채비율	36%	29%	△7%p
3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채	10,817	11,087	270
		부채비율	48%	48%	0%p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채	496	579	83
		부채비율	41%	45%	4%p
5	대한석탄공사*	부채	15,604	15,989	385
		부채비율	자본잠식		
6	부산항만공사	부채	16,810	16,801	△9
		부채비율	45%	43%	△2%p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부채	8,974	9,395	421
		부채비율	6%	6%	0%p
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채	13,333	14,225	892
		부채비율	49%	52%	3%p
9	신용보증기금	부채	25,833	31,820	5,987
		부채비율	39%	49%	10%p
10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채	7,730	6,230	△1,500
		부채비율	56%	45%	△11%p
11	예금보험공사*	부채	413,895	333,181	△80,714
		부채비율	무자본기관		
12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채	22,089	28,622	6,533
		부채비율	37%	44%	7%p
13	인천항만공사	부채	6,033	6,706	673
		부채비율	28%	31%	3%p
1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채	9,155	12,659	3,504
		부채비율	18%	29%	11%p

구분	기관명	구분	'14년(A)	'15년(B)	증감(B-A)
15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채	149,463	143,172	△6,291
		부채비율	1084%	900%	△184%p
16	한국가스공사	부채	370,476	323,284	△47,192
		부채비율	381%	321%	△60%p
17	한국공항공사	부채	3,963	4,072	109
		부채비율	10%	10%	0%p
18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	40,202	46,206	6,004
		부채비율	219%	6,905%	6,686%p
19	한국남동발전	부채	50,568	49,315	△1,253
		부채비율	128%	111%	△17%p
20	한국남부발전	부채	52,503	55,499	2,996
		부채비율	151%	150%	△1%p
21	한국농어촌공사	부채	76,247	85,800	9,553
		부채비율	402%	437%	35%p
22	한국도로공사	부채	264,622	269,571	4,949
		부채비율	92%	88%	△4%p
23	한국동서발전	부채	48,473	48,770	297
		부채비율	136%	122%	△14%p
24	한국마사회	부채	1,417	1,109	△308
		부채비율	6%	5%	△1%p
25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채	23,497	25,540	2,043
		부채비율	169%	189%	20%p
26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채	13,155	13,852	697
		부채비율	119%	129%	10%p
27	한국서부발전	부채	50,117	57,219	7,102
		부채비율	156%	164%	8%p
28	한국석유공사	부채	185,196	190,096	4,900
		부채비율	221%	453%	232%p
29	한국수력원자력	부채	278,485	276,239	△2,246
		부채비율	129%	117%	△12%p
30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134,614	132,732	△1,882
		부채비율	112%	211%	99%p

구분	기관명	구분	'14년(A)	'15년(B)	증감(B-A)
31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	8,306	9,880	1,574
		부채비율	48%	60%	12%p
32	한국장학재단	부채	109,982	121,737	11,755
		부채비율	1,491%	1,561%	70%p
33	한국전력공사(별도)	부채	563,380	531,249	△32,131
		부채비율	130%	100%	△30%p
	한국전력공사(연결)	부채	1,088,833	1,073,149	△15,684
		부채비율	199%	158%	△41%p
34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채	35,308	30,925	△4,383
		부채비율	55%	41%	△14%p
35	한국중부발전	부채	41,918	48,508	6,590
		부채비율	138%	149%	11%p
36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채	31,085	31,222	137
		부채비율	190%	181%	△9%p
37	한국철도공사	부채	178,609	134,502	△44,107
		부채비율	411%	283%	△128%p
38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	189,792	200,382	10,590
		부채비율	무자본기관		
39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1,378,808	1,341,885	△36,923
		부채비율	409%	376%	△33%p
주요 공공기관 합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9개 기관)		부채	4,976,124	4,808,537	△167,587
		부채비율	216%	194%	△22%p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 공공기관 결산(2016.4.26.)』에서 발췌
주: * 표시된 기관은 무자본기관 또는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대상에서 제외

3) 구분회계[66]

(1)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 구분회계제도는 2013년 2월 발표된 국정과제와 2013년 12월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채관리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됨.

□ 2014년 1차 시범기관으로 7개 기관을 선정하고, 2015년 2차 시범기관으로 6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13개 기관에서 구분회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오 시스템에서 시범사업 대상기관의 구분회계 재무정보가 공시되고 있음.

○ 1차 시범사업 대상기관(7개)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상 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이상 준정부기관) 등임.

○ 2차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6개 기관으로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기관과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기관이 포함됨.

〈표 Ⅰ－28〉 구분회계 시범기관 분류(13개)

구분		주요 사업	기관명
공기업 (9개)	SOC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한국도로공사
		수자원	한국수자원공사
		철도	한국철도공사
	에너지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준정부 기관 (4개)	금융	금융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SOC	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경영공시를 참고하여 작성

66) 기획재정부가 발표한『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2013.12.11.일자)』보도자료,『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확정(2013.12.31.)』보도자료,『'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5.9.16.)』보도자료 및『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2015.12월)』을 참고하여 작성

□ 기획재정부는 2016년 9월 발표한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구분회계 제도의 확대를 검토 중임을 밝힌 바 있으며,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구분회계의 확대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함.

○ 구분회계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하여 재무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015년 12월 발표한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이 구분회계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문화함[67].

-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구분회계 시범사업에 한한 충실한 이행을 명문화했던 것을 공공기관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여 명문화함[68].

(2)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지침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구분회계를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확대함을 명시하고 뒤 이어 2015년 12월 말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2016.12.29.일자, 이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함.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구분회계 제도의 도입을 위해 공운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지침을 제정함.

○ 운영지침을 통해 구분회계 적용 범위, 구분회계 사업단위 및 사업성격 구분, 구분회계 정보 공시 및 자료의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함.

□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분회계 적용 범위를 종전의 13개 기관에서 공운법상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39개 기관)으로 확대함.

○ 구분회계 적용대상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39개 기관 중 이미 13개 기관이 시범사업으로 구분회계 도입을 완료한 바[69], 26개 기관이 2016년 말까지 신규로 구분회계를 도입하여야 함.

---

67)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 구분회계를 충실히 이행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음(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5.12월)』에서 발췌)

68)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은 구분회계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기본방향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 구분회계 시범사업을 충실히 이행한다"라고 명문화함(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4.12월)』에서 발췌)

69)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자산규모 2조원이상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2015년 기준 39개 기관임

- 또한 26개 구분회계 신규 도입기관은 2017년부터 구분회계 재무정보를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해야 함.

〈표 Ⅰ－29〉 구분회계 추가도입기관(26개)

구분		기관명
공기업 (14개)	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만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에너지	발전자회사 6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한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준정부기관 (12개)	금융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2015.12월)』을 참고하여 작성

□ 구분회계 도입 시 단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단위를 먼저 구분한 후, 구분된 사업단위별로 회계정보를 구분하는 단계를 거쳐야 함.

○ 따라서 구분회계 사업단위의 결정은 목적 적합한 구분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며 구분회계 단위와 예산회계 단위가 일치되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계획, 통계 및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구분회계를 위한 사업단위를 구분할 때 기획재정부는 사업단위 구분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산, 부채, 수익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식별가능한 구분안을 마련한 후 기재부와 협의해야 함.

- 사업단위는 객관성·계속성·비교가능성 등이 유지되는 핵심사업을 상품·프로세스·수혜자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되 조직구성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함.
- 운영지침에 따르면,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손실보전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법률상 구분회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구분회계 사업단위 구분 시, 중요한 판단사항은 구분회계 단위 성격으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안을 마련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고유사업: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과거부터 수행해 온 사업
- 정책사업: 사업 동기가 자체판단이 아닌 국정과제 등 정부결정에 의한 사업
- 대행·위탁사업: 관련법령 등에 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사업자로 명시된 사업

□ 구분회계 운영지침은 구분회계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관 구분회계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분회계 정보의 확인과 검증에 대한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부여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구분회계 자료의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확인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부서 책임자로 함.

○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구분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구분회계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음.

라. 공공기관 성과관리 관련 주요 정책

1)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 도입[70]

□ 기존의 기관장 성과급은 단년도 평가에 따른 단년도 지급체계로 되어 있어, 기관장이 단기 실적에 치중하도록 하며,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공공기관의 사업성과는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데 반해, 기존의 기관장 성과급제도는 경영사업의 중장기 성과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과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어려움.

○ 당해 연도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대한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임자의 성과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음.

□ 기관장이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경영하도록 하고,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성과급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7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중기성과급, 개방형 계약직, 전문직위제 도입-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2015.12.21.)』 보도자료 및 별첨 자료 참고 및 발췌하여 작성함

□ 기획재정부는 2015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고, 『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을 개정(<표 Ⅰ-30>)하여 중기성과급 조항을 신설하였음.

○ 이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2015년 1월)에서 발표한 성과중심 조직·인력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 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조직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표 Ⅰ－30〉 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기존(2013.12월 개정 기준)	개정(2015.12월 기준)
제6조(공기업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①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120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내부평가급 등 경영평가 성과급 이외의 성과상여금은 이를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의2(공기업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공기업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액을 상한으로 한다.	좌 동
-	제6조의 3(중기성과급) ① 중장기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기성과급 제도를 운영한다. ② 중기성과급은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③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형사 기소 또는 해임된 경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고, 지급된 중기성과급은 환수할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2015.12월) 발췌

□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과 개정된 『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중 일부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하여 중기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함.

○ 현행 경영평가 성과급의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 3년간 분할 지급하여 임기 후에도 지급할 수 있게 설계하였음(<표 Ⅰ-31>).

○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대비 변동할 경우 이에 연동하여 2년차, 3년차 성과급을 가중하여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하며, 임기 이후에도 경영평가 등급 변동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

○ 임기 중 2년 연속 A 또는 S등급의 평가를 받을 경우 성과급을 10% 추가 증액하여 지급함.

○ 비위 적발 등으로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비위 사실로 형사처분 등을 받은 경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함.

- 형사기소 또는 처분이 기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비위에 해당할 경우임.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형사 기소 또는 해임된 경우 그 시점부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제한함.
- 퇴임 후라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비위사실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기지급된 중기성과급은 환수함.

〈표 Ⅰ－31〉 기관장 중기성과급 지급(안)

	임기 중			임기 후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현행)	100%	100%	100%			300%
(개선)	50%	30% 50%	20% 30% 50%	20% 30%	20%	
	50%	80%	100%	50%	20%	300%

자료: 기획재정부『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2015.12월)에서 발췌
주: 연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기관장 중기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방법은 현재와 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연동하는 방법을 사용함.

○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관장평가는 2015년부터 성과급 지급과 연동하지 않고 연임 여부에만 활용 중임.

○ 추가로 평가지표 설정 시 기관의 혼란과 제도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 경영평가의 평가지표를 활용하기로 함.

- 경영평가 지표 중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은 중장기 목표와 직접 연동, 조직관리, 재무관리, 사업성과 지표 등도 중장기성과와 연계됨.

□ 기획재정부는 2016년에는 공기업에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를 우선 적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추후 준정부기관 및 임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성과급 규모가 큰 공기업에 우선 실시하여 신설 제도에 대해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준정부기관과 다른 임원까지 확대하는 정책 시행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공기업 중기성과급제도는 2016년 경영평가부터 적용되며, 성과급 지급은 2017년 6월로 예정하고 있음.

2)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1) 도입 배경

□ 기획재정부는 2010년 6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공서열 중심의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 말 기준으로 간부직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가 정착 단계였음[71].

○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 간부직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으며, 성과연봉제 권고안 기준도 대부분 준수하였음.

○ 다만, 비간부직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부분적 성과연봉제 도입이라는 한계가 있음.

□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 도입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부문은 경쟁의 부재, 높은 고용 안정성 등의 영향으로 민간대비 생산성이 낮고, 호봉제 중심의 보수체계 운영으로 인해 직원들의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수준임[72].

---

71)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2016.1.28.)』에서 발췌하여 인용

72)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2016.2.25.)』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자료를 발췌하여 활용함.

○ 2014년 한국생산성본부에 의하면, 공공기관 생산성은 민간의 70~80% 수준에 불과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호봉제 임금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으로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도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73].

○ 또한 공공부문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등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고령화의 진행으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함.

- 성과연봉제는 지난 201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화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청년고용 문제 해결, 장년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간부직에 국한하여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였음[74].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도록 함.

(2) 추진 경과

□ 기획재정부는 전 직원 대상 성과연봉제 조기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성과연봉제 선도 기관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이며,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 1급이 구성원으로 참여함[75].

○ 매월 개최되는 점검회의에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효율적 확산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7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2016.5.20.)』 보도자료

7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반 직원으로 대폭 확대(2016.1.28.)』 보도자료

75)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2016.2.25.)』,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자료를 참고함

□ 2016년 2월 기획재정정부는 제1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2016.2.11.)를 개최함[76].

○ 1차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함.

□ 3월 개최된 제2차 점검회의(2016.3.17.)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분야별 대표기관과 성과연봉제 확대의 조기 이행(4~5월)을 추진 중인 기관 등 총 47개 기관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 기관으로 지정함[77].

○ 주무부처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은 <표 I -32>와 같음.

76)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본격 추진(2016.2.11.)』보도자료

77) 기획재정부『제2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 개최(2016.3.17.)』보도자료

〈표 Ⅰ-3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47개 기관)

주무부처	공기업(11개 기관)	준정부기관(36개 기관)
기획재정부(1)	한국조폐공사 (1)	
교육부(1)		한국장학재단(1)
미래창조과학부(7)		한국연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7)
문화체육관광부(4)	한국관광공사 (1)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방송교류재단 (3)
농림축산식품부(4)	한국마사회 (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
산업통상자원부(10)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4)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 (6)
보건복지부(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환경부(3)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3)
고용노동부(1)		한국고용정보원 (1)
국토교통부(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
해양수산부(1)		수산자원관리공단(1)
방송통신위원회(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시청자미디어재단 (1)
금융위원회(1)		예금보험공사 (1)
국가보훈처(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산림청(1)		한국임업진흥원 (1)
농촌진흥청(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중소기업청(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기상청(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

자료: 기획재정부『제2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 개최(2016.3.17.)』보도자료에서 발췌

□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4월에 별도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계부처 실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무부처에 조기 이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함[78].

○ 특히 기획재정부는 30개 공기업은 2016년 상반기까지, 준정부기관은 2016년 12월까지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함.

□ 4월 개최된 제3차 점검회의(2016.4.29.)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수기관 및 미이행기관에 대한 조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79].

○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이행시기와 도입내용 등을 감안한 사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 삭감 등 페널티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 그리고 관련한 계획을 5월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임을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 참석자에게 전달함.

□ 5월 개최된 제4차 점검회의(2016.5.20.)에서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와 노사합의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80].

○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와 2016년 3월 발표한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은 목적과 성격, 평가방식 등이 전혀 다른 제도임을 강조함[81].

-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에 의하여 성과에 합당한 보수를 차등 지급 하는 제도인 반면,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 부진자의 단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임.
- 즉,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이라면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인력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에 가까움.

---

7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실무 점검회의 개최(2016.4.15.)』 보도자료

79) 기획재정부 『한전 등 4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2016.4.29.)』 보도자료

8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2016.5.20.)』 보도자료

81) 기획재정부가 2016년 3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5.1월)에서 발표한 성과중심 인력운영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2016.1.22. 고용노동부 발표)을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2016.3.18.)』 보도자료)

○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한 노사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6년 5월 12일 발표한 대로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노사간 최선을 다해 협의하여 원만히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줄 것을 권고함.

□ 2016년 6월 도입대상 全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하였음[82].

○ 2016년 3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선도기관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의 조기이행을 확정하였고[83], 공기업 중에는 한국마사회가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의 조기이행을 확정하였음[84].

○ 5월에는 도입대상의 과반수 이상인 67개 기관이, 6월에는 나머지 6개 기관이 도입을 확정함.

○ 2016년 6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마지막으로 도입대상 120개 공공기관(30개 공기업, 90개 준정부기관)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함[85].

□ 특히, 당초 90개 준정부기관은 2016년 12월까지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조기에 이행 완료함.

○ 이는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2016년 5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통보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 방안』에 기인함[86].

(3)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주요 내용[87]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서 성과연봉제는 최하위직급, 기능직 등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

---

8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120개 全 공공기관 도입 완료(2016.6.10.)』 보도자료

83) 기획재정부 『47개 선도 기관 중 처음으로 기상산업진흥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조기이행 확정(2016.3.28.)』 보도자료

84) 기획재정부 『한국마사회, 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전면 도입 확정(2016.3.31.)』 보도자료

85)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120개 全 공공기관 도입 완료(2016.6.10.)』 보도자료

86)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 방안(2016.5.9.일자).』에 대한 내용은 '(4)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이행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에서 자세히 기술함

8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2016.1.28.)』 내용을 발췌하여 활용함

○ 구체적인 기관별 도입대상 등은 기관별 조직 및 인력 구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성과연봉제는 구조를 원칙적으로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임금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함(<표 Ⅰ-33>).

○ 종전의 기본급,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각종수당 등의 임금 구성항목은 원칙적으로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였음.

○ 성과상여금(경영평가 성과급 포함) 등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 구성항목은 성과연봉으로 구성함.

○ 연차휴가보상금, 연장근로수당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법정수당 등은 기타수당으로 구성함.

〈표 Ⅰ－33〉 연봉제 구조 설계

<table>
<tr><td rowspan="2">호봉제</td><td colspan="4">월급여</td><td colspan="2">상여금</td><td rowspan="2">급여성
복리후생비</td><td rowspan="2">경평성과급</td><td rowspan="2">법정수당</td></tr>
<tr><td>본봉</td><td>직급
수당</td><td>책임자
수 당</td><td>업무
수당</td><td>정 기
상여금</td><td>직 무
상여금</td></tr>
<tr><td colspan="11">⇓</td></tr>
<tr><td rowspan="2">성과
연봉제</td><td colspan="5">기본연봉</td><td colspan="3">성과연봉</td><td rowspan="2">기타수당
(법정수당)</td></tr>
<tr><td colspan="3">기본급여</td><td colspan="2">직무급</td><td>내부평가급</td><td>경평성과급</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2016.1.28.)』에서 발췌

□ 성과연봉제에서는 기본연봉의 조정방식이 달라지며 직무급적 요소를 가미함.

○ 전년도 기본연봉에 총인건비 인상률을 감안한 개인별 기본연봉 인상률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 기본연봉을 산정함.

- 개인별 기본연봉 인상률은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되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은 차하위 직급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88].
- 한번 인상된 기본연봉은 다음 연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누적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함.

88) 차하위 직급은 통상 5직급 체계 하에서 4직급 직원을 의미

○ 상·하위 등급자 간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등 폭이 평균 3%p(±1.5%)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함.

- 평균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등 폭(3%p)은 직급별(차하위 직급 제외)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단순 평균하여 산정함.
- 직급별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특정 직급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이 최소 1%p(±0.5%) 이상이 되도록 운영함.

○ 각 직급내의 평가등급별 인원배분비율 및 등급별 기본연봉 인상률 등은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함.

- 다만 평가등급 수는 5개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은 특정등급 인원이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정규분포의 형태로 설계하도록 함.
- 총인건비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최하 등급자의 기본연봉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 가능함.

○ 직무가치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연봉에 직무급제 도입을 권장함.

- 직무평가에 따라 동일 직급 내 3개 이상의 직무급을 설치하고 직무등급 또는 자격등급별로 직무급 수준을 차등하도록 함.
- 다만, 직무급은 직무 변경 시 변동될 수 있는 변동급(비누적식)으로 처리하여 직무가치 변동에 따라 보상이 유연하도록 설계함.
-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함.

〈표 Ⅰ－34〉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방법 예시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10%	20%	40%	20%	10%
인 상 률	α+1.50%	α+0.75%	α	α-0.75%	α-1.50%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2016.1.28.)』에서 발췌
주: α는 기준인상률

□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공기업은 30% 이상, 준정부기관은 2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최고-최저 등급자 간 성과연봉 차등 폭을 최소 2배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다만, 차하위 직급 직원의 성과연봉 비중은 공기업은 20%, 준정부기관은 15%로 축소하여 운영 가능함.

○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등급 'B'를 기준으로 성과연봉 비중을 설계하여야 함.

○ 성과연봉 비중이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고정상여금, 고정수당, 총인건비 인상분 등을 활용하여 확대함.

○ 성과연봉 차등 등급 수는 5개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특정등급 인원이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정규분포의 형태로 설계하도록 함.

○ 성과연봉은 평가결과가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식(패자부활식)'으로 운영함.

□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 직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성과연봉제의 운영취지와 운영방안에 대해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기관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도출하도록 함.

○ 기관 목표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개인 및 조직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규정을 마련함.

-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가방법, 업무코치 역량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합리적 평가문화 정착을 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함.

□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함.

○ 성과평가 평가지표 설정 시 의견청취 등 직원 참여를 보장하고, 지표를 가급적 계량화·투명화 하여 직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함.

○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시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공정한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함.

□ 임금제도 전환으로 법정기준임금 및 경영평가 성과급 기준이 인상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

○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금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 연봉화하여 법정기준임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 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 기준이 인상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함.

- 기본연봉이 종전보다 증가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규모가 종전과 동일하도록 기본연봉의 일정비율만을 경영평가 성과급과 연동함.

○ 연봉제 전환 이후 각종 수당 등의 신설을 금지함.

(4)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이행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89)]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조기이행에 1점의 가점을 추가하여 최대 4점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함.

○ 조기이행 가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 2016년 4월까지 이행할 경우 1점이 부여되며, 이후 이행시기에 따라 가점이 축소됨.

○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 및 이행시기에 따라 최대 4점 차이가 발생하고, 1개 등급이 변동 가능함.

□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시 경영평가 성과급 외에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기로 함.

○ 조기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 성과급 잔여분 등을 활용하여 금년 말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함.

○ 4월 말까지 조기이행 시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임.

○ 5월 말까지 조기이행 시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25%, 준정부기관은 1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함.

89)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개최(2016.2.25.)』보도자료,『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2016.2.25.)』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자료 내용 활용

□ 성과연봉제 확대가 지연되는 기관은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함.

○ 성과연봉제 확대가 지연되는 기관은 2017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함.

- 공기업의 경우 2016년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2016년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하지 않으면 2017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함.

○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해 성과연봉제 이행여부를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하고, 미이행시 201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감액 지급함.

□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부여함[90].

○ 이행시기, 도입내용, 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거쳐 선정된 10~20개 수준의 우수기관 임직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15~30%, 준정부기관은 기본월봉의 10~20% 범위 내에서 평가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음.
- 관련 전문가로 평가 팀을 구성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함.
- 경영평가 성과급 및 인건비 잔여재원을 지급재원으로 하며, 공기업은 2016년 하반기, 준정부기관은 2017년 상반기에 지급하되, 2016년 지급재원 부족 시 2017년 이후 분할지급을 허용함.

(5)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기대효과[91]

□ 성과연봉제 확산으로 조직문화 변화, 생산성 제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공정한 보상체계의 확립에 따른 우수인재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가능함.

○ 조직과 개인의 목표 연계 및 조직 전반적인 성과중심 문화 정착으로 생산성 제고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됨.

○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 가능함.

○ 성과와 보상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공공부문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이 가능함.

---

90) 기획재정부『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 내년 인건비 동결-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 부여(2016.5.9.)』보도자료

91)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2016.2.25.)』및『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 주요내용(2016.6.14.일자)』보도자료 및 보도참고자료 참고

□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노동개혁 과제를 공공기관이 선도함으로써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추진력을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함.

3)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92]

(1) 논의 배경

□ 금융공공기관의 보수·평가·교육·인사시스템 등 전반에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금융공공기관은 연공형·집단평가 중심의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개인의 직무능력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평가시스템이 부족하고 온정적 개인평가 및 단기 재무성과 위주의 집단평가에 의존하고 있음.

○ 교육 훈련이 경영전략, 성과평가 등과 연계되지 못하고 입사 기수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획일적·집단적으로 운영되며, 교육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함.

○ 직무·역량분석,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인력 배치 간 연계가 미흡하고, 민간에 비해 일부 경직적인 인사제도가 있어 성과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영업 및 근무방식이 획일적이고 여성인력의 활용도가 낮음.

□ 이러한 금융 분야의 상황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논의와 별도로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마련하여 시달함.

○ 정부는 우리나라의 변화와 혁신, 체질개선과 도약을 위해 노동·공공·금융·교육 부문의 4대 개혁을 추진 중인 바, 금융위원회는 2단계 금융개혁 차원에서 동 조치를 실시한 것임.

○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금융공공기관은 정책금융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간금융회사가 참고할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금융공공기관이 창조경제 지원과 시장안전판 역할을 하는 등 정책금융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과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92) 금융위원회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2016.2.1.)』보도자료 및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자료인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2016.2.1.)』 참고하여 요약 작성함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6년 2월에 9개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함[93].

-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이상 기타공공기관), 한국은행 등임.

□ 금융위원회는 9개 금융공공기관에 보다 강화된 성과연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보수·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성과중심의 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임.

○ 일반 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자율적인 노사협의를 통하여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전기로 삼기를 기대함.

(2)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 주요 내용

□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임.

○ 첫 번째는 성과별 차등화임. 성과평가와 보상(보수·승진·교육훈련 등)간 연계를 통해 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등 혁신을 유도하고자 함.

○ 두 번째는 금융업무 전문화임. 체계적·전문적 교육을 통해 정책금융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세 번째는 공공부문 선도임. 금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통해 은행 등 민간 금융권으로의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93) 금융위원회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2016.2.1.)』 보도자료

〈그림 Ⅰ-2〉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2016.2.1.)』보도참고자료에서 발췌

□ 보수체계는 금융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

○ 전 직원(최하위 직급, 기능직 제외)에 성과연봉제(호봉제 폐지)를 도입함.

- 기본연봉의 최고-최저 등급 간 인상률 격차를 평균 3%p이상 유지함.
-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차하위 직급(4급)은 인상률 격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금융공공기관은 차하위 직급에도 적용하되 적용방식은 노사협의 하여 결정하도록 함.

○ 금융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 20%)이지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중 가장 높은 공기업 기준(30%)을 적용함.

-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2016년 20%, 2017년 30% 도입하고, 차하위 직급은 20% 이상 적용하기로 함.

○ 차하위 직급(4급)에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적용하고, 최고-최저간 전체연봉 격차를 20~30% 이상 유지함.

- 간부직은 30% 이상(2016년 도입), 비간부직은 단계적으로 20% 이상 확대함.

○ 고정 수당처럼 운영되는 부분은 변동성과급으로 전환하고, 성과 평가 시 기존 집단평가에서 개인 및 집단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추진함.

○ 직무분석을 통해 직책급이 아닌 실질적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하였음.

○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권고안의 내용과 금융위원회 권고안을 비교하면, <표 Ⅰ-35>와 같음.

〈표 Ⅰ－35〉 성과연봉제 관련 기획재정부 권고안과 금융위원회 권고안 비교

구 분		금융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 적용(안)	금융공공기관 적용(안)
적용대상 (성과 연봉제)		▪ '10년 공운위 성과연봉제 권고 →간부직(5등급 中 통상 2급 이상), 비간부직은 자율	▪ 전직원 (최하위직 및 기능직 제외)	▪ (좌동) ※적용대상: 1,327명(7.6%) → 11,821명(68.1%)
기본 연봉 (최고-최저 등급자 간 인상률 차등폭)		▪ 간부직 : 평균 2%p(누적식) ▪ 비간부직(3,4,5급)은 호봉제 (2개), 형식적 연봉제(7개) * 기은, 예탁원	▪ 평균 3%p 이상 (누적식)	▪ (좌동)
			* 단, 차하위 직급 (4급) 미적용 가능	* 차하위 직급(4급) 적용(적용방식 노사협의) ※4급: 6,248명 (총직원의 36%)
직무급		▪ 직무급을 직책급처럼 운영	▪ 직급 내 3개 이상 직무급 (권고사항)	▪ (좌동) ※단, 직무분석을 통한 실질적 직무급 도입
성과연봉	총 연봉 대비 비중	▪ 간부 평균 28% ▪ 비간부 평균 17% ※ 9개 금융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 간부·비간부 - 공기업 30% 이상, 준정부 20% 이상 * 차하위 직급(4급)은 공기업 20%, 준정부기관 15% 적용	▪ 공기업 수준인 30% 이상 - '16년 20% → '17년 30% *차하위 직급(4급)은 공기업 수준 20% 적용
	차등	▪ 간부직: 2.1배 ▪ 비간부직: 1.6배	▪ 최소 2배 이상 (비누적식)	▪ (좌동)
전체연봉 최고-최저 차등폭		▪ 간부직 29%, 비간부직 14%	▪ 간부직 20~30% 이상 ('10년 공운위 기준)	▪ 간부직 (30% 이상, 16년) ▪ 비간부 (20% 이상, 단계적)
평가방식		▪ 대부분 집단평가	▪ 기준 없음	▪ 개인평가 도입 추진
시행시기			▪ 공기업 '16上, 준정부기관 '16末까지 도입 ※주무기관이 기준을 강화 적용 가능	▪ '16末 ▪ 단, 성과연봉 비중 (30%는 17년말) - 전체연봉 차등 중 비간부 (단계적 인상) - 기본연봉 차등 4급적용 (노사협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2016.2.1.)』보도참고자료에서 발췌

□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시스템 마련을 위해 직무분석에 착수하고 집단 평가 시에는 고객 만족도 등 질적 평가를 확대함.

○ 개인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토대로 보상-교육-승진-전보 등 인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평가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2월~) 직무분석 및 현행 평가시스템 재검토 및 개선안 마련함(TF 운영, 3월~).

○ 영업점 KPI 등 집단 평가는 장기성과를 반영하는 균형 잡힌 성과평가시스템을 마련함.

- 인재육성, 고객만족도 등 질적 지표를 KPI에 확대 반영함.
- 원·고객 담당 임원에게 KPI 등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CEO 보고 의무(반기별)를 부여함.

□ 교육과 성과관리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금융연수원과 협력하여 교육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맞춤형 시스템을 마련하였음.

○ 교육실적 및 연수성적을 인사고과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직군·직위·역량별로 특화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94].

-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무별 필요역량과 교육과정을 목록화 하고, 구조조정, 리스크 관리 등 고도의 전문 직무는 별도의 경력개발계획을 운영함.
- 임원 또는 핵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공공기관 및 금융연수원과 협력하여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국내외 교육예산을 확충함.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전문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연수원과 지역 내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
- 공공기관들 간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조정하고, 공동 활용하여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확산함.

□ 인사관리에서는 승진·전보 등 인력을 배치할 때 개인성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직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94) 금융위원회『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조속히 이행키로 결의-제3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결과(2016.5.10.)』보도자료

○ 교육훈련 이수 인증을 부여하여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직무인증제"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에 성과지표를 반영[95]하는 등 성과평가·교육훈련과 인력관리 간 연계를 강화함.

- 성과, 역량 등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특별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인사시스템으로 정착함.

○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인사운용을 저해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발굴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개선을 위한 협의를 추진함.

□ 근무형태와 영업형태를 다양화하고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는 등 능력 있는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방식을 개선함[96].

- 지역·고객 등 수요조사를 한 후 탄력점포를 확대하고 수요자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예약상담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였음.

○ 유연근무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용도가 낮은 기관의 경우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를 추진함.

○ 여성 관리자 비중 목표(2017년 8.5%)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14년 산별협약에서 마련된 여성할당제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해 노력함[97].

3. 2016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 이번 장에서는 2016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과 외부평가결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주요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2016년도 공공기관 주요 경영정보는 323개 공공기관과 24개 부설기관이 2016년 4월말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정기공시한 경영정보[98]와 2015년도 경영평가결과

---

95) 금융위원회『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조속히 이행키로 결의-제3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결과(2016.5.10.)』보도자료

96) 금융위원회『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조속히 이행키로 결의-제3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결과(2016.5.10.)』보도자료

97) 사용자는 채용, 승진, 교육에 있어서 여성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구체적 방안은 개별 노사협약에서 정함

98) 2015년 1월 지정된 323개 공공기관 및 그 부설기관(24개)은 공운법 제12조 및『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2016년 4월말까지 2015년 말 기준의 경영정보를 정기공시 하여야 함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99], 그리고 개별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임.

□ 일반현황은 관계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2016년 8월 시점의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공공기관 설립형태,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부설기관 현황,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100],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101], 상장 공공기관 현황[102] 등을 정리함.

□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은 2016년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 내용과 알리오시스템의 주요통계 및 기관별 통합공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 외부평가결과는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그리고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과 주요 특징을 정리함.

○ 먼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운법에 근거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실시되고 있는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에 대한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103].

- 따라서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결과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104].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운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조사와 주무부처 주관 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를 의미함[105].

---

99)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

100)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혁신도시 홈페이지(Innocity, http://innocity.mltm.go.kr)' 참고.

101) 기획재정부 『2016 기금현황』,(2016.6월)을 참고

102)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5), 『상장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박한준・허경선, 2014)』 참고

103) 외부평가결과 중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104) 기타공공기관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작성대상이 아니므로 기타공공기관 중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수검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동 편람의 'II. 기관별 현황'에 해당 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함

105) 기획재정부가 알리오시스템 '28.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을 통해 매년 1분기 정기공시(매년 4월말) 할 때 공시한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

-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201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함[106].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조사 중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또는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임.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청렴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년대비 특징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107].

○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는 공운법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경영정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점검한 결과를 의미함.

-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전년도 통합공시에 대한 정확성과 충분성 등에 대해 점검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108], 발표된 점검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점검결과, 벌점현황, 전년대비 개선 수준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가. 일반현황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109]

□ 2016년 8월 현재 321개 공공기관의 정부부처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35개 정부부처가 산하에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35개 부처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공공기관 수가 가장 많고 인사혁신처, 관세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이 1개임.

○ 35개 부처 중 25개 부처가 10개 미만의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106) 주무부처 주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알리오시스템에 해당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며 동 편람의 'II. 기관별 현황'에 해당 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함.

107)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중 '청렴조사평가' 부분에 공개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5.12.9.)』,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19.)』 및 『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2.3.)』 등 보도자료를 참고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05)

108)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2016.2.29.일자)』 보도자료 및 『'1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6.2.26.일자)』을 활용

109)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유형별 분포 현황)은 <부록2> 참고

〈표 Ⅰ-36〉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16.8월 기준)

(단위: 개)

구분	계 (321개)	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개)	기타 공공기관 (202개)
기획재정부	3	0	1	0	0	2
교육부	21	0	0	1	2	18
미래창조과학부	43	0	0	0	9	34
외교부	3	0	0	0	1	2
통일부	2	0	0	0	0	2
법무부	4	0	0	0	0	4
국방부	3	0	0	0	0	3
행정자치부	2	0	0	0	0	2
문화체육관광부	32	0	1	4	3	24
농림축산식품부	10	0	1	0	5	4
산업통상자원부	40	11	1	2	13	13
보건복지부	22	0	0	1	6	15
환경부	7	0	0	0	4	3
고용노동부	11	0	0	1	4	6
여성가족부	5	0	0	0	2	3
국토교통부	23	2	7	0	5	9
해양수산부	17	1	4	0	4	8
국무조정실	24	0	0	0	0	24
방송통신위원회	2	0	1	0	1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0	0	1	2
금융위원회	8	0	0	5	0	3
공정거래위원회	2	0	0	0	1	1
인사혁신처	1	0	0	1	0	0
국민안전처	2	0	0	0	2	0
국가보훈처	3	0	0	0	2	1
관세청	1	0	0	0	0	1
방위사업청	2	0	0	0	0	2
문화재청	1	0	0	0	0	1
산림청	2	0	0	0	1	1
농촌진흥청	1	0	0	0	1	0
중소기업청	8	0	0	1	2	5
특허청	5	0	0	0	1	4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0	0	1	3
기상청	3	0	0	0	1	2
경찰청	1	0	0	0	1	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 산하 공공기관이 20개 이상인 정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43개 기관), 산업통상자원부(40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32개 기관), 국무조정실(24개 기관), 국토교통부(23개 기관), 보건복지부(22개 기관), 교육부(21개 기관) 등 7개 부처임.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 중 34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하며 이 중 20개 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며 공기업은 없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출연연구기관(19개 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0개 기관이 포함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40개 기관이며 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고루 분포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32개이며 이 중 24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함.

○ 국무조정실 산하 24개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출연연구기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모두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 국토교통부 산하에 23개 공공기관이 있으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이 고루 분포해 있음.

○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마찬가지로 산하 공공기관(22개) 중 가장 많은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하며 공기업은 없음.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은 21개이며 이 중 18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13개의 국립대학교병원 및 치과병원 등을 포함함.

□ 2015년 대비 2016년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분포를 살펴보면(<표 Ⅰ-37>), 12개 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 수 변화가 있었음.

○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특허청 등 7개 부처는 전년대비 공공기관 수가 증가함.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기관 통폐합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공공기관 수가 감소함.

○ 국민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년대비 산하 공공기관 변화는 있으나 기관수에는 변화가 없음.

〈표 Ⅰ－37〉 전년대비 2016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주무부처	기관수		전년대비 변동내역	
	'15	'16	제외	추가(신규지정)
미래창조과학부	41	43 (+2)	-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방부	2	3 (+1)	-	국방전직교육원
문화체육관광부	35	32 (△3)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체육회	아시아문화원 (통합)대한체육회
보건복지부	20	22 (+2)	-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환경부	6	7 (+1)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고용노동부	12	11 (△1)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국토교통부	24	23 (△1)	㈜해울	-
해양수산부	15	17 (+2)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방송통신위원회	1	2 (+1)	-	시청자미디어재단
국민안전처	2	2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재단
특허청	4	5 (+1)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4	4 (-)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식품안전정보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5.1.29.일자)』 보도자료,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6.1.29일자)』 보도자료 및 『2016년 공공기관 수시지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18호)』를 참고하여 작성
주: 전년대비 증감은 ( )로 표시

2) 공공기관 설립형태

(1)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설립형태[110]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기관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111]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은 261개(81.3%)로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법률상 명문화된 기관 설립근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통상적으로 특수법인(特殊法人)으로 일컬어짐[112]. 법령상 기관 설립근거는 특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정기관의 설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에 근거하는 경우로 구분됨.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이 전자에 해당함.

○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조항을 둔 기관으로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1조에 각각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있음.

○ 2015년 공공기관 지정 당시 민법상 재단법인이었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15~2016년 중 설립근거법령이 제정되거나 타 법령에 설립근거조항이 신설되어 개별 설립법령에 근거한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됨.

---

110) 기관별 설립근거는 <부록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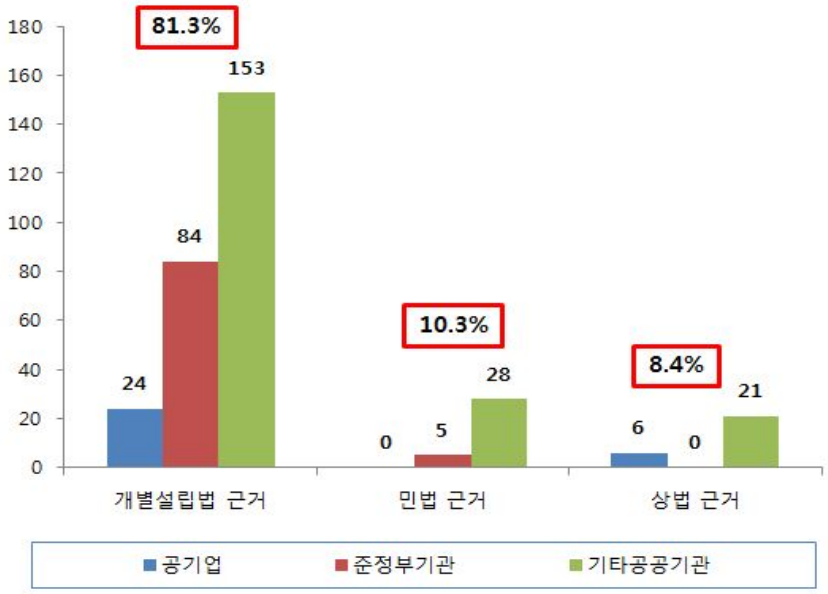
111)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관인 동시에 출자를 통해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은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구분함.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없이 상법에만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만을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분류함

112) 개별 법률에 설립근거는 있으나 법조문상 기관명이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는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예: 한국벤처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전담회사'로 설립되었으나 해당 조문은 전담회사 설립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므로 개별 설립근거법령으로 보기 힘듦).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2015년 6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개정을 통해 동법 제63조의2를 신설하여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6년 5월『문화기본법』개정을 통해 동법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함.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정(2015.6월)을 통해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됨.

○ 한국감정원은 2016년 1월『한국감정원법』제정을 통해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됨[113].

〈그림 Ⅰ-3〉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개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은 33개 기관(10.3%, <표 Ⅰ-38>)임.

○ 공기업 중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음.

○ 5개 준정부기관과 27개 기타공공기관이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임.

○ 전체 공공기관 중 사단법인 형태는 1개 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인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이에 해당함.

113) 『한국감정원법』은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됨

○ 2016년 신규지정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 산하의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및 한국인체조직기증원과 특허청 산하의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기관임.

- 2016년 신규지정 공공기관 중 3개 기관을 제외한 11개 기관은 개별 설립근거 법령에 근거한 특수법인 형태임.

〈표 Ⅰ－38〉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인 공공기관

구분	기관명	
재단법인	준정부기관 (5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타공공기관 (27개)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정동극장,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식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노사발전재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창업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단법인	기타공공기관 (1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밑줄 친 기관은 2016년 신규 지정기관

□ 공공기관 설립형태 중 개별 설립근거법령이나 민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27개 기관(<표 Ⅰ-39>)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8.4%를 차지함.

○ 상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은 민간 부문의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상법에 따라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인수한 주주가 보유지분만큼 해당 기관에 소유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기관임.

○ 준정부기관 중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없음.

○ 한전 자회사인 6개 공기업과 21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21개 기타공공기관 중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주)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18개 기관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母기관인 공공기관 자회사임.

〈표 Ⅰ－39〉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구분	기관명
공기업 (6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기타공공기관 (21개)	주택관리공단(주),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벤처투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주)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밑줄 친 기관은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가 아닌 기관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중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과 마찬가지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류되어 상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33개임.

○ 21개 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및 6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표 Ⅰ-40>).

○ 33개 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에 해당함.

〈표 Ⅰ－40〉 개별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상법상 주식회사

구분	기관명
공기업 (21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6개)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 (6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2)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른 설립형태 구분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기관과 이외 기관으로 구분됨.

□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표 Ⅰ-41>)은 전체 공공기관 중 60개 기관임.

○ 60개 기관 중 공기업은 27개, 준정부기관은 6개, 기타공공기관은 27개 기관임.

- 공기업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제외한 27개 공기업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출자기관에 해당함.
- 27개 기타공공기관 중 21개 기관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나머지 6개 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유통센터)은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설립근거 형태는 다르나 모두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형성한 공공기관임.

〈표 Ⅰ－41〉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	기관명
공기업 (27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6개)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 (27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88관광개발(주),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상장 공공기관은 밑줄로 표시

□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출자주체)는 정부, 공운법상 공공기관 및 이외 민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표 Ⅰ-42>).

○ 정부출자가 이루어진 기관(정부출자기관)은 31개 기관으로 대부분 공기업임.

○ 공공기관 단독 또는 공동 출자가 이루어진 기관은 28개 기관으로 이 중 26개 기관은 공공기관 단독 보유지분이 50%이상인 공공기관 자회사임.

○ 한국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임.

〈표 Ⅰ-42〉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출자주체 기준)

구분	공기업(27개)	준정부기관(6개)	기타공공기관(27개)
정부 출자 (31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88관광개발(주)
공공기관 자회사 (26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거래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로지스(주),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공공기관 공동출자 (2개)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민간출자 (1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공공기관 공동출자는 공공기관 단독 또는 공동 지분이 30~50%미만인 공공기관을 의미

□ 설립근거 기준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을 구분해 보면(<표 Ⅰ-43>), 상법에 따라 설립된 27개 기관과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주식을 발생하는 33개 기관으로 구분됨.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개별설립법령에 근거한 특수법인이 다수(27개)임.

○ 기타공공기관은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21개)이 77.8%를 차지함.

〈표 Ⅰ－43〉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 기준)

구분	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6개)	기타공공기관 (27개)
개별 설립 법령 근거 (33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상법 근거 (27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로지스(주), 88관광개발(주),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벤처투자,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공공기관 공동출자는 공공기관 단독 또는 공동 지분이 30~50%미만인 공공기관을 의미

□ 60개 기관 중 상장 공공기관(2016.8월 기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상 공기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중소기업은행(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8개 기관임.

○ 2016년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8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201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임을 밝힘[114].

- 정부는 공공기관 상장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에 의한 자율적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상장 대상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5개사, 한국수력원자력(이상 공기업) 및 한전KDN(기타공공기관) 등 7개 기관과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기타공공기관)임.

○ 기획재정부는 2016년 하반기 중 8개 공공기관의 상장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17년 상반기부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예정임.

3)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 321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는 26개 기관이며 자회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11개 기관임(<표 Ⅰ-44>).

○ 공공기관 자회사란 공운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중 母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회사인 공공기관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였거나, 母기관의 소유지분이 50%미만이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실질지배력을 가진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을 의미함.

-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이 30~50% 사이이나 실질적 지배력이 확보되지 않은 기관은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음(예: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 자회사를 보유한 11개 기관의 공공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공기업이 8개 기관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3개 기관임.

- 8개 공기업 중 한국관광공사를 제외한 7개 공기업은 에너지 분야 및 SOC 분야 공기업에 해당함[115].

---

114) 기획재정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2016.6.14.일자)』 보도자료

115) 자회사를 보유한 에너지 분야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2개 기관이며 SOC 분야 공기업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임

○ 공공기관 자회사 중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5개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거래소 등 7개 기관(이상 공기업)을 제외한 19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함.

〈표 Ⅰ－44〉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母기업		공공기관 자회사인 기관(26개)	
기관명	유형	기관수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1개	▪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전력거래소 ▪ (기타공공기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1개	▪ (기타공공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1개	▪ (기타공공기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5개	▪ (기타공공기관)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 (기타공공기관) (주)워터웨이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 (기타공공기관) 주택관리공단(주)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 (기타공공기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관광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 (기타공공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 (기타공공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 (기타공공기관)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공공기관 자회사 중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국한하여 자료 작성

4)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 2016년 8월 현재 321개 공공기관 중 18개 기관이 24개 부설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음[116].

○ 부설기관을 보유한 18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기관은 부설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알리오 시스템에 부설기관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함.

□ 부설기관을 설치한 공공기관 중 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등 연구 관련 공공기관이 다수를 차지함.

○ 부설기관을 설치한 18개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이 연구기관임.

-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3개 기관):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과기계 정부출연연구기관(5개 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개 기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2개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은 3개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고 한국특허정보원은 특정분야 진흥 관련 기관임.

116) 2015년과 동일함

〈표 Ⅰ－45〉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부설기관명	주무부처	母기관인 공공기관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소프트웨어공학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한국뇌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타공공기관
녹색기술센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고등과학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재료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기계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국가핵융합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세계김치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식품연구원	기타공공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타공공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화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요양원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공공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본원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117].

○ 24개 부설기관 중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이는 기관은 9개 기관임.

- 나노종합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부설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원), 서울요양원(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설기관), 세계김치연구소(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 부설기관(분원)의 설치에 대한 사항(예: 부설기관 부지·건물의 확보, 인력·예산 운영 등 사업추진계획 등)은 상급기관인 본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통상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정관에서는 본원의 소재지 관련 조항이나 부설기관 운영에 대한 별도 조항을 통해 부설기관(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공공기관의 부설기관(분원)은 독립된 법인 형태는 아니나 본원(또는 상급기관)과 분리되어 별도의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및 인력·조직(인사) 관리상 독립성을 보장받음.

○ 부설기관은 일반적으로 본원 정관과 별도로 부설기관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정관 제27조의3 제2항에서 분당병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당병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설기관의 장과 임원은 본원 정관 및 직제 규정상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24개 공공기관 부설기관 중 부설기관의 장 및 임원이 본원의 임원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특허정보원(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1개 기관뿐임[118].

---

117) 부설기관의 설립근거는 <부록3> 참고

118) 한국특허정보원 정관 제5조(임원) 제1항 제3호에서 부설기관 소속 대표 3인(부설기관장 포함)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임원이 됨을 규정하고 있음

5)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

□ 2016년 8월 현재 321개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표 I -46>)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 114개(35.5%) 공공기관이 소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분포율을 보임.

○ 공공기관 분포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35.5%), 대전(10.9%), 경기(10.3%), 부산(5.9%), 세종(5.6%) 순이며 5개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중 68.2%를 차지함.

〈표 I－46〉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16.8월 기준)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114	19	14	7	4	35	8	18	33	11	9	7	6	12	9	12	3
· 공기업	3	3	2	2	0	3	3	0	2	3	0	2	0	2	2	2	1
· 준정부기관	22	7	6	1	1	5	3	3	11	5	6	2	3	7	2	4	1
· 기타공공기관	89	9	6	4	3	27	2	15	20	3	3	3	3	3	5	6	1

자료: 국토교통부『공공기관 지방이전』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2016년 1월 신규로 지정된 12개 기관은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충남 및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 12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서울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표 I－47〉 2016년도 신규지정 공공기관 소재지

구분	기관명
서울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식품안전정보원,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상 기타공공기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기타공공기관)
광주	아시아문화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울산	울산과학기술원(기타공공기관)
경기	국방전직교육원(기타공공기관)
충남	국립해양생물자원관(기타공공기관)
경북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기타공공기관)

자료: 국토교통부『공공기관 지방이전』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2016년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율을 2015년과 비교해 보면[119],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분포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혁신도시가 소재한 강원, 세종, 경북, 경남, 대구, 충남 및 제주 지역은 공공기관 분포율이 증가함.

〈표 Ⅰ－48〉 2015~2016년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율 비교(309개 기관 기준)

(단위: %, %p)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년(A)	38.8	5.8	4.2	2.3	1.0	11.3	2.3	4.9	11.7	2.3	2.9	1.6	1.9	3.9	1.6	2.9	0.6
2016년(B)	35.3	5.8	4.5	2.3	1.0	11.3	2.3	5.8	10.0	3.6	2.9	1.9	1.9	3.9	2.6	3.9	1.0
전년대비 증감(B-A)	△3.6	0.0	0.3	0.0	0.0	0.0	0.0	1.0	△1.6	1.3	0.0	0.3	0.0	0.0	1.0	1.0	0.3

자료: 국토교통부『공공기관 지방이전』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지역별 분포율은 2015년 공공기관 중 2016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09개 기관을 기준으로 2015년 및 2016년 지역별 공공기관 수 비중으로 산출
2. 2015년 공공기관 중 2016년에 지정해제된 기관과 2016년 신규지정된 기관은 비교대상 공공기관에서 제외

□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이전대상기관을 선정함.

- 부산 혁신도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해양수산 분야, 금융산업 분야, 영화진흥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대구 혁신도시는 산업진흥 분야, 교육·학술진흥 분야, 가스산업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력산업 유관 공공기관과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울산 혁신도시로 에너지산업 분야, 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등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키로 함.
- 강원 혁신도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광업진흥 및 관광 분야 공공기관과 건강생명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키로 함.
- 충북 혁신도시는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과 인력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119) 2016년 8월 현재 공공기관 소재지 정보는 <부록4> 참고

- 전북 혁신도시는 식품연구 관련 공공기관과 국민연금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경북 혁신도시로는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키로 함.
- 경남 혁신도시로는 주택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진흥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국방·산업기술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키로 함.
- 제주 혁신도시는 국제교류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세종시로는 정부부처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정부부처(소속조직 포함)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이전대상 기관은 153개 기관이며 이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108개 기관임[120].

〈표 Ⅰ-49〉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단위: 개)

구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전대상 공공기관수	108	16	49	43
·부산	11	한국남동발전(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구	9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광주/전남	13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전KPS(주) 한전KD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울산	7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120) 당초 이전대상 기관은 154개로 이 중 공공기관은 109개였으나 이 중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됨에 따라 2016년 공공기관 기준 108개 기관이 이전대상임

구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강원	10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 충북	10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충남	2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	-
· 전북	6	-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 경북	8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경남	10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121]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주)
· 제주	3	-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 세종	19	-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토연구원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121) 2016년 7월 1일자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신설 출범함

□ 2016년 8월 현재 지방이전 대상인 108개 공공기관 중 96개 기관(88.9%)이 지방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함[122].

○ 공기업은 이전대상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89.8%와 83.7%의 완료율을 보임.

○ 12개 지역별 이전 완료율을 살펴보면, 대구, 세종, 충남, 경북 및 경남 지역은 대상기관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 제주 혁신도시는 이전율이 33.3%로 대상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만 이전을 완료한 상태임.

〈표 Ⅰ-50〉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단위: 개, %)

구분	합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대상 공공기관	108	96 (88.9)	16	16 (100)	49	44 (89.8)	43	36 (83.7)
· 부산	11	10 (90.9)	2	2 (100)	4	4 (100)	5	4 (80.0)
· 대구	9	9 (100)	2	2 (100)	6	6 (100)	1	1 (100)
· 광주/전남	13	11 (84.6)	1	1 (100)	9	7 (77.8)	3	3 (100)
· 울산	7	6 (85.7)	2	2 (100)	4	3 (75.0)	1	1 (100)
· 세종	19	19 (100)	-	-	3	3 (100)	16	16 (100)
· 강원	10	9 (50.0)	3	3 (100)	6	5 (83.3)	1	1 (100)
· 충북	10	7 (70.0)	-	-	6	6 (100)	4	1 (25.0)
· 충남	2	2 (100)	2	2 (100)	-	-	-	-
· 전북	6	4 (66.7)	-	-	4	3 (75.0)	2	1 (50.0)
· 경북	8	8 (100)	2	2 (100)	2	2 (100)	4	4 (100)
· 경남	10	10 (100)	2	2 (100)	4	4 (100)	4	4 (100)
· 제주	3	1 (33.3)	-	-	1	1 (100)	2	0 (0.0)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122) 혁신도시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현황은 <부록5> 참고

□ 2016년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율을 2015년과 비교하면, <표 Ⅰ-51>과 같음.

○ 전체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율은 2015년 72.2%에서 88.9%로 16.7%p 증가함.

- 2015년 8월 이후부터 2016년 8월 사이 지방이전을 완료한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공기업 2개 기관, 준정부기관 10개 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6개 기관이 포함됨.
- 공공기관 유형별 이전율 개선도를 살펴보면, 준정부기관이 2015년 69.4%에서 2016년 89.8%로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부산·광주/전남·울산·충북·전북 혁신도시 등 5개 혁신도시는 2015년과 2016년의 공공기관 이전율에 변화가 없음.

〈표 Ⅰ-51〉 2015~2016년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율 비교

(단위: %, %p)

구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5 (A)	'16 (B)	증감 (B-A)	'15 (A)	'16 (B)	증감 (B-A)	'15 (A)	'16 (B)	증감 (B-A)	'15 (A)	'16 (B)	증감 (B-A)
전체(108개)	72.2	88.9	16.7	87.5	100	12.5	69.4	89.8	20.4	69.8	83.7	13.9
· 부산	90.9	90.9	-	100	100	-	100	100	-	80.0	80.0	-
· 대구	88.9	100	11.1	100	100	-	83.3	100	16.7	100	100	-
· 광주/전남	84.6	84.6	-	100	100	-	77.8	77.8	-	100	100	-
· 울산	85.7	85.7	-	100	100	-	75.0	75.0	-	100	100	-
· 세종	78.9	100	21.1	-	-	-	33.3	100	66.7	87.5	100	12.5
· 강원	50.0	90.0	40.0	100	100	-	16.7	83.3	66.6	100	100	-
· 충북	70.0	70.0	-	-	-	-	100	100	-	25.0	25.0	-
· 충남	50.0	100	50.0	50.0	100	50.0	-	-	-	-	-	-
· 전북	66.7	66.7	-	-	-	-	75.0	75.0	-	50.0	50.0	-
· 경북	50.0	100	50.0	50.0	100	50.0	100	100	-	25.0	100	75.0
· 경남	70.0	100	30.0	100	100	0.0	50.0	100	50.0	75.0	100	25.0
· 제주	0.0	33.3	33.3	-	-	-	0	100	100	-	-	-

자료: 국토교통부『공공기관 지방이전』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중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은 16건으로 <표 I -52>와 같음.

○ 미매각 부동산을 보유한 16개 공공기관은 공기업 1개, 준정부기관 10개, 기타공공기관 5개 등임.

- 이 중 지방이전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4개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이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기타공공기관)이 포함됨.

○ 미매각 부동산 16건 중 서울 소재 부동산이 8건, 경기도 소재 부동산이 8건임.

○ 미매각 부동산 매각예정액은 약 40억원에서 3,525억원까지 다양함.

- 매각예정액이 가장 낮은 건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부동산으로 약 40억원 규모이며, 매각예정액이 가장 높은 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으로 약 3,525억원 수준임.
- 매각예정액이 500억원 미만인 부동산은 6건, 500억원 이상 천억원 미만인 부동산은 7건, 그리고 천억원 이상인 부동산은 3건임.

〈표 Ⅰ-52〉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미매각 현황(2016.6.10.일 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소재지	이전지	이전 여부	면적(㎡)		매각 예정액	비고
					부지	건물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안양	광주	미완료	377	1,414	40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서초	경남	완료	762	4,118	105	舊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한국 인터넷진흥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서초	광주	미완료	243	3,692	138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강남	대구	완료	343	5,159	251	
에너지경제 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의왕	울산	완료	8,264	4,997	251	
한국개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서초	세종	완료	2,326	2,561	457	사택
한국에너지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용인	울산	미완료	13,119	24,298	554	
한국예탁결제원	기타공공기관	고양	부산	완료	6,928	22,626	562	
한국전력기술(주)	기타공공기관	용인	경북	완료	8,924	45,180	635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서초	광주	완료	4,063	13,562	704	
한국 광해관리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종로	강원	완료	3,927	20,856	875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안산	부산	미완료	92,939	30,342	917	
한국 산업단지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구로	대구	완료	7,396	27,495	961	
영화진흥위원회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남양주	부산	완료	1,336,409	44,869	1,004	촬영소
신용보증기금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마포	대구	완료	2,845	30,530	1,006	
한국 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준시장형)	성남	경남	완료	37,998	72,011	3,525	

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종전부동산 미매각 현황(2016.6.10.일자)』를 참고하여 작성

6)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1) 공공기관 관리 기금 개요

□ 국가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국한하여 『국가재정법』 제4조 및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기금이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을 의미함.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음.
-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형태에 따라 사회보험성 기금, 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거나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 등이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기도 함.

- 정부가 직접 설치한 기금 중 일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등 정부가 아닌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기도 함.
-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고 동법 제102조 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하고 있음.

□ 2016년 8월 현재 『국가재정법』 제4조 및 <별표2>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은 총 65개로 <부록6>과 같음.

○ 65개 기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6개, 금융성 기금이 8개, 그리고 사업성 기금이 51개임.

○ 65개 기금의 관리방식을 살펴보면, 정부가 소속 조직이나 소관 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 23개로 65개 기금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은 16개이고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관리하는 기금은 18개임.
-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은 1개이고 농협중앙회가 기금의 주체임.

-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기금은 총 7개이며 위탁관리 주체인 기관은 한국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3개 기관이 있음.

□ 65개 기금 중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운용하거나 정부부처가 설치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위탁관리하는 기금(<표 Ⅰ-53>)은 총 34개로 전체 기금(65개) 중 52.3%를 차지함[123].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 중 사회보험성 기금은 3개, 금융성 기금은 6개, 사업성 기금은 25개임.

- 금융성 기금(6개)은 모두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임.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은 16개이고,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관리하는 기금은 18개임.

-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계정을 분리하여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각각 위탁관리하고 있음.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4개 기금의 주무부처는 총 16개 정부부처로 부처별로 1~5개 이내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표 Ⅰ-54>).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기금 수가 5개로 부처 중 설치 기금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에 각각 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기금을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30개 기관으로 이 중 16개 기관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 이외 공기업이 2개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7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이 5개 기관임.

○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4개 기관은 관리 기금이 2개이고 나머지 26개 기관은 관리 기금이 1개씩임.

123)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관리하는 기금 현황 및 기금별 개요는 <부록7>과 <부록8> 참고

〈표 Ⅰ-53〉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구분	기금명	관리방식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사회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무역보험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업성 기금 (25개)	과학기술진흥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유재산관리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제교류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타공공기관
	근로복지진흥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남북협력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기타공공기관
	농지관리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외경제협력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구분	기금명	관리방식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문화예술진흥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방송통신발전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미래창조과학부 방통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학진흥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교육부	한국사학재단	기타공공기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 2015년 신설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2015년 신설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언론진흥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영화발전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공공기관 위탁관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 2016년 신설기금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타공공기관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력산업기반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정보통신진흥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택도시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공공기관 직접관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역신문발전기금	공공기관 위탁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16 기금현황』(2016.6월)을 참고하여 작성

〈표 Ⅰ－54〉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분포(2016년 기준)

부처명	소관 기금	
	개수	기금명
문화체육관광부	5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금융위원회	4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 보증기금
농림축산식품부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산업통상자원부	4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획재정부	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미래창조과학부	3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교육부	2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청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고용노동부	1	근로복지진흥기금
국토교통부	1	주택도시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관리	1	방송통신발전기금
보건복지부	1	국민연금기금
외교부	1	국제교류기금
통일부	1	남북협력기금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기금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16개 부처	34개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2016 기금현황』(2016.6월)을 참고하여 작성
주: 원자력기금은 2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16개 부처의 소관 기금수는 34개임

(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4개 기금의 운용 및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Ⅰ-55>와 같음.

〈표 Ⅰ－55〉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단위: 억원)

구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기금 운용			기금 조성			
		방식	공공기관명	'14 (실적)	'15 (실적)	'16 (계획)	'14말 (누계)	'15말 (누계)	'16계획 (당년)	'16계획 (누계)
2016년도 기금 전체(65개 기금)				5,722,356	6,198,061	6,598,854	24,229,021	26,910,462	2,921,426	29,831,888
공공기관 관리 기금 전체(34개 기금)				2,449,679	2,732,804	2,931,426	10,707,757	12,164,474	1,361,649	13,526,123
사회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	169,656	190,887	206,190	60,423	68,768	10,807	79,575
	국민연금기금	위탁	국민연금 공단	1,031,620	1,148,360	1,045,619	4,208,259	4,540,901	373,907	4,914,80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104,690	102,374	106,201	149,248	154,985	12,809	167,794
	사회보험성 기금 소계			1,305,966	1,441,622	1,358,010	4,417,930	4,764,654	397,523	5,162,177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	기술보증 기금	27,761	26,832	24,689	22,580	22,951	△2,440	20,511
	무역보험기금	직접	한국무역 보험공사	13,204	13,269	33,762	13,879	13,515	118	13,633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4,124	4,664	3,530	6,462	6,884	290	7,174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68,992	62,868	48,722	55,620	52,991	△7,447	45,544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직접	예금보험 공사	79,761	61,713	64,811	△15,108	△28,388	9,268	△19,120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직접	한국주택 금융공사	34,573	27,806	38,835	45,846	51,785	5,023	56,808
	금융성 기금 소계			228,414	197,152	214,349	129,279	119,738	4,812	124,550
사업성 기금 (25개)	과학기술 진흥기금	위탁	한국연구 재단	5,104	2,486	1,516	1,054	1,124	△221	903
	국민체육 진흥기금	직접	국민체육 진흥공단	12,579	14,765	16,509	92,307	107,072	13,428	120,500
	국유재산 관리기금	위탁	한국자산 관리공사	12,366	13,771	12,094	28,704	38,534	10,511	49,045
	국제교류기금	직접	한국국제 교류재단	1,349	971	1,097	1,380	1,440	25	1,465
	근로복지 진흥기금	직접	근로복지 공단	2,832	2,910	3,589	40,341	40,903	610	41,513
	남북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11,984	9,663	16,014	32,340	36,644	△6,343	30,301

구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기금 운용			기금 조성			
		방식	공공기관명	'14 (실적)	'15 (실적)	'16 (계획)	'14말 (누계)	'15말 (누계)	'16계획 (당년)	'16계획 (누계)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23,817	23,960	28,866	39,912	39,642	692	40,334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위탁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1,004	1,601	2,126	11,771	13,372	2,126	15,498
	농지관리기금	위탁	한국농어촌 공사	17,152	16,594	17,740	596,675	667,941	42,631	710,572
	대외경제 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7,001	9,393	9,633	50,890	58,958	8,304	67,262
	문화예술 진흥기금	직접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3,602	3,350	3,969	23,710	25,395	3,769	29,164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위탁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14,756	20,334	38,477	45,156	51,340	8,015	59,355
	방송통신 발전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11,271	9,607	11,215	11,271	9,607	11,215	20,822
	사학진흥기금	직접	한국사학 재단	4,235	4,768	4,097	13,586	13,919	374	14,293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 2015년 신설기금	위탁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1,839	2,145	-	421	△67	354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 2015년 신설기금	위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21,549	21,927	-	22,290	21,927	44,217
	언론진흥기금	직접	한국언론 진흥재단	513	358	385	348	181	△63	118
	영화발전기금	직접	영화진흥 위원회	3,221	3,189	3,750	3,198	3,362	401	3,763
	원자력기금 (전체 계정)	위탁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1,797	1,975	3,862	10	1	1,987	1,988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5,872	6,542	406,246	2,749,237	3,190,518	514,599	3,705,117
	전력산업 기반기금	위탁	한국전력 공사	30,828	35,986	41,972	26,070	31,002	10,840	41,842
	정보통신 진흥기금	위탁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9,868	7,609	10,185	9,868	7,609	10,185	17,794
	주택도시기금	위탁	주택도시 보증공사	646,891	799,733	622,956	2,214,209	2,754,656	306,744	3,061,40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	중소기업 진흥공단	87,127	80,943	78,596	168,479	164,114	△2,349	161,765
	지역신문 발전기금	위탁	한국언론 진흥재단	133	134	101	32	37	△25	12
	사업성 기금 소계			915,299	1,094,030	1,359,067	6,160,548	7,280,082	959,314	8,239,396

자료: 기획재정부『2016 기금현황』(2016.6월)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기금운용은 기금수입 중 수납순액을 의미

2. 기금조성은 총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순조성액을 의미

3. 원자력기금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합산하여 산출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총 규모는 증가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4개 기금의 총 운용액 및 총 조성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총 운용액은 2014년 약 245조원, 2015년 약 273조원이며 2016년은 기금운용계획상 약 29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총 조성액은 2014년 약 1,071조원, 2015년 약 1,216조원이며 2016년은 기금운용계획상 약 1,35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기금 유형별 운용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성 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회보험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은 다소 상이한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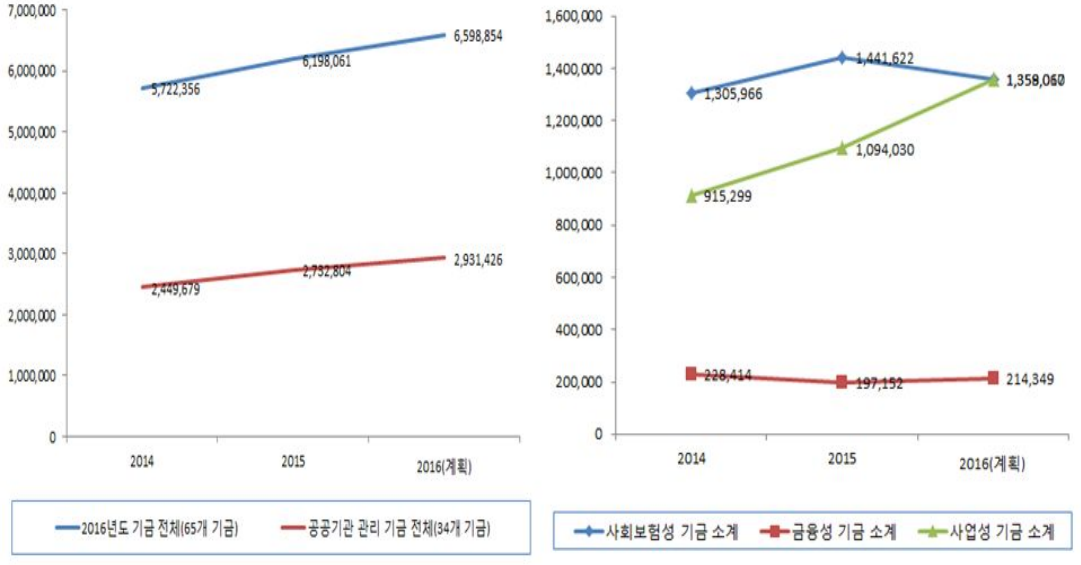
- 사회보험성 기금은 2015년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2016년 계획에서는 다시 감소함 (2014년 131조원→2015년 144조원→2016년 136조원)
- 금융성 기금은 사회보험성 기금과 반대로 2015년 감소했다 2016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2014년 23조원→2015년 20조원→2016년 21조원)

○ 기금 유형별 조성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3개 기금 유형 모두 증가 추세를 보임.

- 사회보험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은 다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나 사업성기금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임.

〈그림 Ⅰ－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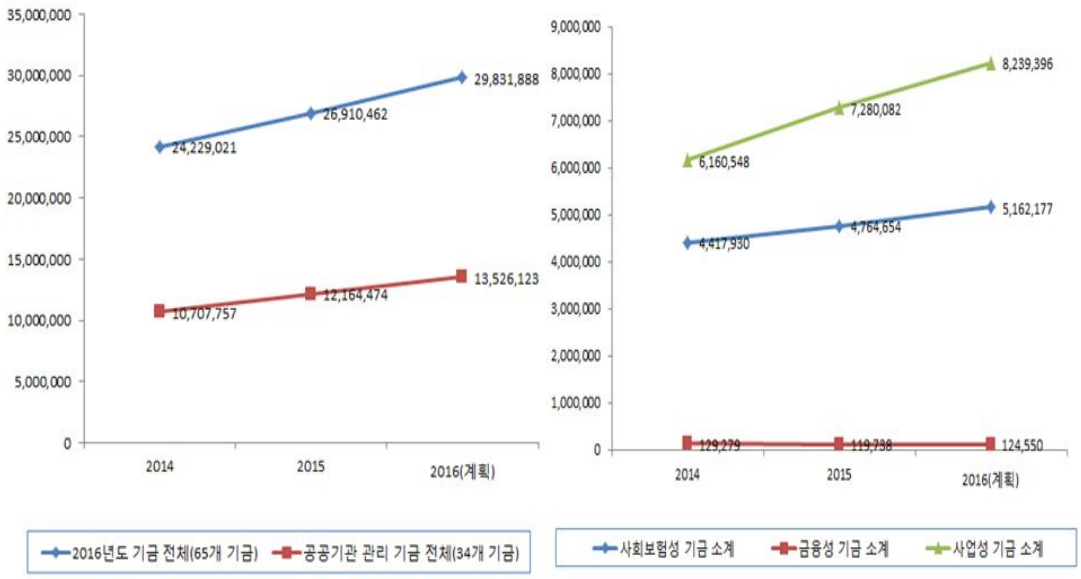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2016 기금현황』(2016.6월)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5〉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6 기금현황』(2016.6월)을 참고하여 작성

□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전체 기금(65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매 회계연도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사회보험성·금융성·사업성 기금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가재정법에 따른 65개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운용 및 조성 규모측면에서 모두 45% 내외이며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금 운용 측면에서는 65개 전체 기금의 수납 순액 중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2.8%, 2015년 44.1%이며 2016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44.4%를 차지할 것이 예상됨.
- 기금 조성 측면에서는 전체 기금의 순조성액 중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4.2%, 2015년 45.2%이며 2016년 기금운용계획(누계 기준)에 따르면 45.3%를 차지할 것이 예상됨.

○ 매 회계연도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기금 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은 운용규모와 조성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운용규모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은 2014년 당시에는 53.3%로 3개 기금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6년 계획에서는 사업성 기금이 46.4%,

사회보험성 기금이 46.3%로 전년도에 비해 사회보험성 기금의 비중이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사업성 기금은 2014년 37.4%에서 2016년 계획상 46.4%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조성규모 측면에서는 운용규모와 달리 사업성 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014년 57.5%→2015년 59.8%→2016년 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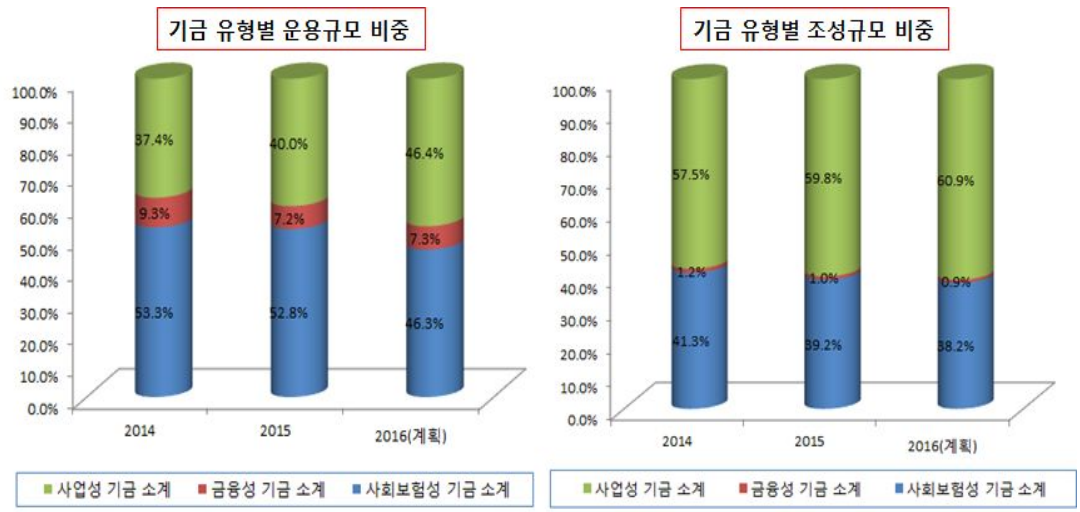
〈표 Ⅰ-56〉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기금 운용 및 조성 규모)

(단위: %)

구분	기금 운용			기금 조성			
	'14 (실적)	'15 (실적)	'16 (계획)	'14말 (누계)	'15말 (누계)	'16계획 (당년)	'16계획 (누계)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							
▪ 34개 공공기관 관리기금	42.8	44.1	44.4	44.2	45.2	46.6	45.3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53.3	52.8	46.3	41.3	39.2	29.2	38.2
▪ 금융성 기금	9.3	7.2	7.3	1.2	1.0	0.4	0.9
▪ 사업성 기금	37.4	40.0	46.4	57.5	59.8	70.5	60.9

자료: 기획재정부 『2016 기금현황』(2016.6월)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6〉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상 기금 유형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016 기금현황』(2016.6월)을 참고하여 작성

(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규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4개 기금의 자산규모 및 2015년 자산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아래 <표 I -57>과 같음.

〈표 I－57〉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단위: 억원)

구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4말 (실적)	'15말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2016년도 기금 전체(65개 기금)				13,369,686	14,811,090	8,869,228	5,100,687	149,040	692,319
공공기관 관리 기금 전체(34개 기금)				6,988,426	7,659,342	7,101,562	106,164	98,914	352,701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	157,092	159,089	52,647	100	46,426	59,916
	국민연금기금	위탁	국민연금 공단	4,706,261	5,130,968	5,124,037	-	-	6,9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157,172	163,490	127,550	-	3,032	32,908
	사회보험성 기금 소계			5,020,525	5,453,547	5,304,234	100	49,458	99,755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	기술보증 기금	33,397	34,038	25,704	1,950	1,219	5,165
	무역보험기금	직접	한국무역 보험공사	37,376	39,055	29,972	-	1,080	8,003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6,705	7,105	7,030	-	-	75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81,294	83,027	62,535	4,550	2,747	13,195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직접	예금보험 공사	91,070	65,556	8,960	-	-	56,596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직접	한국주택 금융공사	49,718	57,229	50,435	-	-	6,794
	금융성 기금 소계			299,561	286,010	184,636	6,500	5,046	89,828
사업성 기금 (25개)	과학기술 진흥기금	위탁	한국연구 재단	892	852	852	-	-	-
	국민체육 진흥기금	직접	국민체육 진흥공단	21,341	22,612	4,794	1,000	3,630	13,188
	국유재산 관리기금	위탁	한국자산 관리공사	3,958	5,474	5,474	-	-	-

구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4말 (실적)	'15말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국제교류기금	직접	한국국제 교류재단	1,495	1,548	1,097	400	-	51
	근로복지 진흥기금	직접	근로복지 공단	3,958	4,245	3,568	-	448	229
	남북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36,170	36,644	7,373	-	600	28,671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41,241	41,285	2,521	800	3,325	34,639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위탁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975	1,562	1,551	-	-	10
	농지관리기금	위탁	한국농어촌 공사	92,194	97,577	44,115	17,500	27,583	8,379
	대외경제 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36,320	41,758	1,665	-	-	40,093
	문화예술 진흥기금	직접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6,284	5,799	1,070	-	4,554	175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위탁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45,156	51,340	10,884	9,100	-	31,356
	방송통신 발전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7,758	5,840	3,176	1,400	454	810
	사학진흥기금	직접	한국사학 진흥재단	13,668	14,001	13,810	-	188	3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 2015년 신설기금	위탁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628	527	-	-	101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 2015년 신설기금	위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15,465	15,401	-	-	64
	언론진흥기금	직접	한국언론 진흥재단	402	234	190	-	-	44
	영화발전기금	직접	영화진흥 위원회	6,286	6,274	4,295	600	1,279	100
	원자력기금 (전체 계정)	위탁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10	1	1	-	-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8,280	9,330	9,330	-	-	-
	전력산업 기반기금	위탁	한국전력 공사	26,070	31,002	13,350	16,100	-	1,552

구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4말 (실적)	'15말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278	4,840	4,328	500	-	12
	주택도시기금	위탁	주택도시보증공사	1,148,320	1,362,208	1,308,711	52,164	-	1,33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	중소기업진흥공단	163,253	159,231	154,574	-	2,349	2,308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	한국언론진흥재단	32	35	35	-	-	-
	사업성 기금 소계			1,668,341	1,919,785	1,612,692	99,564	44,410	163,118

자료: 기획재정부『2016 기금현황』(2016.6월)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금융자산은 한은 예치, 예금은행 예치, 비통화 금융기관(채권, 주식 이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융자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정부내부거래는 타회계 및 타기금 예탁금을 합산한 금액
3. 기타 자산은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및 부동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
4. 원자력기금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합산하여 산출

□ 2014년 대비 2015년 자산 규모는 65개 기금과 34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규모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65개 전체 기금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10.8%이고 34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은 9.6%임.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 유형별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은 전년대비 증가하는 모습인 반면, 금융성 기금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금 유형별 자산규모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사업성 기금이 15.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사회보험성 기금이 8.6%로 나타났으며 금융성 기금은 4.5%의 하락세를 보임.

○ 기금 자산을 구성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65개 기금과 34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동일하나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임[124].

124) 금융자산은 한은 예치, 예금은행 예치, 비통화 금융기관(채권, 주식 이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융자 등으로 구성됨

- 65개 기금의 자산 중 금융자산이 59.9%, 정부내부거래가 34.4%, 부동산이 1.0%, 기타 항목이 4.7%를 차지함[125].
- 반면,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은 금융자산이 92.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4.6%, 나머지 정부내부거래와 부동산은 각각 1.4%, 1.3%를 차지함.

□ 2014년 대비 2015년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규모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Ⅰ-58>).

○ 65개 전체 기금의 자산 중 34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2.3%에서 2015년 51.7%로 감소함.

- 2014년 대비 자산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기금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 2014년과 2015년 자산 중 각 기금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금융성 기금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함.

- 사회보험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감소(사회보험성 기금 71.8%→71.2%, 금융성 기금 4.3%→3.7%)한 반면, 사업성 기금의 비중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모습(23.9%→25.1%)을 보임.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을 기금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산 구성내역을 비교해보면, 항목별 비중 분포상 차이를 보임.

○ 사회보험성 기금은 금융자산이 97.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1.8%, 부동산이 0.9%를 차지함.

- 사회보험성 기금은 정부 내부거래가 0%임.

○ 금융성 기금은 금융자산이 64.6%를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31.4%를 차지함.

- 다른 기금 유형은 기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나 금융성 기금은 31.4%로 다소 높은 비중임.
- 이외 정부내부거래가 2.3%, 부동산이 1.8%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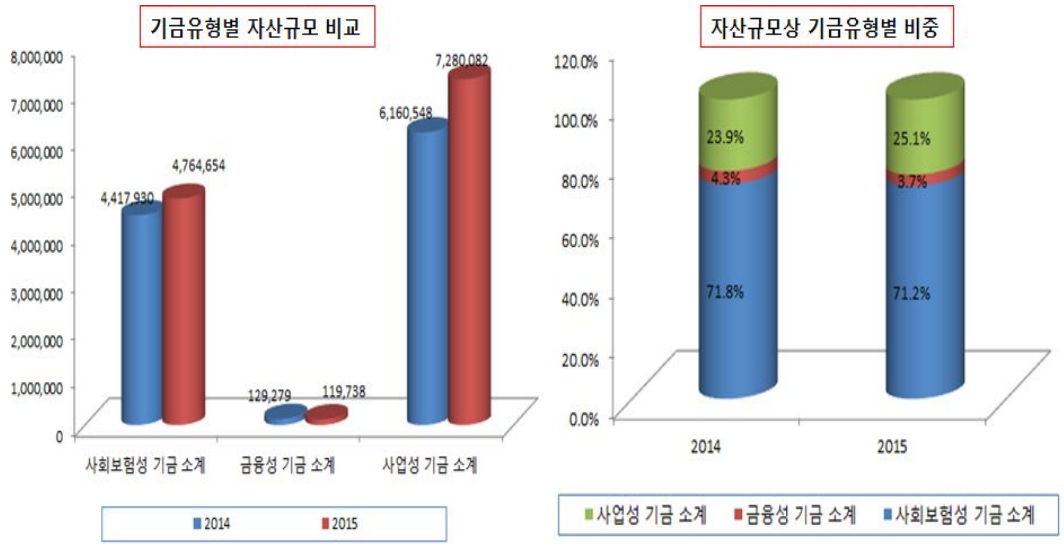
○ 사업성 기금도 금융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으로 84.0%를 차지함.

- 사업성 기금은 다른 기금 유형에 비해 타 회계나 타 기금의 예탁 등 정부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5.2%)이 다소 높음.
- 이외 기타 항목이 8.5%, 부동산이 2.3%를 차지함.

125) 정부내부거래는 타 회계나 타 기금 예탁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타 항목은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및 부동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임

〈그림 Ⅰ－7〉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비교

(단위: 억원, %)



자료: 기획재정부 『2016 기금현황』(2016.6월)을 참고하여 작성

〈표 Ⅰ－58〉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 규모 비중(기금 자산 규모)

(단위: %)

구분	자산 규모 비중		'15말(실적) 자산 구성항목별 비중			
	'14말 (실적)	'15말 (실적)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						
▪ 34개 공공기관 관리기금	52.3	51.7	80.1	2.1	66.4	50.9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71.8	71.2	74.7	0.1	50.0	28.3
▪ 금융성 기금	4.3	3.7	2.6	6.1	5.1	25.5
▪ 사업성 기금	23.9	25.1	22.7	93.8	44.9	46.2
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유형의 자산 내역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	-	97.3	0.0	0.9	1.8
▪ 금융성 기금	-	-	64.6	2.3	1.8	31.4
▪ 사업성 기금	-	-	84.0	5.2	2.3	8.5

자료: 기획재정부 『2016 기금현황』(2016.6월)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은 65개 기금 대비 34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비중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은 당해연도 자산 규모에서 각 기금유형이 차지하는 비중(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등도 자산 내역별 소계에서 각 기금 유형별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유형의 자산 내역별 비중'은 2015년 각 유형별 자산규모 중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등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7) 상장 공공기관 현황[126)]

□ 공공기관 중에는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기관(61개)이 있으며 그 중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된 8개 공공기관이 존재함.

○ 상장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공운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면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한국거래소가 정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

- 일반기업의 상장은 규모요건, 분산요건, 경영성과 요건,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나,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 1항의 '공적법인 등과 지주회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
-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공공법인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은 분산요건,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상장 공공기관은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타공공기관 중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강원랜드(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중소기업은행이 포함됨.

- 주무부처별로 분류해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인 상장 공공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금융위원회 산하 상장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 등이 있음.

○ 8개 상장 공공기관에 대한 개요는 아래 <표 Ⅰ-59>와 같음.

126)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5) 및 「상장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박한준・허경선(2014)」을 참고하여 작성

〈표 Ⅰ-59〉 상장 공공기관 개요

기관명	부처	유형	설립연도 (설립근거(법))	상장일	임직원 총계(명)	총자산 (백만원)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시장형)	1982 (한국전력공사법)	1989.08.10.	21,325	175,257,359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시장형)	1983 한국전력공사법)	1999.12.15.	3,521	42,385,340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시장형)	198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2010.01.29.	1,634	4,843,832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공공기관	1975 (상법 제317조)	2009.12.24.	2,336	855,156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공공기관	1984 (상법 제317조)	2007.12.24.	5,464	1,033,559
강원랜드(주)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공공기관	1998 (상법 및 폐광지역 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003.09.04.	3,498	3,690,792
그랜드코리아레저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공공기관	2005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2009.11.19.	1,742	650,518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1961 (중소기업은행법)	2003.12.24.	11,922	239,842,78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8개 상장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임직원 총계와 총자산은 2015년 결산 기준

□ 상장 공공기관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지분율이 가장 적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46.62%이며 나머지 7개 상장 공공기관 모두 50% 이상을 차지함.

○ 정부가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1.5%로 다른 기관에 비해 정부 지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장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는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기관의 지분을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음.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 한전KPS(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율이 각각 66.32%, 52.48%임.

〈표 Ⅰ-60〉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현황

(단위: %)

기관	정부	공공기관		기타	
한국전력공사	18.20	한국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32.9 7.07	외국인 기타	31.32 10.51
한국가스공사	26.20	한국전력공사	20.47	지자체계 우리사주조합 외국인 국민연금	7.9 4.52 11.5 4.5
한국지역난방공사	34.55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19.55 10.53	서울시 우리사주조합 일반	10.37 3.6 21.41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66.32 2.06	기타	31.62
한전KPS(주)	-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52.48 6.75	우리사주조합 일반투자자	0.29 40.48
강원랜드(주)	-	한국광해관리공단	36.27	강원도개발공사 우리사주조합	6.11 0.0076
그랜드코리아레저	-	한국관광공사	51.0	기타주주	49.0
중소기업은행	50.64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8.77 2.25	기타주주	38.34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5)를 참고하여 작성

□ 상장 공공기관 중 납입자본금이 가장 큰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납입자본금이 약 3조 2,718억원이고, 납입자본금이 가장 적은 상장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기술(주)로 납입자본금이 약 76억원임.

○ 납입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조원 이상인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은행이며 그 이하 구간으로 1,000억원 이상인 기관은 한국가스공사와 강원랜드(주)임.

- 반면에 납입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100억원 이하인 기관으로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 한전KPS(주)가 있음.

〈표 Ⅰ－61〉 상장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주식의 총수

기관	납입자본금 (백만원)	주식의 총수(주)	
		발행할 주식	발행한 주식
한국전력공사	3,209,820	1,200,000,000	641,964,077
한국가스공사	461,565	200,000,000	92,313,000
한국지역난방공사	57,894	40,000,000	11,578,744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7,644	300,000,000	38,220,000
한전KPS(주)	9,000	300,000,000	45,000,000
강원랜드(주)	106,970	1,000,000,000	213,940,500
그랜드코리아레저	30,928	120,000,000	61,855,670
중소기업은행	3,271,871	2,000,000,000	654,374,278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5)를 참고하여 작성
주: 중소기업은행은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730,979,733이나 76,605,455주를 감자함

□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과 관련한 사항 중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5년에 현금배당수익률이 상승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높은 배당성향을 보임.

○ 현금배당수익률이 2013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임.

○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은 대체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기관은 상이한 추세를 보임.

- 한전KPS(주)와 강원랜드(주)는 주당순이익은 증가하였으나 현금배당수익률은 하향함.
- 반대로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주당순이익은 감소하였으나 현금배당수익률은 상승함.

○ 정부출자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은 정부 배당금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한국가스공사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127].

-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한전본사 매각의 영향으로 정부배당금이 2015년 680억원에서 2016년 3,62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127)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 『16년 정부출자주식 배당금 1조 2,190억원 수납(2016.5.12.일자)』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정부배당금은 2015년 84억원에서 2016년 14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은행도 2015년 1,411억원에서 2016년 1,491억원으로 증가했음.
- 한국가스공사는 2015년에 정부배당금으로 6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년에는 정부배당금이 41억원으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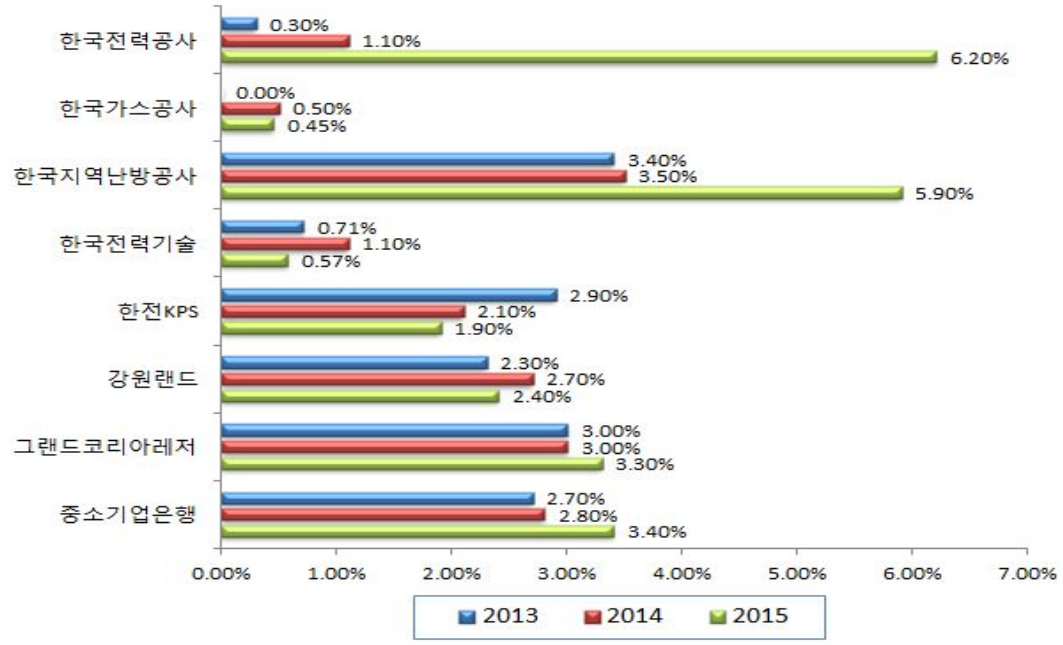
〈표 Ⅰ-62〉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3~2015년)

기관	구분	'13	'14	'15
한국전력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74,306	2,798,967	13,416,375
	주당순이익(원)	96	4,290	20,701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56,073	320,982	1,990,089
	(연결)현금배당성향(%)	32.20	11.50	19.60
	현금배당수익률(%)	0.30	1.10	6.20
	주당현금배당금(원)	90	500	3,100
한국가스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203,639	447,223	319,190
	주당순이익(원)	△2,669	5,091	3,594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21,909	14,898
	(연결)현금배당성향(%)	-	4.90	4.67
	현금배당수익률(%)	-	0.50	0.45
	주당현금배당금(원)	-	250	170
한국 지역난방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14,987	66,302	115,819
	주당순이익(원)	9,931	6,105	10,003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34,620	24,431	41,915
	(연결)현금배당성향(%)	30.10	34.60	36.20
	현금배당수익률(%)	3.40	3.50	5.90
	주당현금배당금(원)	2,990	2,110	3,620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주당액면가액(원)	200	200	2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34,407	54,759	31,047
	주당순이익(원)	900	1,439	816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15,481	21,875	7,609
	(연결)현금배당성향(%)	45.00	40.00	24.50
	현금배당수익률(%)	0.71	1.10	0.57
	주당현금배당금(원)	406	575	200

기관	구분	'13	'14	'15
한전KPS(주)	주당액면가액(원)	200	200	2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52,039	168,296	169,935
	주당순이익(원)	3,379	3,740	3,776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68,400	75,150	76,050
	(연결)현금배당성향(%)	45.00	44.70	44.80
	현금배당수익률(%)	2.90	2.10	1.90
	주당현금배당금(원)	1,520	1,670	1,690
강원랜드(주)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297,596	359,345	441,629
	주당순이익(원)	1,468	1,772	2,178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147,999	172,328	198,684
	(연결)현금배당성향(%)	49.73	47.96	44.99
	현금배당수익률(%)	2.30	2.70	2.40
	주당현금배당금(원)	730	850	980
그랜드 코리아레저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37,570	116,514	91,732
	주당순이익(원)	2,224	1,884	1,483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72,928	61,979	51,402
	(연결)현금배당성향(%)	53.00	53.20	56.00
	현금배당수익률(%)	3.00	3.00	3.30
	주당현금배당금(원)	1,179	1,002	831
중소기업은행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848,492	1,026,598	1,142,983
	주당순이익(원)	1,266	1,539	1,67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205,249	280,012	294,469
	(연결)현금배당성향(%)	24.19	27.27	25.76
	현금배당수익률(%)	2.70	2.80	3.40
	주당현금배당금(원)	330 (330)	430 (430)	450 (45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5)를 참고하여 작성
주: ( ) 안은 우선주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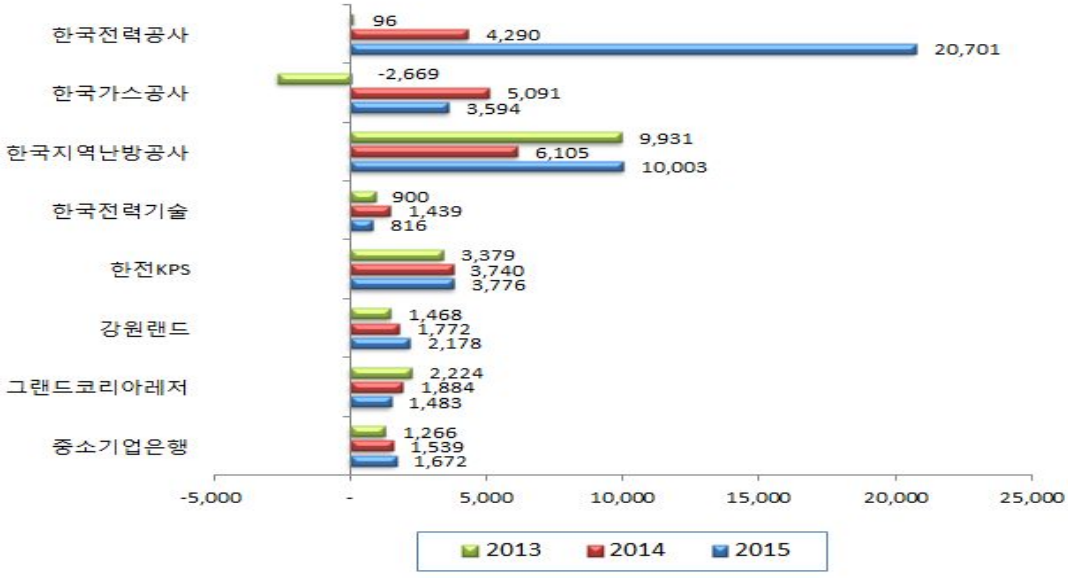
〈그림 Ⅰ-8〉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 변동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5)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9〉 상장 공공기관의 주당순이익 변동 현황

(단위: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5)를 참고하여 작성

□ 매출액과 총포괄손익을 중심으로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4년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강원랜드(주)로 9.2%의 증가율을 보임.

- 2014년 대비 2015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전년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상장 공공기관 중 매출액이 2013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주)임.

- 강원랜드(주)가 한국전력공사보다 2014년과 2015년 모두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상장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은 3년간 매출액과 총포괄손익의 변화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매출액이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총포괄손익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증가했다 2015년에는 다시 감소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4년 크게 감소했다 2015년 다시 증가한 모습을 보임.

- 중소기업은행은 매출액이 2014년 감소했다 2015년에 다시 증가한 반면, 총포괄손익은 3년 연속 증가하였음.

〈표 Ⅰ－63〉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2013~2015년)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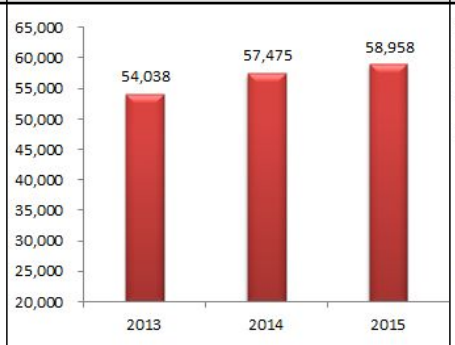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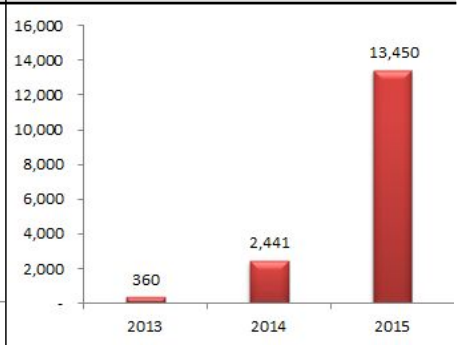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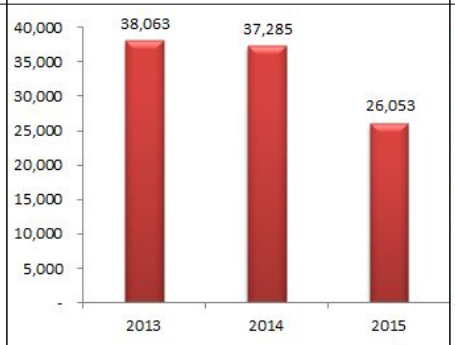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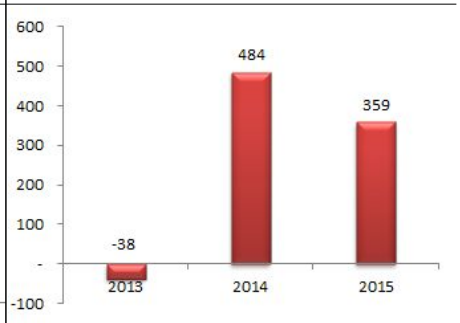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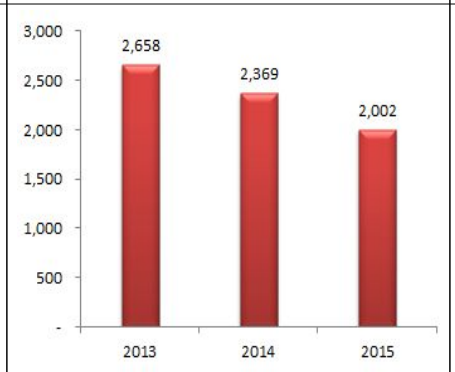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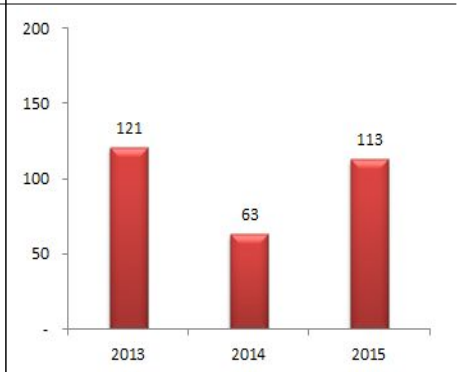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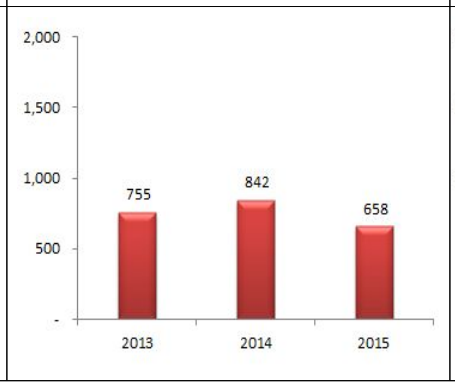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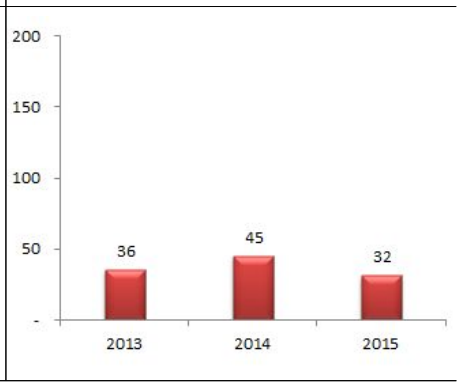
기관	구분	'13	'14	'15	전년대비 증감율(%)	
					'14	'15
한국전력공사	매출액	54,037,795	57,474,883	58,957,722	6.4	2.6
	영업이익	1,518,965	5,787,565	11,346,732	281.0	96.1
	당기순이익	174,306	2,798,967	13,416,373	1505.8	379.3
	지배지분순이익	60,011	2,686,873	13,289,127	4377.3	394.6
	총포괄손익	360,077	2,441,246	13,450,379	578.0	451.0
한국가스공사	매출액	38,062,713	37,284,867	26,052,724	△2.0	△30.1
	영업이익	1,488,207	1,071,906	1,007,812	△28.0	△6.0
	당기순이익	△203,639	447,223	319,190	319.6	△28.6
	지배지분순이익	△200,707	447,222	319,190	322.8	△28.6
	총포괄손익	△38,455	484,489	358,688	1359.9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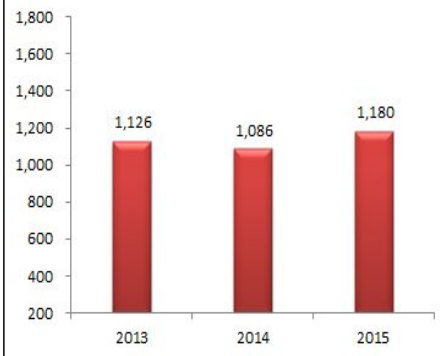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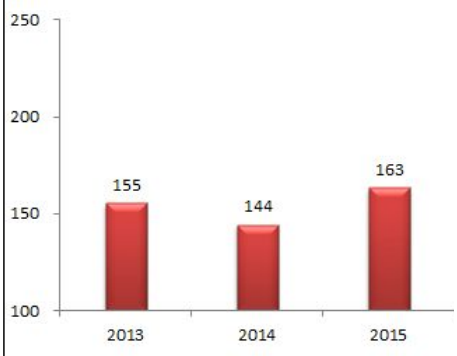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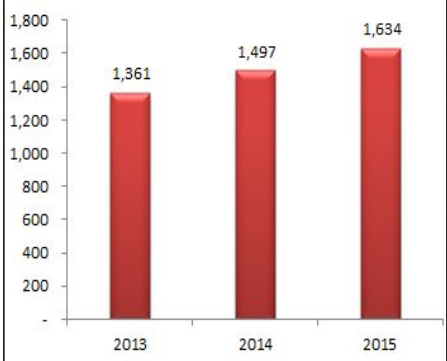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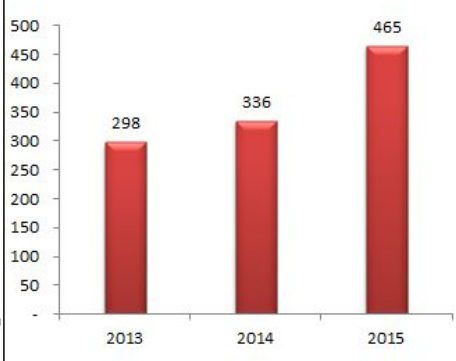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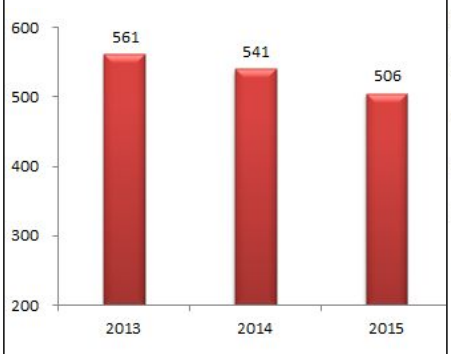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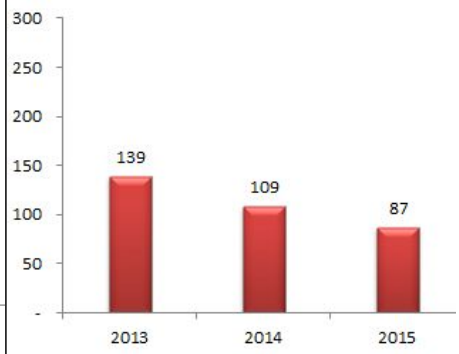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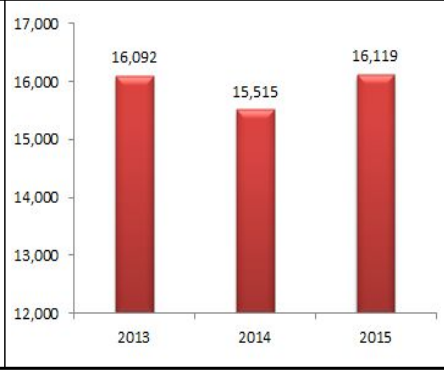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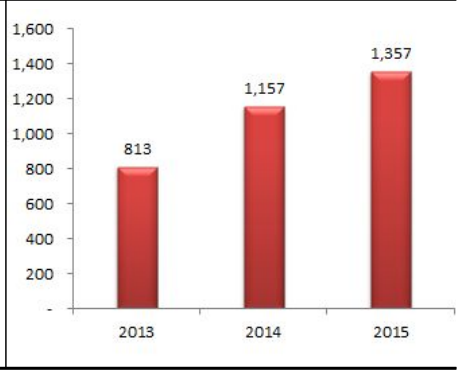
기관	구분	'13	'14	'15	전년대비 증감율(%)	
					'14	'15
한국지역난방공사	매출액	2,657,794	2,369,115	2,001,946	△10.9	△15.5
	영업이익	213,387	85,558	209,936	△59.9	145.4
	당기순이익	115,759	66,302	115,819	△42.7	74.7
	총포괄손익	120,820	63,125	112,954	△47.8	78.9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매출액	755,484	841,917	657,603	11.4	△21.9
	영업이익	33,824	66,552	34,687	96.8	△47.9
	당기순이익	34,407	54,759	31,047	59.2	△43.3
	총포괄손익	35,510	45,274	31,530	27.5	△30.4
한전KPS(주)	매출액	1,125,802	1,085,531	1,179,715	△3.6	8.7
	영업이익	183,978	215,806	175,177	17.3	△18.8
	당기순이익	152,039	168,296	169,935	10.7	1.0
	지배지분순이익	152,039	168,296	169,935	10.7	1.0
	총포괄손익	155,325	144,356	163,392	△7.1	13.2
강원랜드(주)	매출액	1,361,287	1,496,541	1,633,717	9.9	9.2
	영업이익	388,041	513,172	595,400	32.2	16.0
	당기순이익	297,596	359,349	441,629	20.8	22.9
	지배지분순이익	297,599	359,364	441,645	20.8	22.9
	총포괄손익	298,437	335,660	464,726	12.5	38.5
그랜드코리아레저	매출액	561,327	540,680	505,663	△3.7	△6.5
	영업이익	191,128	147,762	118,378	△22.7	△19.9
	당기순이익	137,570	116,513	91,732	△15.3	△21.3
	총포괄손익	139,384	108,803	86,807	△21.9	△20.2
중소기업은행	매출액	16,091,534	15,514,841	16,119,479	△3.6	3.9
	영업이익	1,142,442	1,388,331	1,499,652	21.5	8.0
	당기순이익	854,209	1,032,005	1,150,568	20.8	11.5
	지배지분순이익	848,492	1,026,598	1,142,983	21.0	11.3
	총포괄손익	812,570	1,156,622	1,357,039	42.3	17.3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5)를 활용

〈표 Ⅰ－64〉 상장 공공기관의 매출액 및 총포괄손익 변화 추이(2013~2015년)

(단위: 백만원)

기관	매출액	총포괄손익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기관	매출액	총포괄손익
한전KPS(주)		
강원랜드(주)		
그랜드 코리아레저		
중소기업은행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5)를 활용.

□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비율지표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표Ⅰ-65>와 같음.

〈표 Ⅰ-65〉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2013~2015년)

(단위: %,%p)

기관	지표		'13	'14	'15	증감률(%p)	
						'14	'15
한국 전력공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6.4	5.3	7.1	△1.1	1.8
		유형자산증가율	5.9	4.8	4.1	△1.1	△0.7
		영업이익증가율	흑자전환	281	96.1	-	△184.9
		순이익증가율	흑자전환	1,505.80	379.3	-	△1126.5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2.8	10.1	19.2	7.3	9.1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4.87	8.91	22.76	4.04	13.85
		총자산순이익률	0.1	1.8	7.9	1.7	6.1
		자기자본순이익률	△6.3	5.2	22.1	11.5	16.9
	안정성	유동비율	75.5	77.9	97.0	2.4	19.1
		부채비율	202.30	198.60	157.95	△3.7	△40.65
		자기자본비율	33.1	33.5	38.8	0.4	5.3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63.77	246.11	569.92	182.34	323.81
	생산성	부가가치액 (백만원)	13,918,748	18,748,069	34,268,709	-	-
		부가가치율	25.8	32.6	58.1	6.8	25.5
		노동소득분배율	30.0	20.7	13.5	△9.3	△7.2
		총자본투자효율	9.2	11.7	20.2	2.5	8.5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04.83	100.94	86.78	△3.89	△14.16
		총자산회전율	0.4	0.4	0.3	0.0	△0.1
한국 가스공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7.5	7.11	△9.38	△0.39	△16.49
		유형자산증가율	14.68	11.46	5.69	△3.22	△5.77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8.65	△2.04	△30.13	△10.69	△28.09
		순이익증가율	△156.25	319.62	△28.63	475.87	△348.25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3.91	2.87	3.87	△1.04	1.00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0.54	1.20	1.23	1.74	0.03
		총자산순이익률	△0.48	0.99	0.72	1.47	△0.27
		자기자본순이익률	△2.32	4.79	3.23	7.11	△1.56

기관	지표		'13	'14	'15	증감률(%p)	
						'14	'15
한국 가스공사	안정성	유동비율	146.78	139.84	174.81	△6.94	34.97
		부채비율	388.83	380.98	321.45	△7.85	△59.53
		자기자본비율	20.46	20.79	23.73	0.33	2.94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1.78	1.27	1.30	△0.51	0.03
	생산성	부가가치액 (백만원)	2,544,656	2,796,776	2,850,736	-	-
		부가가치율	6.69	7.50	10.94	0.81	3.44
		노동소득분배율	11.2	10.09	10.75	△1.11	0.66
		총자본투자효율	6.04	6.18	6.39	0.14	0.21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4.40	4.00	2.63	△0.40	△1.37
		총자본회전율	1.00	0.82	0.58	△0.18	△0.24
한국 지역난방 공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5.1	2.0	2.2	△3.1	0.2
		자기자본증가율	4.91	0.31	5.42	△4.6	5.11
		매출증가율	2.2	△10.9	△15.5	△13.1	△4.6
		영업이익증가율	△7.7	△59.9	145.2	△52.2	205.1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4.02	2.80	5.79	△1.22	2.99
		총자산경상이익률	2.99	0.26	2.99	△2.73	2.73
		자기자본경상이익률	8.60	0.76	8.53	△7.84	7.77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35.04	34.44	35.54	△0.60	1.10
		유동비율	75.84	83.81	50.47	7.97	△33.34
		부채비율	212.89	190.34	181.35	△22.55	△8.99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79.85	145.07	116.28	△34.78	△28.79
		총자산회전율	0.58	0.50	0.42	△0.08	△0.08
한국 전력기술 주식회사	수익성	영업이익률	4.5	7.9	5.3	3.4	△2.6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4.55	6.5	4.72	1.95	△1.78
	안정성	부채비율	99.06	91.00	105.18	△8.06	14.18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97.74	206.79	157.78	9.05	△49.01

기관	지표		'13	'14	'15	증감률(%p)	
						'14	'15
한전 KPS(주)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11.2	10	11.7	△1.2	1.7
		자기자본증가율	17	12.2	12.6	△4.8	0.4
		매출액 증가율	11.4	△3.6	8.7	△15	12.3
		순이익 증가율	28.9	10.7	1	△18.2	△9.7
	수익성	영업이익률	16.3	19.9	14.8	3.6	△5.1
		순이익률	13.5	15.5	14.4	2	△1.1
		총자산순이익률	19	19.1	17.3	0.1	△1.8
		자기자본이익률	26.3	25.5	22.9	△0.8	△2.6
	안정성	유동비율	239	254.8	281.9	15.8	27.1
		부채비율	35.21	32.60	31.45	△2.61	△1.15
		당좌비율	237.6	253.8	281	16.2	27.2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80.98	155.52	150.04	△25.46	△5.48
		총자산회전율	1.4	1.2	1.2	△0.2	0
강원랜드(주)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5	9.9	9.2	4.9	△0.7
		순이익증가율	△4.2	32.2	16	36.4	△16.2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21.86	24.01	27.03	2.15	3.02
		부채비율	23.21	24.76	23.12	1.55	△1.64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21.86	24.01	27.03	2.15	3.02
		매출액순이익률	21.9	24	27	2.1	3
		자기자본순이익률	12.2	13.8	15.5	1.6	1.7
	안정성	유동비율	189.5	219.7	263.4	30.2	43.7
		부채비율	23.21	24.76	23.12	1.55	△1.64
		자기자본비율	81.2	80.2	81.2	△1	1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54.07	55.32	54.5	1.25	△0.82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24.51	21.55	18.14	△2.96	△3.41
	안정성	유동비율	42.32	50.91	42.59	8.59	△8.32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41.92	125.33	110.84	△16.59	△14.49
중소기업 은행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5.31	6.65	7.14	1.34	0.49
		총자산순이익률	0.41	0.45	0.47	0.04	0.02
		자기자본이익률	5.81	6.26	6.24	0.45	△0.02
	안정성	부채비율	1,373.30	1,304.56	1,286.87	△68.74	△17.69
		BIS비율	12.30	12.50	12.39	0.20	△0.11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11.52	99.16	93.21	△12.36	△5.95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5)를 참고하여 작성

□ 상장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결산서에 주요 재무비율지표에 대한 변동 원인 및 추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및 영업외이익의 증가와 부채 감소가 재무비율 전반에 영향을 미침[128].

- 서울 사옥 매각 등의 영향으로 인한 유동자산의 증가, 전력설비 신규 취득 등으로 비유동자산의 증가, 원리금 상환과 한전 및 발전사의 순이익 증가로 인한 부채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성장성, 안정성 지표에 영향을 미침.
- 판매단가 상승 및 판매량 증가에 따른 영업수익의 증가, 연료비 감소 등에 따른 영업비용의 감소에 기인하여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며, 구사옥 매각 이익 및 이자비용 감소로 인해 영업외이익 또한 증가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수익성 및 생산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

○ 한국가스공사는 유가하락, 판매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총자산 및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영향으로 총자산증가율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낮아짐[129].

- 성장성 지표를 보면 2014년까지 유형자산 및 총자산은 증가추세였으나, 유가하락 등으로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감소하여 2015년에는 총자산이 감소함.
- 수익성 지표에서 영업이익률은 2014년을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은 2014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규모의 감소로 순이익률이 감소하였음.
- 생산성 지표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유가하락 등으로 매입채무가 감소하여 안정성 지표 중 유동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졌으며 부채비율은 낮아졌음.

128) 한국전력공사「제55기 2015년 결산서(연결)」(2016)
129) 한국가스공사「연결_2015회계년도결산서」(2016)

나. 인력현황[130]

1) 임직원 수 현황

□ 2015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직제상 정원기준)는 28만 7천여 명으로[131] 국가 행정공무원 정원(약 62만 5천여 명)의 45.9%에 해당하는 규모임[132].

○ 2014년도 행정공무원 정원 대비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4.8%로 2015년에는 전년대비 약 1.1%p 증가한 수치임.

○ 2015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전년에 비해 약 2.9%(8,107명) 증가하였으며, 임직원 수 증감 추이는 전년도(약 3.1%)보다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음.

〈표 Ⅰ-66〉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

(단위: 천명, %, %p)

구분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 공공기관(a)	254.8	263.0	271.6	278.9	287.0	8.1	2.9
· 국가행정공무원(b)	612	615	615	622	625	3	0.5
· 비중(a/b)	41.6	42.8	44.2	44.8	45.9	1.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http://alio.go.kr/statisticsStat1.do) 임직원 현황 및 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를 참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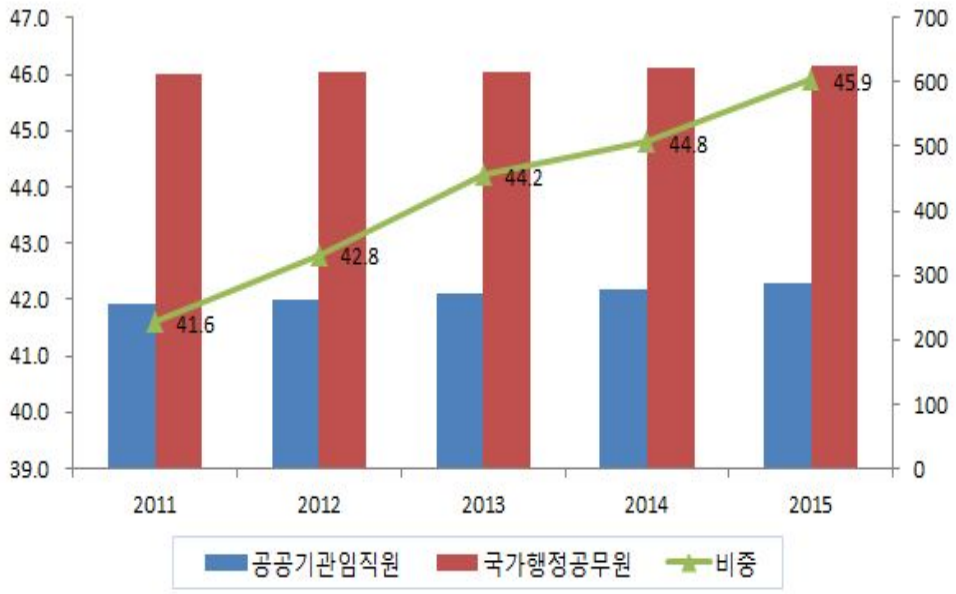
주: 1. 직제상 정원 기준
2. *는 %p단위임

130)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 보도자료,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교육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추가전환(2016.2.18.)』 보도자료 및 알리오시스템 유관항목을 참조

131) 알리오 주요통계(http://alio.go.kr/statisticsStat1.do) 임직원 현황 참조

132) 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참조

〈그림 Ⅰ－10〉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국가행정공무원 대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및 나라지표를 활용하여 작성

□ 2015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의 변화를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임직원 수의 증가가 나타났음.

○ 특히 기타공공기관에서 신규 지정된 기관들에 따른 기관 수 증가로 인해('14년 말 대비 15개 기관 증가) 전년대비 4.7%(4,697명) 증가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음.

○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은 전년대비 가장 낮은 증가율(0.6%)을 보였으며, 현원 기준으로는 모든 공공기관 유형 중 유일하게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표 Ⅰ－67〉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254,780	262,987	271,618	278,939	287,046	8,107	2.9
	(252,551)	(256,245)	(262,675)	(267,211)	(273,481)	(6,270)	(2.3)
· 공기업	94,369	97,390	99,847	102,017	103,565	1,548	1.5
	(97,569)	(98,036)	(98,908)	(98,988)	(99,585)	(597)	(0.6)
· 시장형	46,006	47,736	49,742	52,069	53,315	1,246	2.4
	(46,415)	(47,477)	(48,961)	(50,165)	(51,736)	(1,571)	(3.1)
· 준시장형	48,363	49,654	50,105	49,948	50,250	302	0.6
	(51,154)	(50,559)	(49,947)	(48,823)	(47,849)	(△974)	(△2.0)
· 준정부기관	70,449	72,566	74,776	77,479	79,341	1,862	2.4
	(70,188)	(70,947)	(70,606)	(75,022)	(76,646)	(1,624)	(2.2)
· 기금관리형	18,006	18,572	19,248	19,937	20,251	314	1.6
	(17,659)	(17,854)	(18,594)	(19,210)	(19,498)	(288)	(1.5)
· 위탁집행형	52,443	53,994	55,528	57,542	59,090	1,548	2.7
	(52,529)	(53,093)	(54,012)	(55,812)	(57,148)	(1,336)	(2.4)
· 기타공공기관	89,962	93,031	96,995	99,443	104,140	4,697	4.7
	(84,794)	(87,262)	(91,161)	(93,201)	(97,250)	(4,049)	(4.3)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 알리오 주요통계 (http://alio.go.kr/statisticsStat1.do) 임직원 현황 참조

주: 1. 괄호 안 수치는 현원 기준
2. 현원의 경우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 2015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75,816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가 58,658명, 교육부 30,546명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임직원 수 증가 역시 소관 기관들의 정원 규모가 가장 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2,135명 증원), 다음으로 교육부(1,733명 증원), 금융위원회(661명) 순으로 임직원 수 증가가 일어남.

○ 임직원 수 증가율로 보면 여성가족부가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38.0%)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36.7%), 식품의약품안전처(20.1%) 순임.

〈표 Ⅰ-68〉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기관 수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346	254,780	262,987	271,618	278,939	287,046	8,107	2.9
경찰청	1	1,763	1,797	1,819	1,853	1,861	8	0.4
고용노동부	12	10,834	11,254	11,569	11,870	12,077	207	1.7
공정거래위원회	2	286	327	352	368	386	18	4.9
관세청	1	30	50	50	50	50	0	-
교육부	24	25,035	25,909	27,539	28,813	30,546	1,733	6.0
국가보훈처	3	3,628	3,730	3,755	3,985	4,044	59	1.5
국무조정실	27	2,927	3,008	3,010	3,101	3,218	117	3.8
국민안전처	2	596	603	638	650	685	35	5.4
국방부	3	280	280	288	292	325	33	11.3
국토교통부	23	56,877	58,442	59,079	58,247	58,658	411	0.7
금융위원회	8	15,620	15,836	16,764	17,073	17,734	661	3.9
기상청	3	222	254	254	274	274	0	-
기획재정부	3	2,258	2,376	2,457	2,529	2,632	103	4.1
농림축산식품부	10	6,963	7,202	7,269	7,311	7,343	32	0.4
농촌진흥청	1	161	161	171	177	177	0	-
문화재청	1	250	250	250	250	251	1	0.4
문화체육관광부	32	4,783	4,961	5,141	5,219	5,402	183	3.5
미래창조과학부	55	16,001	16,660	17,326	18,080	18,658	578	3.2
방송통신위원회	2	304	286	286	286	391	105	36.7
방위사업청	2	3,027	3,027	3,031	3,121	3,193	72	2.3
법무부	4	835	904	954	1,010	1,034	24	2.4
보건복지부	24	26,563	27,119	27,661	28,779	29,333	551	1.9
산림청	2	36	111	123	120	129	9	7.5
산업통상자원부	41	65,763	68,146	70,801	73,681	75,816	2,135	2.9
식품의약품안전처	4	113	162	168	224	269	45	20.1
여성가족부	5	301	301	388	389	537	148	38.0
외교부	3	377	427	458	461	479	18	3.9
원자력안전위원회	3	479	532	545	558	612	54	9.7
인사혁신처	1	510	510	519	524	524	0	-
중소기업청	8	1,141	1,183	1,232	1,698	1,803	105	6.2
통일부	2	76	68	68	69	71	2	2.9
특허청	6	730	786	871	868	998	130	15.0
해양수산부	19	2,706	2,858	2,997	3,101	3,416	315	10.2
행정자치부	2	41	41	41	74	74	0	-
환경부	7	3,264	3,426	3,744	3,834	4,046	212	5.5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임직원수」항목의 공시내용(2016.4.29.일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2015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의 변화를 요인에 따라 살펴보면, 임직원 증원(7,441명)과 기관 신설(2015년 6개 기관 신설) 등에 의해 전년대비 8,107명이 증가하였음.[133]

○ 2015년 중 6개의 공공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485명의 공공기관 인력이 증가함.

- 6개 기관 중 2개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105명)과 아시아문화원(96명)이 2015년 신설 출범하였음.
- 이외 4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110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108명), 국립해양박물관(43명), 국방전직교육원(23명)이 2015년 신규 출범하였음[134].

□ 2015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의 증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SOC 분야(약 2천 3백 명), 보건의료 분야(약 2천 2백 명), R&D·교육 분야(약 8백여 명), 금융 분야(약 8백여 명) 및 문화예술 분야(약 5백여 명) 등에서 증원이 이루어졌음[135].

□ 임직원 수의 증감을 기관 단위로 살펴보면, 15개 기관(신규 출범 기관 제외)에서 전년대비 100명 이상의 인력이 증원되었으며, 10개 기관에서는 2014년 대비 2015년 임직원수가 감소함.

○ 전년대비 100명 이상 인력이 증원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총 4,047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는 2015년 정규 인력 증원 규모(7,441명)의 약 54.4%를 차지함.

- 가장 큰 규모로 인력이 증원된 기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창원분원 신설로 인해 전년대비 650명의 인력을 증원 받아 2015년 말 임직원 수가 2,230명으로 증가하였음.
- 다음으로는 에너지 분야의 한국전력공사로 신규 전력설비 건설 및 운전, 설비 응급복구 등과 관련하여 446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음.
-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에 따라 관련 인력을 흡수하면서 전년대비 440명이 증원되었음.

○ 반면, 전년대비 인력이 감원된 기관은 10개 기관으로 총 178명이 감원되었음.

- 가장 크게 감원된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산하에 신설된 부설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으로 기금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본원의 관련 인력이 부설기관으로 전환배치되어 임직원 정원이 전년대비 53명 감원되었음.

---

133)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보도자료

134) 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에 개관하였으며 2015년 4월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음

135)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보도자료

-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민간개방에 따라 관련 인력 효율화가 이루어져 전년대비 50명이 감원되었음.

〈표 Ⅰ-69〉 2015년 전년대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단위: 명)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경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650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80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446	기초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63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440	전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46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408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142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63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20
한전KPS(주)	기타공공기관	295	선박안전기술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15
(주)강원랜드	기타공공기관	255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12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임직원수』 항목의 공시내용(2016.4.29.일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2015년 인력증원 규모는 2014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15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표 Ⅰ-70〉 2015년 전년대비 인력이 감원된 기관

(단위: 명)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기타공공기관	10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8
(재)정동극장	기타공공기관	19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
국립중앙의료원	기타공공기관	16	소프트웨어공학센터	부설기관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3	정부법무공단	기타공공기관	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임직원수」항목의 공시내용(2016.4.29.일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2015년 인력감원 규모는 2014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15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2. 소프트웨어공학센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임

2) 신규채용 현황

□ 2015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2014년도 대비 1,392명 증가한 18,993명임.

○ 신규채용 실적을 연도별 증가율로 살펴보면 2013년도 전년대비 4.6% 증가에서 2014년도 전년대비 3.8%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가, 2015년도에는 전년대비 7.9%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5년도 신규채용 증가 추세의 반등은 채용형 인턴제('14년 시범운영) 확대 시행에 따른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채용과 일부 공공기관들의 사업 및 기능 확대 등에 기인함[136].

○ 공공기관 유형별로 신규채용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전년도에 비해 신규채용 규모가 증가한 반면 준정부기관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음.

- 준정부기관의 신규채용은 전년대비 3.5%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큰 폭의 감소(전년대비 20.6%)가 발생했기 때문임.
- 반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전년대비 기관수 증가,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16.7%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Ⅰ－71〉 최근 5년간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4,709	16,614	17,393	17,601	18,993	1,392	7.9
공기업	2,684	4,279	4,041	4,158	4,330	172	4.1
·시장형	1,856	2,713	3,126	2,912	3,202	290	10.0
·준시장형	828	1,566	915	1,246	1,129	△117	△9.4
준정부기관	4,146	3,939	4,036	5,072	4,893	△179	△3.5
·기금관리형	1,352	1,047	1,251	1,273	1,011	△262	△20.6
·위탁집행형	2,794	2,892	2,785	3,799	3,882	83	2.2
기타공공기관	7,879	8,396	9,316	8,371	9,769	1,398	16.7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신규채용」 항목의 공시내용(2016.4.29.일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136) 채용형 인턴은 일정기간 인턴을 거쳐 7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턴 유형으로 '14년 하반기 채용되었던 1,947명의 채용형 인턴이 '15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 참고)

□ 2015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5,042명으로 신규채용을 가장 많이 했으며, 다음으로 교육부가 3,767명, 보건복지부가 1,971명 순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년대비 신규 채용 증가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전년대비 1,031명 추가 신규채용), 교육부(281명), 해양수산부(256명) 순으로 신규채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남.

- 신규채용이 크게 발생한 부처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년대비 인력 증원 규모가 큰 부처라는 점임.

○ 전년대비 신규 채용 증가율은 방송통신위원회(960.0%), 특허청(266.7%), 통일부(16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Ⅰ－72〉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기관 수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346	14,709	16,614	17,393	17,601	18,993	1,392	7.9
경찰청	1	269	183	89	66	44	△22	△33.3
고용노동부	12	599	650	770	819	785	△34	△4.1
공정거래위원회	2	51	69	56	43	46	4	8.2
관세청	1	13	2	2	5	10	5	100.0
교육부	24	3,288	3,267	3,694	3,486	3,767	281	8.1
국가보훈처	3	462	301	271	476	367	△109	△23.0
국무조정실	27	283	350	250	337	327	△10	△3.0
국민안전처	2	38	26	43	24	39	15	62.5
국방부	3	18	10	25	26	35	9	34.6
국토교통부	23	1,454	2,102	1,668	1,993	1,571	△423	△21.2
금융위원회	8	944	1,125	1,366	721	954	233	32.3
기상청	3	97	81	47	25	44	19	76.0
기획재정부	3	74	206	122	145	209	64	43.8
농림축산식품부	10	192	214	260	402	398	△5	△1.2
농촌진흥청	1	20	23	13	15	12	△3	△17.2
문화재청	1	16	15	20	28	13	△15	△53.6
문화체육관광부	32	296	346	403	297	351	54	18.2
미래창조과학부	55	925	1,249	1,184	1,218	1,252	34	2.8
방송통신위원회	2	5	32	10	5	53	48	960.0
방위사업청	2	149	123	224	205	176	△29	△13.9
법무부	4	113	92	61	88	68	△20	△22.7
보건복지부	24	1,896	1,523	1,564	2,187	1,971	△216	△9.9
산림청	2	7	19	27	7	18	11	157.1
산업통상자원부	41	2,740	3,661	4,311	4,011	5,042	1,031	25.7
식품의약품안전처	4	26	60	37	40	74	34	85.0
여성가족부	5	30	26	71	67	104	37	55.4
외교부	3	42	68	45	34	30	△4	△11.8
원자력안전위원회	3	19	26	43	39	84	45	115.4
인사혁신처	1	35	26	30	34	28	△6	△17.6
중소기업청	8	70	82	126	108	174	66	60.7
통일부	2	5	29	21	6	16	10	166.7
특허청	6	48	88	40	36	132	96	266.7
해양수산부	19	347	234	259	236	492	256	108.7
행정자치부	2	6	0	3	8	9	1	12.5
환경부	7	132	307	239	367	301	△66	△17.9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신규채용」항목의 공시내용(2016.4.29.일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기관 단위로 신규채용 규모를 살펴보면, 100명 이상 채용한 기관이 39개 기관이며, 상위 10개 기관의 총 신규채용 규모는 4,769명(전체 신규채용의 약 25.1%)임.

○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복지 분야 5개 기관, 에너지 3개 기관, 금융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가 각 1개 기관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8개 기관의 신규채용이 전년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국내외 신규 원전 가동 등으로 전년대비 692명이 증가한 1,369명을 신규 채용하였음.
- 강원랜드는 운영인력 확충 등으로 전년대비 309명 증가한 442명을 채용함.
-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경우 운항관리업무 이관에 따라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관련 인력 등 164명을 채용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43명 증가한 것으로 높은 신규채용 증가율(681.0%)을 보였음.

〈표 Ⅰ-73〉 2015년도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명)

기관명	유형	신규채용	기관명	유형	신규채용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1,369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12.5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019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506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745	(주)강원랜드	기타공공기관	442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62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부설기관	380
한전KPS(주)	기타공공기관	55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61.6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신규채용」항목의 공시내용(2016.4.29.일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부설기관임

〈표 Ⅰ－74〉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2015년 기준)

(단위: 명, %)

기관명	유형	'14 신규채용(A)	'15 신규채용(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677.5	1,369	691.5	102.1
(주)강원랜드	기타공공기관	133	442	309	232.3
한전KPS(주)	기타공공기관	275	557	282	102.5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738.5	1,019	280.5	38.0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310	506	196	63.2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571	745	174	25.7
선박안전기술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1	164	143	681.0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506	627	121	23.9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신규채용」 항목의 공시내용(2016.4.29.일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열린 채용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영향으로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과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2015년도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은 10,129명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은 917명으로 전년대비 28.5% 증가하였음.

○ 반면 장애인 채용은 전년대비 2.5% 하락하였음.

〈표 Ⅰ－75〉 최근 5년간 열린 채용 규모

(단위: 명, %)

구분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 여성	6,378	6,918	7,359	7,215	7,656	441	6.1
· 장애인	415	283	303	260	254	△6	△2.5
· 비수도권 지역인재	7,136	8,086	8,816	9,148	10,129	981	10.7
· 이전지역 지역인재	248	371	456	714	917	203	28.5
· 고졸자	680	2,017	2,067	1,778	1,786	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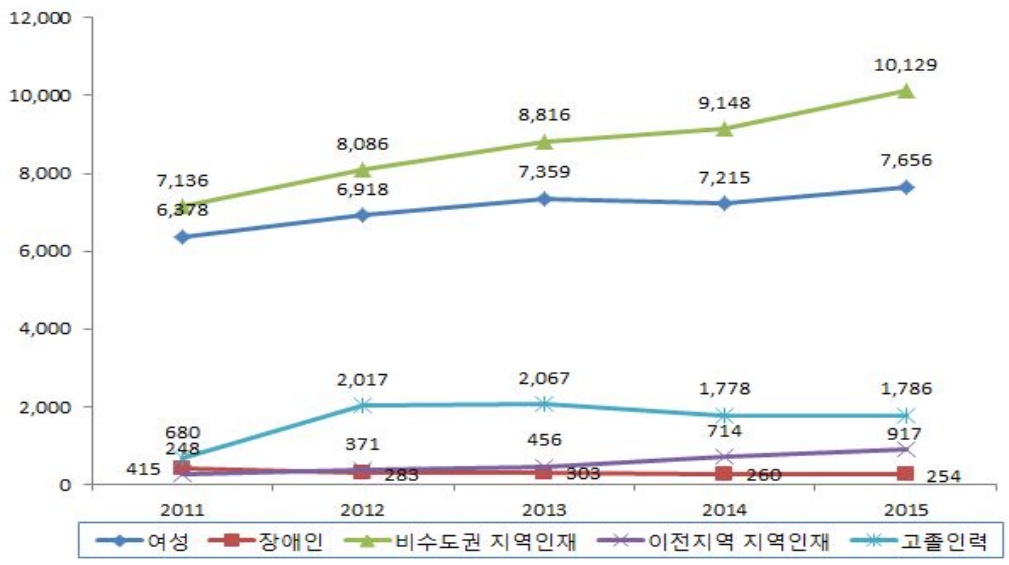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신규채용」 항목의 공시내용(2016.4.29.일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통합공시 매뉴얼에 따라 국무조정실 산하 출연 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은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지역인재 및 고졸자 채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으므로 위의 실적에 불포함

2. 증감을 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존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그림 Ⅰ－11〉 최근 5년간 열린 채용 규모

(단위: 명)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신규채용』항목의 공시내용을 활용하여 작성

3)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

□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노력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2013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5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간제 근로자는 31,000명으로 전년대비 1,386명(4.3%) 감소하였음.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 전년도의 감소세를 이어나가 각각 전년대비 863명(11.4%), 718명(3.3%)이 감소하였음.

○ 2015년 무기계약직은 22,015명으로 전년대비 3,250명(17.3%)이 증가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은 2,190명으로 전년대비 658명(43.0%) 증가하였음.

-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의 증가는 기간제 근로자가 전년대비 감소한 준정부기관(22.9%)과 기타공공기관(15.9%)에서 큰 폭으로 나타남.
- 한편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의 증감을 보면 기타공공기관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99.0%)한 반면, 준정부기관은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31.8%)하였음.

○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일환으로 2013년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영향을 받은 결과임.

-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동 정책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전년도에 이어 공공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표 Ⅰ－76〉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기간제)

(단위: 명, %)

구분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29,893	33,539	32,694	32,386	31,000	△1,386	△4.3
· 공기업	1,933	2,125	2,247	3,370	3,565	195	4.0
· 준정부기관	6,961	7,783	8,061	7,544	6,681	△863	△11.4
· 기타공공기관	21,099	23,631	22,386	21,472	20,754	△718	△3.3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

〈표 Ⅰ－77〉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

(단위: 명, %)

구분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0,309	11,766	15,333	18,765	22,015	3,250	17.3
공기업	1,577	1,662	1,696	1,941	2,115	174	9.0
· 시장형	53	57	64	95	97	2	2.1
· 준시장형	1,524	1,605	1,632	1,846	2,018	172	9.3
준정부기관	2,891	3,326	4,634	5,765	7,087	1,322	22.9
· 기금관리형	903	1,004	1,071	1,301	1,341	40	3.1
· 위탁집행형	1,988	2,322	3,563	4,464	5,746	1,282	28.7
기타공공기관	5,841	6,778	9,003	11,059	12,813	1,754	15.9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임직원수』 항목의 공시내용(2016.4.29.일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현원 기준
2.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표 Ⅰ－78〉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11	285	840	1,532	2,190	658	43.0
· 공기업	0	2	18	73	133	60	82.2
· 시장형	0	2	4	19	7	△12	△63.2
· 준시장형	0	0	14	54	126	72	133.3
· 준정부기관	61	149	123	647	441	△206	△31.8
· 기금관리형	23	86	30	283	71	△212	△74.9
· 위탁집행형	38	63	93	364	370	6	1.6
· 기타공공기관	50	134	699	812	1,616	804	99.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신규 채용』 항목의 공시내용(2016.4.29.일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전년대비 증감률 수치 산출시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관심 사안으로, 정부는 2016년 2월『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TF』를 개최하고『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음[137].

○ 대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1단계(2013~2015년) 정규직 전환실적 및 2단계(2016~2017년) 전환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3년 간(2013년~2015년) 15,845명(누계)의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당초 전환계획 13,298명(누계)을 상회(목표 대비 119% 달성)하는 실적임.

○ 또한 향후 2016년에는 1,532명, 2017년에는 43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 밝힘.

137)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교육부 합동『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추가 전환(2016.2.18.일자)』보도자료

〈표 Ⅰ－79〉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실적

(단위: 명, %)

구분	'13	'14	'15	누적합계
전환계획(a)	5,485	5,037	2,776	13,298
전환실적(b)	5,726	5,203	4,916	15,845
전환율(b/a)	104	103	177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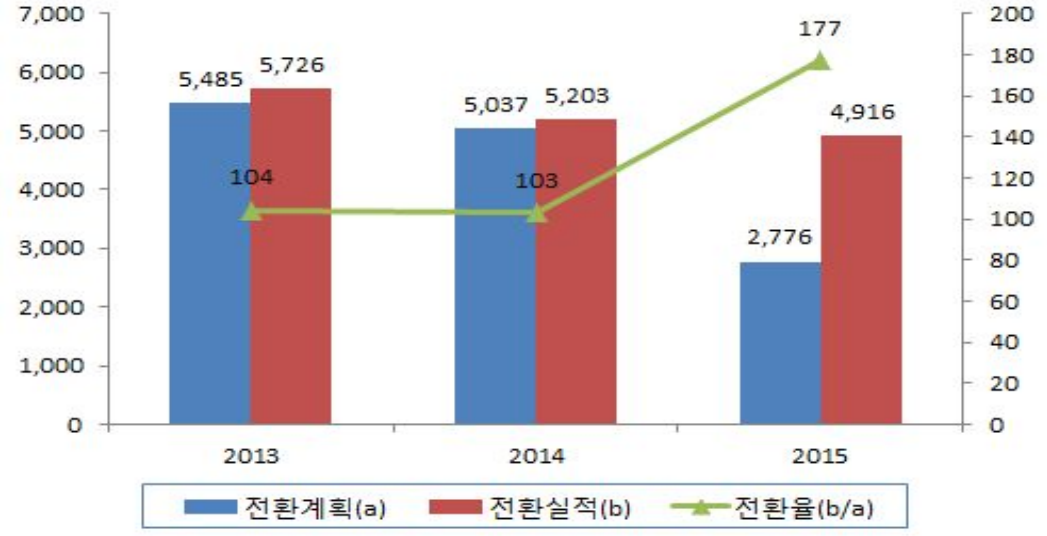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교육부 합동『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추가 전환(2016.2.18.일자)』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주: 1. 공공기관은 공운법에 근거한 311개('16년 신규지정 기관 제외)와 기타 금감원, 한국은행, 한국방송 공사, 한국교육방송 4개 기관을 포함

2. 전환율은 전환계획 대비 전환실적을 의미

〈그림 Ⅰ－12〉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실적

(단위: 명, %)



자료: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교육부 합동『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추가 전환(2016.2.18.일자)』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다. 재무현황[138)]

1) 총평

□ 2013년 말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후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공공기관 부채관리 노력의 결과로, 2014년의 부채 감소세를 2015년에도 이어가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공사채 총량제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전년도 시범실시 되었던 '공사채 총량제도'를 올해부터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등 부채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

○ 이에 공공기관 부채는 2014년 전년대비 0.1% 감소에 이어, 2015년에는 전년대비 2.8%의 감소하며 감소세가 더욱 강화되었음.

□ 최근 5년 간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규모 측면에서 부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자산과 자본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2015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총 505.3조원으로 2014년의 519.7조원 대비 14.4조원이 감소(전년대비 2.8% 감소)함.

- 부채 규모의 감소는 공기업(전년대비 3.2% 감소)과 준정부기관(전년대비 3.5% 감소)의 부채가 감소한데 기인함.
- 반면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는 전년대비 18.5% 상승하였음.

○ 자산은 전년대비 3.7조원 증가한 781.8조원을 기록하였음.

- 자산의 경우 총액 기준으로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2013년 전년대비 5.4% 증가, 2014년 전년대비 2.3% 증가).

○ 자본은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증가, 비핵심 자산매각 등으로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전년대비 18.1조원 증가한 276.5조원을 기록하였음.

---

138) 기획재정부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5.9.16.)』 보도자료, 『2015년 공공기관 결산-재무건전성 대폭 개선, 부채관리목표 조기달성(2016.4.26.)』 보도자료,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 보도자료, 『'16년 정부출자주식 배당금 1조 2,190억원 수납(2016.5.12.)』 보도자료 및 알리오 시스템 유관항목을 참조

○ 재무구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자산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전년대비 0.5% 증가)하는 가운데 자본이 증가(전년대비 7.0% 증가)하면서 부채가 감소(전년대비 2.8% 감소)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표 Ⅰ-80〉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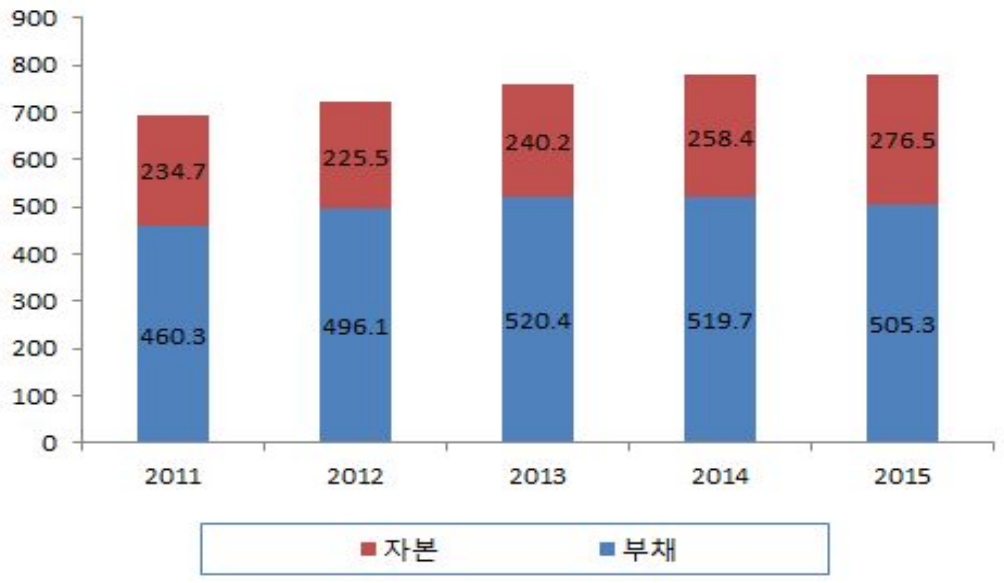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11	'12	전년비 증감 (증가율)	'13	전년비 증감 (증가율)	'14	전년비 증감 (증가율)	'15	전년비 증감 (증가율)
◇ 부채	460.3	496.1	35.8 (7.8)	520.4	24.3 (4.9)	519.7	△0.7 (△0.1)	505.3	△14.4 (△2.8)
· 공기업	328.7	353.2	24.5 (7.5)	373.7	20.5 (5.8)	377.1	3.4 (0.9)	365.0	△12.1 (△3.2)
· 준정부기관	120.6	131.2	10.6 (8.8)	135.1	3.9 (3.0)	130.2	△4.9 (△3.6)	125.6	△4.6 (△3.5)
· 기타공공기관	11.0	11.7	0.7 (6.4)	11.6	△0.1 (△0.9)	12.4	0.8 (6.9)	14.7	2.3 (18.5)
◇ 자본	234.7	225.5	△9.2 (△3.9)	240.2	14.7 (6.5)	258.4	18.2 (7.6)	276.5	18.1 (7.0)
· 공기업	170.9	170.3	△0.6 (△0.4)	174.6	4.3 (2.5)	182.2	7.6 (4.4)	188.3	6.1 (3.3)
· 준정부기관	48.5	39.2	△9.3 (△19.2)	47.8	8.6 (21.9)	57.2	9.4 (19.7)	68.2	11.0 (19.2)
· 기타공공기관	15.3	16.0	0.7 (4.6)	17.8	1.8 (11.3)	19.0	1.2 (6.7)	20.0	1.0 (5.3)
◇ 자산	695.0	721.6	26.6 (3.8)	760.6	39.0 (5.4)	778.1	17.5 (2.3)	781.8	3.7 (0.5)
· 공기업	499.6	523.5	23.9 (4.8)	548.3	24.8 (4.7)	559.2	10.9 (2.0)	553.2	△6.0 (△1.1)
· 준정부기관	169.1	170.4	1.3 (0.8)	182.9	12.5 (7.3)	187.4	4.5 (2.5)	193.8	6.4 (3.4)
· 기타공공기관	26.3	27.7	1.4 (5.3)	29.4	1.7 (6.1)	31.4	2.0 (6.8)	34.7	3.3 (10.5)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참고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공기업은 2011~2015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준정부기관은 2011년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하고 2012~2015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를 작성
3.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그림 Ⅰ-13〉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자료: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Ⅰ-14〉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

(단위: 조원)



자료: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2) 부채 현황

□ 2015년은 2014년의 부채 감축 성과를 이어나가면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향상시킨 회계연도라 할 수 있음.

○ 공운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매년 평균 40조원씩 증가해온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4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2015년에는 부채 감축 성과가 더욱 확대되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전년대비 14.4조원 감소한 505.3조원으로 나타났음.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도 2012년 36%, 2013년 36%, 2014년 35%를 기록한 데 이어 2015년에는 32%를 기록하며 2010년 수준(32%)을 회복하였음[139].

-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경영효율화, 사업 조정, 자산 매각 등을 수행한 결과임.

○ 공운법 제39조의2 및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39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16.7조원 감소(전년대비 약 3.4% 감소)한 480.9조원임[140].

- 이는 『'15~'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15년 부채 전망치 496.6조원과 비교할 경우 15.7조원 적은 수준임.

○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2개 기관(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한전 자회사는 모기업인 한전에 포함)의 부채 규모는 2015년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여 전년대비 18.8조원 줄어든 418.3조원을 기록함.

---

139) 기획재정부 『2015년 공공기관 결산-재무건전성 대폭 개선, 부채관리목표 조기달성(2016.4.26.일자)』 보도자료

14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한전 자회사를 포함한 18개 기관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에도 해당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舊 대한주택보증(주)),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9개 기관임

〈표 Ⅰ-81〉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11	'12	전년비 증감	'13	전년비 증감	'14	전년비 증감	'15	전년비 증감
◇ 부채	460.3	496.1	35.8	520.4	24.3	519.7	△0.7	505.3	△14.4
	(196)	(220)	(24)	(217)	(△3)	(201)	(△16)	(183)	(△18)
공기업	328.7	353.2	24.5	373.7	20.5	377.1	3.4	365.0	△12.1
	(192)	(207)	(15)	(214)	(7)	(207)	(△7)	(194)	(△13)
・시장형	141.2	155.6	14.4	168.5	12.9	175.9	7.4	171.4	△4.5
	(163)	(183)	(20)	(194)	(11)	(196)	(2)	(174)	(△22)
・준시장형	187.5	197.6	10.1	205.2	7.6	201.2	△4.0	193.6	△7.6
	(223)	(232)	(9)	(234)	(2)	(218)	(△16)	(215)	(△3)
준정부기관	120.6	131.2	10.6	135.1	3.9	130.2	△4.9	125.6	△4.6
	(248)	(335)	(87)	(283)	(△52)	(227)	(△56)	(184)	(△43)
・기금관리형	83.8	86.9	3.1	87.9	1.0	79.3	△8.6	71.4	△7.9
	(310)	(329)	(19)	(310)	(△19)	(252)	(△58)	(193)	(△59)
・위탁집행형	36.8	44.3	7.5	47.2	2.9	50.9	3.7	54.2	3.3
	(171)	(346)	(175)	(243)	(△103)	(198)	(△45)	(173)	(△25)
기타공공기관	11.0	11.7	0.7	11.6	△0.1	12.4	0.8	14.7	2.3
	(72)	(72)	(0)	(65)	(△7)	(65)	(0)	(73)	(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	436.3	474.0	37.7	498.8	24.8	497.6	△1.2	480.9	△16.7
	(206)	(235)	(29)	(233)	(△2)	(216)	(△17)	(194)	(△22)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12개)	378.7	410.2	31.5	435.7	25.5	437.1	1.4	418.3	△18.8
	(332)	(414)	(82)	(430)	(16)	(415)	(△15)	(352)	(△63)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보도자료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참고

주: 1. ( )는 부채비율(부채/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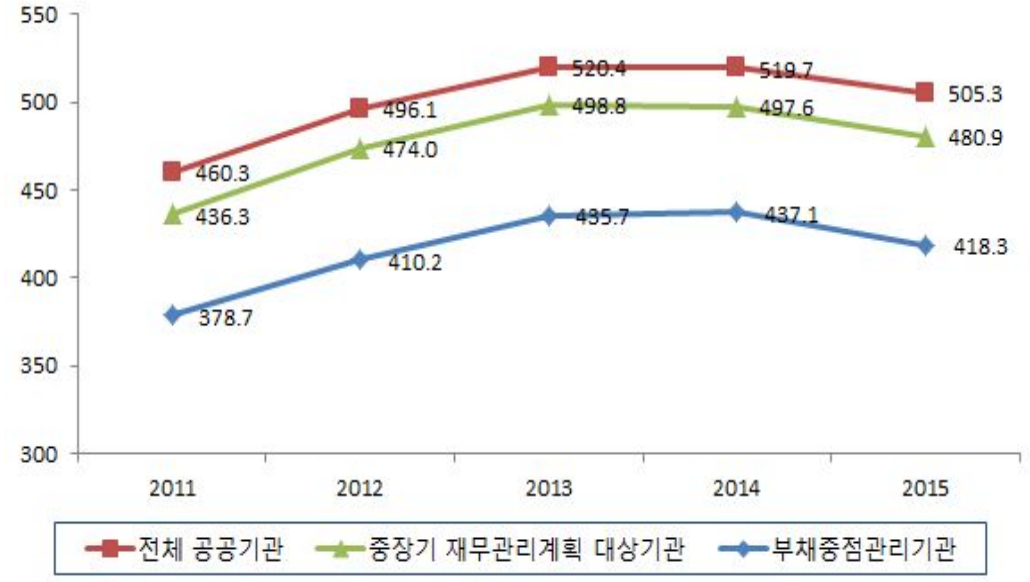
2. 공기업은 2011~2015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준정부기관은 2011년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하고 2012~2015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를 작성

3.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4. 소수 반올림 과정, 증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그림 Ⅰ-15〉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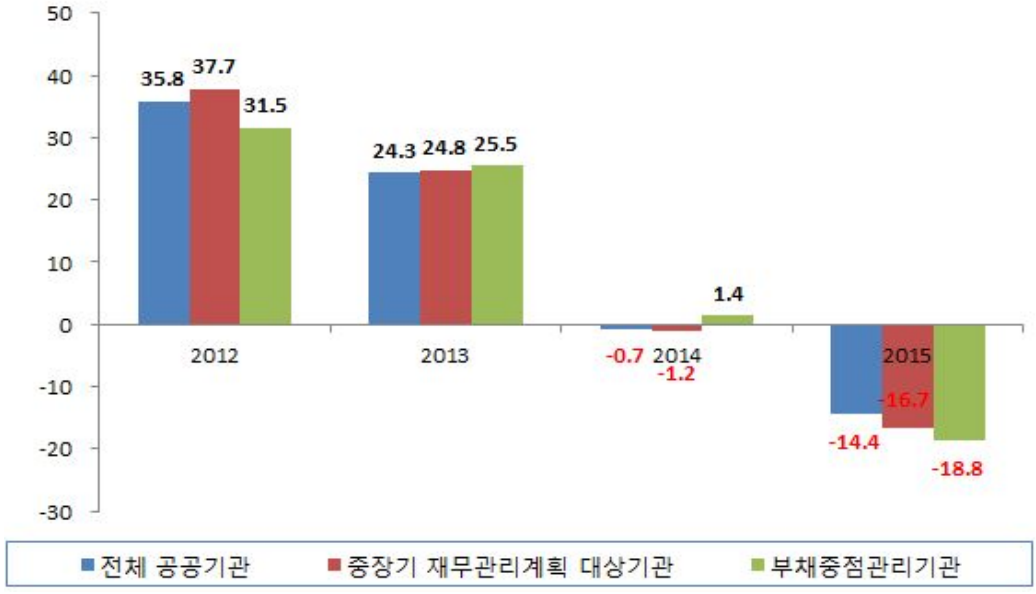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Ⅰ-16〉 최근 4년간 부채 증감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141], 2015년 마침내 200%를 하회하여 2011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15년에는 2014년 201%보다 18%p 하락한 183%를 기록하였음.

○ 전년대비 부채비율 변동을 기관단위로 살펴보면 153개 기관이 개선되었으며, 144개 기관이 악화되었음[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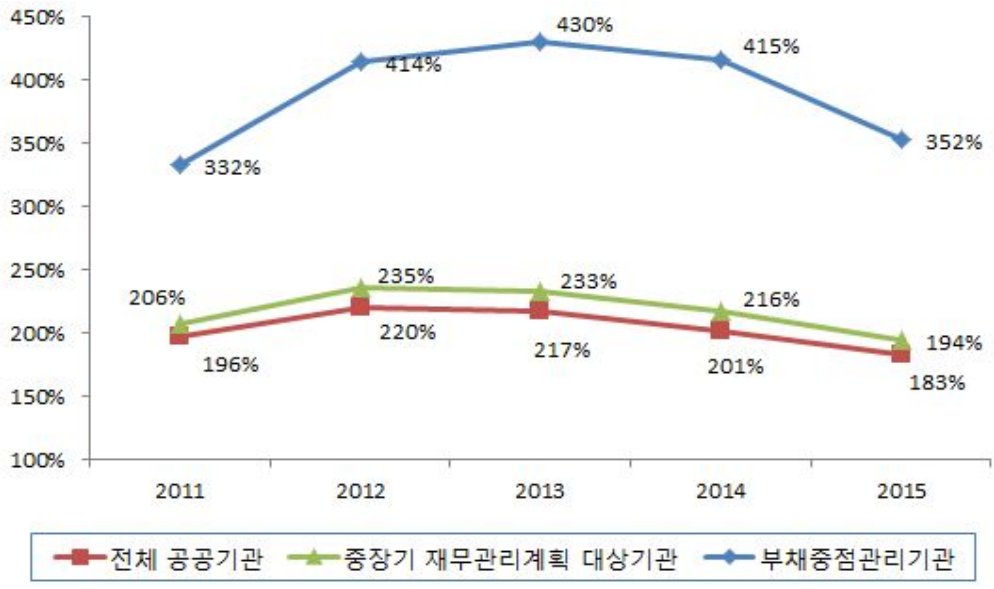
- 부채비율 개선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으며, 반대로 부채비율이 악화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있음.

○ 중장기 재무관리관리계획 대상기관인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역시 200%를 하회하여, 2014년 216%보다 22%p 하락한 194%를 기록하였음.

- 이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전망치인 197%보다도 3%p 낮은 수치임.

○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도 2014년 415%보다 63%p 하락한 352%를 기록하여 전년도(15%p 하락)보다 더 큰 하락세를 이어가며 높은 개선 성과를 나타냄.

〈그림 Ⅰ-17〉 최근 5년간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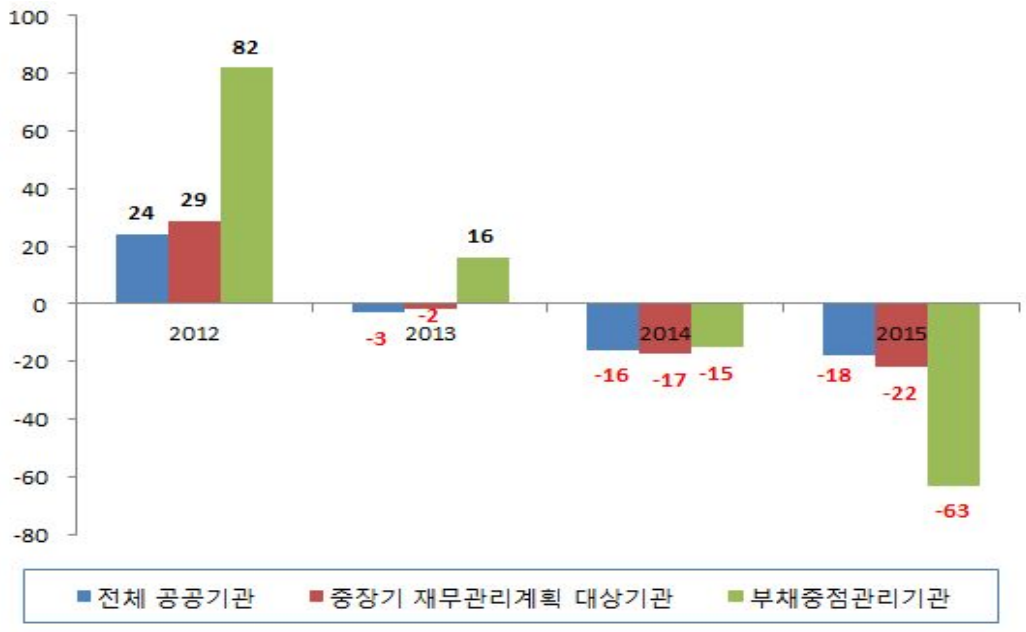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141) 부채비율은 자본 대비 부채비중(부채/자본)임

142) 기획재정부 『2015년 공공기관 결산-재무건전성 대폭 개선, 부채관리목표 조기달성(2016.4.26.일자)』 보도자료

〈그림 Ⅰ－18〉 최근 4년간 부채비율 증감 추이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 현황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2015년 처음으로 부채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준정부기관은 전년도에 이어 부채 감축 성과를 보이는 등 지난해의 괄목할만한 부채 감축 성과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음.

○ 공기업은 2012년부터 부채 규모의 증가세가 둔화되어오다 2015년 마침내 부채 규모가 전년대비 12.1조원 감소한 365.0조원을 기록하며 2015년의 공공기관 부채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약 4.4조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약 3.7조원)가 괄목할만한 부채 감축 실적을 보였음.

○ 준정부기관 역시 전년도의 부채 감축 성과를 지속하면서 전년대비 4.6조원 감소한 125.6조원을 기록하였음.

-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부채 감축 성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부채 감소(약 8.1조원 감소)가 두드러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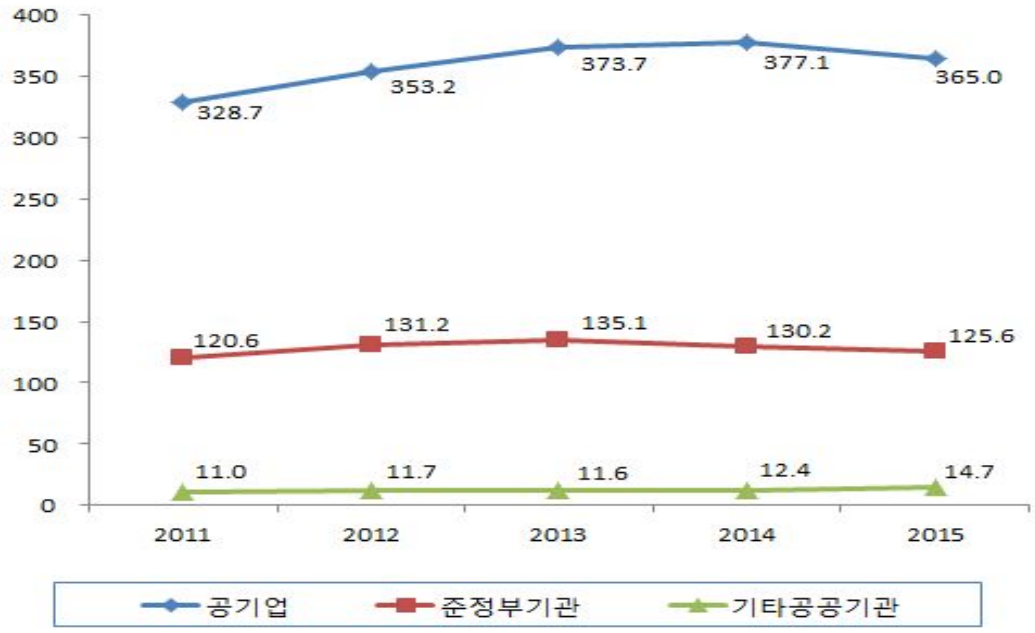
○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부채 규모가 소폭 늘어나 전년대비 2.3조원 증가한 14.7조원을 기록하였음.

○ 부채증가율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상승세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

- 공기업의 경우, 부채증가율의 하락세가 준정부기관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 2014년은 0.9%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2015년은 3.2%의 감소율을 기록함.
- 준정부기관 역시 감소세를 지속하며 2015년에는 3.5%의 감소율을 기록함.
- 기타공공기관은 2011~2013년까지는 부채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14년에 상승세로 돌아서 2015년에는 전년대비 11.6%p 상승한 18.5%의 증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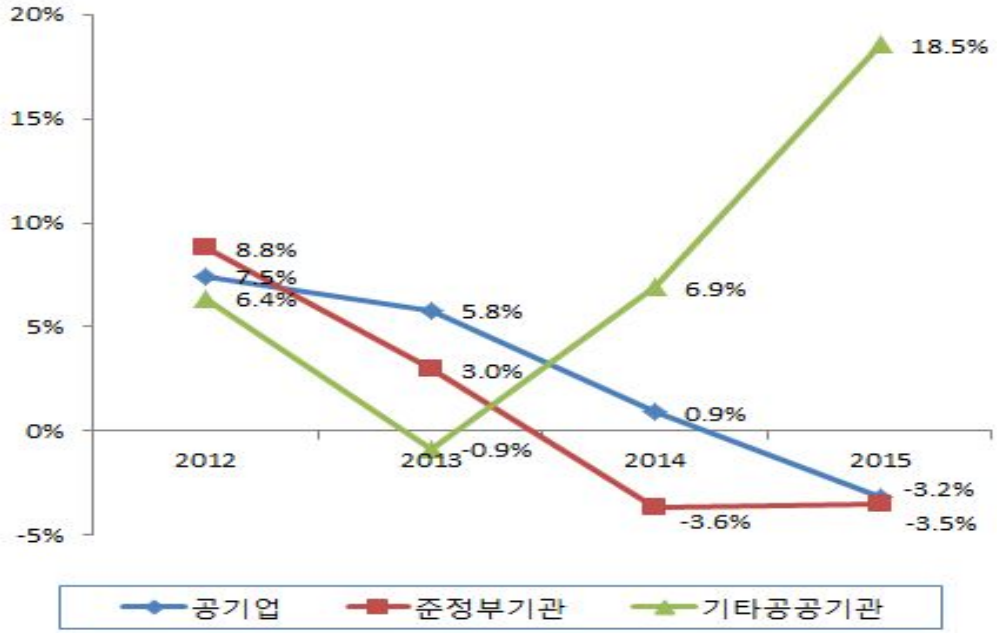
〈그림 Ⅰ－19〉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Ⅰ－2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전년도의 부채비율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음.

○ 공기업은 30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한전 자회사 6개 기관 포함)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 조정 및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13%p 감소한 194%를 기록하였음.

-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된 공기업으로는 한국철도공사(411%→283%, 128%p 감소), 한국가스공사(381%→321%, 60%p 감소)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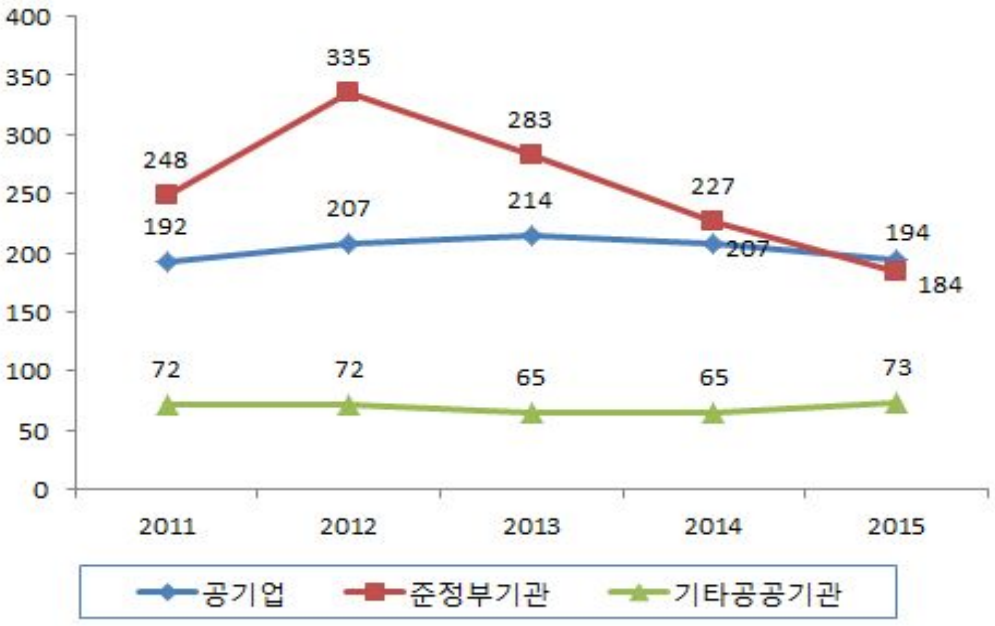
○ 준정부기관 역시 지속적인 부채비율 하락세를 2015년에도 이어가며 전년대비 43%p 감소한 184%를 기록하였음.

-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된 준정부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1,084%→900%, 184%p 감소)이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다시 상승(전년대비 8%p 상승)하며 73%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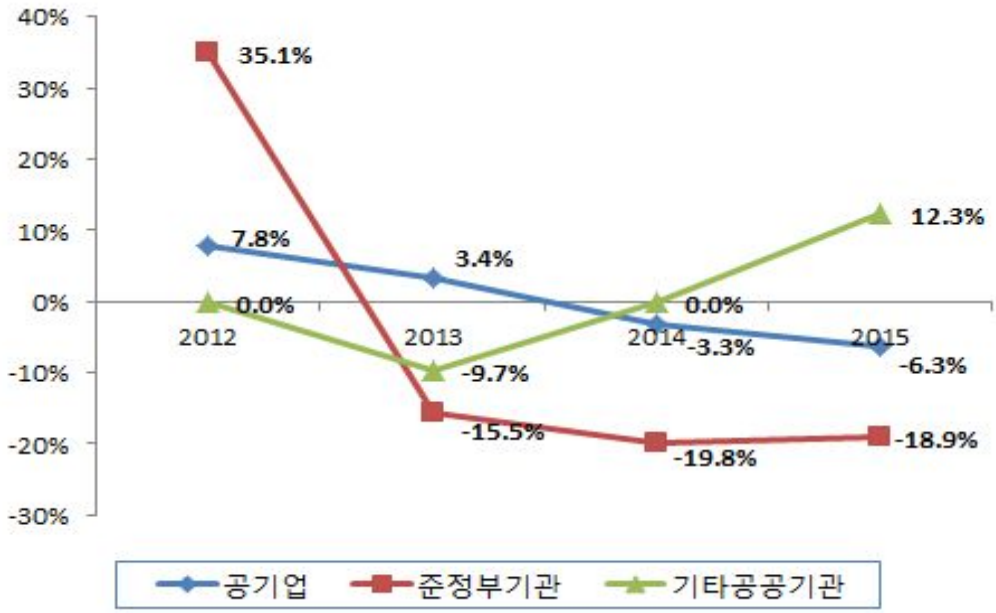
〈그림 Ⅰ-21〉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Ⅰ-22〉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가율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2015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를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약 213조원으로 부채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약 175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2.2%, 34.7%를 차지하고 있음.

○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교육부로 전년대비 약 2조원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전년대비 약 6.8조원 감소하였음.

○ 부채 증가율로 보면 경찰청이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124.7% 증가)을 나타냈으며, 여성가족부가 가장 높은 감소율(28.4% 감소)을 나타냈음.

〈표 Ⅰ-82〉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기관 수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343[1]	4,603,311	4,960,625	5,204,365	5,196,686	5,052,897	△143,789	△2.8
경찰청	1	133	365	432	572	1,284	712	124.7
고용노동부	12	9,595	8,665	7,973	7,126	7,572	446	6.3
공정거래위원회	2	604	831	1,084	55	111	56	101.9
관세청	1	2	4	5	3	2	△1	△26.5
교육부	24	99,639	118,472	134,577	157,585	177,624	20,039	12.7
국가보훈처	3	1,348	1,200	1,424	1,477	1,193	△284	△19.3
국무조정실	27	3,204	4,423	4,601	4,503	5,171	668	14.8
국민안전처	2	153	190	202	251	344	93	36.8
국방부	3	283	264	264	275	254	△21	△7.7
국토교통부	23	2,020,971	2,128,837	2,222,678	2,190,475	2,132,490	△57,985	△2.6
금융위원회	6[1]	574,361	602,777	594,437	508,459	440,644	△67,815	△13.3
기상청	3	14	17	46	65	56	△9	△13.5
기획재정부	2[1]	1,301	1,332	1,380	1,480	1,298	△182	△12.3
농림축산식품부	10	66,274	79,438	81,116	87,828	95,895	8,067	9.2
농촌진흥청	1	6	40	55	57	66	9	15.1
문화재청	1	89	127	137	135	138	3	2.5
문화체육관광부	32	17,705	18,603	19,878	20,796	22,268	1,472	7.1
미래창조과학부	55	35,396	34,355	34,127	35,270	37,783	2,513	7.1
방송통신위원회	2	8,152	4,564	4,211	3,855	3,884	29	0.8
방위사업청	2	4,709	6,134	6,490	6,481	7,036	555	8.6
법무부	4	294	317	357	409	466	57	14.1
보건복지부	24	23,121	84,664	84,803	86,843	88,778	1,935	2.2
산림청	2	64	63	60	55	51	△4	△7.1
산업통상자원부	41	1,444,942	1,585,022	1,719,100	1,799,147	1,751,438	△47,709	△2.7
식품의약품안전처	4	13	27	30	33	50	17	50.7
여성가족부	5	72	80	69	69	50	△19	△28.4
외교부	3	1,357	1,036	943	865	678	△187	△21.6
원자력안전위원회	3	355	360	370	468	570	102	21.9
인사혁신처	1	63,546	67,162	68,601	71,820	71,546	△274	△0.4
중소기업청	8	157,372	154,373	159,021	158,027	152,558	△5,469	△3.5
통일부	2	55	47	40	34	31	△3	△8.0
특허청	6	964	943	999	955	923	△32	△3.3
해양수산부	19	31,205	31,581	33,153	34,586	34,451	△135	△0.4
행정자치부	2	11	10	12	21	20	△1	△4.1
환경부	7	36,002	24,302	21,687	16,607	16,173	△434	△2.6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참고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 2015년도 부채 규모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2014년도 부채 상위 10개 기관과 일치함.

○ 다만 2014년도 부채 규모가 9번째로 컸던 한국철도공사가 2015년 큰 폭의 부채 절감을 이루어내면서 2015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채 규모보다 작아짐.

○ 10개 기관 모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이며 이 중 예금보험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에너지 및 SOC 분야 공기업에 해당됨.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한 9개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인 동시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른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에도 해당됨.

〈표 Ⅰ-83〉 2015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조원, %, %p)

순위	기관명	'14	'15	증감	증감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전망치 (B)	전망치 대비 초과감축 (B-A)
1	한국토지주택공사	137.9 (409.2)	134.2 (375.9)	△3.7 (△33.3)	△2.7 (△8.1)	138.9 (388)	4.7 (12.1)
2	한국전력공사(별도)	56.3 (129.7)	53.1 (99.8)	△3.2 (△29.9)	△5.7 (△23.1)	52.4 (101)	△0.7 (1.2)
3	예금보험공사	41.4	33.3	△8.1	△19.6	35.5	2.2
4	한국가스공사	37.0 (377.6)	32.3 (319.8)	△4.7 (△57.8)	△12.7 (△15.3)	33.6 (334)	1.3 (14.2)
5	한국수력원자력(주) (별도)	27.6 (128.7)	27.4 (116.9)	△0.2 (△11.8)	△0.7 (△9.2)	28.2 (126)	0.8 (9.1)
6	한국도로공사	26.5 (92.0)	27.0 (88.2)	0.5 (△3.8)	1.9 (△4.1)	27.9 (91)	0.9 (2.8)
7	한국철도시설공단	19.0 (111.1)	20.0 (110.5)	1.0 (△0.6)	5.3 (△0.5)	20.1	0.1
8	한국석유공사	18.5 (220.2)	19.0 (452.4)	0.5 (232.2)	2.7 (105.4)	20.1 (272)	1.1 (△180.4)
9	중소기업진흥공단	14.9	14.3	△0.6	△4.0	15.1	0.8
10	한국철도공사	17.9 (416.3)	13.5 (287.2)	△4.4 (△129.1)	△24.6 (△31.0)	13.4 (324)	△0.1 (36.8)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2015.9.16.일자)』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 )는 부채비율(=부채/자본)

2. 예금보험공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 기관과 부채비율을 일괄 비교하기 곤란하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3.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무자본특수법인이므로『부채비율=부채/자산』을 적용

4.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부채는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

□ 공공기관 부채 상위 10개 기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143].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년도에 이어 전체 공공기관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택지 등 토지 매출 증가로 큰 폭의 부채감축 실적(전년대비 3.7조원 감축)을 이루어 내며 2015년 부채가 134.2조원을 기록함.

- 이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의 전망치(138.9조원)보다도 약 4.7조원을 초과로 감축한 실적임.
- 또한 부채비율 역시 전년대비 33%p 감소한 376%를 기록하였음.

○ 한국전력공사(별도 재무제표 기준)는 삼성동 부지 매각뿐 아니라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구입전력비 감소의 영향으로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이 하락하였음.

-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3.2조원,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29.9%p(연결 기준으로는 41%p 하락) 하락하였음.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전년도에 이어 공공기관 중 가장 큰 폭으로 부채 규모가 줄어든 기관으로 나타났음.

- 파산채권 회수 및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사에 대한 지분매각·배당 등의 방식으로 전년대비 8.1조원을 감축하면서 33.3조원을 기록하였음[144].

○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매입채무 감소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전년대비 4.7조원 감축)의 부채감축 실적을 거두었음.

- 부채비율 역시 '14년 411%에서 '15년 283%로 전년대비 128%p 하락하였음.

○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부채 규모로는 0.2조원, 부채비율로는 11.8%p를 감축하며 27.6조원(부채비율 116.9%)을 기록하였음.

○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년대비 부채 증가규모는 1조원 미만이며, 부채비율은 각각 전년대비 3.8%p, 0.6%p 하락하였음.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의 전망치와 비교해서도 각각 0.9조원과 0.1조원 초과 감축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음.

○ 한국석유공사는 부채 규모 측면에서는 1조원 미만으로 증가(전년대비 0.5조원 증가)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 및 다나 등 해외자산 손상에 따른 자본 감소로 부채비율이 2014년 221%에서 2015년 453%로 크게 증가하였음(전년대비 232%p 증가).

---

143) 기획재정부 『2015년 공공기관 결산-재무건전성 대폭 개선, 부채관리목표 조기달성(2016.4.26.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144) 예금보험공사 『예보, 지난 2년간 13.4조원 부채 줄였다(2016.2.24.일자)』 보도자료 참고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의 전망치와 비교해 볼 때도 부채 규모로는 1.1조원 초과 감축을 달성하였으나, 부채비율은 전망치 대비 180.4%p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년대비 0.6조원을 감축하여 14.3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전망치(15.1조원)를 0.8조원 초과하여 감축한 것임.

- 다만 한국철도공사의 부채감축규모가 커서 전년도에 비해 순위 상으로는 상승하였음.

○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규모는 공항철도 매각과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손익 개선효과로 인해 전년대비 4.4조원이 줄어든 13.5조원을 기록하였음.

- 부채비율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14년 411%에서 2015년 283%로 전년대비 128%p 하락하였음.

3) 자산 현황

□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공공기관 자산 총액은 2014년 778.1조원에서 0.5% 증가(3.7조원)한 781.8조원임.

○ 공공기관 자산 규모 증가 추이를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자산이 감소(전년대비 6.0조원 감소)한 반면 준정부기관(전년대비 6.4조원 증가)과 기타 공공기관(전년대비 3.3조원 증가)은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84〉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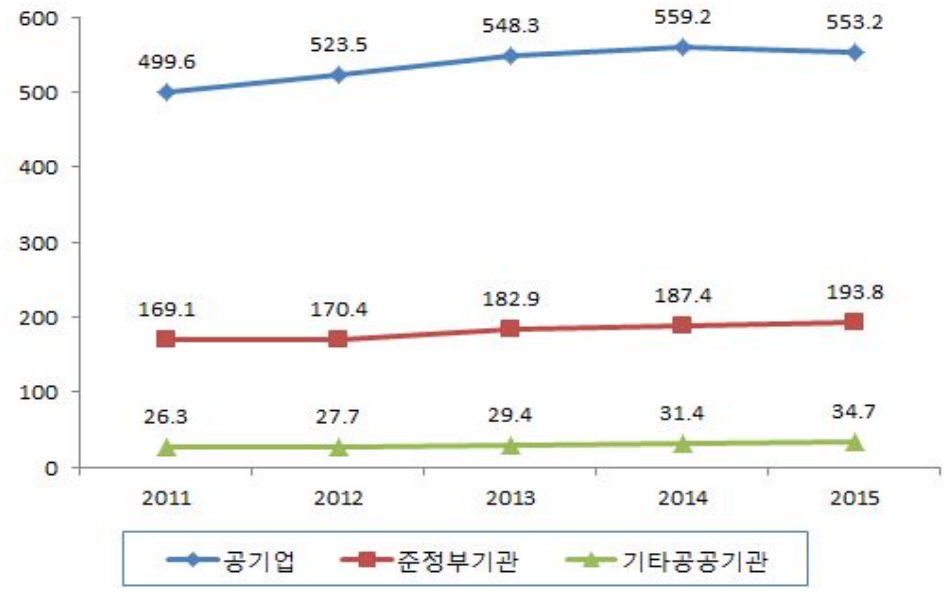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695.0	721.6	760.6	778.1	781.8	3.7	0.5
공기업	499.6	523.5	548.3	559.2	553.2	△6.0	△1.1
·시장형	227.9	240.7	255.3	265.8	269.7	3.9	1.5
·준시장형	271.7	282.8	293.0	293.4	283.5	△9.9	△3.4
준정부기관	169.1	170.4	182.9	187.4	193.8	6.4	3.4
·기금관리형	110.8	113.3	116.3	110.8	108.3	△2.5	△2.3
·위탁집행형	58.3	57.1	66.6	76.6	85.5	8.9	11.6
기타공공기관	26.3	27.7	29.4	31.4	34.7	3.3	10.5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보도자료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참고

〈그림 Ⅰ-23〉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자산증가율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2012년부터 자산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2015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부(-)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타 공공기관은 2012년부터 자산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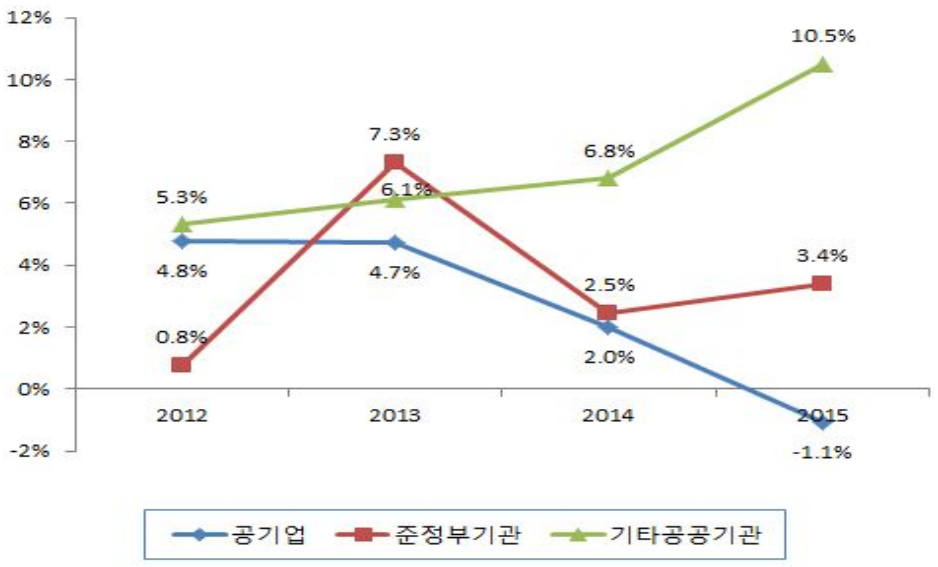
○ 공기업의 2015년 자산 증가율은 △1.1%(전년대비 3.1%p 하락)로 30개 기관 중 17개 기관이 전년대비 자산이 감소함.

-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전년대비 약 5.9조원 감소), 한국가스공사(전년대비 약 4.4조원 감소), 한국철도공사(전년대비 약 4.0조원 감소)의 자산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준정부기관의 2015년 자산증가율은 3.4%로 전년대비 0.9%p 상승하였음.

○ 기타공공기관은 2012년부터 자산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0.5%로 전년대비 3.7%p 상승하였음.

〈그림 Ⅰ－24〉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2015년 공공기관 자산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약 305조원으로 자산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약 266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39.0%, 34.0%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산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전년대비 약 5.5조원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전년대비 약 7.5조원 감소하였음.

○ 자산 증가율로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57.4% 증가)을 나타냈으며, 기상청이 가장 높은 감소율(6.2% 감소)을 나타냈음.

〈표 Ⅰ-85〉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기관 수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343[1]	6,949,986	7,216,296	7,605,844	7,780,715	7,817,753	37,038	0.5
경찰청	1	2,356	2,593	2,670	2,748	3,535	787	28.6
고용노동부	12	20,140	18,347	17,401	17,798	18,382	584	3.3
공정거래위원회	2	579	810	1,086	911	909	△2	△0.1
관세청	1	7	13	17	18	19	1	6.7
교육부	24	257,694	281,797	314,547	344,787	371,592	26,805	7.8
국가보훈처	3	7,503	3,652	4,021	4,148	4,090	△58	△1.4
국무조정실	27	5,820	7,228	7,925	8,749	9,703	954	10.9
국민안전처	2	882	967	1,048	1,205	1,415	210	17.4
국방부	3	492	535	539	555	556	1	0.1
국토교통부	23	2,926,563	2,980,933	3,106,308	3,123,353	3,048,440	△74,913	△2.4
금융위원회	6[1]	580,365	592,343	598,834	530,707	507,006	△23,701	△4.5
기상청	3	51	88	109	121	113	△8	△6.2
기획재정부	2[1]	5,730	5,807	6,035	6,507	6,205	△302	△4.6
농림축산식품부	10	107,514	122,189	124,863	131,986	141,560	9,574	7.3
농촌진흥청	1	109	146	184	196	215	19	9.7
문화재청	1	144	187	163	164	170	6	3.9
문화체육관광부	32	67,608	71,348	73,410	76,044	77,399	1,355	1.8
미래창조과학부	55	91,546	96,068	97,905	104,494	111,795	7,301	7.0
방송통신위원회	2	11,719	8,086	7,660	7,273	7,342	69	0.9
방위사업청	2	11,674	13,425	15,053	16,861	18,720	1,859	11.0
법무부	4	1,563	1,642	1,814	2,020	2,083	63	3.1
보건복지부	24	115,691	161,273	225,827	288,634	343,922	55,288	19.2
산림청	2	1,033	1,054	1,056	1,059	1,064	5	0.5
산업통상자원부	41	2,251,781	2,370,888	2,518,609	2,627,965	2,659,815	31,850	1.2
식품의약품안전처	4	19	40	36	38	60	22	57.4
여성가족부	5	152	144	146	199	187	△12	△6.0
외교부	3	3,339	3,043	2,856	2,631	2,559	△72	△2.7
원자력안전위원회	3	859	823	931	1,066	1,182	116	10.9
인사혁신처	1	146,919	154,744	152,271	157,092	159,089	1,997	1.3
중소기업청	8	176,652	172,899	178,541	178,965	175,311	△3,654	△2.0
통일부	2	92	123	116	123	135	12	9.4
특허청	6	1,241	1,235	1,346	2,170	2,170	0	-
해양수산부	19	112,242	113,416	116,501	119,847	121,702	1,855	1.5
행정자치부	2	34	32	34	45	47	2	3.1
환경부	7	39,872	28,383	25,984	20,235	19,262	△973	△4.8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참고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 자산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기관 모두 부채 상위 10개 기관에 포함됨.

○ 상위 10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전년대비 자산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기관의 경우 전년에 비해 자산 감소세가 더 강화된 모습을 보임.

○ 전체 공공기관 중 자산증가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별도)로, 삼성동 본사부지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과 발전소 및 송·변전 시설 등 전력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2015년 자산이 전년대비 약 6.6조원 증가하였음[145].

-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비 지출액을 초과하는 보험료 수익과 정부지원금 수령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로 전년대비 약 5.3조원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신규노선 준공 및 기존노선 확장으로 약 2.3조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음.

○ 반면 자산 감소가 일어난 기관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자산 감소가 일어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로 무형자산 손상차손 인식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약 5.9조원 감소하였음.

- 이 밖에 예금보험공사는 파산배당에 따른 구상채권 감소 등의 이유로 전년대비 약 4.6조원(기금 계정 포함) 자산 감소가 일어났음.

〈표 Ⅰ-86〉 2015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원, %)

순위	기관명	2014년	2015년	증감액	증감율
1	한국토지주택공사	1,716,197	1,698,895	△17,302	△1.0
2	한국전력공사(별도)	997,191	1,063,063	65,872	6.6
3	한국도로공사	553,373	576,057	22,684	4.1
4	한국수력원자력(주)	492,371	510,439	18,068	3.7
5	한국가스공사	467,720	423,853	△43,867	△9.4
6	국민건강보험공단	264,756	317,427	52,671	19.9
7	한국석유공사	268,893	232,052	△36,841	△13.7
8	예금보험공사	255,503	209,882	△45,621	△17.9
9	한국수자원공사	254,391	195,506	△58,885	△23.1
10	한국철도공사	222,082	181,987	△40,095	△18.1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2.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

145) 국회예산정책처『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p.40.

라. 손익현황

□ 최근 5개년 간 공공기관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5.3조원 순이익을 실현하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이후, 흑자폭을 키워가며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 2015년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2조원 증가한 12.6조원(전년대비 10.5% 증가)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음.

□ 공공기관 유형별로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중 준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음.

○ 공기업은 2011~2013년 적자를 기록하고 2014년 흑자 전환을 이룬 후 2015년에는 흑자폭을 더욱 늘리며 4.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음.

- 특히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당기순이익 증가(약 10.2조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은 큰 폭의 당기순손실(약 5.8조원)을 기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영향으로 전년도의 흑자를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적자를 실현하여, 약 3.8조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음.

○ 준정부기관은 2012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실현하며 2015년 역시 7.9조원(전년대비 0.6조원 증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약 2.2조원(기금 계정 포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예금보험공사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5조원 증가한 2.2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전년도의 흑자를 이어나갔으나 흑자폭은 줄어들어 전년대비 0.9조원 감소한 5.7조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였음.

○ 기타공공기관은 전년도의 흑자 반전을 2015년에도 이어나가며 0.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음.

〈표 Ⅰ－87〉 최근 5년간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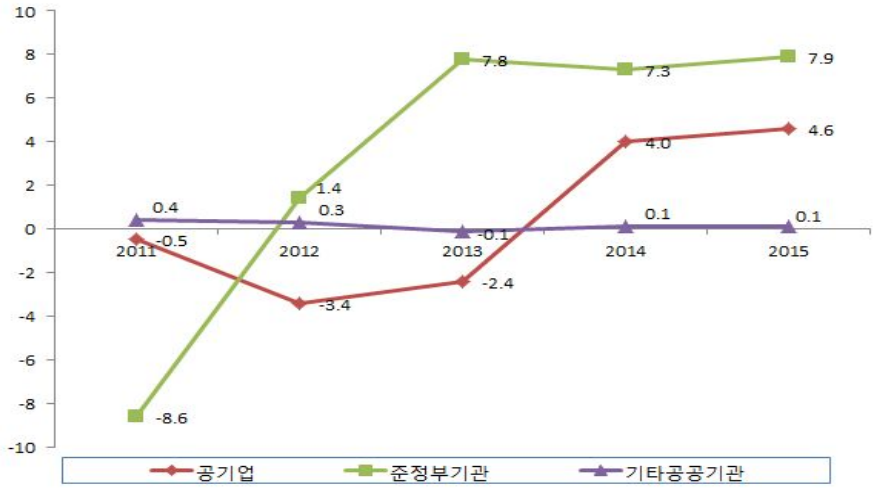
구분	'11	'12	전년비 증감	'13	전년비 증감	'14	전년비 증감	'15	전년비 증감 (증감율)
합 계	△8.7	△1.8	6.9	5.3	7.1	11.4	6.1	12.6	1.2 (10.5)
· 공기업	△0.5	△3.4	△2.9	△2.4	1.0	4.0	6.4	4.6	0.6 (15.0)
· 시장형	△2.7	△2.8	△0.1	0.1	2.9	2.3	2.2	8.4	6.1 (265.2)
· 준시장형	2.2	△0.6	△2.8	△2.5	△1.9	1.7	4.2	△3.8	△5.5 (-)
· 준정부기관	△8.6	1.4	10.0	7.8	6.4	7.3	△0.5	7.9	0.6 (8.2%)
· 기금관리형	△10.7	△2.9	7.8	0.9	3.8	0.7	△0.2	2.2	1.5 (214.3)
· 위탁집행형	2.1	4.3	2.2	6.9	2.6	6.6	△0.3	5.7	△0.9 (-)
· 기타공공기관	0.4	0.3	△0.1	△0.1	△0.4	0.1	0.2	0.1	0.0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	△9.3	△2.4	6.9	4.9	7.3	10.7	5.8	11.8	1.1 (10.3)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12개)	△12.9	△8.4	4.5	△3.0	5.4	2.2	5.2	4.4	2.2 (100)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보도자료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공기업은 2011~2015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준정부기관은 2011년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하고 2012~2015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를 작성
2.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을 대상으로 금액 산출
3. 일부 공공기관은 기관 성격상 국가회계기준 적용(당기 순이익 산출이 불가)

〈그림 Ⅰ-2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2015년에 순이익을 실현한 상위 7개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전년대비 당기순이익 규모가 증가함.

○ 한국전력공사(별도 재무제표 기준)는 2013년부터 당기순이익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2015년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구입전력비 감소에 기인한 영업이익 상승 및 삼성동 사옥 매각관련 처분이익 실현으로, 사상 최대인 약 10.2조원(전년대비 9.1조원 증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흑자로 전환하여 꾸준히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5년 역시 5.2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음.

- 다만,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실현한 당기순이익 규모가 약 0.8조원 정도 감소하는 등 순이익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는 차입금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와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8조원 증가한 약 2.2조원을 기록하였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흑자를 실현한 기관으로서, 2015년에도 분양 토지 매각실적 개선 및 사업비 절감에 따른 영업이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약 1.3조원 증가한 9.8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음.

○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흑자를 실현한 기관으로, 2015년에도 운항 및 여객 수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로 전년대비 약 1.5조원 증가한 7.7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음.

□ 2015년에 순손실이 발생한 기관 중 상위 3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임.

○ 전체 공공기관 중 2015년 순손실 발생액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로 직전 4년 간 흑자를 지속해오다 2015년 약 5.8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제 지원수입액과의 차이인 6.3조원을 올해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서 전년대비 약 6.1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 한국석유공사는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른 매출액 감소 및 자원개발사업 투자 가치 하락으로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면서 전년대비 약 2.9조원이 감소한 4.5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투자주식평가손실과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인식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8조원이 감소한 약 2.1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표 Ⅰ-88〉 2015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원, %)

순위		기관명	2014년	2015년	증감액	증감율
순이익	1	한국전력공사(별도)	10,399	101,657	91,258	877.6
	2	국민건강보험공단	60,570	52,424	△8,146	△13.4
	3	한국수력원자력(주)	14,461	24,862	10,401	71.9
	4	예금보험공사	3,809	21,983	18,174	477.1
	5	한국토지주택공사	8,479	9,801	1,322	15.6
	6	인천국제공항공사	6,185	7,714	1,529	24.7
	7	한국남동발전(주)	3,832	6,012	2,180	56.9
순손실	1	한국수자원공사	2,993	-57,956	△60,950	△2,036.2
	2	한국석유공사	-16,111	-45,003	△28,891	△179.3
	3	한국광물자원공사	-2,635	-20,636	△18,001	△683.2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 2016년 5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정부배당 실적을 살펴보면,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은 2015년 8,794억에서 2016년 1조 2,190억원으로 약 3,396억원 증가(전년대비 39.0% 증가)함[146].

146) 기획재정부 『'16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2,190억원 수납(2016.5.12.일자)』 보도자료

○ 36개 정부출자기관 중 당기 순손실 발생 기관, 이월결손 보전 기관, 국회 결산 승인기관 등 13개 기관을 제외한 23개 기관으로부터 출자주식 배당금을 수납하였음[147].

- 2016년 당기순손실을 사유로 정부 배당에서 제외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대한석탄공사 등 7개 기관임.
- 이외에 서울신문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88관광개발(주) 등 4개 기관이 이월결손 보전의 사유로 정부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국회 결산 승인기관으로 정부 배당에서 제외되었음.

○ 2016년 정부 배당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전력공사의 본사 매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 주요 배당 실시기관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배당 확대정책에 따른 평균 배당성향의 상승에 기인함.

- 배당 실시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5.3조원에서 2015년 14.3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평균 배당성향 역시 2015년 24.38%에서 2016년 30.25%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6년 중기배당목표 28%를 초과하는 수치임[148].

○ 36개 정부출자기관 중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31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 중 2016년에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2개 기관임.

- 공운법 상 2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정부배당 실적은 총 12,181억원으로 2016년에 발생한 전체 정부 배당수입의 약 99.9%를 차지함.
- 이들 공공기관이 2016년에 발생시킨 정부배당 실적은 2015년(23개 기관, 8,755억원) 대비 약 3,426억원이 증가한 수준임.

○ 2016년 정부 배당수입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에 7,304억원,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에 4,886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수납됨.

---

147) 정부는 배당 결정 시 정부 재정여건, 정부출자기관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정부출자기관별 경영지표(자체수입비중,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내부유보율 등)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배당성향을 산출함

148) 정부는 '15년부터 정부 출자기관들의 평균 배당성향을 매년 3%p씩 상향조정하여 '20년 배당성향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2015년 25%→2016년 28%→2017년 31%→2018년 34%→2019년 37%→2020년 40%)

〈표 Ⅰ－89〉 36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배당			'16년 배당		
		일반회계	특별·기금	소계	일반회계	특별·기금	소계
1	한국전력공사	680		680	3,622		3,622
2	중소기업은행	1,411		1,411	1,491		1,491
3	한국토지주택공사	352	242	594	689	574	1,263
4	부산항만공사	323		323	427		427
5	한국공항공사	288	269	557	339	316	655
6	한국자산관리공사	160		160	158		158
7	한국농어촌공사	73		73	141		141
8	한국주택금융공사	236	29	265	113	11	124
9	울산항만공사	77	0.05	77	108	0.06	108.06
10	한국수출입은행	106		106	40		40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1		51	40		40
12	한국가스공사	52	8	60	35	6	41
13	인천항만공사	33	14	47	32	14	46
14	한국감정원	17		17	25		25
15	한국조폐공사	10		10	19		19
16	*한국방송공사*	*10*		*10*	*14*		*14*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9		39	12		12
1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1		11
19	*한국교육방송공사*	*3*	*1*	*4*	*5*	*4*	*9*
20	한국도로공사	3	255	258	2	322	324
21	한국수자원공사	721		721			
22	한국산업은행	420	42	462			
23	한국관광공사						
24	한국석유공사						
25	*서울신문사*						
26	한국광물자원공사						
27	한국철도공사						
28	여수광양항만공사						
29	인천국제공항공사		1,980	1,980		2,706	2,706
30	주택도시보증공사		420	420		633	633
31	한국투자공사		360	360		150	150
32	한국지역난방공사		84	84		145	145
33	*대한송유관공사*					9	9
34	88관광개발(주)						
35	*공항철도주식회사*						
36	대한석탄공사						
합 계('16.4월말 기준)		5,065 (21개)	3,704 (13개)	8,769 (25개)	7,304 (18개)	4,886 (12개)	12,190 (23개)

자료: 기획재정부 『'16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2,190억원 수납(2016.5.12.일자)』 보도자료

주: 1. 36개 정부출자기관 중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31개임(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은 이탤릭체로 표기)

2. 31개 공공기관 중 22개 공공기관이 정부배당을 실시

3. 음영표시는 2016년 4월말 기준 배당금 미수납 기관

〈표 Ⅰ－90〉 최근 5년간 소관 회계별 정부배당수입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 일반회계	6,048	4,930	3,291	5,065	7,304	2,239	44.2
· 특별 · 기금	1,455	2,491	2,888	3,704	4,886	1,182	31.9
· 합계	7,503	7,421	6,179	8,769	12,190	3,421	39.0

자료: 기획재정부『'16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2,190억원 수납(2016.5.12.일자)』 보도자료
주: 1. '16년 일반회계 배당실시기관은 공동 출자기관 7개 포함 18개 기관임
2. '16년 특별회계 · 기금 배당실시기관은 공동 출자기관 7개 포함 12개 기관임

마. 보수수준[149]

1) 직원 평균보수 수준

□ 2015년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약 6,484만원 수준임[150].

○ 공기업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 수준(약 7,537만원)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뿐만 아니라 다른 2개 유형보다도 높은 수준임.

- 공공기관 전체 평균(약 6,484만원)보다는 약 1,052만원, 준정부기관(약 6,443만원)보다는 약 1,094만원, 기타공공기관(약 6,359만원)보다는 약 1,178만원 정도 높은 수준임.

○ 준정부기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공공기관 전체 평균이나 기타공공기관 유형과 크게 차이가 없음.

○ 기타공공기관은 3개 유형 중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 수준이 가장 낮은 유형임.

- 공공기관 전체 평균과는 약 126만원 정도 낮은 수준이고 준정부기관보다 낮은 수준이나 차이가 100만원 미만임.
-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간 차이는 다소 큰 편으로 기타공공기관 유형이 공기업 유형보다 약 1,178만원 정도 낮은 수준임.

149)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 및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참고

150) 직원 평균보수는 각 회계연도별로 상시종업원 전체에게 지급된 총보수지급액을 상시종업원 수로 나눈 값임(여기서 상시종업원은 각월 급여지급일 현재 정규직원 수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임). 기관별 직원 평균보수는 알리오시스템 공시항목 중 '6. 직원 평균보수 및 신입사원 초임 현황' 항목에 공시된 '1인당 평균보수액'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함. 알리오시스템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기본금,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상여금 등의 세부항목으로 지급된 총 금액으로 산출함.

〈표 Ⅰ－91〉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현황(정규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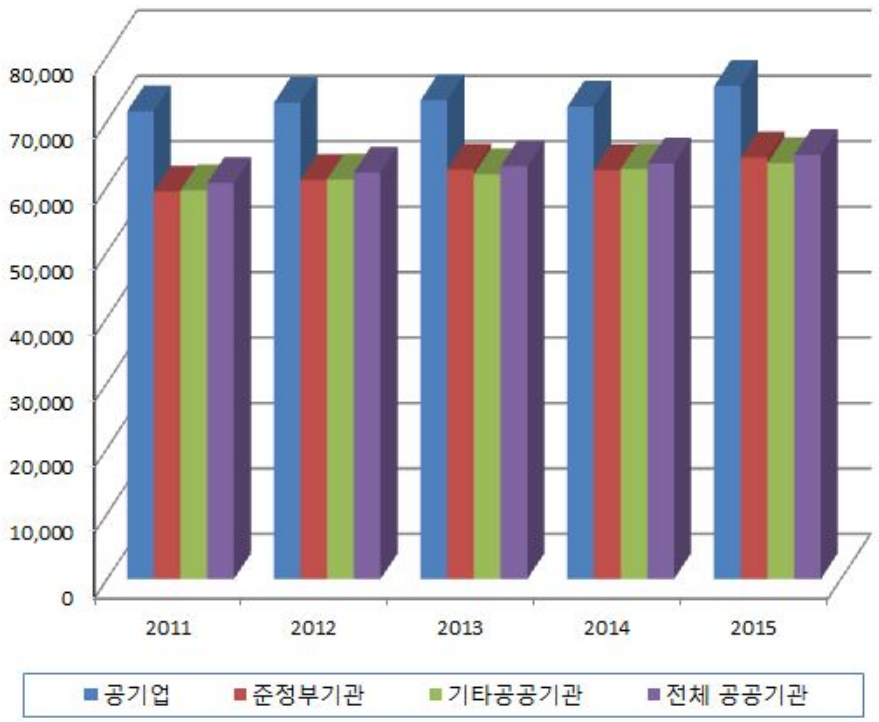
(단위: 천원, %)

구분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평균	60,530	62,166	63,120	63,493	64,844	1,350	2.1
· 공기업	71,521	72,814	73,214	72,215	75,370	3,156	4.4
· 준정부기관	59,220	61,021	62,606	62,544	64,430	1,886	3.0
· 기타공공기관	59,416	61,088	61,897	62,679	63,585	906	1.4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그림 Ⅰ－26〉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추이(정규직 기준)

(단위: 천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2015년 공공기관 전체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전년대비 2.1%(약 135만원) 상승한 수준임.

○ 2015년 직원 평균보수는 공공기관 전체의 직원 평균보수 뿐만 아니라 유형별 직원 평균보수도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여 2014년 상황과 다소 차이를 보임.

- 2014년 직원 평균보수의 경우, 전체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보수는 증가한 모습이었으나 유형별 직원 평균보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유형은 2013년 대비 하락한 모습이었음.
- 이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맞추어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인건비 등 주요 경비의 긴축편성 및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명문화하였고, 그 결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 지출이 전년보다 감축되었기 때문임[151].
- 또한 2014년 실시한 2013년도 경영평가결과,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D~E등급 기관수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부채과다 기관 중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 직원 평균보수 중 경영평가 성과급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함[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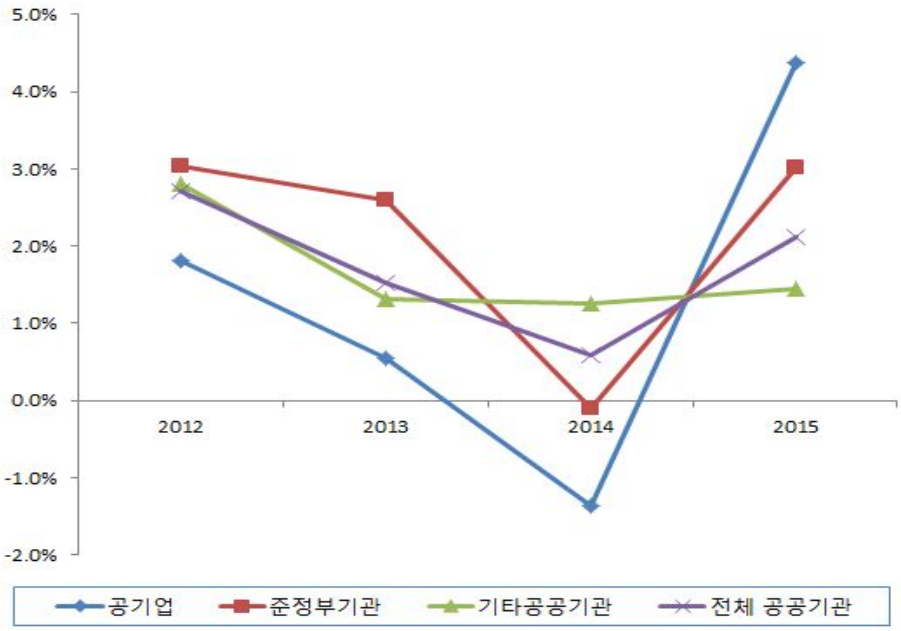
○ 유형별 2015년 직원 평균보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공기업 유형의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이 4.4%이고 준정부기관은 3.0%로 기타공공기관의 증가율(1.4%)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2014년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151)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공공기관 현황 편람』(2015), p80에서 발췌

152)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2013.12월)』에 부채규모, 부채비율 등 재무 위험도가 높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0개 기관의 경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부채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의 평가 결과(계량과 비계량을 포함)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실제로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0개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등 4개 기관(평가등급 D등급으로 성과급 지급률 0% 적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관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토록 함.(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4.6.18.일자)』 보도자료)

〈그림 Ⅰ－27〉 최근 4년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정규직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2014년에 비해 2015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이 상승한 것은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5.12.월, 이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상한선)이 2014년보다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임[153].

○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8%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명문화함[154].

- 2014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 인상이었으나 2015년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2014년도보다 2.1%p 상향한 3.8%로 설정함[155].

153) 매년 기획재정부는 공운법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시달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음.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2014년 12월 23일 제2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어 시달된 바 있음.

154)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무기계약직 포함, 정원외 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며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편성 시 모수가 되는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액은 정상화 계획 등으로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 금액을 제외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함.

155)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4.12.23.일자)』 보도자료

○ 다만, 기획재정부는 소비 촉진 및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에 대해 +1.5%p~△1.0%p 수준에서 차등 인상률(<표 Ⅰ-93>)을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차등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라 개별기관의 2013년도 정규직 평균임금 수준에 연동하여[156] 최소 2.8%에서 최대 5.3%까지 인건비를 증액할 수 있게 됨.

○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부시책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인상을 제한하여 과도한 인건비 집행 및 방만경영적 요소를 차단하고자 노력함.

- 2014년 말까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2015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명문화함.
- 경영실적 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방만경영 차단을 위해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 등을 통폐합하는 등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을 재차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함.

○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5.1월)』에서는 2015년도 총인건비 집행 시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대로 집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공운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과 정상화대책 이행관련 중간평가결과 상위 20개 기관이 지급한 내부평가급 추가분은 2014년도 인건비 집행액에서 제외한 후 201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토록 함[157].

---

156)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은 총인건비 집행액(공운법 제48조에 의한 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을 연간 근무 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금액으로 함. 다만, 2015년 총인건비 인상률(2.8~5.3% 중 기관별로 적용되는 총인건비 인상률) 이외에 베이스 조정이 있는 기관은 동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157) 부채감축 실적과 방만경영 개선 실적이 우수한 상위 20개 기관은 아래와 같음(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확정 및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 개최(2014.10.30.일자)』 보도자료 및 보도참고자료에서 발췌하여 작성)

부채감축 실적 상위 10개 기관	방만경영 개선 실적 상위 10개 기관
(우수기관)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양호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우수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양호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트코리아레저(주)

〈표 Ⅰ－92〉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
5.3% 이내 인상	2013년도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60%(4,000만원) 이하인 기관
4.8% 이내 인상	2013년도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4,500만원) 이하인 기관
2.8% 이내 인상	2013년도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110% 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120%(7,800만원) 이상인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4.12월)을 활용하여 작성
주: 1.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은 총인건비 집행액(공운법 제48조에 의한 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을 연간 근무 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금액임. 다만, 2015년 총인건비 인상률(2.8~5.3% 중 기관별로 적용되는 총인건비 인상률) 이외에 베이스 조정이 있는 기관은 동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2. 산업별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은 고용노동부가 2014년 4월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00인 이상·정규직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를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활용
3.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예산편성지침상 명시된 기본적인 총인건비 인상률 3.8%를 적용

□ 유형별 직원 평균보수 인상률과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인상률 가이드라인(3.8%)을 비교해보면, 공기업을 제외한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3.0%와 1.4%로 인상률 상한선 이내인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은 2015년 정규직인 직원의 평균보수 증가율이 4.4%로 예산편성지침상의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정규직 1인당 직원 평균보수를 활용하여 산출한 증가율(4.4%)에는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산출 시 제외되는 '경영평가 성과급'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공기업의 직원 평균보수 인상 수준이 예산편성지침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또한 '정규직 1인당 직원 평균보수'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2014년 총인건비 집행액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중간평가결과에 따른 내부성과급이 반영되어 있어 공기업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가 3.8% 이상 인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더불어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산출 대상에는 정규직인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과 무기계약직이 포함되는 반면, 알리오시스템의 '정규직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에 해당하는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는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산출된 것으로 양자의 산출범위가 달라 비교에 한계가 있음.

○ 또한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에서도 공기업 중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1개 기관이고 나머지 29개 기관은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인 3.8%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158].

- 대한석탄공사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지 않아 유관 지표가 0점 처리됨.

2) 상임임원 연봉 수준

□ 2015년 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의 평균연봉 수준을 살펴보면[159], <표 Ⅰ-93>과 같음.

○ 기관장 평균연봉 수준은 전체 공공기관이 약 1억 5,856만원 수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이 약 1억 8,198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2,342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약 1억 6,627만원으로 공기업보다는 다소 낮으나(△1,571만원)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770만원 정도 높은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1억 5,172만원)은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684만원)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과도 각각 약 3,026만원, 1,455만원 정도 차이가 남.

---

158)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공운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를 마련하여 평가하고 있음.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살펴보면, 계량지표로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가 3~4점의 가중치로 반영되어 있음.

159)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임원 연봉 현황'과 주요 통계 중 '임원 평균연봉' 자료를 활용함. 알리오시스템상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연도말 결산기준으로 상임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보수액을 의미하며 총보수액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하여 산출함.

〈표 Ⅰ－93〉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관장	전체 평균	152,891	159,318	160,642	150,369	158,563	8,194	5.4
	· 공기업	226,425	235,967	225,253	154,406	181,982	27,576	17.9
	· 준정부기관	149,747	155,514	160,999	155,195	166,266	11,071	7.1
	· 기타공공기관	142,025	148,917	150,594	147,627	151,720	4,093	2.8
상임이사	전체 평균	139,125	140,481	142,898	126,729	135,599	8,870	7.0
	· 공기업	157,846	154,574	150,008	119,853	137,390	17,537	14.6
	· 준정부기관	133,861	135,040	141,936	128,036	138,145	10,109	7.9
	· 기타공공기관	133,471	138,294	140,016	129,170	132,171	3,001	2.3
상임감사	전체 평균	134,745	134,564	139,562	133,703	143,939	10,236	7.7
	· 공기업	140,645	124,914	132,812	119,843	136,930	17,087	14.3
	· 준정부기관	131,112	137,412	144,878	140,533	152,039	11,506	8.2
	· 기타공공기관	133,840	138,369	139,656	136,912	142,131	5,219	3.8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 상임임원 평균연봉 수준을 최근 5년간 평균연봉 추이로 살펴보면, <그림Ⅰ-28>과 같음.

○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추이 중 특이사항은 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모두 공통적으로 평균연봉 수준이 2014년 크게 하락한 것임.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임원의 연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개정하고[160],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개정된 보수지침에 따라 상임임원의 인건비를 감액하여 편성할 것을 명문화한 바 있음[161].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러한 조치들이 2014년에 최초로 적용됨에 따라 2014년 상임임원 평균연봉이 과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임.

160) 상임임원 연봉과 관련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상한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는 기관장 연봉의 100분의 80과 동액으로 하고 100분의 80이하인 경우는 매년 기관장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함(제4조 제5항 및 제6항).
②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상한을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200에서 100분의 120으로 하향하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함(제6조 제1항).
③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상한(직전년도 기본연봉액)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신설함(제6조의2, 제9조의2, 재12조의2).

161)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공공기관 현황 편람』(2015), p80에서 발췌

- 또한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와 마찬가지로 2014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대상(2013년도 경영평가결과 C등급 이상) 기관수가 감소하고 부채 상위 10개 기관 중 6개 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제한됨(당초 성과급 지급률의 50% 수준으로 하향조정)에 따라 상임임원에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 금액이 2013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결과 상임임원 평균연봉 역시 2014년에 감소한 것임.

○ 기관장 평균연봉의 경우,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두 유형과 공공기관 전체의 기관장 평균연봉 추이는 2011~2013년까지 꾸준히 상승세였다가 2014년 하락하고 2015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임.

- 공기업은 2011~2012년 사이 기관장 평균연봉이 상승했다가 2013~2014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유형의 변화추이와 다소 차이를 보이며 2015년 상승한 기관장 평균연봉 수준(약 1억 8,198만원)은 2012년(2억 3,597만원)보다 낮은 수준임.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2015년 기관장 평균연봉 수준이 상승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공공기관 전체의 기관장 평균연봉 수준 역시 2015년 상승하였으나 2013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상임이사 평균연봉의 경우, 공기업은 2011년 이래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15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그리고 전체 공공기관은 2011~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4년 크게 하락했다 2015년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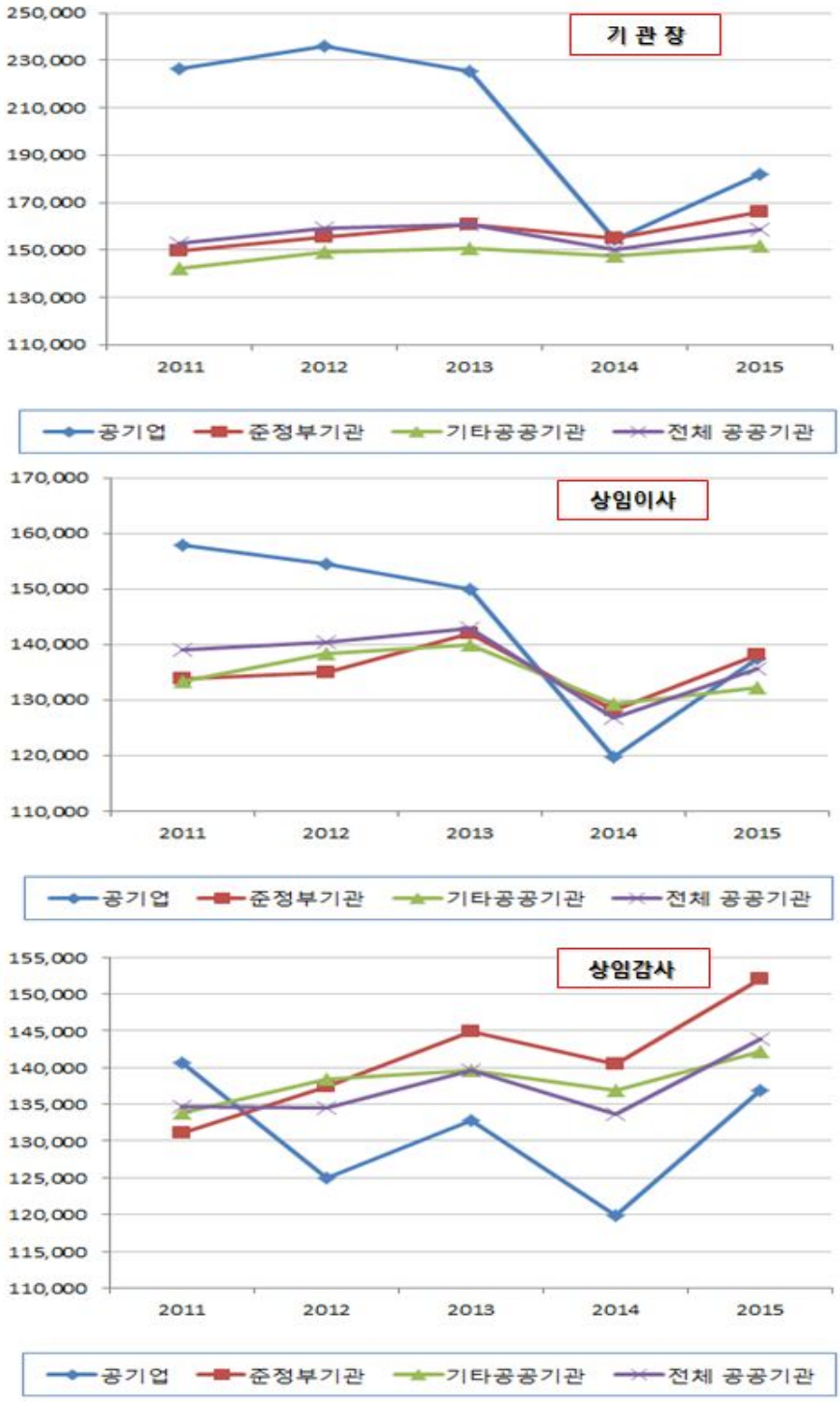
- 2015년 공기업 상임이사의 평균연봉 수준은 2011년보다 낮은 수준임.
- 전년대비 상승한 2015년 상임이사 평균연봉 수준은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3년에는 못 미치고 2012년보다는 높은 수준인 반면, 기타공공기관과 전체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2011년보다 낮은 수준임.

○ 상임감사 평균연봉의 경우,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비슷한 추이(2012년 하락→2013년 상승→2014년 하락→2015년 상승)를 보이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다른 추이(2012~2013년 상승→2014년 하락→2015년 상승)를 보임.

-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제외한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11년이 가장 낮고 2015년이 가장 높음.
- 반면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14년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공기업의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11년이 가장 높고 전체 공공기관 평균연봉은 2015년이 가장 높음.

〈그림 Ⅰ-28〉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추이

(단위: 천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상임임원 평균연봉 수준의 변화를 전년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Ⅰ-29>와 같음.

○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이 가장 높은 회계연도는 2015년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 평균연봉의 경우 2011년 대비 2012년 증가율(각각 4.9%, 3.6%)이 2014년 대비 2015년 증가율(각각 2.8%, 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과 다소 다른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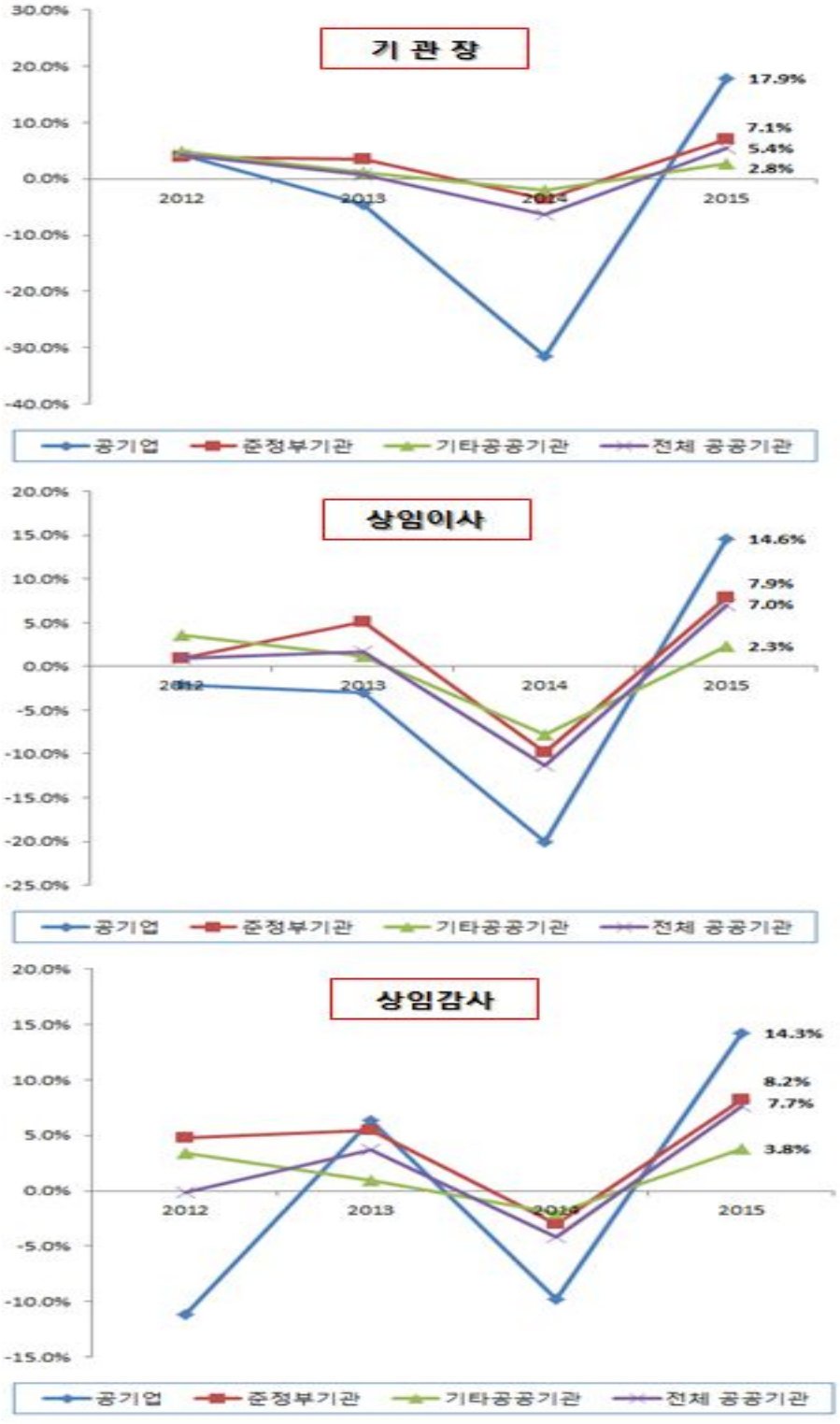
○ 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2014년 대비 2015년 평균연봉 증가율을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공기업은 상임임원 모두 10% 이상의 증가율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준정부기관, 전체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임.

- 공기업 상임임원의 2014년 대비 평균연봉 증가율은 기관장이 17.9%, 상임이사가 14.6%, 상임감사가 14.3%임.

○ 2011~2015년 사이 전년대비 상임임원 평균연봉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회계연도는 2014년임.

-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고 2014년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액이 크게 감소한 데에 기인함.
- 특이한 점은 공기업 상임감사 평균연봉의 경우 2011년 대비 2012년도 하락률이 11.2%로 2013년 대비 2014년 하락률(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Ⅰ-29〉 최근 4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감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3) 복리후생비 수준

□ 2015년 중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에게 지급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총 규모는 약 7,850억원임[162].

○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이 3,165억원, 준정부기관이 1,777억원,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 2,909억원임.

- 전체 공공기관의 총 복리후생비 대비 각 유형별 복리후생비 비중을 살펴보면, 공기업이 40.3%, 기타공공기관이 37.1%, 준정부기관이 22.6%를 차지함.

○ 유형별 지급규모를 살펴보면, 임직원 현원 규모 순(공기업 99,585명, 기타공공기관 97,250명, 준정부기관 76,646명)대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규모도 연동하여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Ⅰ－94〉 최근 5년간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무상지원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9,223	9,654	9,427	7,479	7,850	371	5.0
· 공기업	4,261	4,489	4,151	2,721	3,165	444	16.3
· 준정부기관	1,872	1,924	1,905	1,777	1,777	0	0.0
· 기타공공기관	3,090	3,241	3,371	2,981	2,909	△72	△2.4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 최근 5년간 무상지급된 복리후생비 총액 추이(<그림Ⅰ-30>)를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 추이와 공기업 추이가 유사한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013년 12월 시행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으로 2013년 이후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2015년에는 2014년 대폭 감소로 인한 기저효과와 2015년 인력 증가 등 특이소요 등으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163].

---

162) 알리오시스템은 '복리후생비' 항목을 통해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선택적복지제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경로효친비, 문화여가, 재해보상, 재해부조, 기타 항목 등 13개의 개별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임원,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에게 유·무상 지원형태로 지급된 복리후생비 내역을 공시하고 있음. 여기서는 알리오시스템에 기관별로 공시되어 있는 임직원 대상 13개 복리후생항목별 무상지급 복리후생비 지급내역을 모두 합산한 금액 정보를 활용함

163)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

- 2014년 대비 2015년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총액 규모 증가분은 371억원(5% 증가)이나 2013년 대비 2015년 총액 규모를 비교해보면 1,577억원이 감소(16.7%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복리후생비 총액은 2012년 증가, 2013년 소폭 감소, 2014년 대폭 감소, 2015년 소폭 증가의 형태로 변화해 옴.

- 이러한 유사점이 발견되는 이유는 복리후생비 총액 중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유형에 비해 복리후생비 지급액 규모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서 공공기관 전체 규모에 끼치는 영향이 다른 두 유형보다 크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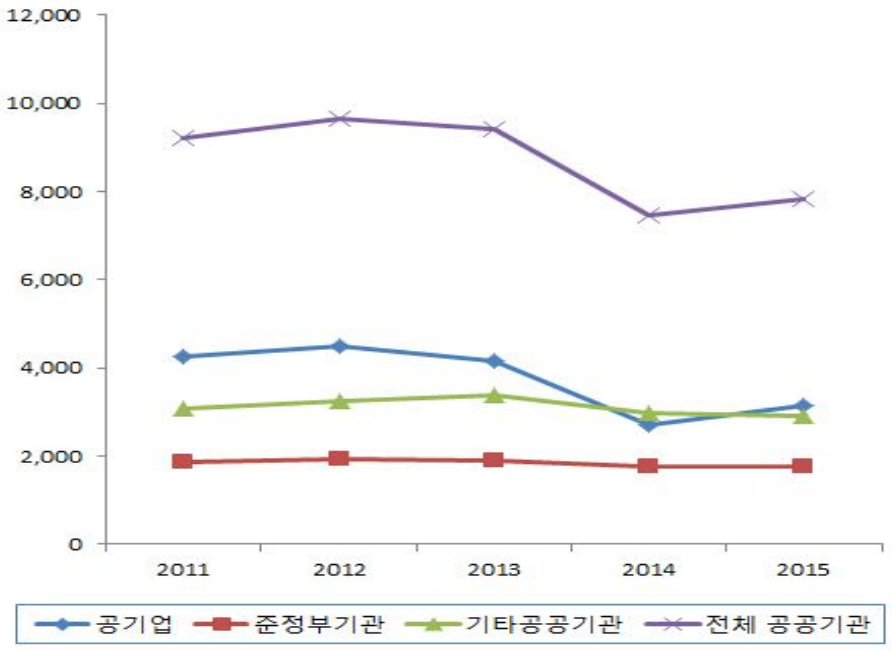
○ 유형별로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공기업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은 최근 5년 중 2014년에 지급된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가 가장 적고 2015년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2011년 지급액보다 크게 적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준정부기관의 경우,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의 변화가 3개 유형 중 제일 작은 편이며 2014년과 2015년은 총 지급액이 1,777억원으로 동일하며[164] 2011년보다 적은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무상지급 규모는 2013년까지는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4년과 2015년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2015년 총액이 2011년 총액보다 적은 수준임.

164) 세부유형 단위로 살펴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2014년과 2015년의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은 일부 변동이 있으나 ±1억원 수준으로 준정부기관 전체 총액상 변화는 없음.(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014년 510억원→2015년 509억원(△1억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4년 1,267억원→2015년 1,268억원(+1억원))

〈그림 Ⅰ－30〉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무상지원 기준)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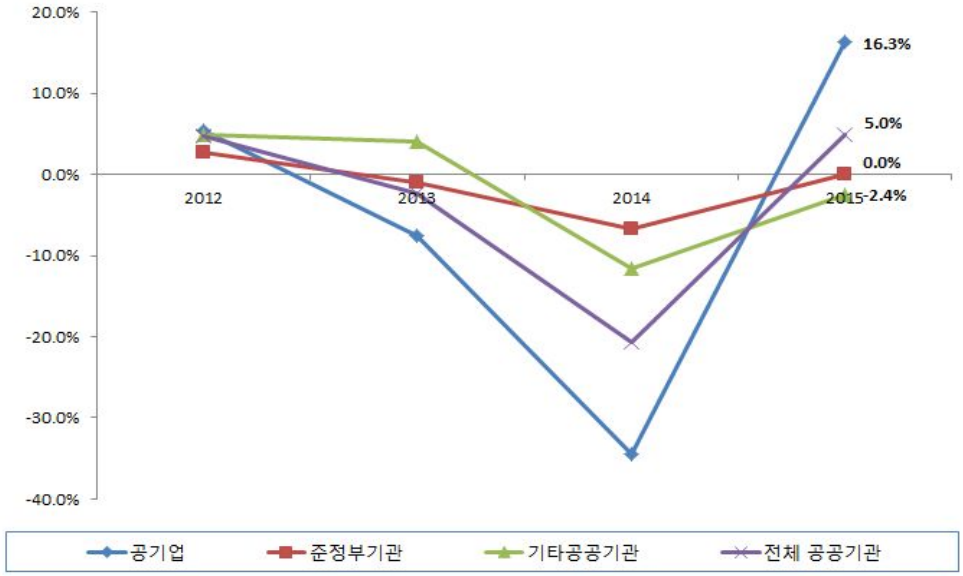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증감율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증감율 변화 추이는 전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유형별로도 유사한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Ⅰ-31>).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로 2013년 대비 2014년 복리후생비 총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감소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공기업으로 2013년 대비 2014년 감소율이 34.4%임.

○ 위와 같은 사유로 공기업 유형은 2015년에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증가율(16.3%)을 보임.

〈그림 Ⅰ－31〉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율 추이(무상지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선택적복지, 보육비 및 학자금, 의료비 및 건강검진, 기념품비 등 주요 복리후생비항목별 지급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Ⅰ-95>와 같음.

○ 의료비와 기념품비 항목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선택적복지와 보육비 및 학자금은 2014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 공공기관 인력(현원)이 증가(2014년 267,211명→2015년 273,481명으로 6,270명 증가)함에 따라 연동하여 복리후생비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임.
- 또한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상향조정하고[165], 2015년 경영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선택적복지 항목과 보육비 및 학자금 항목의 지출이 증가한데 기인함[166].

165) 2015년 예산편성지침은 종전의 직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액 상한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출연율 구간도 종전의 3개 구간에서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함.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상 기금 누적액별 출연율 기준은 아래와 같음.

1인당 기금누적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1,000만원 초과 ~1,500만원	1,500만원 초과 ~2,500만원	2,500만원 초과
출연율 기준 (세전순이익 기준)	5% 이내	4% 이내	3% 이내	2% 이내	0%

166)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

○ 2013년 대비 2015년 주요 항목별 지출액 규모는 4개 항목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의료비 및 건강검진 항목은 400억원 정도 감소(△38.6%)하여 4개 항목 중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Ⅰ-95〉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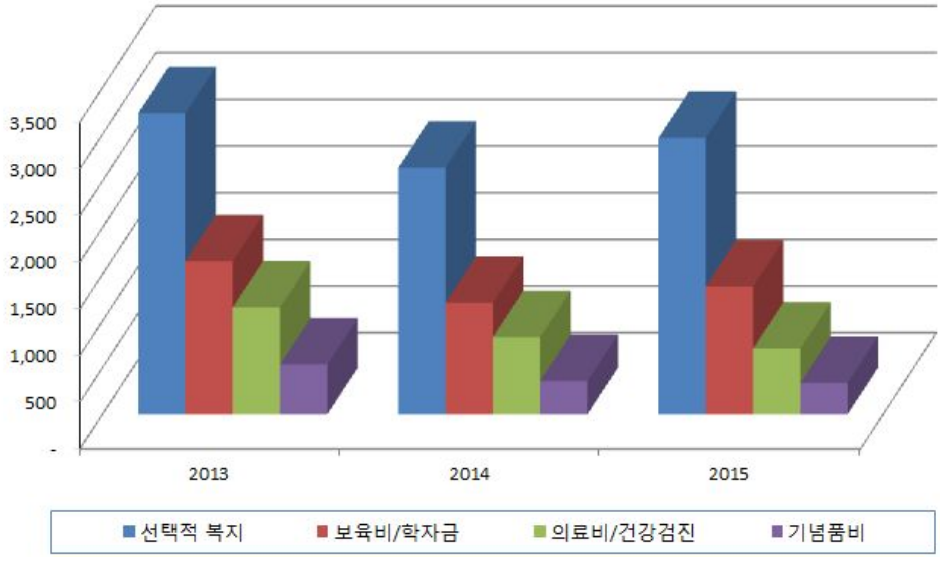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13(A)	'14(B)	'15(C)	'13년 대비		'14년 대비	
				증감 (C-A)	증가율	증감 (C-B)	증가율
선택적복지	3,222	2,640	2,958	△264	△8.2	318	12.0
보육비・학자금	1,637	1,192	1,367	△270	△16.5	175	14.7
의료비・건강검진	1,142	824	701	△440	△38.6	△122	△14.8
기념품비	531	354	334	△197	△37.2	△21	△5.8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

〈그림 Ⅰ-32〉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2014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 경영실적 호전과 2015년 예산편성지침상 직원 1인당 기금누적액 상한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2015년에는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편성지침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학자금 무상지원 등을 폐지토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2014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정부는 예산편성지침 등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고 조속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경영실적평가에 관련 평가내용을 강화하고 알리오시스템에 '복리후생 8대 항목'이라는 공시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2015년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총액 중 공기업 출연금은 약 1,433억원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하며 2014년 대비 455.4% 증가(약 1,17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의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133억원)는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9.8% 정도(약 22억원) 증가함.
- 기타공공기관은 전체의 29.7% 수준인 661억원 수준이며 전년대비 48.2% 정도(약 215억원) 증가함.

〈표 Ⅰ－96〉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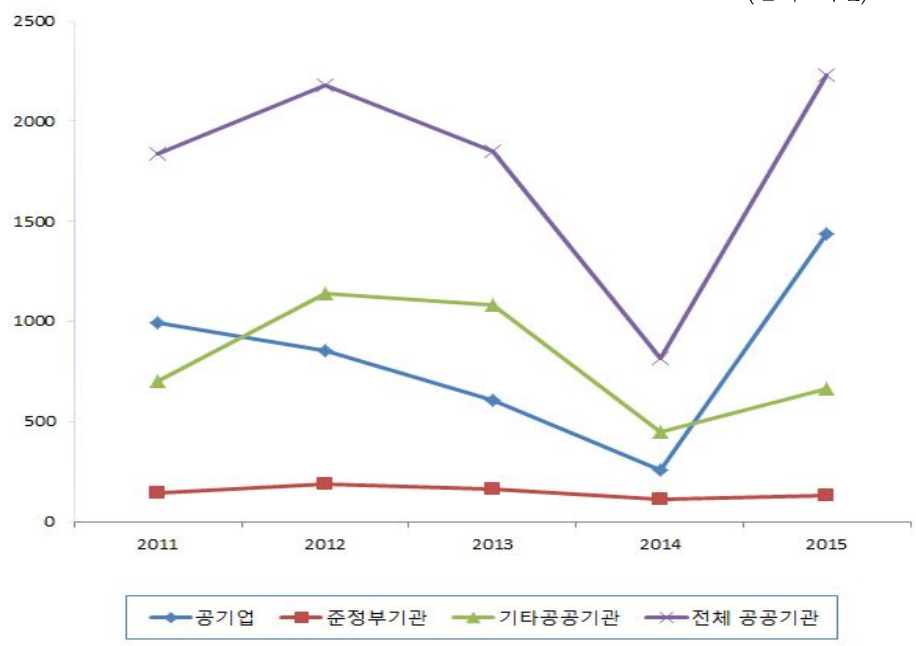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11	'12	'13	'14(A)	'15(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835	2,180	1,849	815	2,227	1,412	173.3
· 공기업	994	852	606	258	1,433	1,175	455.4
· 준정부기관	144	190	163	111	133	22	19.8
· 기타공공기관	698	1,138	1,080	446	661	215	48.2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그림 Ⅰ-33〉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바. 외부 평가결과

1)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167]

(1) 기관 및 기관장 평가제도 개요

□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운법 제15조 및 제48조에 근거하여 기관 경영실적평가(이하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함.

○ 올해 경영실적평가는 경영실적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1984년도에 최초 실시되어 32년째 운영 중임.

167)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6.6.16.일자)』 및『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5.6.17.일자)』 보도자료,『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수정)』(2015.9월),『2016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1차 워크숍 자료집』(2016.2월) 및『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설명회 자료』(2016.7월)을 참고하여 작성.

○ 매년 3~6월 사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기관 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주무부처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168].

○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토록 함.

- 경영평가단은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를 모두 관할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단 내부적으로 각 평가별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체적인 경영평가단 운영과 개별 평가결과 간 연계성 확보 및 주요 쟁점사항 공유 등을 위해 단장, 부단장, 부문간사 등으로 구성된 총괄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체계, 평가유형,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대상연도 개시 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평가편람을 통해 사전에 정하고 있음.

○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우수기관과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를 시행함.

- 성과급 지급률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함.
- 우수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거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경상경비 예산 증액(1%p이내)이 반영될 수 있음.
- 실적부진 기관은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해 해임 건의 등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상경비예산이 삭감(1%p)될 수 있으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함.

---

168)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시정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평가를 통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확정하여 주무부처에 시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에 주무부처별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함

□ 2015년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공운법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16.3~6월)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2016.6.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음.

○ 2016년 실시한 2015년도 경영실적평가는 2015년도 경영평가편람(수정)을 기준으로 하여 기관평가 116개 기관, 기관장평가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169].

○ 2015년도 경영실적평가를 수행하는 경영평가단은 교수·회계사 등 16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은 임기를 제한(3년 이상 연임 또는 최근 6년 중 4년 중 임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 특정위원의 과도한 영향력이나 기관의 로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토록 제도를 보완하였음.
- 특히 금년에는 경영평가단을 지난해보다 미리 구성하여 기관제출 보고서 검증, 현장실사 등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하였음.

□ 2015년도 경영실적평가 중 '기관 평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관평가는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6개를 대상으로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됨.

- 공기업은 2개 유형(공기업1, 공기업2), 준정부기관은 3개 유형(위탁집행, 기금관리, 강소형기관)으로 평가유형을 구분함.
- 2014년도 기관평가와 비교하면 대상 기관수는 동일하나 한국예탁결제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강소형 준정부기관 유형에서 제외되고 대신 2015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새롭게 평가대상에 추가되었음.

○ 기관평가의 평가지표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2개 범주로 나누어 20여개로 구성되어 있으며[170]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의 종합평가 결과를 산출함.

- 산출된 종합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6개 등급(탁월(S)/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미흡(E))으로 기관의 종합평가결과를 구분함.

---

169) 2016년 7월 舊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하여 신설 출범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대상이 아님. 2015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대상에는 통합이전 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포함되어 있음

170) 2015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는 <부록9>를 참고

○ 2015년 기관평가에서는 2014년도 기관평가 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질적 수준 및 변별력 제고를 위해 일부 지표를 개선하였음.

- 정부정책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 3.0 추진'평가 (계량, 1~1.5점)를 강소형 준정부기관에도 확대 적용하였으며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도입 여부 등 운영의 적절성 지표(비계량, 2점)를 추가함.
- 또한 경영관리 부문에서 기관 혁신 지표(비계량, 5~6점)를 신설(강소형 제외)하고[171], 2014년도 지표에서 제외되었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계량, 1~2점)를 다시 포함시킴.
- 주요사업 계량지표에서는 기존의 투입(input), 산출(Output) 위주 지표를 기관의 핵심목표 측정이 가능한 성과(Outcome) 지표 위주로 설정하며, 지표의 실질적 난이도를 반영하기 위해 난이도를 2등급(우수, 양호)으로 분류하여 평가함.
-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관해 새로운 복리후생 항목의 신설을 금지하는 등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함.
-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은 기능조정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였음.

□ 공운법 제15조, 제48조에 따라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 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 이행실적 평가' 제도를 실시함.

○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공운법 제 31조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과 3년 단위로 경영성과협약서를 상호 체결함.

- 경영성과협약에는 3년 단위의 경영목표와 1년 단위의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기관장은 상호 체결한 경영성과협약에 대해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 기관장 평가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임용된 지 1년 6개월 이상 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49명임.

- 49명의 기관장 중 공기업 기관장은 11명, 준정부기관 기관장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171) 기관혁신 지표 신설은 2014년의 '전략기획' 지표를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으로 확대 수정한 것으로 가중치는 2014년 2~4점에서 2015년 5~6점으로 상향조정 됨.

○ 2015년 기관장 평가는 2014년 평가의 틀을 유지하여 평가범주를 '공통과제'와 '성과과제'로 구분하고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여 설계하여 기관장 본인의 노력과 성과(60~70%)와 기관평가(30~40%)를 종합하여 평가함.

- 공통과제 범주는 평가대상인 기관장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지표로써 리더십 지표와 책임경영 지표가 이에 해당함.
- 성과과제 범주는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지표,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지표, 그리고 2개의 중장기 전략과제 지표로 구성되는데, 이 중 중장기 전략과제 지표는 기관별 '기관장 경영성과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기관장별 맞춤형 고유지표에 해당함. 전략과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기관 평가의 해당 지표 평가결과를 준용토록 하고 있음.
- 부채 중점관리 기관과 2014년도 중간평가대상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 중 지속적 방만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성과과제 범주 내 지표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를 시행함.

○ 기관장 평가결과는 기관 평가결과와 달리 3등급의 절대평가체계(우수/보통/미흡)로 설계되어 있으며 평가결과는 기관장의 연임 여부 결정 등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함.

〈표 Ⅰ-97〉 2015년도 기관 평가 및 기관장 평가대상 기관

유형		평가대상기관
공기업 (30개)	공기업Ⅰ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Ⅱ (20개)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86개)	기금관리형 (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18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55개)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2015.9월) 및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기관장 평가대상기관(49개 기관)은 이탤릭체 및 밑줄로 표시

(2) 2015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2015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이하 '기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 금년에는 기관의 경영실적과 더불어 1, 2단계 정상화 대책의 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실적을 확인하고, 방만경영 해소 노력도 평가에 반영되었음.
- 임금피크제의 확산, 기능조정 추진,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등 정부 주요 개혁과제의 이행노력을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를 통해 정상화 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며, 작년 대비 공공기관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16.7조원 감축되는 등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음[172].
- 모든 공공기관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완료한 것을 확인함.
- 기능조정 대상인 공공기관(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업무 재조정과 조직 재설계를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메르스 사태가 있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2015년에는 12.5조원을 달성함[173].

○ 2015년부터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 지표를 신설하여 기관의 미래를 대비하고 중장기 혁신노력에 대해 평가했다는 특징도 있음.

- 한국도로공사의 행복드림쉼터와 ex-HUB, 한국마사회의 좌석정원제와 마이카드 등 기관의 우수 혁신사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였음.

□ 2015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총 116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A등급(우수)이 20개 기관, B등급(양호)이 53개 기관, C등급(보통)이 30개 기관, D등급(미흡)이 9개 기관, E등급(아주미흡)이 4개 기관으로 나타남.

○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은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없음.

---

17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채규모는 ('13) 508.8조원 → ('14) 507.2조원 → ('15) 490.5조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173) 당기순이익은 ('13) 5.4조원 → ('14) 11.3조원 → ('15) 12.5조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A등급인 기관은 공기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8개 기관과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기관과 강소형 유형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6개 기관임.

- 공기업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와 준정부기관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임업진흥원 등 8개 기관은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 기관 평가에서도 A등급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대한무역진흥공사는 2013년도부터 3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함.
- 이외 12개 기관은 2014년도보다 경영성과가 개선되어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으로 한국마사회, 국민연금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4개 기관은 평가등급이 2단계 이상 개선된 기관임.
- A등급을 받은 20개 기관별 우수사례는 <부록10>과 같음[174].

○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와 강소형 준정부기관인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한국시설안전공단임.

- 이 중 2년 연속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2개 기관임.
- 나머지 기관 중 국제방송교류재단은 평가등급이 전년대비 2단계 하락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평가등급이 1단계 하락함.

174)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 사례(2016.6.19.일자)』참고

〈표 Ⅰ－98〉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단위: 개)

구분		연도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공기업		2014	30	0	7	6	10	4	3
		2015	30	0	8	10	6	4	2
준정부기관	·위탁집행/기금관리	2014	31	0	5	18	8	0	0
		2015	31	0	6	20	4	1	0
	·강소형	2014	55	0	3	27	17	5	3
		2015	55	0	6	23	20	4	2
전체		2014	116 (100%)	0	15 (12.9%)	51 (44.0%)	35 (30.2%)	9 (7.8%)	6 (5.2%)
		2015	116 (100%)	0	20 (17.2%)	53 (45.7%)	30 (25.9%)	9 (7.8%)	4 (3.4%)
		5년 평균 ('10~14년도)	112 (100%)	0.2 (0.2%)	13 (13.9%)	44 (40.4%)	38 (30.7%)	12 (10.4%)	5 (4.4%)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 및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5.6.17.일자)』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주: 2015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된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기타공공기관에 포함

〈표 Ⅰ－99〉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 현황

등급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31개)	강소형기관(55개)
S	-	-	-
A (2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8)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임업진흥원 (6)
B (53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2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
C (30개)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철도공사 (6)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
D (9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4)	한국전기안전공사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4)
E (4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2)	-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2)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 보도자료.
주: 준정부기관(31개)은 평가유형 중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의미

□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를 2014년도 기관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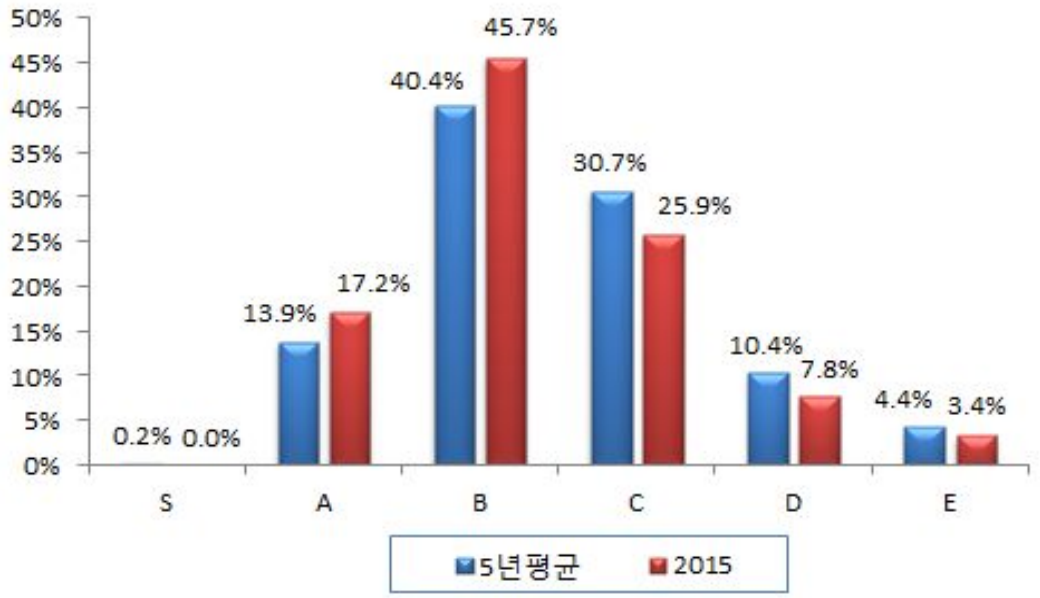
○ 지난 5년간(2010~2014년도) 평균적인 기관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등급의 분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B등급 이상은 과년도에 비해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B등급 기관의 비중이 지난 5년간 평균에 비해 상당히 증가(40.4%→45.7%)함.
- 지난 5년간 평균보다 비중이 감소한 등급은 S등급, C등급, D등급으로 이 중 D등급 비중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C등급 비중이 30.7%에서 25.9%로 4.8%p 감소하였음.
- 최하위 등급인 E등급 비중 또한 4.4%에서 3.4%로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임.

○ 2014년도 기관 평가결과에 비해서는 A등급과 B등급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C등급과 E등급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여 다소 개선된 분포로서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경영성과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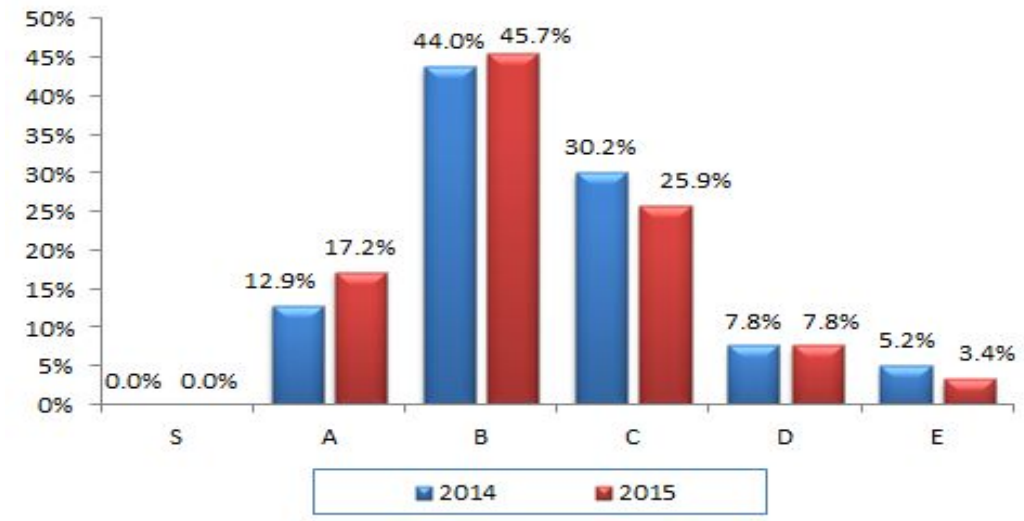
○ 최하위 등급인 E등급 기관도 2013년도 10개, 2014년도 6개, 2015년도 4개 기관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Ⅰ－34〉 최근 5년 평균 대비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 및『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5.6.17.일자)』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Ⅰ－35〉 전년대비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및『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5.6.17.일자)』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평가유형별 기관 평가결과의 등급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B등급에 분포한 기관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모두 B등급부터 등급이 하락할수록 등급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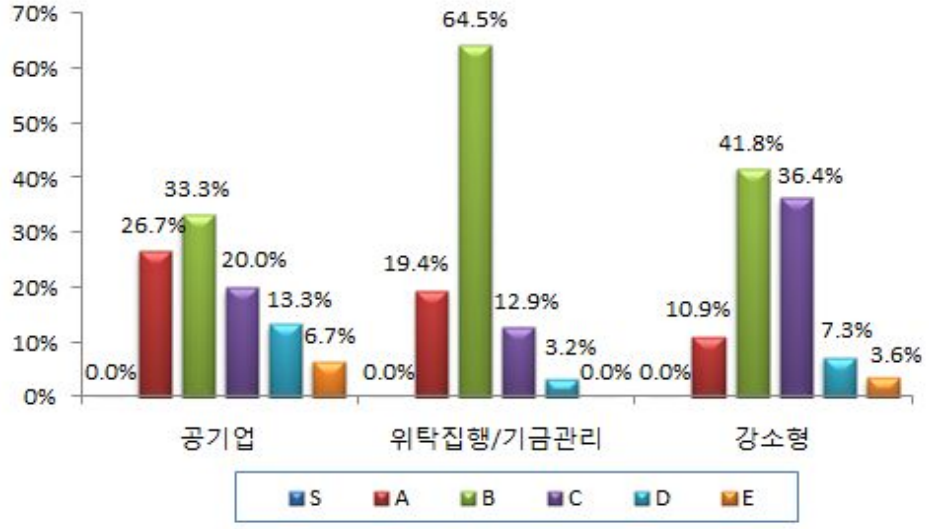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유일하게 E등급 기관이 없으며 D등급을 받는 기관은 3.2%로 1개 기관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다른 유형을 살펴보면 공기업의 20%에 해당하는 6개 기관과 강소형기관의 10.9%를 차지하는 7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유형별로 전년대비 등급 변동을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A등급은 전년대비 비중은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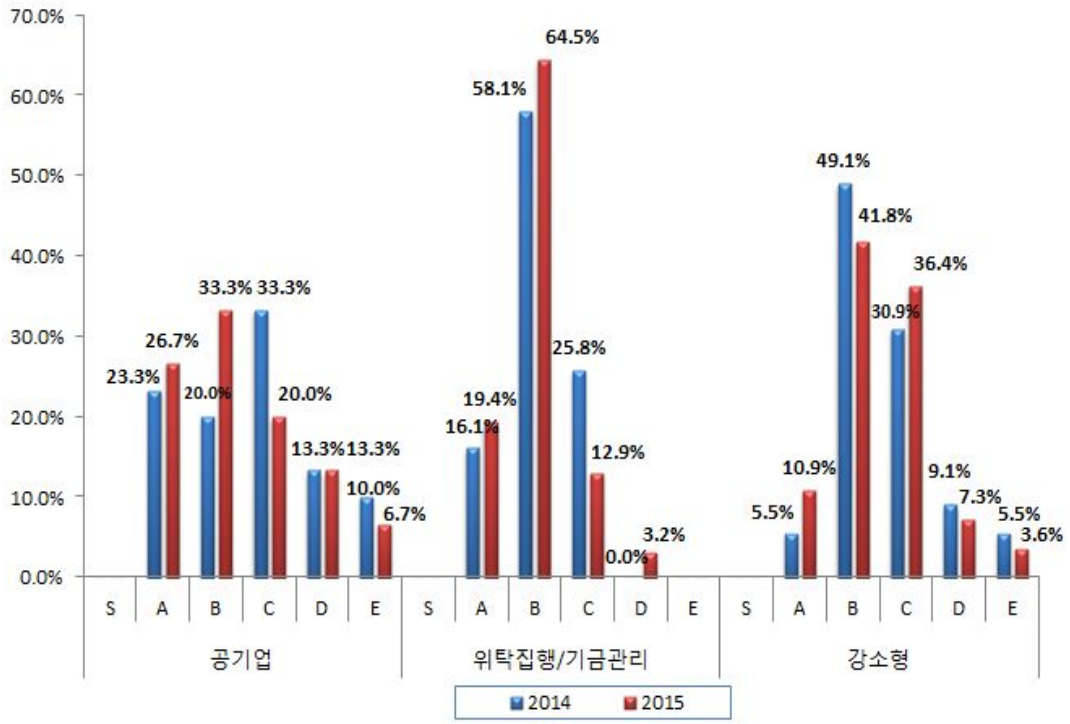
- 공기업은 2014년도 평가보다 A등급과 B등급의 비중이 상승하였고 특히 B등급의 비중이 20.0%에서 33.3%로 크게 증가한 만큼 C등급 비중이 동일한 규모로 감소하였음.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A등급과 B등급의 비중이 각각 증가하였고 C등급 이하 평가등급의 비중이 2014년도 25.8%에서 2014년도 16.1.%로 9.7%p 감소함.
- 강소형 유형은 A등급과 C등급의 비중이 상승하였고, 전체 분포는 비슷한 형태를 보임.

〈그림 Ⅰ-36〉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Ⅰ-37〉 전년대비 평가유형별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 및『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5.6.17.일자)』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2014년도 및 2015년도 기관 평가를 모두 수검한 1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평가등급 변동을 살펴본 결과,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이 38개 기관으로 대상기관의 33.0%를 차지함.

○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개선된 기관은 38개이며 이 중 한국중부발전(주)은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3단계 상승한 유일한 기관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

- 24개 기관의 평가등급이 1단계 상승하였으며 13개 기관의 등급이 2단계 상승함.
- 3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등급이 A등급으로 개선된 6개 기관을 포함함.

○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한 기관은 총 31개 기관으로 이 중 한국소비자원은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3단계가 하락하여 D등급을 부여받음.

- 평가등급이 1단계 하락한 기관(28개 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함.
- 2단계 등급하락이 있는 기관은 3개 기관으로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이며 특히 국제방송교류재단은 2014년도 C등급에서 2015년도 E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함.
- 평가등급이 하락한 21개 기관 중 3년 연속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석유공사로 2개 기관임. 이 중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3년간 평가등급이 2단계 하락하여 2015년도 기관 평가등급이 E등급임.

〈표 Ⅰ－100〉 전년대비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요약

(단위: 개)

구분	기관수 (115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등급 상승	38 (33.0%)	24	13	1
평가등급 유지	46 (40.0%)	-	-	-
평가등급 하락	31 (27.0%)	27	3	1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및『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5.6.17.일자)』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주: 2015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표 Ⅰ－101〉 전년대비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현황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38개)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준정부기관)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급 유지 (46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급 하락 (31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 및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5.6.17.일자)』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주: 2015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2015년 기관평가결과를 부처별로 살펴본 결과, 부처별 경영평가대상 기관수와 평가결과 분포는 다음과 같음.

○ 기관평가를 받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수가 많은 상위 4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임.

- 에너지 공기업과 그 관련 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SOC 공기업 및 관련 산하 기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국토교통부가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대상 기관 수 기준으로 상위 4개 부처의 평가 결과 분포를 살펴보면, A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B등급이 가장 높으며, 해양수산부는 C등급 비율이 매우 높음.

-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14개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로 6개 기관에 해당하여 42.9%를 차지함.
- 반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A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으며 B등급과 C등급에 많은 기관이 분포되어 있음.
- E등급을 받은 기관을 산하에 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임.

〈표 Ⅰ-102〉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

(단위: 개)

부처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산업통상자원부	27	0	5	11	4	5	2
국토교통부	14	0	6	5	2	0	1
미래창조과학부	9	0	0	6	3	0	0
해양수산부	9	0	0	1	7	1	0
문화체육관광부	7	0	0	3	3	0	1
보건복지부	7	0	3	1	2	1	0
고용노동부	6	0	0	5	1	0	0
농림축산식품부	6	0	2	3	1	0	0
금융위원회	5	0	1	3	1	0	0
환경부	4	0	0	3	1	0	0
교육부	3	0	0	2	1	0	0
중소기업청	3	0	1	2	0	0	0
국가보훈처	2	0	0	1	1	0	0
국민안전처	2	0	0	0	1	1	0
여성가족부	2	0	0	2	0	0	0
경찰청	1	0	0	1	0	0	0
공정거래위원회	1	0	0	0	0	1	0
기상청	1	0	0	0	1	0	0
기획재정부	1	0	1	0	0	0	0
농촌진흥청	1	0	0	1	0	0	0
방송통신위원회	1	0	0	1	0	0	0
산림청	1	0	1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1	0	0	1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0	0	1	0	0
인사혁신처	1	0	0	1	0	0	0
합 계	116	0	20	53	30	9	4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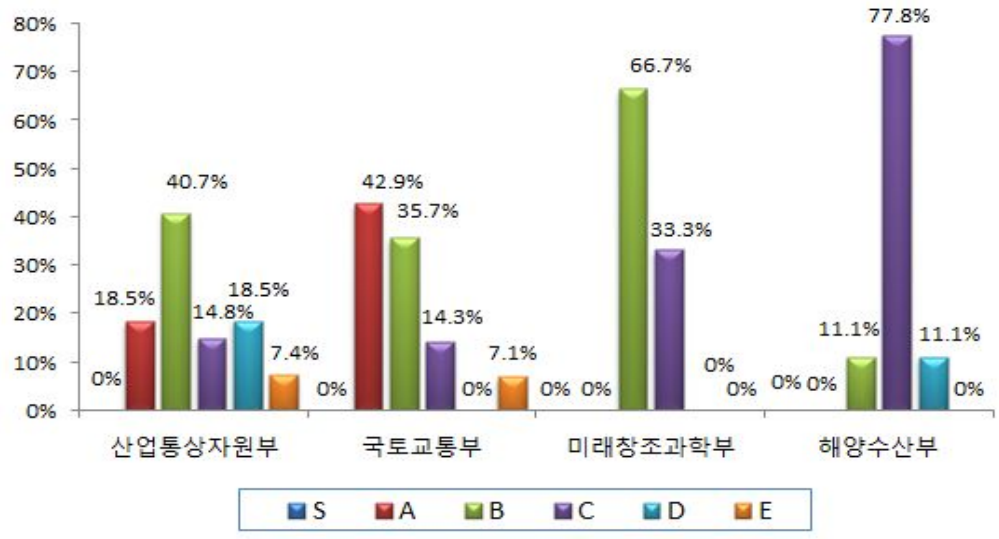
〈표 Ⅰ-103〉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부처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27개)	(A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B등급)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주) (C등급)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D등급)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E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국토교통부 (14개)	(A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B등급) 교통안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C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공사 (E등급) 한국시설안전공단
미래창조과학부 (9개)	(B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C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해양수산부 (9개)	(B등급) 해양환경관리공단 (C등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D등급) 부산항만공사
문화체육관광부 (7개)	(B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C등급)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E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보건복지부 (7개)	(A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B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등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D등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고용노동부 (6개)	(B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C등급)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부처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6개)	(A등급)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마사회 (B등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C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금융위원회 (5개)	(A등급) 예금보험공사 (B등급)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C등급) 신용보증기금
환경부 (4개)	(B등급)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등급) 국립생태원
교육부 (3개)	(B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C등급)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청 (3개)	(A등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B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가보훈처 (2개)	(B등급) 독립기념관 (C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안전처 (2개)	(C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D등급)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여성가족부 (2개)	(B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찰청 (1개)	(B등급) 도로교통공단
공정거래위원회 (1개)	(D등급) 한국소비자원
기상청 (1개)	(C등급)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획재정부 (1개)	(A등급) 한국조폐공사
농촌진흥청 (1개)	(B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방송통신위원회 (1개)	(B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산림청 (1개)	(A등급) 한국임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B등급)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원자력안전위원회 (1개)	(C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사혁신처 (1개)	(B등급) 공무원연금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Ⅰ－38〉 주요 주무부처 소관 공공기관의 2015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주: 기관 평가결과 분포는 평가대상 기관 수가 많은 상위 4개 부처만을 대상으로 작성

□ 2015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로 성과급 차등 지급, 부진기관 인사조치, 부진기관 경영개선 점검 및 예산상 조치를 시행함.

○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에 등급별·유형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

- 성과급 지급률은 2016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 2015년 경영실적 평가편람에 따라 부채중점관리기관(18개)은 '재무예산의 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나 성과급 지급 대상인 14개 기관 모두 해당 평가에서 B등급(양호) 이상의 결과를 받아 지급 제한은 실시되지 않음.

○ 기관평가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인사조치의 대상이 됨.

- E등급을 받은 4개 기관의 장은 해임건의 대상이나,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2015년 12월 기준)이거나 공석으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175].
-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기관장 재임기간 요건에 미달되는 6개 기관을 대상에서 제외하고[176] 3개 기관이 경고 조치를 받음[177].

---

175) E등급이나 재임기간 요건을 미달하여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임

176) D등급이나 재임요건에 미달하여 경고조치가 제외된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해당됨

177)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임

○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함.
- 2014년도에는 예산상 조치로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를 증액하는 조치도 시행하였으나 2015년에는 우수기관의 증액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만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예산상 조치를 시행함.

〈표 Ⅰ-104〉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상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한도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월기본급의 250~300%이내	기준월봉의 100%이내
기관장	기본연봉의 120%이내	기준연봉의 60%이내
상임임원	기본연봉의 100%이내	기준연봉의 60%이내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3) 2015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 49명의 기관장에 대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의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83.7%에 해당하는 41명이 '보통' 등급(60점~80점)으로 평가됨.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기관장은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사장이며 준정부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영표 사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홍영만 사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권승 원장 등 6명임.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미흡' 등급으로 평가된 기관장은 대한석탄공사의 권혁수 사장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이희상 사장 등 2명임.

〈표 Ⅰ-105〉 2015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분포

(단위: 명, %)

구 분	평가대상		평가등급		
	기준	기관장수	우수 (80점이상)	보통 (60점이상~80점미만)	미흡 (60점미만)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	1년 6개월 이상 재임	49	6	41	2
		(100%)	(12.2%)	(83.7%)	(4.1%)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 보도자료

〈표 Ⅰ－106〉 2015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등급	공기업(11명)	준정부기관(38명)	강소형기관(20명)
우수 (6명) * 80점이상	한국도로공사(김학송) 한국조폐공사(김화동) (1)	한국국토정보공사(김영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김옥이) 한국자산관리공사(홍영만) (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권승) (1)
보통 (41명) * 80점미만 ~60점이상	여수광양항만공사(선원표) 한국감정원(서종대) 한국남동발전(주)(허엽) 한국마사회(현명관) 한국서부발전(주)(조인국) 한국수력원자력(주)(조석) 한국수자원공사(최계운) 한국철도공사(최연혜)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손명세) 국립공원관리공단(박보환) 국민체육진흥공단(이창섭) 근로복지공단(이재갑) 기술보증기금(김한철) 도로교통공단(신용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김화진) 신용보증기금(서근우) (재)우체국물류지원단(유천균) 한국농어촌공사(이상무) 한국무역보험공사(김영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종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박승규) 한국전기안전공사(이상권) 한국철도시설공단(강영일) (15)	국립생태원(최재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상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일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양봉환) 한국고용정보원(유길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김명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류호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재훈) 한국산업단지공단(강남훈) 한국석유관리원(김동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강영실) 한국언론진흥재단(김병호) 한국연구재단(정민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춘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김무환) 한국임업진흥원(김남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임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김용주) (18)
미흡 (2명) * 60점 미만	대한석탄공사(권혁수) (1)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희상) (1)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6.6.16.일자)』 보도자료
주: 준정부기관(38명)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의미

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178]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고객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경영평가를 보완하고자 실시되고 있음.

178)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획재정부 『201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 수정안』(2015.8.)을 참고

○ 고객만족도 조사는 199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추진함.

○ 도입 당시에는 舊 정부투자기관(현, 공기업이 대부분)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2004년에는 舊 정부산하기관으로, 2005년에 각 부처 자율혁신기관(현, 기타공공기관이 대부분)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이 확대됨.

○ 2011년도부터는 직접고객 외에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체감도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179].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7년부터 공운법 제13조 제2, 3항과 시행령 제17조 제1과 제3항에 근거해 실시됨.

○ 또한 공운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고객만족도 조사는 주관기관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와 '주무부처 주관조사'로 구분되어 시행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및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함.

○ '주무부처 주관조사'는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생활과 밀접성이 낮거나 기관 규모가 작아 통합조사의 실익이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주무부처 주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출연연구기관, 민간성격의 상업성이 강한 기관(한국벤처투자 등), 그리고 정원 30인 미만인 소규모 기타공공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등이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대상이 됨.
- 또한 당해연도 신규지정 공공기관도 예산확보 등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주무부처 주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게 됨.

---

179) 공공기관의 직접 수혜 고객이 아닌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의 사업 및 다양한 활동의 성과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이며 이는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및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015년 통합조사 대상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며 이 중 인지율 20% 미만인 기관을 제외한 87개 기관이 조사대상임(참고: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2016.2.24.일자)』 보도자료)

○ 공공기관 중 주된 고객이 중앙행정기관이거나 불특정 외국인 또는 모회사 등으로 고객 형성이 미흡한 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전력공사가 모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발전자회사(공기업), 외국인이 주요고객인 한국투자공사(기타공공기관), 그리고 정부가 주요고객인 정부법무공단(기타공공기관)이 해당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는 2015년 조사부터 기능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 5개 그룹, 기타공공기관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내 상대평가 방식으로 실시함.

○ 조사대상 공공기관 그룹분류는 아래의 <표 Ⅰ-107>과 같으며 공공기관간 서비스 품질 경쟁 강화를 위해 그룹별로 상대평가를 실시(S-A-B-C-D등급)하고 있음.

〈표 Ⅰ－107〉 기획재정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그룹분류(2015년 기준)

유형	그룹	그룹 정의
공기업 준정부 기관	① 시장경쟁	고객이 시장에서 타 재화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② 국민생활증진	고객(국민)에게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③ 산업진흥	고객(기업)에게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④ 안전·평가관리	고객의 행위·시설 등을 평가/검사하는 경우
	⑤ 시설기반서비스	시설(혹은 그 산출물)을 관리·공급하는 경우
기타 공공기관	① 경쟁형	고객이 시장에서 타 재화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② 지원형	고객에게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③ 관리형	고객을 규제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수정안』(2015.8.)

□ 고객만족도 조사는 PCSI 2.0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지수는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불일치의 3가지 선행요인과 만족도 측정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도출함.

○ 2015년부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적용되는 PCSI 2.0 모델은 종전 PCSI 모델을 개선한 것으로 두 모델을 비교하면 <표 Ⅰ-108>과 같음.

○ PCSI 지수는 서비스품질과 사회적 책임, 불일치의 3가지 선행요인과 만족도 측정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함.

○ 개인이 고객인 경우 서비스 환경 품질에 대해 조사하며, 법인이 고객인 경우 관계여건품질에 대해 조사함.

〈표 Ⅰ-108〉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구분		PCSI	PCSI 2.0	
서비스품질 모형	서비스상품 품질	편익성	본원적 문제해결	
		전문성	서비스 효익성	
		혁신성	서비스 완결성	
	서비스전달 품질	지원성	인적상호작용	
		공감성	커뮤니케이션	
		대응성	고객케어	
	서비스환경 품질	공통	개인고객용	법인고객용
		쾌적성	물리적 환경	협력
		편리성	제도/절차/시스템환경	상호호혜
		심미성	인적자원 역량환경	관계 동등성
	사회품질	청렴성	-	
		공익성	-	
		안정성	-	
사회적 책임 모형	사회적책임	-	정책타당성	
		-	지속가능성	
		-	윤리성	
서비스 비교평가 모형	불일치	-	기대 대비 비교	
		-	이상점 대비 비교	
		-	다른 기관 대비 비교	
고객만족 모형	전반적 만족	절대적 만족	-	
		상대적 만족	인지적 만족	욕구 충족
		감정적 만족		체감 만족
	요소만족	서비스 상품만족	감정적 만족	긍정적 감정
		서비스 전달만족		부정적 감정
		서비스 환경만족	-	
	사회적만족	사회적 책임만족	-	
성과모형	기관성과	신뢰	신뢰	
		지지		
		인식전환		
	사회성과	국민행복	국민행복	
		국가발전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수정안』(2015.8.)

□ 고객만족도 조사는 다음의 <표 Ⅰ-109>의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며 전 기관에 공통 설문문항을 적용하고 있음.

〈표 Ⅰ-109〉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 항목

차원	요소	설문 항목
서비스 상품품질	본원적 문제해결	OO기관에서 받은 서비스는 나의 이용 목적에 부합했다
	서비스 효익성	OO기관이 수행한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서비스 완결성	OO기관은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했다
서비스 전달품질	인적상호작용	OO기관의 서비스 이용과정이 원활했다
	커뮤니케이션	OO기관 직원과 나의 의사소통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
	고객케어	OO기관 직원은 내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했다
서비스 환경품질 (개인)	물리적 공간·환경	OO기관의 시설 및 환경은 쾌적하다
	제도/절차 /시스템환경	OO기관은 고객입장을 고려하여 신속히 업무를 처리한다
	인적자원 역량환경	OO기관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은 우수하다
관계 여건품질 (법인)	협력	OO기관과 우리(기관)는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협조한다
	상호호혜	OO기관과 우리(기관)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다 (Win-Win관계 형성)
	관계동등성	OO기관은 우리(기관)를 업무상 대등한 관계로 대우한다
사회적 책임	정책타당성	OO기관은 목적과 취지에 따라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OO기관은 국가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리성	OO기관의 업무수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불일치	기대 대비	OO님께서 '사전에 기대하셨던 것'과 비교할 때,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셨습니까?
	이상점 대비	OO님께서 상상하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 수준'과 비교할 때,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셨습니까?
	다른 기관 대비	OO님께서 경험하셨던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서비스'와 비교할 때,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셨습니까?
만족	인지적 만족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바라던 것이 모두 충족되었다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나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감정적 만족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기관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다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다
기관성과	신뢰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기관의 사업/활동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회성과	국민행복	OO기관의 사업/활동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수정안』 (2015.8.)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일괄 발표하고,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180], 경영실적평가에 국민평가 지표를 반영하고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기재부가 주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국민평가 지표로 전체 100점에서 2점을 반영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경영실적평가 대상인 경우에만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나 최근 부처주관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고객만족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경영실적평가의 국민평가(고객만족도)지표로 반영하고 있음.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에 따라 지표와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반영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부처가 주관하는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 권장안을 따르고 있지만[181] 실제 부처별로 반영되는 가중치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주무부처별로 실시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반영하는 가중치는 총 100점 중에 1점~9.1점 수준으로 다양함.

(2)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016년 공공기관 중 201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108개, 기타공공기관이 176개 등 총 284개 기관임.

○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177개 기관이며 24개 공기업, 83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70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그룹별 상위 5%이내 기관(9개)[182]은 기관 자율조사로 대체 가능하였으나 2015년 자율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뿐임.

---

180) 기획재정부는 알리오시스템 '28.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을 통해 매년 1분기 정기공시(매년 4월말) 할 때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시하고 있음

181)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 권장안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국민평가 지표 형태로 가중치 5점 수준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182) 도로교통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은행,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력공사

- (재)우체국금융개발원은 2015년 조사제외 대상기관이었으나 2016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대상기관으로 편입됨.
- 기타공공기관 중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15년 조사제외 대상기관이었으나 2016년 통합조사 대상기관으로 편입되었으며 공정거래조정원 등 45개 기관이 주무부처 주관 조사대상 기관이었으나 2016년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대상기관으로 전환됨.

○ 주무부처 주관 201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107개 기관으로 1개의 준정부기관과 106개의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2016년 공공기관 지정결과상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한국국제협력단은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함.

○ 2016년 1월 기준 323개 공공기관 중 201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없는 기관은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23개 기관과 2016년에 최초 지정된 12개 기관, 자율조사를 실시한 3개 기관, 주무부처 주관조사 대상기관이나 조사를 미실시한 1개 기관 등 총 39개 기관임[183].

183)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당초 주무부처(행정자치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이었으나 주무부처 협의 하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여 201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미실시함

〈표 Ⅰ－110〉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수검기관(2016.1월 기준)

구분	기관명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177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재)정동극장, ㈜강원랜드, ㈜워터웨이플러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생활체육회, 노사발전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가, 대한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술의전당,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어빈흥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태권도진흥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구분	기관명
주무부처 주관 조사 (107개)	(준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식재단, ㈜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주), IOM이민정책연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녹색사업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외동포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도발문제관리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항공안전기술원, 항로표지기술협회
조사 미수검 기관 (39개)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준정부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공공기관) 코레일테크(주),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세종학당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정부법무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아시아문화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식품안전정보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수정안』 (2015.8.)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밑줄 처리된 기관은 2016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2. 2016년 1월 공공기관(323개) 기준이므로 8월 현재 321개 공공기관과 차이가 있음

□ 28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을 살펴보면[184] 다음의 <표 Ⅰ-111>과 같음.

〈표 Ⅰ－111〉 2015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구분	기관명
우수 (79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예술의전당,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충남대학교병원,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항로표지기술협회
양호 (88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재)정동극장,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토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녹색사업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산업연구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충북대학교병원, 통일연구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4) 공공기관 부설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구분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보통 (70개)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강원랜드, 88관광개발(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병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창업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항공안전기술원
미흡 (29개)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준정부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워터웨이플러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내용을 기초로 작성

주: 1. 고객만족도 조사 주관기관(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관기관별 조사에서 측정된 고객만족도 등급을 기재

2.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4년 및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26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2016년 신규지정기관,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별 기관 분포 현황은 다음의 <표 Ⅰ-112>와 같으며, 전반적으로 '우수' 수준에 분포한 공공기관의 비중(35.5%)이 가장 높음.

○ '우수' 및 '양호' 수준인 기관(178개)의 비중이 전체의 62.7%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최하위 수준인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체 284개 기관 중 31개 기관으로 10.9%를 차지함[185] .

- 31개 기관 중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 1개 기관이며, 준정부기관은 12개, 나머지 18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임.

○ 한국석유공사를 제외한 23개 공기업(95.8%)이 '우수' 혹은 '양호'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고객만족도 수준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석유공사는 최하위등급인 '미흡' 수준이며 '양호' 등급인 기관은 한국조폐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2개 기관임.

○ 46개의 준정부기관(54.8%)이 '우수' 및 '양호' 수준에 분포하고 있음. 26개(31.0%) 기관이 '보통' 수준이며 최하위 등급인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전체의 14.5% 차지함.

- '우수' 등급인 준정부기관은 25개 기관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호' 등급인 준정부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전체의 24.1%를 차지함.

○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조사대상과 주무부처 주관 조사대상이 혼재되어 있는데, 조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양호'와 '보통' 수준 등급에 대부분(124개, 70.1%)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상위 등급에 분포한 기타공공기관은 35개로 19.8%, 최하위 등급인 기타공공기관은 18개로 10.2%를 차지함.

185)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석유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표 Ⅰ-112〉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단위: 개)

구분			고객만족도 등급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조사 대상[1]	조사 주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분석 대상[2]	상승 (▲)	유지 (-)	하락 (▼)
공기업	시장형	14	8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6	1	0	1	8	0	6	2
	준시장형	16	16		15	1	0	0	16	0	15	1
	소계	30	24		21	2	0	1	24	0	21	3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6	14		2	5	6	1	14	0	3	11
	위탁집행형	74	69		23	15	20	11	70	4	34	32
	소계	90	83		25	20	26	12	84	4	37	43
기타 공공기관		203	70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19	21	20	10	70	13	44	11
			107	주무부처 자체조사[4]	16	54	29	8	88	22	52	16
전 체		323	284 (100%)	-	81 (28.5%)	97 (34.2%)	75 (26.4%)	31 (10.9%)	266 (100%)	39 (14.7%)	154 (57.9%)	73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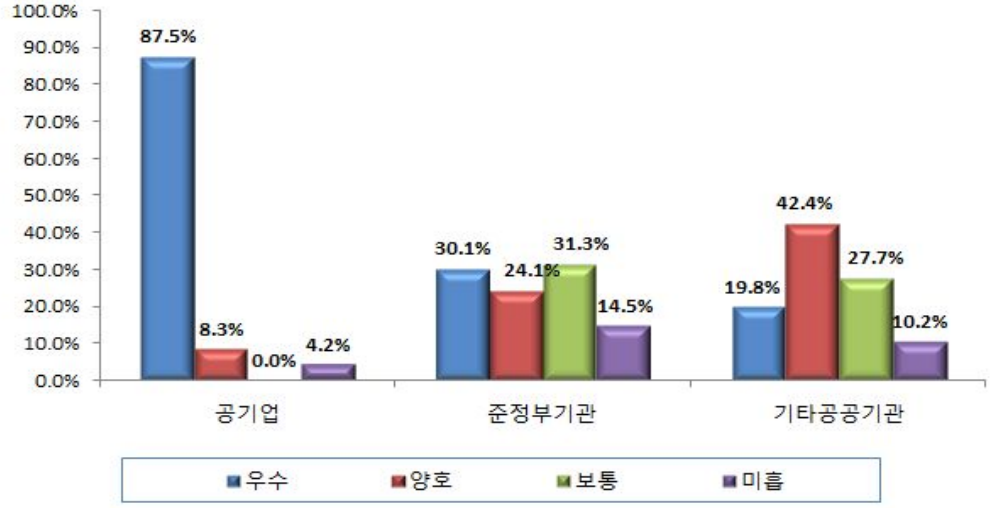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조사대상기관은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가 실시한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2. 분석대상기관은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4년 및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 (2016년 신규지정기관,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3. 2016년 공공기관 지정결과상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한국국제협력단은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통합조사가 아닌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를 수검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 및 전년대비 개선수준에 포함

〈그림 Ⅰ-39〉 공공기관 유형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2014년도 고객만족도 수준과 비교할 때[186], 전년도 등급을 유지한 기관(154개)이 57.9%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다음의 <표 Ⅰ-113>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 2014년보다 고객만족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39개 기관(14.7%)으로 4개 준정부기관 및 35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고객만족도 개선기관 중 2014년 '미흡' 수준에서 2015년에는 '보통' 수준으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이 4개, '양호' 수준으로 상승한 기관이 1개 기관으로 총 5개 기관이 최하위 수준을 벗어남[187].

○ 2015년도 고객만족도 수준이 2014년에 비해 다소 저조한 기관은 73개 기관(27.4%)로 3개 공기업, 43개 준정부기관 및 27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고객만족도 수준 하락기관 중 19개 기관[188]은 2015년도 고객만족도 수준이 최하위인 '미흡' 수준임.
- 2014년 수준에 비해 고객만족도 등급이 2단계 하락한 기관은 11개 기관으로 2014년 '우수' 수준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한 기관이 7개이고[189], '양호'에서 '미흡' 수준으로 하락한 기관이 4개 기관임[190].

〈표 Ⅰ－113〉 전년대비 2015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수 (266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등급 상승	39 (14.7%)	38	1	-
등급 유지	154 (57.9%)	-	-	-
등급 하락	73 (27.4%)	62	11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내용을 기초로 작성
주: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4년 및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2016년 신규지정기관,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186) 분석대상기관은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4년 및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266개 기관으로 함

187) '미흡'에서 '양호' 수준으로 상승한 기관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며 '미흡'에서 '보통' 수준으로 상승한 기관은 코레일로지스(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임

188)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장학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워터웨이플러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구석유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89) 한국소비자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190) 한국장학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표 Ⅰ－114〉 전년대비 2015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39개)	(준정부기관) 국립생태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기타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상대학교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전쟁기념사업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충남대학교병원, 코레일로지스(주),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급 유지 (154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회보장정보원,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산업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외동포재단,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주대학교병원,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창업진흥원,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항로표지기술협회

구분	기관명
등급 하락 (73개)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워터웨이플러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내용을 기초로 작성
주: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4년 및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2016년 신규지정기관,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 201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분포를 주무부처 단위로 살펴보면 <표 Ⅰ-115>와 같음.

○ 부처별 기관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가 어려우나 '우수' 등급 기관이 다수 분포된 부처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흡' 등급이 가장 많이 분포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로 나타남.

○ 미래창조과학부는 소관기관이 40개로 가장 많은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등급별 분포는 '우수' 6개 기관, '양호' 23개 기관, '보통' 8개 기관, '미흡' 3개 기관으로 '양호' 등급에 가장 많은 기관이 포진되어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다음으로 많은 기관을 보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28개 기관이 소관기관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8개 기관 중 13개 기관이 '보통' 등급에 분포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13개 기관이 '우수' 등급에 분포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공기관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Ⅰ－115〉 2015년도 고객만족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

(단위: 개)

주무부처	기관수 (284개)	등급분포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경찰청	1	1	0	0	0
고용노동부	12	0	5	5	2
공정거래위원회	2	0	0	1	1
관세청	1	0	0	1	0
교육부	20	7	8	3	2
국가보훈처	3	2	0	1	0
국무조정실	24	2	15	6	1
국민안전처	2	0	2	0	0
국방부	2	1	0	0	1
국토교통부	22	16	1	3	2
금융위원회	7	4	3	0	0
기상청	3	0	1	2	0
기획재정부	2	1	1	0	0
농림축산식품부	10	4	1	4	1
농촌진흥청	1	0	0	1	0
문화재청	1	1	0	0	0
문화체육관광부	28	6	4	13	5
미래창조과학부	40	6	23	8	3
방송통신위원회	1	1	0	0	0
방위사업청	2	0	2	0	0
법무부	3	1	1	1	0
보건복지부	19	3	4	6	6
산림청	2	0	2	0	0
산업통상자원부	28	13	8	5	2
식품의약품안전처	2	0	1	1	0
여성가족부	5	0	1	3	1
외교부	3	1	2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0	2	1
인사혁신처	1	0	0	1	0
중소기업청	8	1	3	2	2
통일부	1	0	0	1	0
특허청	3	1	1	1	0
해양수산부	15	6	4	4	1
행정자치부	1	0	1	0	0
환경부	6	3	3	0	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내용을 기초로 작성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고객만족도 수준과 더불어 그룹내 상대등급을 모두 발표하고 있으며, 그룹별 상대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Ⅰ-116>과 같음.

○ 그룹내 상대평가결과는 S-A-B-C-D 등 5단계 등급으로 발표됨.

○ 대부분의 그룹에서는 A와 B 등급에 분포함 공공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S등급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그룹은 시설기반서비스 유형으로 4개(20.0%) 기관이 S등급에 해당하며 A등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그룹은 안전·평가관리 유형으로 15개(65.2%) 기관이 A등급에 해당함.

○ D등급인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등급 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그룹은 산업진흥(4개, 10.5%)과 지원형(4개, 13.3%) 유형인 것으로 나타남.

- 시장경쟁 유형은 하위등급인 C등급 이하인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그룹에 비해 고객만족도 수준이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Ⅰ－116〉 2015년도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현황

구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공기업·준정부기관	시장경쟁	(S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A등급)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B등급)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민생활증진	(S등급)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A등급)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B등급)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C등급)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산업진흥	(S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A등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구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산업진흥	(B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C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안전·평가관리	(S등급) 도로교통공단 (A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B등급) 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C등급)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설기반서비스	(S등급) 국립생태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A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독립기념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B등급)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C등급) 한국석유공사
기타공공기관	경쟁형	(S등급)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A등급) (재)정동극장, 강원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예술의전당,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유통(주), 한국원자력의학원 (B등급) ㈜강원랜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코레일로지스(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잡월드 (C등급) 한국과학기술원

구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지원형	(S등급) 한국예탁결제원 (A등급)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B등급)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민생활체육회, 노사발전재단, 대한적십자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C등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리형	(A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쟁기념사업회,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주) (B등급) 가축위생방역기원본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코레일관광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C등급) ㈜워터웨이플러스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조사대상기관은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2. 분석대상기관은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4년 및 2015년 모두 기획재정부 통합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2016년 신규지정기관,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3. 2016년 공공기관 지정결과상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한국국제협력단은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통합조사가 아닌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를 수검함에 따라 분석대상기관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중 그룹별 상대등급의 전년대비 개선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년대비 상대등급 개선기관의 비중이 높은 그룹은 지원형 그룹으로 22개 기관(75.9%)에서 상대등급이 전년도보다 상승했으며 경쟁형과 관리형 그룹의 개선기관 비중도 각 55.6%와 50.0%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하위 그룹에 비해 기타공공기관 하위 그룹(경쟁형, 지원형, 관리형)에서 전년대비 상대등급 개선이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시장경쟁 그룹은 4개(80.0%) 기관이 전년도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기반서비스 그룹도 14개(73.7%) 기관이 전년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등급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상대등급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그룹은 국민생활증진 그룹의 5개(23.8%) 기관이 상대등급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117〉 2015년도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분포

(단위: 개)

구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전년대비 상대등급 개선수준			
		조사 대상[1]	S	A	B	C	D	분석 대상[2]	상승 (▲)	유지 (－)	하락 (▼)
공기업·준정부기관	시장경쟁	5	1	3	1	0	0	5	1	4	0
	국민생활증진	21	2	5	11	3	0	21	5	11	5
	산업진흥	38	3	12	19	4	0	37	12	21	4
	안전·평가관리	23	1	15	5	2	0	23	6	13	4
	시설기반서비스	20	4	13	2	1	0	19	3	14	2
	소계	107	11	48	38	10	0	105	27	63	15
기타공공기관	경쟁형	27	2	13	11	1	0	27	15	11	1
	지원형	30	1	10	15	4	0	29	22	7	0
	관리형	13	0	5	7	1	0	12	6	4	2
	소계	70	3	28	33	6	0	68	43	25	3
전 체		177 (100%)	14 (100%)	76 (100%)	71 (100%)	16 (100%)	0 (100%)	173 (100%)	70 (100%)	85 (100%)	18 (10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조사대상기관은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2. 분석대상기관은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4년 및 2015년 모두 기획재정부 통합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2016년 신규지정기관,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3. 2016년 공공기관 지정결과상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한국국제협력단은「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통합조사가 아닌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를 수검함에 따라 분석대상기관에서 제외

〈표 Ⅰ－118〉 전년대비 2015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현황

(단위: 개, %)

구분	기관수 (173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등급 상승	70 (40.5)	63	6	1
등급 유지	85 (49.1)	-	-	-
등급 하락	18 (10.4)	18	-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내용을 기초로 작성

주: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4년 및 2015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2016년 신규지정기관,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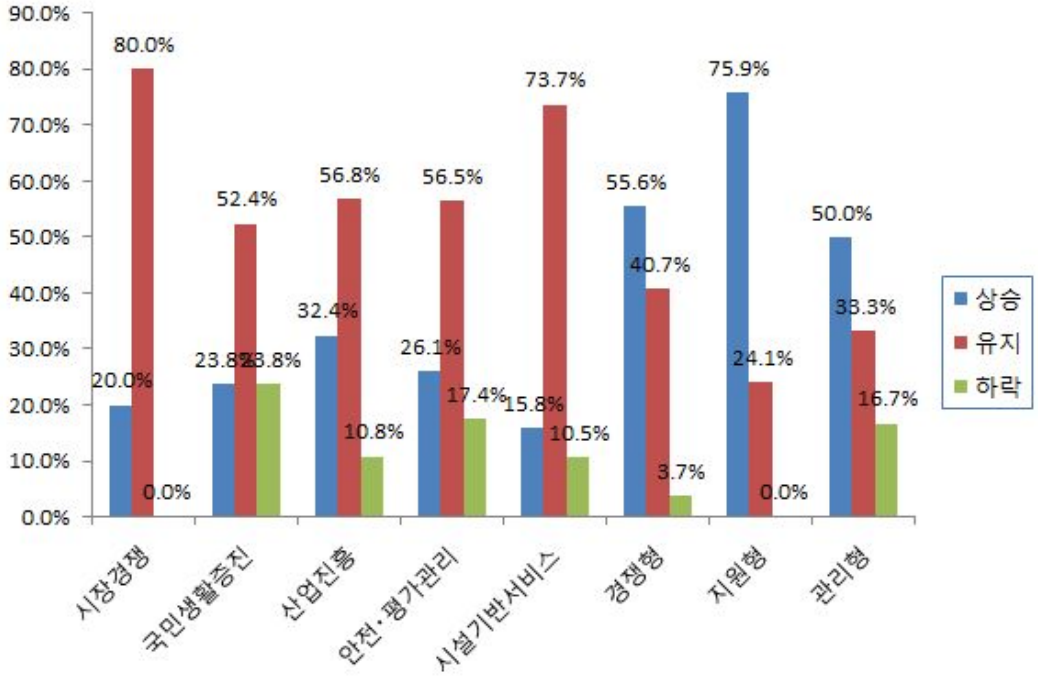
〈표 Ⅰ－119〉 전년대비 2015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내역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70개)	(공기업)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준정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재)정동극장, ㈜강원랜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남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충남대학교병원, 코레일로지스(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급 유지 (85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독립기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노사발전재단, 대한적십자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예술의전당,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구분	기관명
등급 하락 (18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내용을 기초로 작성
주: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4년 및 2015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2016년 신규지정기관,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그림 Ⅰ-40〉 그룹유형별 전년대비 2015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개선기관 비중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191]

(1)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조사를 실시함[192]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근거하여 청렴도 조사를 실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기능,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권한을 가짐.

○ 청렴도는 각 기관의 주요 대민·대관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와 정책고객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하며,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결과를 산출함.

- 설문조사는 전화조사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조사를 병행하며 평가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정책 고객은 방문조사를 병행함.

○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함.

□ 청렴도 모형을 도입한 2002년 이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2008년에 '내부청렴도'를 도입한 이래 2012년에 제도를 전면 개편함[193].

○ 2012년도부터는 측정모형을 전면 개편하여 기관의 정책업무를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를 청렴도의 정식지표로 반영[194]하고 있으며 전문가·업무관계자(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금융공직유관단체), 지역주민(광역), 학부모(교육청)를 평가자에 포함시킴.

---

19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5.12.9.일자)』,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19.일자)』, 『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2.3.일자)』 내용 중 공공기관 관련내용을 발췌하여 활용

192)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공공기관 현황 편람』(2015), p110에서 발췌

193)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공공기관 현황 편람』(2015), p111에서 발췌

194) 정책고객평가는 정책고객 평가자의 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Ⅰ유형(2,300명이상)과 Ⅱ유형(1,000명 이상~2,300명 미만)에 한하여 적용

○ 기관별 부패현황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종합청렴도 산출 시 감점요소로 반영함.

○ 기존의 투명성 및 책임성 지수 항목은 간소화하여 비중을 축소한 대신, 새로운 부패유형과 간접부패경험도 측정 가능하도록 관련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부패지수 평가를 강화함[195].

○ 호의적 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측정명부 조작·오기·대리응답 등 명부관련 저해행위에 대해서 감점을 신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함.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대상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조사를 실시함[196].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의 측정 대상이 됨.

- 공운법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측정기관 대상 중 공직유관단체 유형으로 분류됨[197].

○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의료기관 성격의 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의 대상이 됨.

- 공공의료기관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10개 국립대병원(대학병원 유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치과병원(치과병원 유형), 개별법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의료원 유형),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원자력병원(기타병원 유형)이 포함됨.

○ 마지막으로,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기관은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를 수검함.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은 법인형태의 기관(6개), 국립대학교(29개), 공립대학교(1개)가 포함됨.
- 이 중 법인형태의 기관 6개 중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舊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은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함.

---

195) 외부청렴도 3개 항목, 내부청렴도 3개 항목, 정책고객평가 7개 관련항목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투명성·책임성 지수 항목은 8개→4개로 축소하여 부패위험지수로 통합하고 비중을 축소함

196) 국민권익위원회『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2015.6월)』,『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공공의료기관](2015.7월)』 및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국·공립대학](2015.7월)』을 활용하여 작성

197) 공공기관 측정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종합청렴도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1차 결과(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산출평가결과)에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실적을 반영하여 감점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산출함.

□ 2015년도 청렴도 조사는 2012년에 개편된 측정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아래 사항을 보다 보완·개선하여 청렴도를 측정함[198].

○ 2015년에는 시행예정에 있는 청탁 금지법의 취지와 최근 부패현황을 반영하여 측정 대상 부패경험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표에 반영하였음.

- 외부·내부청렴도 설문에서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직자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를 통한 경험 여부를 함께 측정함.

○ 또한, 내부청렴도 설문에 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 사업비 등 예산의 위법 부당한 집행이 있는지에 대해 공직자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지표를 개선함.

-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구매하거나, 출장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최근 적발되었던 사례들을 설문에 참고로 도입하여 주의를 촉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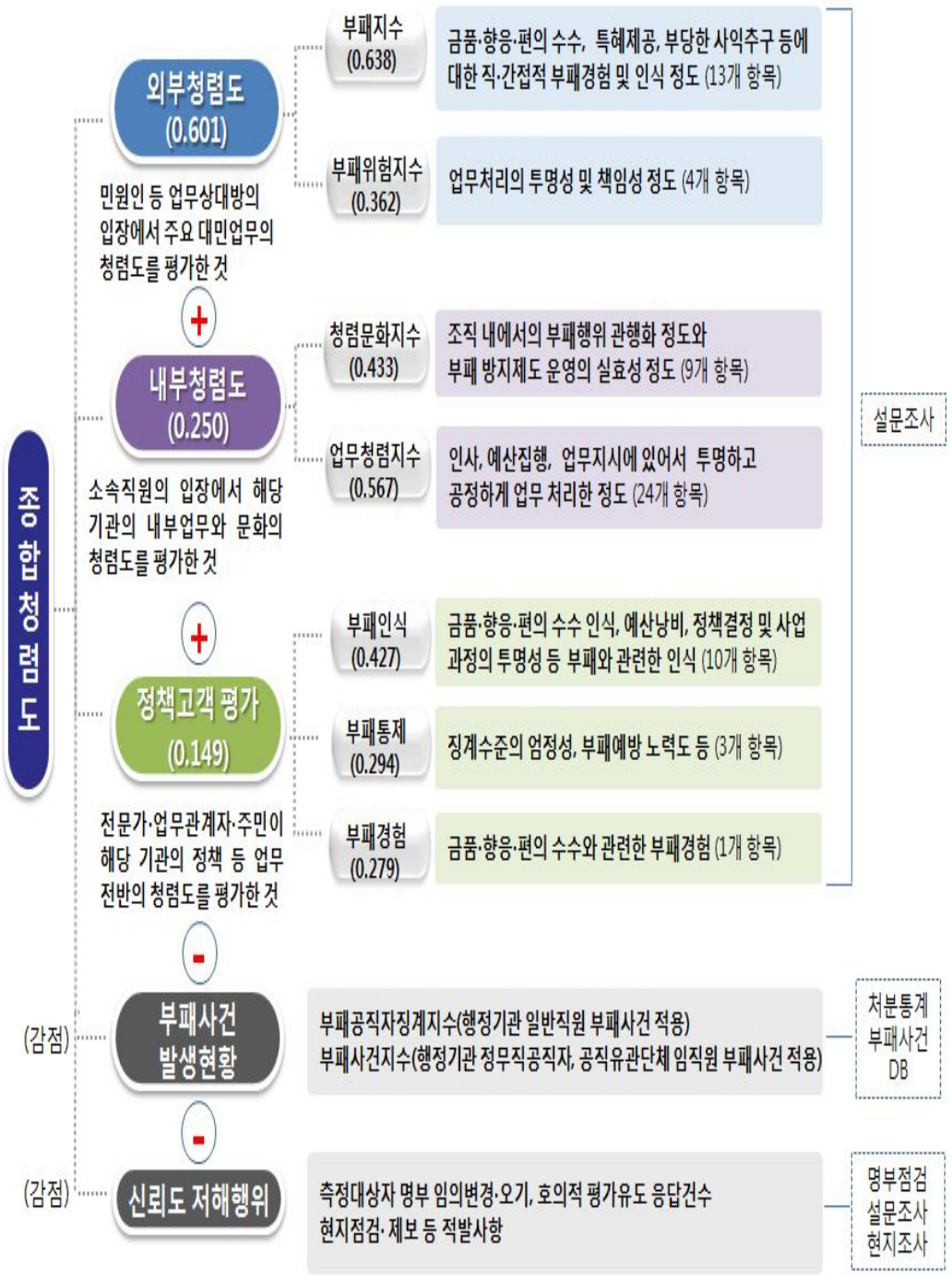
○ 모든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부패사건이 발생한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의 범주도 확대함.

- 과거에는 행정기관만 공무원 징계 등의 처분자료를 이용하고 공직유관단체는 언론보도·감시자료를 이용하여 부패사건을 확인해 왔으나 이를 변경하여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부패공직자 징계 등 처분자료를 확인 및 반영함.

○ 기존의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산식을 부패사건별로 부패금액을 산식에 반영하는 방식에서 부패금액을 기관총액으로 반영하고 부패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산식을 일부 보완함.

198)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5.12.9.일자)』 보도자료

〈그림 Ⅰ－41〉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5.12.09.일자)』보도자료
주: 1. 종합청렴도 모형의 외부·내부 청렴도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
2.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를 가중합산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각각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점수와 등급(5등급 체계)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으나 측정점수는 기관별 업무성격과 측정대상업무가 상이하므로 이를 서열화하여 순위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매년 조사대상에 변동이 있어 전체, 유형별 평균을 활용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를 통해 자세한 분석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01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 2016년 공공기관(323개) 중 2015년도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30개 공기업, 85개 준정부기관 및 57개 기타공공기관 등 총 172개 기관임.

○ 172개 기관 중 151개 기관은 상기한 <그림 Ⅰ-41>의 청렴도 측정모형에 따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이외 21개 기관은 별도 측정모형에 따라 청렴도를 측정함.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암센터,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등 17개 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함[199].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은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별도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함[200].

○ 청렴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은 기관은 151개 기관으로 이 중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립생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 5개 기관으로 모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유형에 속함[201].

---

199) 국민권익위원회『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19.일자)』
200) 국민권익위원회『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2.3.일자)』
201) 국립생태원은 공공기관에 최초 지정된 이래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바 없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2015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당해연도이므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2016년에 신규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청렴도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청렴도 측정결과는 점수와 유형내 등급으로 발표되며 2015년도 청렴도조사를 수검한 172개 기관 중 166개 기관의 청렴도 점수와 등급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 중 6개 기관(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은 유형내 기관수가 적은 관계로 측정결과를 별도 발표하지 아니함.

〈표 Ⅰ-120〉 2015년도 청렴도 조사대상 공공기관(2016.1월 기준)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직유관단체)	Ⅰ (19개)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타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Ⅱ (25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정부기관)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Ⅲ (36개)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Ⅳ (26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대한체육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V (23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구원 (22개)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립대학병원 (10개)	(기타공공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치과대학병원 (3개)	(기타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원 (1개)	(기타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기타병원 (3개)	(준정부기관)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공공기관)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대학교 (4개)	(기타공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5.12.9.일자)』,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6.1.19.)』 및 『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2.3.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밑줄 친 기관은 청렴도 조사를 최초 수검한 기관
2. 공공의료기관 중 치과대학병원 및 기타병원 유형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미발표
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2016년 7월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신설 출범
4. 대한체육회는 2016년 3월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하여 (통합)대한체육회로 신설 출범

□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를 구성하고 있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각각 전년에 비해 상승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나 정책의 청렴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올해 공공기관 외부청렴도의 평균 점수는 8.02점으로 전년에 비해 0.07점 상승하였고, 내부청렴도도 8.00으로 전년 대비 0.18점 상승, 정책고객평가 점수는 7.08점으로 전년 대비 0.22점 상승함.

○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공직유관단체 유형의 종합청렴도가 8.2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가 7.2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특히, 공직유관단체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점수가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8.45점으로 높게 나타남.

□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2015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점수 측면에서 살펴보면[202]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도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된 166개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8.18점으로 2014년 8.13점에서 0.0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015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114개 기관[203]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8.31점으로 전년대비 0.08점 상승하였음.
- 2015년에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종합청렴도 수준이 준정부기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52개 기타공공기관[204]의 2015년도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2014년보다 0.05점 하락한 7.89점으로 경영평가대상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205].

---

202) 종합청렴도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1차 결과(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결과)에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실적을 반영하여 감점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산출

203) 114개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015년도 청렴도 조사를 미수검한 국립생태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청렴도 조사는 수검하였으나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한국보훈복지공단(보훈병원)은 제외

204) 기타공공기관 중 청렴도 조사 대상이나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은 제외

205)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경영평가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가 반영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과 최상위·최하위 기관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151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8.31점이며 최고점을 받은 기관은 종합청렴도 점수가 8.86점인 (재)우체국금융개발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이고 최하점을 받은 기관은 작년에도 최하점이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종합청렴도 점수가 7.42점 수준임[206].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11개 병원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7.24점이며 작년에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7.55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반면 경북대학교병원은 종합청렴도 점수가 6.52점으로 최하점을 받음.
- 국·공립대학교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4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는 5.91점임. 4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6.21점)이고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5.31점)임.

○ 전반적으로 2014년 대비 2015년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93개 기관(공기업 13개, 준정부기관 52개, 기타공공기관 28개)이 2014년보다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함. 상승폭이 가장 큰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2014년 7.60점에서 2015년 8.57점으로 전년대비 0.97점이 상승함.
- 71개 기관(공기업 17개, 준정부기관 32개, 기타공공기관 22개)은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함. 71개 기관 중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폭이 가장 큰 기관은 공공의료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6.52점)으로 종합청렴도 점수가 전년대비 0.84점 하락함.
- 1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종합청렴도 점수가 2014년과 동일함.

2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에 신설 출범한 이래 최초 수검한 청렴도 측정 결과는 7.36점이었으며 올해 0.07점 상승함

〈표 Ⅰ-121〉 전년대비 2015년도 종합청렴도 점수 변동 현황

구분	기관명
점수 상승 (93개)	(공기업)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체육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주), 한국전력기술(주),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점수 유지 (1개)	(기타공공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점수 하락 (71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사회보장정보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구분	기관명
점수 하락 (71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DN, 한전KPS(주),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5.12.9.일자)』,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6.1.19.)』 및 『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2.3.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4년 및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검하고 결과를 공개한 16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등급 측면(1~5등급)에서 살펴보면[207], 다음과 같음.

○ 5단계 등급 중 3등급에 분포한 기관이 60개 기관으로 2015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가 발표된 165개 공공기관 중 36.4%를 차지함.

- 공운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수검하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5등급인 기관의 비율이 10%미만인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5등급 기관이 14.0%로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청렴도 수준이 낮은 기관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모든 유형에서 종합청렴도 등급이 3등급에 분포하고 있는 기관수가 가장 많음.

○ 최상위 등급(1등급)인 기관은 6개로 공기업은 1개, 준정부기관이 4개, 기타공공기관이 1개가 포함됨.

- 공기업 중 최상위 등급인 기관은 한국감정원이며, 2013년 이래 종합청렴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
- 준정부기관 중에는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임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며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에 4등급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등급이 상승하여 2015년에 1등급을 받음.

207) 종합청렴도 등급 판정은 조사 대상기관 유형별로 다른 등급구간을 적용함. 종합청렴도 등급구간은 유형별로 유형내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함

- 기타공공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유일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점수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종합청렴도 등급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1등급으로 분류됨.(3년 연속 1등급 기관임)

○ 반면 최하위 등급(5등급)인 기관은 16개로 1개의 공기업, 7개의 준정부기관과 8개의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으며, 2013년 이래로 종합청렴도 점수가 꾸준히 하락해왔음.
- 종합청렴도 등급이 5등급인 준정부기관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7개 기관임.
- 최하위 등급인 기타공공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체육회, 한전KDN, 전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원으로 8개 기관이며 이 중 대한체육회는 3년 연속 5등급을 받음.

○ 2014년도 종합청렴도 등급과 비교할 때, 전체 공공기관 중 등급이 상승한 기관보다 하락한 기관이 더 많으며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이 준정부기관보다 등급이 하락한 기관의 비율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이,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4년도에 비해 등급이 3단계가 하락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청렴도 관리가 요구됨.
- 종합청렴도 등급이 2단계 하락한 기관은 준정부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2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3개 기관임.
- 전년대비 등급이 2단계 상승한 기관은 7개로 한국공항공사(공기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상 준정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이상 기타공공기관)이 포함됨.
- 2014년도에 5등급을 받았던 기관 중 울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2015년에 등급이 3단계 상승하여 2등급을 받았음.

〈표 Ⅰ－122〉 전년대비 2015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변동 현황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38개)	(공기업) 울산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한국전력기술(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등급 유지 (78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강원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급 하락 (49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해양환경관리공단

구분	기관명
등급 하락 (49개)	(준정부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PS(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5.12.9.일자)』,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6.1.19.)』 및 『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2.3.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4년 및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검하고 결과를 공개한 16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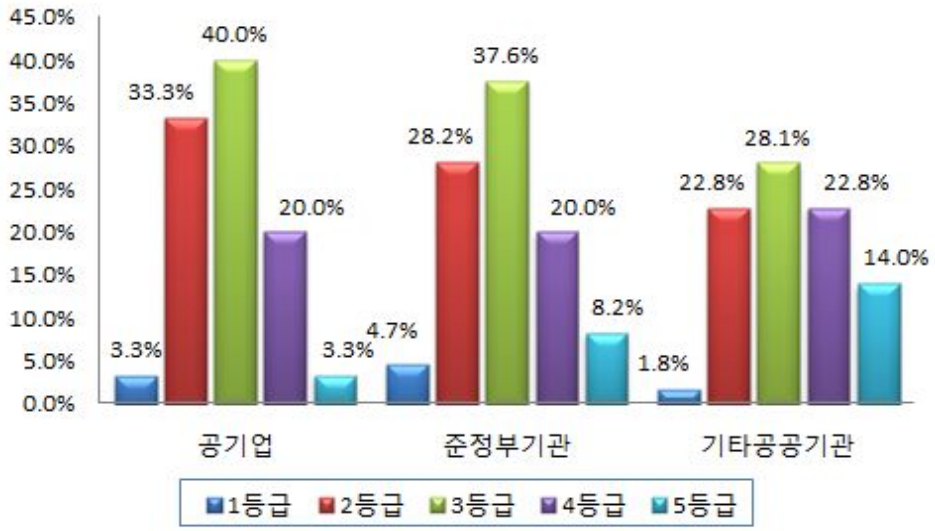
〈표 Ⅰ-123〉 2015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단위: 개)

구 분		종합청렴도 등급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조사 대상	평균 (점)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하락 (▼)
공기업	시장형 (14)	14	8.3	0	4	5	4	1	14	4	6	4
	준시장형 (16)	16	8.3	1	6	7	2	0	16	2	8	6
	소계 (30)	30	8.3	1	10	12	6	1	30	6	14	1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16)	16	8.4	0	7	7	1	1	16	5	9	2
	위탁집행 (74)	69	8.3	4	17	25	16	6	68	18	31	19
	소계 (90)	85	8.3	4	24	32	17	7	84	23	40	21
기타공공기관 (203)		57	7.9	1	13	16	13	8	51	9	24	18
전체 (323)		172	8.2	6	47	60	36	16	165	38	78	4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5.12.9.일자)』,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6.1.19.)』 및 『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2.3.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조사 대상인 172개 기관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 전체 수를 의미하며,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은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4년 및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검하고 결과를 공개한 16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그림 Ⅰ-42〉 공공기관 유형별 2015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5.12.9.일자)』,『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6.1.19.)』 및『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2.3.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Ⅰ-124〉 2015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구분	기관명
1등급 (6개)	(공기업) 한국감정원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임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공공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등급 (47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발전(주),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주)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립기념관, (재)한국우편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기타공공기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개발연구원, 한전KPS(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구분	기관명
3등급 (60개)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석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연구재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기타공공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주), 대한적십자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4등급 (36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정부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소비자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5등급 (16개)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준정부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타공공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체육회, 한전KDN, 전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5.12.9.일자)』,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6.1.19.)』, 『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2.3.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 35개 부처 중 28개 부처의 공공기관이 청렴도 측정 대상임.

- 청렴도 측정대상인 공공기관이 많은 부처는 33개 공공기관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32개 공공기관이 포함된 미래창조과학부임.

○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등급 개선수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처에서 2014년에 비해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기관수와 하락한 기관수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청렴도 조사 대상 공공기관이 10개 이상인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육부를 제외하고는 이전 해와 같은 등급을 유지하는 기관수의 비중이 가장 높음.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대상 공공기관이 10개 이상인 4개 부처를 대상으로 하여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는 3등급 이상인 기관의 비율이 50% 이상이나 교육부는 4등급 이하인 공공기관 비율이 77%로 종합청렴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 1등급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부처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고 5등급 기관이 없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임.

〈표 Ⅰ-125〉 2015년도 종합청렴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

(단위: 개)

부 처	종합청렴도등급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소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하락 (▼)
산업통상자원부	33	0	12	16	3	2	33	9	17	7
미래창조과학부	32	2	10	9	7	4	32	10	12	10
국토교통부	14	1	4	6	3	0	14	4	6	4
교육부	13	0	1	2	6	4	13	2	5	6
보건복지부	9	1	0	5	3	0	9	2	5	2
해양수산부	9	0	3	2	4	0	9	3	3	3
금융위원회	8	0	4	4	0	0	7	1	4	2
문화체육관광부	8	0	1	4	1	2	8	1	5	2
고용노동부	6	0	1	3	1	1	6	1	3	2
농림축산식품부	6	1	1	1	2	1	6	1	3	2
환경부	4	0	1	3	0	0	4	1	3	0
기획재정부	3	0	1	1	1	0	3	0	1	2
중소기업청	3	0	1	1	0	1	3	2	1	0
국민안전처	2	0	2	0	0	0	2	0	2	0
방위사업청	2	0	1	0	1	0	2	0	1	1
여성가족부	2	0	0	1	1	0	2	0	0	2
경찰청	1	0	0	1	0	0	1	0	1	0
공정거래위원회	1	0	0	0	1	0	1	0	0	1
국가보훈처	1	0	1	0	0	0	1	0	1	0
국무조정실	1	0	1	0	0	0	1	0	0	1
기상청	1	0	0	0	0	1	1	0	0	1
농촌진흥청	1	0	1	0	0	0	1	0	1	0
방송통신위원회	1	0	0	1	0	0	1	0	0	1
산림청	1	1	0	0	0	0	1	1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1	0	0	0	1	0	1	0	1	0
외교부	1	0	0	0	1	0	1	0	1	0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0	1	0	0	1	0	1	0
인사혁신처	1	0	1	0	0	0	1	0	1	0
전체	166	6	47	61	36	16	165	38	78	4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5.12.9.일자)』,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6.1.19.)』 및 『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2.3.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2015년에 처음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한국산업은행은 2014년 결과가 없으므로 종합청렴도 등급에 포함되고 전년대비 등급개선 수준은 불포함

3.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은 2016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4년 및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검하고 결과를 공개한 16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4. 정부 부처 중 청렴도 조사 대상을 1개 기관도 포함하지 않는 부처는 제외하고 작성

〈표 Ⅰ－126〉 2015년도 종합청렴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부처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33개)	(2등급)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한석탄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주) (3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4등급)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5등급) 한국가스공사, 한전KDN
미래창조과학부 (32개)	(1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등급) (재)한국우편산업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3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4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토교통부 (14개)	(1등급) 한국감정원 (2등급)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조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4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교육부 (13개)	(2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대학교병원 (4등급) 한국장학재단,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5등급)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부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9개)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3등급)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4등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부 (9개)	(2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3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4등급)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금융위원회 (8개)	(2등급)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3등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문화체육관광부 (8개)	(2등급) 한국언론진흥재단 (3등급) 한국관광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4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등급)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용노동부 (6개)	(2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4등급) 한국고용정보원 (5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농림축산식품부 (6개)	(1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2등급) 한국마사회 (3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등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5등급)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4개)	(2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등급)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재정부 (3개)	(2등급) 한국조폐공사 (3등급) 한국투자공사 (4등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청 (3개)	(2등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5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안전처 (2개)	(2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방위사업청 (2개)	(2등급) 국방기술품질원 (4등급) 국방과학연구소
여성가족부 (2개)	(3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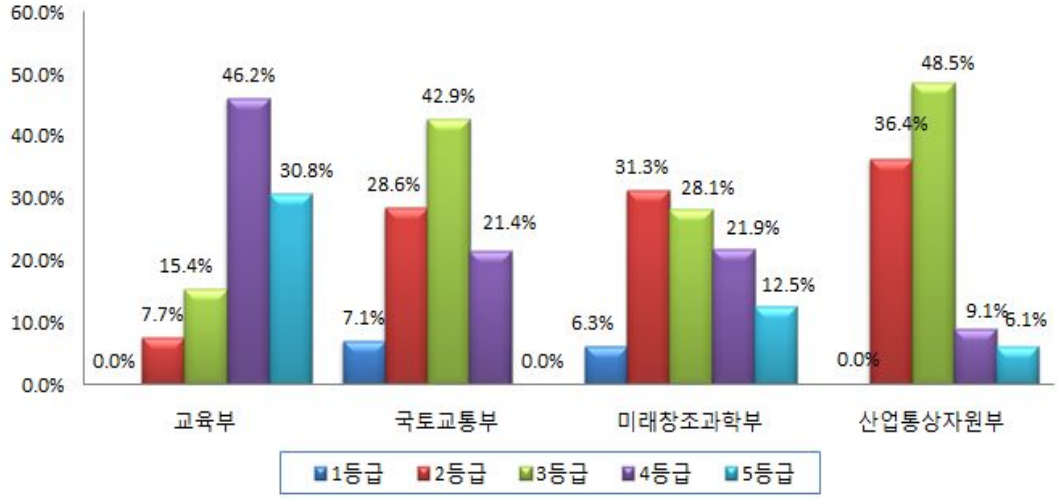
부처	기관명
경찰청 (1개)	(3등급) 도로교통공단
공정거래위원회 (1개)	(4등급) 한국소비자원
국가보훈처 (1개)	(2등급) 독립기념관
국무조정실 (1개)	(2등급) 한국개발연구원
기상청 (1개)	(5등급)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농촌진흥청 (1개)	(2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방송통신위원회 (1개)	(3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산림청 (1개)	(1등급) 한국임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4등급)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외교부 (1개)	(4등급) 한국국제협력단
원자력안전위원회 (1개)	(3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사혁신처 (1개)	(2등급) 공무원연금공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5.12.9.일자)』,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19.)』 및 『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2.3.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 ) 안은 부처별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대상 중 점수 및 등급을 공개한 기관수를 의미(결과 비공개 기관은 제외)

〈그림 Ⅰ-43〉 주요 주무부처 소관 공공기관의 2015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5.12.9.일자)』,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6.1.19.)』 및 『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2.3.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부처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는 해당 부처에 조사대상 기관이 10개 이상인 기관만을 제시

4)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1) 통합공시제도 개요[208]

□ 공공기관은 공운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함.

○ 2015년 경영 공시 의무 대상인 311개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경영정보를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 중임.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하 '통합공시기준')」 제4조에 의거하여 6개 대항목 하위에 총 37개 항목에 대해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 통합공시 항목 37개 중 3개 항목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음[209].
- 통합공시 항목은 정기공시항목이 25개이고, 수시공시항목은 12개임[210].

208) 기획재정부 『'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2016.2.29.일자)』 보도자료 및 『'1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6.2.26일자)』 참조

209)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3개 항목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임

210) 수시공시 12개 항목에는 임직원 수 현황, 임원 국외출장정보, 노동조합 관련현황, 취업규칙, 국회지적사항, 이사회 회의록 및 내부 감사결과, 경영혁신 사례, 임직원 채용정보, 입찰정보, 연구보고서, 기타정보공개, 계약정보-수의계약이 해당됨

- 통합공시기준<별표2>에 따라 벌점부과를 위해 통합공시 메뉴얼에서는 통합공시 항목을 항목별로 하위단위를 세항목과 세세항목으로 구분하고, 중요도를 고려하여 주요항목과 기타항목으로 구분함.

□ 기획재정부는 통합공시기준 제10조에 따라 공시 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공시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통합공시 점검을 실시함.

○ 통합공시점검은 2006년에 알리오시스템 구축 이후 단계적으로 점검수준을 강화해옴.

- 2013년에 정기공시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채, 복리후생, 수시공시 등 관련항목에서 경영정보가 성실하게 공시되는지 여부를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기 시작하였음.
- 2014년에는 통합공시 실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2015년에 해당 점검 체계 및 벌점 체계 등을 개선하였음.

○ 2015년도 통합공시점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통합공시 37개 항목 중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노무법인과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 통합공시 점검대상항목은 공공기관 관리 정책과 국민적 관심 측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함.
- 316개 기관 중 2016년 지정해제 된 5개 기관을 제외한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현황, 재무 현황, 복리 후생비 지급 현황 등 관련 항목을 점검함.
- 점검 항목은 임직원 수,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취업규칙,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자본금 및 주주현황, 장단기 차입금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 감사보고서, 담보제공·채무보증 현황이 포함됨.

〈표 Ⅰ-127〉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16.3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항목별 하위 단위수준			공시주기(세세항목 기준, 112개)		
	항목	세항목	세세항목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항목	기타항목	
	37	81	112	58	24	30
Ⅰ. 일반현황	1	1	1	-	1	-
Ⅱ. 기관운영	10	28	41	26	6	9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2	23	23	6	12	5
Ⅳ. 대내외평가	7	10	10	-	4	6
Ⅴ. 공지사항(정보센터)	5	6	6	-	1	5
Ⅵ.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2	13	31	26	-	5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2016.3.)을 참고하여 작성

□ 통합공시기준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항목의 중요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벌점을 달리 부과할 수 있음.

○ 공시 오류로 인해 해당 항목의 의미상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중과실이며, 공시 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오류이면 경과실에 해당함.

- 수치입력의 오류, 특별한 사유가 없는 미공시 등은 중과실이며 단순한 계산의 실수, 첨부파일 오류나 매뉴얼이 모호한 경우 해석상 오류 등은 경과실 사례로 볼 수 있음.

○ 벌점을 부과할 때 항목에 따라 과점 단위를 구분하여 정기공시항목은 세항목별 과점, 세세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세세항목별 과점을 부과하고 수시공시항목은 사유발생 또는 공시 회수별로 과점함.

〈표 Ⅰ-128〉 2015년 통합공시 점검 벌점 부과 체계

항목	미공시 · 허위공시		지연 공시	공시 변경
	고의 · 중과실	경과실		
주요항목	5점	3점	1점~2.5점	(정기) 0.5점 (수시) 0.1점
기타항목	3점	1.5점		

자료: 기획재정부『'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2016.02.29.일자)』 보도자료

□ 통합공시기준 제14조에 따라 점검결과 벌점이 부과된 기관에 대해서는 벌점정도에 따라 정기공시 후 1년 이내에 사후조치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인사조치, 기관주의 조치를 실시함.

○ 연간 누적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고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은 불성실공시 기관으로 지정되고 관련자는 인사조치함.

- 불성실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 또한 알리오시스템에 해당 기관이 지정되었음을 3개월간 게시하며 관련자는 인사조치를 시행함.

○ 연간 누적벌점이 20점을 초과한 기관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의 대상이 됨.

- 기관주의 대상 기관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을 실시함.

□ 이외에도 사후조치로 무벌점기관은 우수기관으로 알리오시스템에 게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점검결과를 반영함.

○ 2014년까지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제도에 인센티브 차원의 제도가 없었으나 2015년 점검 이후 처음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하였음.

- 무벌점기관의 경우, 알리오시스템에 해당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담당자를 표창하여 처벌위주의 사후조치를 탈피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 공기업(30개)·준정부기관(86개)은 점검결과를 경영평가 계량지표로 반영함.

- 점검 결과에 따라 공기업은 1~1.5점, 준정부기관은 1.5점을 경영평가에 반영함.
- 기타공공기관(195개)은 주무부처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함.

(2) 2015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 2015년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벌점 및 사후조치 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2013년 통합공시 점검이 실시된 이래 공시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

○ 평균 벌점은 2015년에 10.8점으로 2013년 113.1점, 2014년 21.3점에서 2015년 10.8점으로 매년 대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벌점수준이 기타공공기관의 평균 벌점 수준보다 낮게 나타남.

○ 사후조치대상기관 역시 2015년 43개 기관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불성실공시기관도 8개 기관으로 나타남.

-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8개 기관 중 공기업은 없으며, 기타공공기관이 7개로 대부분을 차지함.

○ 2015년도 통합공시점검에서 처음 시행된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16개임.

- 우수공시기관은 공기업은 한국감정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기관이고 준정부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5개 기관임.

〈표 Ⅰ－129〉 공공기관 통합공시 벌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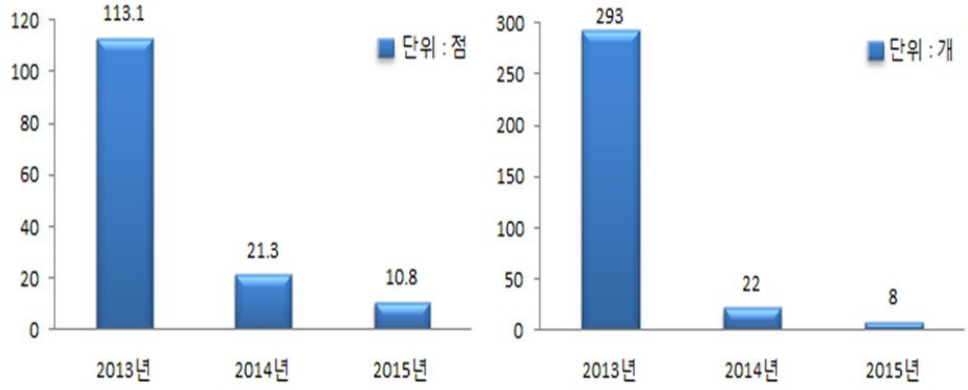
(단위: 개, 점)

구분	'13년	'14년	'15년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점검 대상	295	297	311	30	86	195
평균 벌점(점)	113.1	21.3	10.8	8.2	7.6	12.4
무벌점기관	0	3	16	3	8	5
사후조치대상	295 (100%)	151 (50.2%)	43 (13.8%)	1 (3.3%)	5 (5.8%)	37 (20.0%)
기관주의	2	129	35	1	4	30
불성실공시기관	293	22*	8	-	1	7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6.2.26.일자)』

주: 2014년도 기관주의 및 불성실공시기관의 수는 2014년 당시 벌점 기준으로 지정된 사후조치 대상 기관이 아닌 2015년에 개정된 벌점 기준을 적용한 결과임

〈그림 Ⅰ－44〉 201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벌점 및 불성실공시기관 수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6.2.26.일자)』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Ⅰ－130〉 2015년 통합공시 점검결과 우수공시기관 및 불성실공시기관 현황

구분	기관유형	기관명
우수공시기관 (16개)	공기업 (3개)	한국감정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준정부기관 (8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한국우편사업흥원
	기타공공기관 (4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잡월드,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불성실공시기관 (8개)	공기업	-
	준정부기관 (1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기타공공기관 (7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자료: 기획재정부『'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 (2016.2.29.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통합공시 점검결과 부과되는 벌점을 구간별로 보면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되는 벌점 0점인 기관은 전체 기관의 5.1%를 차지하고, 사후조치 대상기관은 전체 기관의 13.8%가 해당됨.

- 전체 공공기관의 50.5%는 0점 초과~10점 이하 벌점 구간에 해당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벌점 구간 분포를 살펴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기관 유형을 비교해볼 때 차이를 보이는 구간은 0점인 우수공시기관 분포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각 10.0%와 9.3%로 기타공공기관의 5.8%보다 높게 나타남.
- 20점 초과~30점 이하, 31점 초과~40점 이하 구간에서 기타공공기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기관주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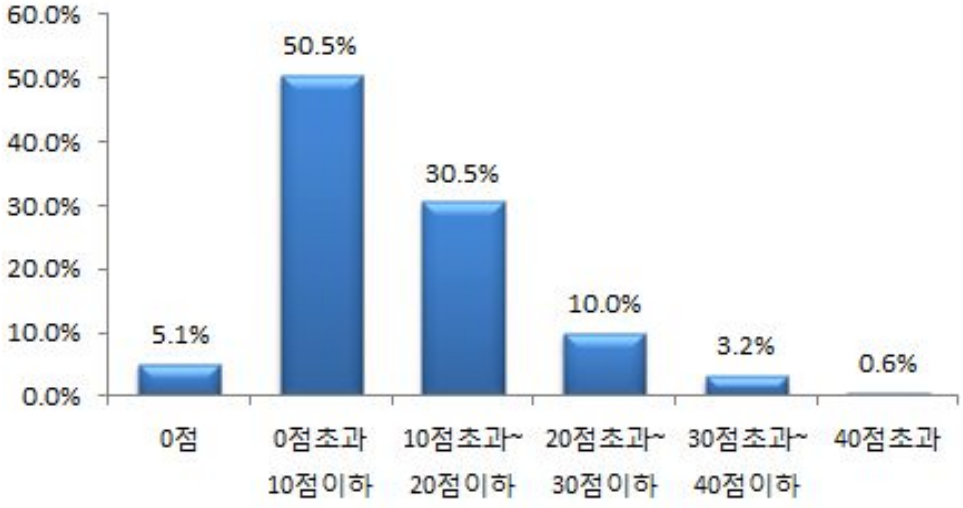
〈표 Ⅰ-131〉 2015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구간 현황

(단위: 개)

구분	소계	0점	0점초과~10점이하	10점초과~20점이하	20점초과~30점이하	30점초과~40점이하	40점초과
공기업	30	3	15	11	1	0	0
준정부기관	86	8	50	23	4	1	0
기타공공기관	195	5	92	61	26	9	2
합계	311	16	157	95	31	1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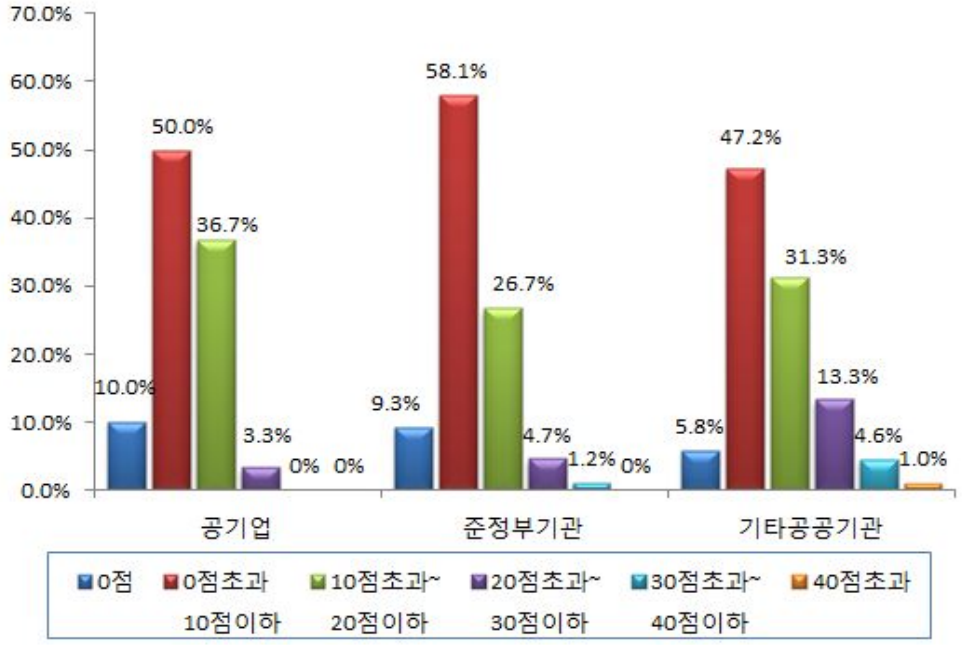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 (2016.2.29.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2년간 벌점이 20점을 연속 초과하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결과에 대해서 해당 표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

〈그림 Ⅰ-45〉 2015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구간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 『'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 (2016.2.29.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46〉 2015년 통합공시 점검결과 기관유형별 벌점 구간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6.2.26.일자)』를 참고하여 작성

□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의 벌점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Ⅰ-132>와 같음.

○ 대부분의 부처가 0점 초과~10점 이하 구간에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0점 초과~10점 이하 구간 벌점을 받은 기관보다 10점 초과~20점 이하 구간의 벌점을 받은 기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상위 5개 부처를 중심으로 벌점구간 분포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0점을 받은 우수공시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사후조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임.

- 벌점이 40점을 초과하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기관수가 많은 상위 5개 부처에는 존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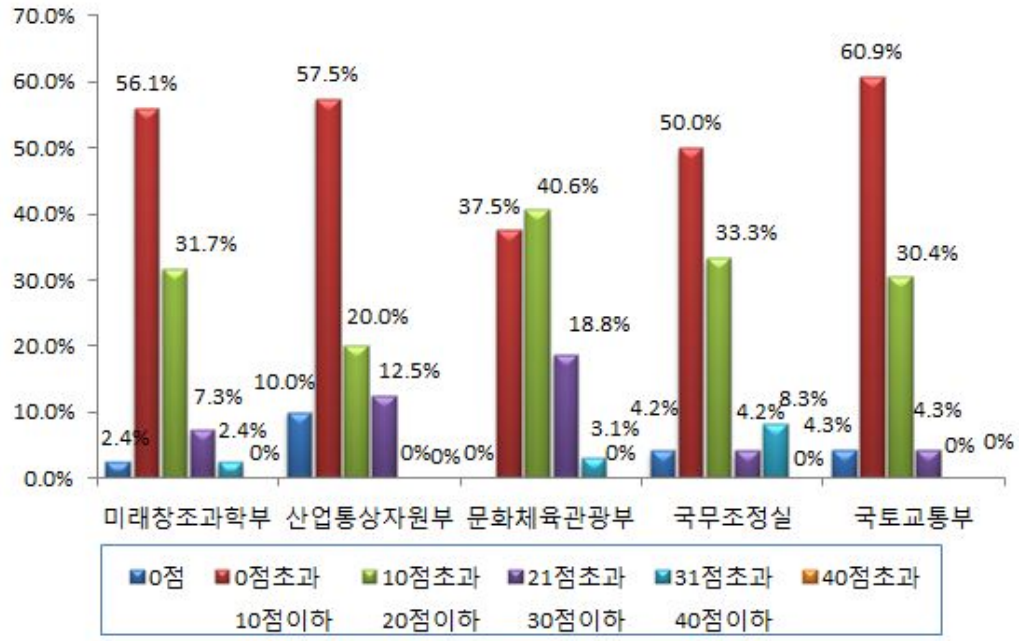
〈표 Ⅰ-132〉 2015년 통합공시 점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벌점 분포

(단위: 개)

구분	소계	0점	0점초과~10점이하	10점초과~20점이하	20점초과~30점이하	30점초과~40점이하	40점초과
미래창조과학부	41	1	23	13	3	1	0
산업통상자원부	40	4	23	8	5	0	0
문화체육관광부	32	0	12	13	6	1	0
국무조정실	24	1	12	8	1	2	0
국토교통부	23	1	14	7	1	0	0
교육부	21	1	11	4	2	2	1
보건복지부	20	4	9	5	1	1	0
해양수산부	15	0	4	7	3	1	0
고용노동부	12	1	8	3	0	0	0
농림축산식품부	10	1	2	4	2	1	0
금융위원회	8	0	7	1	0	0	0
중소기업청	8	0	4	3	0	1	0
환경부	6	0	3	2	1	0	0
여성가족부	5	1	2	1	1	0	0
법무부	4	0	1	3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3	0	1	1	1	0	0
특허청	4	0	3	1	0	0	0
국가보훈처	3	0	2	1	0	0	0
기상청	3	0	0	2	0	0	1
기획재정부	3	0	2	1	0	0	0
외교부	3	0	1	2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2	1	0	0	0
공정거래위원회	2	0	2	0	0	0	0
국민안전처	2	0	1	1	0	0	0
국방부	2	0	1	0	1	0	0
방위사업청	2	0	1	1	0	0	0
산림청	2	1	0	1	0	0	0
통일부	2	0	2	0	0	0	0
행정자치부	2	0	0	1	1	0	0
경찰청	1	0	0	0	1	0	0
관세청	1	0	0	0	1	0	0
농촌진흥청	1	0	1	0	0	0	0
문화재청	1	0	1	0	0	0	0
방송통신위원회	1	0	1	0	0	0	0
인사혁신처	1	0	1	0	0	0	0
합계	311	16	157	95	31	10	2

자료: 기획재정부 『'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 (2016.2.29.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47〉 2015년 통합공시 벌점 구간별 주요 주무부처 소관 공공기관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6.2.26.일자)』를 참고하여 작성
주: 부처별 통합공시 점검결과 분포는 통합공시 대상 공공기관 수가 많은 상위 5개 부처만을 제시.

□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체 통합공시점검 대상기관 311개 중 전년에 비해 129개 기관이 벌점수준이 개선되었고 28개 기관은 벌점수준이 악화되었음.

○ 2014년도에 비해 올해 벌점 수준이 개선된 기관 중 개선도가 높아 불성실공시 기관에서 사후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이 19개임.

- 특히 이 중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재)정동극장, 국민연금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전년대비 벌점이 40점 이상 감소하였음.

○ 벌점 수준이 악화된 기관 중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준정부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으로 각각 1개 기관이며 나머지 27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에 속함.

- 2014년도와 2015년도 모두 사후조치대상에 속한 기관은 22개이며 이 중 국제방송교류재단, 가축위생방역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벌점 수준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표 Ⅰ-133〉 2015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대비 변동 현황

구분		기관명
개선된 기관 (129개)	1단계 개선 (110개)	[기관주의→사후조치대상아님(107개)] (공기업)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립기념관,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상대학교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생활체육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토연구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초전력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술의전당,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주대학교병원,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통일연구원,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불성실공시기관→기관주의(3개)] (준정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공공기관)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구분		기관명
	2단계 개선 (19개)	[불성실공시기관→사후조치대상아님(19개)]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악화된 기관 (28개)	1단계 악화 (27개)	[사후조치대상아님→기관주의(20개)] (준정부기관) 도로교통공단 (기타공공기관) 경북대학교병원, 국립대구과학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재)한식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7개)]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기타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단계 악화 (1개)	[사후조치대상아님→불성실공시기관(1)] (기타공공기관)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자료: 기획재정부 『'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 (2016.2.29.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수준이 전년에 비해 개선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5년 공시점검 시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기관들 또한 경영공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

- 기존의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벌점 5점을 과실의 경중과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최소 0.1점~5점까지 세분화하여 반영함.

○ 특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4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 통합공시점검결과가 계량지표로 반영되면서 기관의 관심이 증가하였음.

-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 공시경험이 부족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관심도가 낮고 관리도 부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지정 공공기관에 대한 별도의 통합 공시교육 등이 필요함.

□ 2015년도 통합공시점검의 항목별 점검결과를 복리후생 관련 항목과 재무관련 항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복리후생과 관련된 공시 항목의 위반건수가 가장 많으며, 5개 공시항목을 모두 적정하게 공시한 기관은 50개 기관으로 전년도에 26개 기관인 것에 비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복리후생 관련 공시항목 점검대상은 임직원수,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취업규칙,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임.
- 복리후생 관련 점검항목이 위반건수가 많은 원인은 벌점 부과기준인 세항목이 다른 공시항목에 비해 많고, 여러 단계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임.

○ 재무 관련 점검 항목 7개 중에서 특히 요약대차대조표와 요약손익계산서 항목이 재무 벌점의 30.4%를 차지하여 다른 재무관련 공시항목에 비해 관리가 부실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재무 관련 7개 점검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자본금 및 주주현황, 장단기 차입금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담보제공·채무보증 현황 등임.
- 다른 점검항목에 비해 요약대차대조표와 요약손익계산서 항목에서 벌점이 많이 발생한 것은 감사원 요구에 따라 2015년 3분기에 부채비율, 자기자본회전율 등 공시항목을 신규로 추가되어 공시오류가 다수 발생된 것임.

□ 2015년도 벌점부과 현황을 과실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타남.

○ 과실의 경중을 기준으로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중과실이 14.5%, 경과실이 50.2%이며 중과실과 경과실에 부과된 벌점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과실이 30.1%, 경과실이 59.6%를 차지함.

○ 2015년에도 여전히 계산 실수를 하거나 매뉴얼 해석오류, 단순 오타가 있는 등의 경과실 위반 사례가 많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강원랜드(주),『사업보고서(2015)』, 2016.3월

고용노동부,『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발표(2016.1.22.일자)』보도자료

_____,『공정인사 지침』, 2016.1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교육부 합동,『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추가 전환(2016.2.18.일자)』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 계획』2015.3월

_____,『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2015.6월

_____,『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공공의료기관]』2015.7월

_____,『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국·공립대학]』2015.7월

_____,『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5.12.9.일자)』보도자료

_____,『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9.일자)』보도자료

_____,『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2.3.일자)』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2016.

그랜드코리아레저,『사업보고서(2015)』, 2016.3월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2013.12.11.일자)』보도자료

_____,『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확정(2013.12.31.일자)』보도자료

_____,『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마련(2013.12.31.일자)』보도자료

_____,『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3.12월

_____,『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4.6.18.일자)』보도자료

_____,『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현을 위한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안)』, 2014.2월

_____,『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4.5.1.일자)』보도자료

_____,『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확정 및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 개최 (2014.10.30.일자)』보도자료 및 보도참고자료

_____,『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4.12.23.일자)』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정상화(2014.12.23.일자)』 보도자료
_____,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수정)』, 2014.12월
_____,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4.12월
_____, 『고용·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5.1.11.일자)』 보도자료
_____,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15.1월
_____, 『2015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안)(2015.2.13.일자)』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 논의(2015.4.12.일자)』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 간 6700여 명 청년 고용 전망: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2015.5.7.일자)』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2015.5.27.일자)』 보도자료
_____,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5.6.17.일자)』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투자 및 부채감축계획(2015.7.29.일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자료
_____,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5.9.16.일자)』 보도자료
_____,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수정)』 2015.9월
_____,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5.12.20.일자)』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중기성과급, 개방형 계약직, 전문직위제 도입(2015.12.21.일자)』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2015.12월
_____,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2015.12월
_____,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2015.12월
_____,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반 직원으로 대폭 확대(2016.1.28.일자)』 보도자료
_____,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6.1.29.일자)』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2016.1월
_____,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16.1월
_____,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본격 추진(2016.2.11.일자)』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신규채용 착수(2016.2.24.일자)』 보도자료
_____,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개최(2016.2.25.일자)』 보도자료
_____,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2016.2.25.일자)』 보도자료
_____, 『'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2016.2.29.일자)』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 2016.2월
_____, 『'1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2016.2월
_____, 『제2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 개최(2016.3.17.일자)』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향상(2016.3.18.일자)』 보도자료
_____, 『47개 선도 기관 중 처음으로 기상산업진흥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조기 이행 확정(2016.3.28.일자)』 보도자료
_____, 『한국마사회, 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전면 도입 확정 (2016.3.31.일자)』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16.3월
_____,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실무 점검회의 개최(2016.4.15.일자)』 보도자료
_____, 『2015년 공공기관 결산-재무건전성 대폭 개선, 부채관리목표 조기달성 (2016.4.26.일자)』 보도자료
_____,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6.4.29.일자)』 보도자료
_____, 『한전 등 4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2016.4.29.일자)』 보도자료
_____,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기능조정 추진현황 점검결과 보고 (2016.5.2.일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자료
_____,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 내년 인건비 동결(2016.5.9.일자)』 보도자료
_____, 『'16년 정부출자주식 배당금 1조 2,190억원 수납(2016.5.12.일자)』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2016.5.20.일자)』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120개 全 공공기관 도입 완료(2016.6.10.일자)』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너지·환경·교육 분야(2016.6.13.일자)』 보도자료
_____,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6.6.16.일자)』 보도자료
_____,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사례(2016.6.19.일자)』 보도참고자료
_____, 『2016년 공공기관 수시지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18호)(2016.7.1.일자)』
_____, 『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설명회 자료』, 2016.7월
금융위원회,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2016.2.1.일자)』 보도자료
_____,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 2016.2월

_____, 『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조속히 이행키로 결의(2016.5.10.』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5

박한준 · 허경선, 『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2014

예금보험공사, 『예보, 지난 2년간 3.4조원 부채 줄였다(2016.2.24.)』 보도자료

중소기업은행, 『사업보고서(2015)』, 2016.3월

한국가스공사, 『결산서(2015)』, 2015.12월

_____, 『사업보고서(2015)』, 2016.3월

한국전력공사, 『결산서(2015)』, 2015.12월

_____, 『사업보고서(2015)』, 2016.3월

한국전력기술(주), 『사업보고서(2015)』, 2016.3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보고서(2015)』, 2016.3월

한전KPS(주), 『사업보고서(2015)』, 2016.3월

강원랜드(주), http://www.high1.com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홈페이지(Innocity), http://innocity.mltm.go.kr

그랜드코리아레저, http://www.grandkorea.co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 경영정보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채용정보시스템(Job-Alio) http://job.alio.g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중소기업은행, http://www.ibk.co.kr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한국전력공사, http://www.kepco.co.kr

한국전력기술(주), http://www.kepco-enc.com

한국지역난방공사, http://www.kdhc.co.kr

한전KPS(주), http://www.kps.co.kr

부 록

부록 1 기관명 색인

【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71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45
강원대학교병원 ····· 50
(주)강원랜드 ····· 88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948
건설근로자공제회 ····· 112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1424
게임물관리위원회 ····· 572
경북대학교병원 ····· 55
경상대학교병원 ····· 6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1409
고등과학원 ····· 294
공무원연금공단 ····· 163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414
광주과학기술원 ····· 209
교통안전공단 ····· 123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214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274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23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65
국가핵융합연구소 ····· 329
국립공원관리공단 ····· 1065
국립광주과학관 ····· 219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1085
국립대구과학관 ····· 224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577
국립생태원 ····· 1070
국립암센터 ····· 988

국립중앙의료원 ····· 993
국립해양박물관 ····· 1356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1361
국민건강보험공단 ····· 95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958
국민연금공단 ····· 943
국민체육진흥공단 ····· 524
국방과학연구소 ····· 1685
국방기술품질원 ····· 1689
국방전직교육원 ····· 489
국제방송교류재단 ····· 547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724
(재)국제원산지정보원 ····· 167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1243
국토연구원 ····· 1419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582
극지연구소 ····· 1386
근로복지공단 ····· 1103
기술보증기금 ····· 1577
기초과학연구원 ····· 229
기초전력연구원 ····· 891

【ㄴ】

나노종합기술원 ····· 299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455
노사발전재단 ····· 1134
녹색기술센터 ····· 284
녹색사업단 ····· 171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688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69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171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729

【ㄷ】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239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9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42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811
대한법률구조공단 ····· 472
대한석탄공사 ····· 796
대한장애인체육회 ····· 587
대한적십자사 ····· 1003
대한체육회 ····· 592
도로교통공단 ····· 1839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379
동북아역사재단 ····· 70

【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512

【ㅂ】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249
부산대학교병원 ····· 75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80
부산항만공사 ····· 1311
(주)부산항보안공사 ····· 136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46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90

【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9
사회보장정보원 ····· 968
산업연구원 ····· 1434
서울대학교병원 ····· 8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95

서울요양원 ····· 963
선박안전기술공단 ····· 1336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1391
세계김치연구소 ····· 359
세종학당재단 ····· 59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730
소프트웨어공학센터 ····· 163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16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090
시청자미디어재단 ····· 1552
식품안전정보원 ····· 1804
신용보증기금 ····· 158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745

【ㅇ】

IOM이민정책연구원 ····· 467
아시아문화원 ····· 552
안전성평가연구소 ····· 429
(재)APEC기후센터 ····· 1826
에너지경제연구원 ····· 1439
여수광양항만공사 ····· 131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54
영상물등급위원회 ····· 600
영화진흥위원회 ····· 530
예금보험공사 ····· 1589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562
예술의전당 ····· 605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1008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143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148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204
울산과학기술원 ····· 259

울산항만공사 ····· 1321
(주)워터웨이플러스 ····· 1264
육아정책연구소 ····· 1499
인천국제공항공사 ····· 1189
인천항만공사 ····· 1326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507

【ㅈ】

재단법인 국악방송 ····· 610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 1013
재료연구소 ····· 319
재외동포재단 ····· 442
전남대학교병원 ····· 100
전략물자관리원 ····· 896
전북대학교병원 ····· 105
전쟁기념사업회 ····· 494
(재)정동극장 ····· 56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17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15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444
정부법무공단 ····· 47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1199
제주대학교병원 ····· 110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 1371
주택관리공단(주) ····· 1274
주택도시보증공사 ····· 120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735
(재)중소기업연구원 ····· 1740
중소기업유통센터 ····· 1750
중소기업은행 ····· 1609
중소기업진흥공단 ····· 1725

【ㅊ】

창업진흥원 ····· 1755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1799
축산물품질평가원 ····· 698
충남대학교병원 ····· 115
충북대학교병원 ····· 120

【ㅋ】

KDI국제정책대학원 ····· 1459
코레일관광개발(주) ····· 1279
코레일네트웍스(주) ····· 1284
코레일로지스(주) ····· 1289
코레일유통(주) ····· 1294
코레일테크(주) ····· 1299

【ㅌ】

태권도진흥재단 ····· 615
통일연구원 ····· 1449
특허정보진흥센터 ····· 1792

【ㅍ】

88관광개발(주) ····· 1669

【ㅎ】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1139
한국가스공사 ····· 737
한국가스기술공사 ····· 886
한국가스안전공사 ····· 816
한국감정원 ····· 1209
한국개발연구원 ····· 145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17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1018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126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64
한국고용정보원 ····· 1109
한국고전번역원 ····· 12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62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632
한국공항공사 ····· 119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6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79
한국과학기술원 ····· 28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309
한국과학영재학교 ····· 304
한국과학창의재단 ····· 178
한국관광공사 ····· 519
한국광물자원공사 ····· 743
한국광해관리공단 ····· 821
한국교육개발원 ····· 146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46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34
한국교통연구원 ····· 1474
한국국방연구원 ····· 499
한국국제교류재단 ····· 44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1023
한국국제협력단 ····· 437
한국국토정보공사 ····· 1248
한국기계연구원 ····· 314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182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14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324
한국나노기술원 ····· 334
한국남동발전(주) ····· 749
한국남부발전(주) ····· 754
한국노동연구원 ····· 147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9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703
한국농어촌공사 ····· 7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484
한국뇌연구원 ····· 244
한국데이터진흥원 ····· 339
한국도로공사 ····· 121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625
한국동서발전(주) ····· 759
한국디자인진흥원 ····· 82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901
한국마사회 ····· 683
한국무역보험공사 ····· 801
한국문학번역원 ····· 63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63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535
한국문화재재단 ····· 1697
한국문화정보원 ····· 645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 650
한국발명진흥회 ····· 177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154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18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482
한국법제연구원 ····· 1489
한국벤처투자 ····· 176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97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49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98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102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1033
한국보육진흥원 ····· 103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1664

한국사학진흥재단 ····· 13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04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14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9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83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836
한국산업단지공단 ····· 84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114
한국산업은행 ····· 1614
한국산업인력공단 ····· 1119
한국상하수도협회 ····· 109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34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349
한국서부발전(주) ····· 764
한국석유공사 ····· 769
한국석유관리원 ····· 846
한국세라믹기술원 ····· 85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1647
한국소비자원 ····· 1627
한국수력원자력(주) ····· 775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1341
한국수자원공사 ····· 1220
한국수출입은행 ····· 16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87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1652
한국시설안전공단 ····· 125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1809
한국식품연구원 ····· 35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1176
한국어촌어항협회 ····· 1376
한국언론진흥재단 ····· 541
한국에너지공단 ····· 85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36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86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118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504
한국연구재단 ····· 188
한국영상자료원 ····· 65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660
한국예탁결제원 ····· 1619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 153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9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1559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1564
한국원자력연구원 ····· 369
한국원자력의학원 ····· 37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156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80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048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1814
한국인체조직기증원 ····· 1053
한국인터넷진흥원 ····· 194
한국임업진흥원 ····· 1705
한국자산관리공사 ····· 1596
한국잡월드 ····· 1154
한국장애인개발원 ····· 105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124
한국장학재단 ····· 39
한국저작권위원회 ····· 665
한국전기안전공사 ····· 866
한국전기연구원 ····· 384
한국전력거래소 ····· 871
한국전력공사 ····· 780
한국전력기술(주) ····· 9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389
한국정보화진흥원 ····· 19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509
한국조폐공사 ····· 11
한국주택금융공사 ····· 1603
한국중부발전(주) ····· 78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177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1782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1767
한국지역난방공사 ····· 79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39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514
한국천문연구원 ····· 399
한국철도공사 ····· 122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404
한국철도시설공단 ····· 125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16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51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1166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67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675
한국콘텐츠진흥원 ····· 557
한국토지주택공사 ····· 1232
한국투자공사 ····· 22
한국특허정보원 ····· 178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409
한국학중앙연구원 ····· 135
한국한의학연구원 ····· 41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41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381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134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52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1351
한국해양조사협회 ····· 1396
한국행정연구원 ····· 152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534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1831
한국화학연구원 ····· 424
한국환경공단 ····· 107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08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539
(재)한식재단 ····· 714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921
한전KDN(주) ····· 926
한전KPS(주) ····· 931
한전원자력연료(주) ····· 936
항공안전기술원 ····· 1304
항로표지기술협회 ····· 1401
해양환경관리공단 ····· 1331

부록 2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211](321개, 2016.8월 현재)

주무부처	공기업(30)		준정부기관(89)		기타공공기관(202)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6)	위탁집행형(73)	
기획재정부 (3)		한국조폐공사 (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교육부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부설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18)
미래창조과학부 (43)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기관: 소프트웨어공학 센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소프트웨어정책 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9)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부설기관: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기관: 한국뇌연구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기관: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기관: 녹색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원(부설기관: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부설기관: 재료연구소),

211) 2016년 1월 지정한 2016년 공공기관은 323개(부설기관 24개)이었으나 2016년 7월 대한체육회(舊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舊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 대한 수시지정 결과를 반영한 2016년 8월 현재 공공기관은 321개(부설기관 24개)임

주무부처	공기업(30)		준정부기관(89)		기타공공기관(202)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6)	위탁집행형(73)	
미래창조과학부 (4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기관: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부설기관: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부설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기관: 안전성 평가연구소) (34)
외교부 (3)				한국국제협력단 (1)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2)
통일부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법무부 (4)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4)
국방부 (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3)
행정자치부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
문화체육관광부 (32)		한국관광공사 (1)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4)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3)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무부처	공기업(30)		준정부기관(89)		기타공공기관(202)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6)	위탁집행형(7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4)
농림축산식품부 (10)		한국마사회 (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5)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11)	대한석탄공사 (1)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3)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13)
보건복지부 (22)			국민연금공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부설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15)

주무부처	공기업(30)		준정부기관(89)		기타공공기관(202)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6)	위탁집행형(73)	
환경부 (7)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3)
고용노동부 (11)			근로복지공단 (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6)
여성가족부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국토교통부 (23)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5)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9)
해양수산부 (17)	부산항만공사 (1)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4)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기관: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8)
국무조정실 (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부설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부설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주무부처	공기업(30)		준정부기관(89)		기타공공기관(202)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6)	위탁집행형(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
방송통신위원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시청자미디어재단 (1)	
원자력안전위원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금융위원회 (8)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3)
공정거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공단 (1)		
국민안전처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국가보훈처 (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88관광개발(주) (1)
관세청 (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

주무부처	공기업(30)		준정부기관(89)		기타공공기관(202)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6)	위탁집행형(73)	
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2)
문화재청 (1)					한국문화재재단 (1)
산림청 (2)				한국임업진흥원 (1)	녹색사업단 (1)
농촌진흥청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중소기업청 (8)			중소기업진흥공단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5)
특허청 (5)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부설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
식품의약품안전처 (4)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3)
기상청 (3)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
경찰청 (1)				도로교통공단 (1)	

부록 3 공공기관 설립근거(2016.8월 기준)

1 공기업(30개)

1) 시장형 공기업(14개)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남동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한국남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중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2) 준시장형 공기업(16개)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법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법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법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조폐공사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2 준정부기관(89개, 부설기관 4개 기관 포함)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6개)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조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제24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기술보증기금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3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제37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3개, 부설기관 4개 기관 포함)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재)우체국금융개발원	미래창조과학부	민법 제32조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미래창조과학부	민법 제32조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민법 제32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법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자연공원법 제44조
국립생태원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조 및 제62조
- 서울요양원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
국제방송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16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3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도로교통법 120조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법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제45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90조의2
아시아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
- 소프트웨어공학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관 제27조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관 제27조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5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제36조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	국토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제66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민안전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민안전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 제13조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74조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35조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의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3

3 기타공공기관(202개, 부설기관 20개 기관 포함)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일부	민법 제32조
(재)APEC기후센터	기상청	민법 제32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민법 제32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미래창조과학부	민법 제32조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행정자치부	민법 제32조 및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희생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재)정동극장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청	민법 제32조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	민법 제32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상청	민법 제32조
(재)한식재단	농림축산식품부	민법 제32조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 2
(주)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워터웨이플러스	국토교통부	상법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한국가스공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교통부	상법 및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의2
88관광개발(주)	국가보훈처	상법 및 보훈기금법 제7조 6항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민법 제32조 및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제3조
강원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5조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경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5조
경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5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광주과학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광주과학기술원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19조
국립광주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구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3조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제27조
국립중앙의료원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법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32조
국방전직교육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법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역법 제29조의2
국토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정관 제28조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관광부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기초과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과학연구원 정관 제37조의2
기초전력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민법 제32조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민법 제32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녹색사업단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의2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한국뇌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뇌연구촉진법 제17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관 제3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법률구조법 제8조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행정자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미래창조과학부	별정우체국법 제16조
부산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5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제3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산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정관 제4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세종학당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제67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울산과학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울산과학기술원법
재단법인 국악방송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재외동포재단법
전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5조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제29조
전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5조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정부법무공단법
제주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5조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상법, 항만공사법 제8조 및 항만법 제88조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상법, 항만공사법 제8조 및 항만법 제88조
주택관리공단(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2항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민법 제32조
충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5조
충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5조
코레일관광개발(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코레일네트웍스(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코레일로지스(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코레일유통(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코레일테크(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통일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정관 제4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및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고전번역원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제3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녹색기술센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원법
- 고등과학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3조
- 나노종합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한국과학영재학교	미래창조과학부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및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교통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기계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재료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기계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4호 및 제26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핵융합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한국나노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한국노동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데이터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민법 제32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41조
한국문학번역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학진흥법 제13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9조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문화체육관광부	상법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55조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2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한국법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청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 제4조의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부	수도법 제56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제7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한국식품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세계김치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김치산업진흥법 제13조 및 한국식품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수산부	어촌·어항법 제57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제8조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산업통상자원부	민법 제32조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원자력의학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13조의2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관 제31조의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68조의3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한국잡월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제112조
한국전기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1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천문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문화체육관광부	상법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55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한국투자공사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법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정관 제35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민법 제32조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수산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화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안전성평가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화학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산업통상자원부	민법 제32조
한전KDN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항공안전기술원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법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수산부	항로표지법 제39조

부록 4 공공기관 소재지 및 홈페이지(2016.8월 기준)

1 공기업(30개)

1) 시장형 공기업(14개)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중앙동 4가)	www.busanpa.com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www.airport.kr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www.kogas.or.kr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www.airport.co.kr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 1914-8)	www.kores.or.kr
한국남동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충무공동)	www.kosep.co.kr
한국남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30~35층	www.kospo.co.kr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www.ewp.co.kr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www.iwest.co.kr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www.knoc.co.kr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www.khnp.co.kr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www.kepco.co.kr
한국중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대천동 17층)	www.komipo.co.kr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산자원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www.kdhc.co.kr

2) 준시장형 공기업(16개)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	www.kocoal.or.kr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www.ygpa.or.kr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마린센터	www.upa.or.kr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www.icpa.or.k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www.jdcenter.com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www.khgc.or.kr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www.kab.co.kr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kto.visitkorea.or.kr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www.ex.co.kr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www.kra.co.kr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www.kobaco.co.kr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www.kwater.or.kr
한국조폐공사	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www.komsco.com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www.kora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www.lh.or.kr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www.koem.or.kr

2 준정부기관(89개, 부설기관 4개 기관 포함)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6개)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www.geps.or.kr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www.kcomwel.or.kr
기술보증기금	금융위원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www.kibo.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www.tp.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www.kspo.or.kr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7	www.kodit.co.kr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산학캠퍼스 13,14층	www.kofic.or.kr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www.kdi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www.sbc.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4(서린동)	www.ksure.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www.arko.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www.kpf.or.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89	www.korad.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www.kamco.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1229-1) 부산국제금융센터	www.hf.go.kr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3개, 부설기관 4개 기관 포함)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41(영등포동 4가)	www.posid.or.kr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www.pola.or.kr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83 (영등포동 7가)	www.pos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www.hira.or.kr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www.ts2020.kr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공덕동 태영빌딩) 9층	www.knps.or.kr
국립생태원	환경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www.nie.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번지	www.nhimc.or.kr
- 서울요양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590길 50	www.서울요양원.kr
국제방송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www.arirang.co.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www.kaia.re.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www.epis.or.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6	www.ipet.re.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www.fact.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www.kotra.or.kr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2 (반곡동)	www.koroad.or.kr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95	www.i815.or.kr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www.ssis.or.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www.kst.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3층	www.semas.or.kr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	www.kcmf.or.kr
아시아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국립아시아문화전당)	www.aci-l.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	www.nipa.kr
- 소프트웨어공학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www.sw-eng.kr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 R&D센터 연구A동 4층	www.spri.k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www.iitp.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TBC센터 6층	www.tipa.or.kr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경기벤처연성대학교센터 901호	www.ihaccp.or.kr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www.ekape.or.kr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www.kgs.or.kr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www.keis.or.kr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창조과학부	서울 강남구 선릉로 602(삼릉빌딩)	www.kofac.re.kr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반곡동, 한국광해관리공단)	www.mireco.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64 (동내동, KERIS 빌딩)	www.keris.or.kr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www.koica.go.kr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120	www.lx.or.kr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로 2가, 충정빌딩)	www.kmip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kordi.g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빛가람동)	www.at.or.kr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www.ekr.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www.kidp.or.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www.kca.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oh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hidi.or.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반곡동 산214-3)	www.bohun.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7, 14, 17층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www.keit.re.kr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39	www.kicox.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www.kosh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www.hrdkorea.or.kr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www.kpetro.or.kr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1	www.kicet.re.kr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민안전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www.kfi.or.kr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www.kca.go.kr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우동) 센텀사이언스파크빌딩 19층	www.fira.or.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민안전처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02	www.koels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16	www.kistec.or.kr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www.energy.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www.ketep.re.kr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www.nrf.re.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www.kins.re.kr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www.kisa.or.kr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www.kofpi.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www.kead.or.kr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www.kosaf.go.kr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2	www.kesco.or.kr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www.kpx.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www.nia.or.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www.kista.re.kr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www.kr.or.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www.kyci.or.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2, 5층	www.kywa.or.kr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www.kocca.kr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8~10층	www.kimst.re.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www.seaman.or.kr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내	www.keco.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www.keiti.re.kr

3 기타공공기관(202개, 부설기관 20개 기관 포함)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일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34, 10층	www.sonosa.or.kr
(재)APEC기후센터	기상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www.apcc21.org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www.origin.or.kr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57길(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12층	www.gokams.or.kr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 (구의동) 동서울물류센터 4층	www.poma.or.kr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www.ilje.or.kr
(재)정동극장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43 정동극장	www.jeongdong.or.kr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www.kosbi.re.kr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8층	www.smartgrid.or.kr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상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35	www.kiaps.org
(재)한식재단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 27 aT센터 1302호	www.hansik.org
(주)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www.high1.com
(주)워터웨이플러스	국토교통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270번길 74	www.waterway.or.kr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www.kogas-tech.co.kr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율곡동 790)	www.korcm.co.kr
88관광개발(주)	국가보훈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 521번길 169(청덕동)	www.88countryclub.co.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장항동 웨스턴타워4동 티4 빌딩 8,9층	www.iom-mrtc.org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1	www.lhca.or.kr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www.gwnudh.or.kr
강원대학교병원	교육부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www.knuh.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14층	www.cwma.or.kr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www.grac.or.kr
경북대학교병원	교육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www.knuh.kr
경상대학교병원	교육부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www.gnuh.co.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4, 8~9층	www.nrc.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5,6,7층	www.stepi.re.kr
광주과학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www.gist.ac.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창조과학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www.nst.re.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www.nile.or.kr
국립광주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www.sciencecenter.or.kr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부	경상북독 상주시 도남2길 137	www.nnibr.re.kr
국립대구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대로 6길 20	www.dnsm.or.kr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번지	www.cfnmk.or.kr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www.ncc.re.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중앙의료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www.nmc.or.kr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www.knmm.or.kr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www.mabik.re.kr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www.add.re.kr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www.dtaq.re.kr
국방전직교육원	국방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창곡동)	www.moti.or.kr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축산식품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www.ipab.or.kr
국토연구원	국무조정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www.krihs.re.kr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www.auri.re.kr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삼성동) GKL	www.grandkorea.com
기초과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전민동)	www.ibs.re.kr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www.nims.re.kr
기초전력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130동	www.er.re.kr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www.nosa.or.kr
녹색사업단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6호	www.kgpa.or.kr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층	www.apfs.kr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www.dgist.ac.kr
- 한국뇌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61	www.kbri.re.kr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커뮤니케이션센터	www.dgmif.re.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C동)	www.kiep.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www.klac.or.kr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www.koreanpc.kr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www.redcross.or.kr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www.sports.or.kr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본관	www.historyfoundation.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7층	www.kdemo.or.kr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www.popa.or.kr
부산대학교병원	교육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www.pnuh.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www.pnudh.co.kr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4-5-14층	www.koreahana.or.kr
산업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t.re.kr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h.org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www.snubh.org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dh.org
세종학당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7층	www.ksif.or.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www.slc.or.kr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5층(원남동, 보령빌딩)	www.foodinfo.or.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청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나라키움대전센터 13~15층	www.koreg.or.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www.keei.re.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미래창조과학부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www.innopolis.or.kr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층	www.kmrb.or.kr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www.sac.or.kr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www.kbiohealth.kr
울산과학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www.unist.ac.kr
재단법인 국악방송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12 7, 10~12층	www.gugakfm.co.kr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3길 29	www.koda1458.kr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타 6층	www.okf.or.kr
전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www.cnuh.com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23층 5호	www.kosti.or.kr
전북대학교병원	교육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www.cuh.co.kr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9(용산동 1가)	www.warmemo.or.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www.kisdi.re.kr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서특별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	www.kgls.or.kr
제주대학교병원	교육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 13길 15	www.jejunuh.co.kr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중앙동 4가)	www.bpsc.co.kr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향동7가)	www.port.co.kr
주택관리공단(주)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56(충무공동 82-2번지)	www.kohom.co.kr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동로 309 (목동)	www.sbdc.co.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기업은행)	www.ibk.co.kr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둔산동 931) 캐피탈타워 5층	www.KISED.or.kr
충남대학교병원	교육부	대전 중구 문화로 282	www.cnuh.co.kr
충북대학교병원	교육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www.cbnuh.or.kr
코레일관광개발(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www.korailtravel.com
코레일네트웍스(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0길 25(한강로2가, 센트레빌아스테리움 용산, B동 10층, 11층)	www.korailnetworks.com
코레일로지스(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koraillogis.com
코레일유통(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www.korailretail.com
코레일테크(주)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6	www.korailtech.kr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태권도원	www.tkdwon.kr
통일연구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www.kinu.or.kr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www.kopo.ac.kr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re.kr
-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school.ac.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5층	www.kihf.or.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빌딩 24층	www.khealth.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www.kict.re.kr
한국고전번역원	교육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1	www.itkc.or.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www.kcdf.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www.kofair.or.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양재동) 동원산업빌딩 9~1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양재동 275-7) 트러스트타워 4~6층	www.kistep.re.kr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미래창조과학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www.kird.re.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www.kist.re.kr
- 녹색기술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www.gtck.re.kr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ww.kaist.ac.kr
- 고등과학원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www.kias.re.kr
- 나노종합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291	www.nnfc.re.kr
- 한국과학영재학교	미래창조과학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5-47	www.ksa.hs.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www.kisti.re.kr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www.kedi.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정동)	www.kice.re.kr
한국교통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www.koti.re.kr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www.kida.re.kr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10층	www.kf.or.kr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교육빌딩 6,7층	www.kofih.org
한국기계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www.kimm.re.kr
- 재료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상남동 66번지)	www.kims.re.kr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충절로 1600	www.koreatech.ac.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www.kbsi.re.kr
- 국가핵융합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www.nfri.re.kr
한국나노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www.kanc.re.kr
한국나노기술원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www.kanc.re.kr
한국노동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5~7층	www.kl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www.krei.re.kr
한국데이터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7층	www.kdata.or.kr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www.kcgp.or.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www.kiria.org
한국문학번역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삼성동)	www.klti.or.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www.kcti.re.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1~12층	www.arte.or.kr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삼성동)	www.chf.or.kr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8층	www.kcisa.kr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95(삼동)	www.newseoulgolf.co.kr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www.kipa.org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www.koreha.or.kr
한국법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4	www.klri.re.kr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 빌딩	www.k-vic.co.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www.kihasa.re.kr
-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www.kicce.re.kr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7층	www.neca.re.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www.kuksiwon.or.kr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5,6층	www.kcpi.or.kr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www.kfpp.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5층)	kncsw.bokji.net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7,8층)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0(충무공동)	www.ktl.re.kr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www.kdb.co.kr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대림동 651-5)	www.kwwa.or.kr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www.kribb.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www.kitech.re.kr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www.koreaexim.go.k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1501호, 1601호 (대흥동)	www.haccpkorea.or.kr
한국식품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1번길 62	www.kfri.re.kr
- 세계김치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86(임암동)	www.wikim.re.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igepe.or.kr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벨리 12층	www.fip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www.kier.re.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www.stop.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wdi.re.kr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www.koreafilm.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2층	www.kawf.kr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www.ksd.or.kr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www.knea.or.kr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www.kofons.or.kr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www.kaeri.re.kr
한국원자력의학원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길 75	www.kirams.re.kr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미래창조과학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좌동길 40	www.dirams.re.kr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34	www.kinac.re.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20층	www.k-medi.or.kr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5층	www.drugsafe.or.kr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4길 27-14 디오빌딩4층	www.kftd.or.kr
한국잡월드	고용노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koreajobworld.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www.koddi.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공사 1,5 층	www.copyright.or.kr
한국전기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10번길 12	www.ker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	www.kepco-enc.com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www.etri.re.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www.kipf.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www.kiip.re.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www.kista.re.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www.kigam.r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krivet.re.kr
한국천문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www.kasi.re.kr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월암동)	www.kri.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nypi.re.kr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www.ksponco.or.kr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www.kpipa.or.kr
한국투자공사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7,18층	www.kic.kr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5층(둔산동, KDB빌딩)	www.kipi.or.kr
-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www.pipc.or.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www.kriss.re.kr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www.aks.ac.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www.kiom.re.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www.kari.re.k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www.kiost.ac.kr
-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www.kopri.re.kr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www.kriso.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무조정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www.kmi.re.kr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05호(호서대벤처타워)	www.khra.kr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www.kipa.re.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www.kic.re.kr
한국화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rict.re.kr
- 안전성평가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itox.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www.kei.re.kr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 18-4(논현동) 한일재단빌딩	www.kjc.or.kr
한전KDN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61	www.kdn.com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www.kps.co.kr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www.knfc.co.kr
항공안전기술원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 557	www.kiast.or.kr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137 지식산업센터 12층	www.kaan.or.kr

부록 5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2016.8월 기준)[212]

1 부산 혁신도시(11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남부발전(주) 주택도시보증공사 (2개)	-
· 준정부기관	4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개)	-
· 기타공공기관	5개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개)

2 대구 혁신도시(9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2개)	-
· 준정부기관	6개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6개)	-
· 기타공공기관	1개	한국사학진흥재단 (1개)	-

212) 2016년 8월 현재 108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97개 기관이 이전대상 혁신도시로의 이주를 완료한 상태임

3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13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1개	한국전력공사 (1개)	-
· 준정부기관	9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7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개)
· 기타공공기관	3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전KPS(주) 한전KDN (3개)	-

4 울산 혁신도시(7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2개)	-
· 준정부기관	4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3개)	한국에너지공단 (1개)
· 기타공공기관	1개	에너지경제연구원 (1개)	-

5 강원 혁신도시(10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3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3개)	
· 준정부기관	6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개)	국립공원관리공단 (1개)
· 기타공공기관	1개	대한적십자사 (1개)	

6 충북 혁신도시(10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	-	-
· 준정부기관	6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개)	-
· 기타공공기관	4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개)

* 밑줄 친 기관은 충북 지역(오송)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7 충남 혁신도시(2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2개)	-
· 준정부기관	-	-	-
· 기타공공기관	-	-	-

* 밑줄 친 기관은 충남 지역(태안, 보령)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8 전북 혁신도시(6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	-	-
· 준정부기관	4개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3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개)
· 기타공공기관	2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개)	한국식품연구원 (1개)

* 밑줄 친 기관은 전북 지역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9 경북 혁신도시(8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2개)	-
· 준정부기관	2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2개)	-
· 기타공공기관	4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4개)	-

* 밑줄 친 기관은 경북 지역(경주)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10 경남 혁신도시(10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2개)	-
· 준정부기관	4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213] 한국시설안전공단 (4개)	-
· 기타공공기관	4개	국방기술품질원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4개)	-

11 제주 혁신도시(3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	-	-
· 준정부기관	1개	공무원연금공단 (1개)	-
· 기타공공기관	2개	-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2개)

21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2016년 6월 경남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7월 1일자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신규 출범함

12 세종특별자치시(19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	-	-
· 준정부기관	3개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개)	-
· 기타공공기관	16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2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6개)	-

214) 국토연구원 부설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며 국토연구원 본원은 2016년 8월말 현재 완료되지 않음

부록 6 2016년 기금현황(65개 기금)[215]

1 사회보험성 기금(6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78조	1995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제73조	1960년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1조	1988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제37조	1960년	국방부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	1974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	2002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15)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6 기금현황』(2016)을 참고하여 작성

2 금융성 기금(8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1989년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	1972년	금융위원회	농협중앙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1985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법 제30조	1969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1994년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1976년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2003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1987년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3 사업성 기금(51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1994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1항	2003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1992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1995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제26조의2	2011년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1991년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군인복지기금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	1996년	국방부	국방부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1993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3조	2002년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1991년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1966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200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200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1981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1986년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1973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	2010년	문화재청	문화재청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2000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	2011년	법무부	법무부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1981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2004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제28조	201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1989년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1항	2011년	환경부	환경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5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수산발전기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6조	1999년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1967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관리법 제25조	1994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1항	1996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언론진흥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	1967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1996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1995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1998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1991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제48조	2001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	2005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1981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1978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제53조	1989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제43조	1974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0조	1999년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부록 7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216]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217]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
과학기술진흥기금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기본법	-	한국연구재단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	-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공단	-
기술보증기금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	-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	한국수출입은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어촌공사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한국무역보험공사	-

216) 2016년 8월 현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별표2]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총 65개로 이 중 34개 기금을 30개 공공기관이 직접관리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음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217]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신용보증기금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	-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진흥재단	-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위원회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계정)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법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진흥법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217]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정보통신진흥기금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한국언론진흥재단

217) 기금의 관리운용주체인 소관부처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임.

부록 8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218)]

1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3조 ○ 목적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			
(2)설치연도	1960년	(3)운용개시연도	1960년	
(4)주무부처	인사혁신처	(5)관리주체	공무원연금공단	
(6)조성재원 (제65조 및 제73조)	○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기금 :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 제65조(비용부담금의 원칙) 등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 보수예산 및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9.0%를 각각 징수하며, 부족분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전금으로 충당 * '15년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19년까지 단계적 인상('16년 8.0%)			
(7)기금의 용도 (제73조)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74조)	○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재정자금에의 예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 기타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Tel : 064-804-2055)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4실지급	'15실지급	'16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4실지급	'15실지급	'16계획
		-	-	-

218)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6 기금현황』(2016) 내용 중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관리하는 34개 기금에 대한 개요부분을 발췌함

2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연구재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목적 : 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의 효율적 지원</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92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92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미래창조과학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미래창조과학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22조제2항)</td><td colspan="5">○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운용수익금 및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등
* 복권수익금 :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중 12.583%</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2조제3항)</td><td colspan="5">○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체신관서, 기타 금융회사에의 예치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 (Tel : 02-2110-2595)</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연구재단 기금관리팀:(Tel : 042-869-6021)</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7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731</td><td>724</td><td>741</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3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공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국민연금법 제101조
○ 목적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88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88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보건복지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보건복지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101조)</td><td colspan="5">○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46조, 제50조, 제102조)</td><td colspan="5">○ 국민연금급여 지급(국민연금법 제50조)
○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국민연금법 제46조)
○ 기금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국민연금법 제102조)</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1. 기금운용의 목표수익률과 허용범위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산군별 배분비율 및 기대수익률 등을 설정
2. 기금운용자산군 : 주식, 채권 및 기타금융상품, 대체투자 등</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Tel : 044-202-3605)</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국민연금공단 예산조직부 (Tel : 063-713-5137)</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5.527명(본부 943명, 하부조직 4,584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34,059</td><td>42,700</td><td>56,107</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4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설치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 목적 :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 그 밖의 경비 지원</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72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89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문화체육관광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td></tr>
<tr><td>(6)조성재원 (제20조제2항)</td><td colspan="5">○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제2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2조)</td><td colspan="5">○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 예치 및 연기금투자풀 등</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복식부기 방식</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금운용팀 (Tel : 02-410-1314)</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5 국유재산관리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국유재산법 제26조의 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 목적 : 국유재산의 원활환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 증진</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11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12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기획재정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기획재정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26조의3)</td><td colspan="5">○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유재산법 제26조의 4에 따른 차입금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와 관련된 수입금
-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6조의5)</td><td colspan="5">○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에의 예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투자풀에 예치
○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법</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Tel : 044-215-5262)</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Tel : 051-794-4220~4224)</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10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1,884</td><td>1,927</td><td>1,972</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6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 목적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91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92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외교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한국국제교류재단</td></tr>
<tr><td>(6)조성재원 (제14조)</td><td colspan="5">○ 제14조(기금의 재원)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6조)</td><td colspan="5">○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
○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1. 적립 기금: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운용
2. 운용 기금: 환금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가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예산팀
(Tel : 02-2046-8521)</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7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공단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 목적 :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93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94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고용노동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근로복지공단</td></tr>
<tr><td>(6)조성재원 (제88조)</td><td colspan="5">○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
* 복권수입금의 35% 중 5.310% ± 20% 가감 조정
○ 보증료, 구상금, 기금운용수익금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91조)</td><td colspan="5">○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또는 지원
○ 저소득근로자의 보증부담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지원
○ 퇴직연금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에의 예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정부의 주관 또는 감독 하에 운용되는 투자풀에 예치</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법</td></tr>
<tr><td rowspan="2">(10)가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근로복지공단 기획조정본부 조직예산부
(Tel : 052-704-7778)</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8 남북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 목적 :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91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91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통일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통일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4조)</td><td colspan="5">○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설치)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금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8조)</td><td colspan="5">○ 남북한 주민의 남북왕래에 필요한 경비지원
○ 남북간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적격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정기예금, CD, MMDA 등)
○ 국공채, 통안증권
○ 신용등급 AAA 이상의 은행채
○ 기타 유가증권(수익증권/MMF 등, 연기금투자풀로 한정)</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 (Tel : 02-2100-5744)</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Tel : 02-3779-6625)</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35명(본부 33명, 일선기관 2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2,784</td><td>2,813</td><td>2,279</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 목적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66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68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55조)</td><td colspan="5">○ 제55조(기금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농산물 수입이익금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57조)</td><td colspan="5">○ 제57조(기금의 용도)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및 보관·관리와 가공
3.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4.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기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td></tr>
<tr><td rowspan="3">(10)가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Tel : 044-201-2213)</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무관리처
기금관리부(Tel : 061-931-1121)</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7명(본사 7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1,156</td><td>1,147</td><td>1,124</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⑩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 목적 : 거대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5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5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22조)</td><td colspan="5">○ 제22조(기금의 조성)
1. 법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3조)</td><td colspan="5">○ 재보험금지급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여유자금 운용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제1금융기관 및 연기금 투자풀 예치</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Tel : 044-201-1797)</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Tel : 02-3775-6716)</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5명(본부 5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651</td><td>648</td><td>662</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11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4">○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 목적 :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td></tr>
<tr><td>(2)설치연도</td><td>1981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81년</td></tr>
<tr><td>(4)주무부처</td><td>농림축산식품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32조)</td><td colspan="4">○ 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관리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농어촌정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34조)</td><td colspan="4">○ 법 제34조(기금의 용도)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 농지의 매매·매입사업, 장기임대차사업, 교환,분리·합병사업, 재개발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4">○ 법 제34조(기금의 용도)제3항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다른 기금으로 예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4">○ 국가회계</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3">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Tel : 044-201-1732)</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3">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Tel : 061-338-5931)</td></tr>
<tr><td colspan="3">인력규모 : 13명(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13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1,423</td><td>1,294</td><td>1,569</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⑫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기금의 설치)
○ 목적 : 개도국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86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87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기획재정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기획재정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4조)</td><td colspan="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란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7조)</td><td colspan="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 (기금의 재원)
1~4.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
5.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1.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가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Tel : 044-215-7721)</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Tel : 02-3779-5351)</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147명(본부 99명, 일선기관 파견, 연수, 휴직 등 48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11,512</td><td>12,915</td><td>14,645</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⑬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 목적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73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73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문화체육관광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한국문화예술위원회</td></tr>
<tr><td>(6)조성재원 (제17조)</td><td colspan="5">○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항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하여 출연하는 금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18조)</td><td colspan="5">○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4.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5.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제1금융권 예치
○ 연기금투자풀 예치 등</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Tel : 061-900-2290)</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⑭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33조
○ 목적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9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9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산업통상자원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산업통상자원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29조)</td><td colspan="5">○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납입금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30조)</td><td colspan="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table>
<tr><td colspan="2">구분</td><td>투자 가능 자산군</td></tr>
<tr><td rowspan="2">단기자금</td><td>현금성</td><td>MMF, MMDA</td></tr>
<tr><td>유동성</td><td>CD, CP, 정기예금, RP, 연기금투자풀 혼합형상품(단기매치형)</td></tr>
<tr><td colspan="2">중장기자금</td><td>CD, 정기예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연기금투자풀의 혼합형 상품</td></tr>
</table></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가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Tel : 044-203-5343)</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금관리센터(Tel : 02-6450-5560)</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8명(본부)</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1,721</td><td>1,739</td><td>1,666</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15 방송통신발전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 목적 :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0년[219]</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0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td></tr>
<tr><td>(6)조성재원
(제25조제5항)</td><td colspan="5">○ 통신 주파수 할당 대가의 일부(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배분)
○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홈쇼핑 등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6조)</td><td colspan="5">○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전파법」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파법」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의 위탁
○ 공공자금관리기관에의 예탁
○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Tel : 2110-2968)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 (Tel : 2110-1375)</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사업관리본부
(Tel : 061-350-1235)</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25 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220]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2,675</td><td>3,106</td><td>3,604</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19) 2000년 1월 기금설치 이후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

220) 기금 징수운용관리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를 의미

⑯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2
○ 목적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74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75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교육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d></tr>
<tr><td>(6)조성재원 (제53조의2)</td><td colspan="5">○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4조)</td><td colspan="5">○ 부담금의 징수
○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 자산의 운용
○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 유가증권의 매입
○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그 밖에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운용지원팀 (Tel : 02-769-4170)</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 colspan="2">'16계획</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 colspan="2">'16계획</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able>

17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 목적 :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리의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학 교육진흥에 이바지 하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함</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89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90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교육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한국사학진흥재단</td></tr>
<tr><td>(6)조성재원 (제18조)</td><td colspan="5">○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19조)</td><td colspan="5">○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학기관의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통화금융기관</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복식부기방식(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한국사학진흥재단 기획조정실
(Tel : 053-770-2510, 2520, 2511)</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 colspan="2">'16계획</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 colspan="2">'16계획</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able>

18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
○ 목적 :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15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15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산업통상자원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산업통상자원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37조의4, 제37조의5)</td><td colspan="5">○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술료
○ 오존층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가산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정부 또는 정부외의 출연금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37조의4, 제37조의5)</td><td colspan="5">○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협력사업의 지원
○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또는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에의 예탁
○ 정부의 주관 또는 감독 하에 운용되는 연기금투자풀
○ 자금의 안정성·유동성이 높고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금융상품 등</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법</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Tel : 044-203-4517)</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금관리팀 (Tel : 02-6009-4332)</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12명(본부 9명, 일선기관(부담금관리) 3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1,225</td><td>1,246</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1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목적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15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15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중소기업청</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중소기업청 청장</td></tr>
<tr><td>(6)조성재원 (제20조)</td><td colspan="5">○ 법 제20조(재원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1조)</td><td colspan="5">○ 법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소상공인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대기성 자금</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가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Tel : 042-481-4565, 4361)</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관리실
(Tel : 042-363-7100)</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7 명(본부 7 명, 일선기관 0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0 언론진흥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 목적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의 진흥</td></tr>
<tr><td>(2)설치연도</td><td>2010년</td><td colspan="2">(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10년</td></tr>
<tr><td>(4)주무부처</td><td>문화체육관광부</td><td colspan="2">(5)관리주체</td><td colspan="2">한국언론진흥재단</td></tr>
<tr><td>(6)조성재원 (제34조제2항)</td><td colspan="5">○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제34조 2항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35조제1항)</td><td colspan="5">○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제35조 1항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지원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운용에 원칙)</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예산팀(Tel : 2001-7711)</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1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 목적 : 영화예술의 질적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7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7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문화체육관광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영화진흥위원회</td></tr>
<tr><td>(6)조성재원 (제24조)</td><td colspan="5">○ 정부의 출연금(제24조 1항)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제24조 2항)
○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제24조 3항)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제24조 4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제24조 5항)</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5조)</td><td colspan="5">○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제25조 1항)
○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제25조 2항)
○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25조 3항)
○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제25조 4항)</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에의 예입
○ 국채, 지방채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기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기업회계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가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영화진흥위원회 경영지원본부 (Tel : 051-720-4724)</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2-1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한국연구재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원자력진흥법 제17조
○ 목적 :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96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97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미래창조과학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미래창조과학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17조제3항)</td><td colspan="5">○ 원자력진흥법 제17조 제3항
1. 원자력진흥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 발전용원자로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 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동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한 자금 및 그 밖의 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19조)</td><td colspan="5">○ 원자력진흥법 제19조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제22조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 매입
2. 금융회사 등에 예치</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Tel : 02-2110-2455)</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연구재단 재정기금실 (Tel : 042-869-6024)</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3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180</td><td>180</td><td>180</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2-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원자력진흥법 제17조
○ 목적 :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 따른 안전규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16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16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원자력안전위원회</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td></tr>
<tr><td>(6)조성재원 (제111조의4 제1항)</td><td colspan="5">○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제1항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2.「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111조의4 제1항)</td><td colspan="5">○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제2항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확정금리형 상품
○ MMF, MMDA, RP, CD 등
○ 연기금 투자풀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및 기타 수익증권 등</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Tel : 02-397-7385)</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Tel : 031-626-6431)</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5명 (본부 5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1,250</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
○ 목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확보</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4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4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14조제3항)</td><td colspan="5">○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4조 제3항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수입이익금, 기금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에 따른 전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15조)</td><td colspan="5">○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5조
1.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3.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6조 및 제27조
- 여유자금은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되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법 제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에 따름</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Tel : 044-201-1722)</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부 (Tel : 061-931-1121)</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5 명 (본부 5 명, 일선기관 - 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539</td><td>493</td><td>459</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4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국전력공사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전기사업법 제48조
○ 목적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충당</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1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1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산업통상자원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산업통상자원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50조)</td><td colspan="5">○ 부담금 및 가산금
* 부담금 : 전기요금 × 3.7%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 기술료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49조)</td><td colspan="5">○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사업
○ 전력수요관리사업
○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 전기안전에 관한 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에 예치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 연기금 투자풀 예탁</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법</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Tel : 044-203-5250)</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Tel : 02 - 6007 - 0310)</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38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5,488</td><td>5,841</td><td>6,245</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5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 목적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5년[221]</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5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미래창조과학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미래창조과학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42조)</td><td colspan="5">○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44조)</td><td colspan="5">○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반환금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의 위탁
○ 공공자금관리기관에의 예탁
○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 적용</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
(Tel : 02-2110-2968)</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사업관리본부[222]
(Tel : 061-350-1235)</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12 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223]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17,713</td><td>20,318</td><td>20,536</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21) 1993년 1월 기금설치 이후, 1996년 1월부터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개편하여 일반 및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운용해오다 2005년 1월부터 현재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함(기존 정보화촉진기금의 연구개발계정만 승계, 일반계정은 폐지)

22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6년부터 기금운용·관리 위탁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변경

223) 기금운용·관리기관 기금관리비 및 기금사업전담기관의 사업관리비 등을 포함한 기금운영비를 의미

26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 목적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81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81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국토교통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국토교통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5조)</td><td colspan="5">○「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 자체재원 : 대출금 회수, 이자수입 등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주택법」 제75조 등
- 차입금 : 국민주택채권, 기타민간예수금(청약저축) 등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등
- 정부내부지출 : 농특·공자기금 예수금, 복권기금전입금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9조)</td><td colspan="5">○「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국민주택의 건설 및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 정비사업 융자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 예탁금·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차관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
- 현금성 및 유동성 : 정기예금, CD, MMDA 등
- 중장기 : 정기예금, Wrap, 연기금투자풀 등</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기금회계</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Tel : 044-201-3339)</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Tel : 02-3771-6231)</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55명(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 현원)</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232,375</td><td>239,107</td><td>165,364</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7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법률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 제 63 조)
○ 목 적 :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td></tr>
<tr><td>(2)설치연도</td><td>1978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3">1979년</td></tr>
<tr><td>(4)주무부처</td><td>중소기업청</td><td>(5)관리주체</td><td colspan="3">중소기업진흥공단</td></tr>
<tr><td>(6)조성재원 (제64조)</td><td colspan="5">○ 법 제64조(기금의조성)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채권발행 조성자금 및 복권수익금, 공자기금 예수금
4. 기금운용 수익금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67조)</td><td colspan="5">○ 법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1. 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 등 융자지출
2. 연수사업 등 경상지출
3. 전산시스템구축 등 자본지출
* 사용 용도는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요약시 위 내용과 같음</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대기성 자금</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실
(Tel : 055-751-9431~9)</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8 지역신문발전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 목적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4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5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문화체육관광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문화체육관광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13조제2항)</td><td colspan="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 2항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15조)</td><td colspan="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
-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 예치 및 연기금투자풀</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Tel : 044-203-3219)</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Tel : 2001 - 7821)</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4 명(본부 4 명, 일선기관 0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599</td><td>584</td><td>584</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9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3">○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 목적 :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td></tr>
<tr><td>(2)설치연도</td><td>1989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1989년</td></tr>
<tr><td>(4)주무부처</td><td>금융위원회</td><td>(5)관리주체</td><td>기술보증기금</td></tr>
<tr><td>(6)조성재원
(제13조제1항)</td><td colspan="3">○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8조)</td><td colspan="3">○ 기술보증
○ 기술평가
○ 보증연계투자
○ 구상권관리
○ 기술·경영지도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3">○ 금융기관 예치
○ 연기금투자풀 투자
○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3">○ 국가회계법 적용</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2">부서명 : 기술보증기금 종합기획부 (Tel : 051-606-7401)
자산운용실 (Tel : 051-606-7566)</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30 무역보험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무역보험법 제30조
○ 목적 : 무역보험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69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69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산업통상자원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한국무역보험공사</td></tr>
<tr><td>(6)조성재원 (제31조, 제35조제1항)</td><td colspan="5">○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보험료, 회수금, 이자, 기타 기금운용수익 및 공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35조제2항)</td><td colspan="5">○ 보험금, 이자, 공사 운영경비 및 기타 기금 운용 필요경비</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33조)</td><td colspan="5">○ 금융기관에의 예입
○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제2호,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기업회계기준, 국가회계기준 적용</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기획부 기금예산팀
(Tel : 02-399-5779)</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3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 목적 : 민간투자사업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적기확충과 국민생활 편익 향상에 기여</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94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95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기획재정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신용보증기금</td></tr>
<tr><td>(6)조성재원 (제31조)</td><td colspan="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1조(기금의 조성)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32조)</td><td colspan="5">○ 보증채무의 이행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포함)·사채·그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신용보증기금 SOC보증부 (Tel : 053-430-4476)</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32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목적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76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76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금융위원회</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신용보증기금</td></tr>
<tr><td>(6)조성재원 (제6조제1항)</td><td colspan="5">○ 정부의 출연금
○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 기업의 출연금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3조)</td><td colspan="5">○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보증연계투자
○ 경영지도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 유동화회사보증업무</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회사등에 예치
○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국가회계기준 적용)</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신용보증기금 종합기획부 (Tel : 053 - 430-4112)</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 colspan="2">'16계획</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 colspan="2">'16계획</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able>

3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 목적 : 금융구조조정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부채 상환</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3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3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금융위원회</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예금보험공사</td></tr>
<tr><td>(6)조성재원 (제26조3)</td><td colspan="5">○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출연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지원자금의 회수자금
4. 제30조의3에 의한 특별기여금,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6조3)</td><td colspan="5">○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의 정리</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예금자보호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1. 국채·공채의 매입 및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부 (Tel : 02-758-0161)</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㉞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 목적 : 신용보증을 위한 주택금융활성화 및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87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88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금융위원회</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한국주택금융공사</td></tr>
<tr><td>(6)조성재원 (제56조, 제59조의3)</td><td colspan="5">1.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
2.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보증료 수입금, 보증기금의 운용수익
3.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정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57조, 제59조의4)</td><td colspan="5">○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또는 정부·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4. 주식(출자증권 포함)·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법</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Tel : 051-663-8497)</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4실지급</td><td>'15실지급</td><td>'16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부록 9 2015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224)225)]

1 공기업 유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중장기 제출		非 제출기관	
		비계량	계량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 전략기획	2		2	
	- 국민평가		2		2
	- 정부 3.0		1		1.5
	- 경영정보공시 점검		1		1.5
	- 정부권장정책		5		5
	2. 업무효율		8		8
	3.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	2		3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재무예산 관리	3		6	
	- 자구노력 이행성과	6			
	- 재무예산 성과 (부채감축달성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6 (2) (2)		6
	- 계량 관리 업무비		2		3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보수 및 복리후생	6		6	
	- 총인건비 인상률		3		3
	- 노사관리	3		3	
	소 계	22	28	20	30
주요사업[226)]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13	37	15	35
합 계		35	65	35	65

224) 기획재정부『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2015.1월

225) 평가지표체계는 평가유형(공기업,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강소형)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여부에 따라 평가지표와 지표별 가중치가 다르게 구성됨.

226) 개별기관의 현안과제, 성과지표 도출 한계 등의 특성에 따라 세부지표별 가중치 조정

2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중장기 제출		非 제출기관	
		비계량	계량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 전략 기획	2		4	
	- 국민평가		2		2
	- 정부 3.0		1.5		1.5
	- 경영정보공시 점검		1.5		1.5
	- 정부권장정책		5		5
	2. 업무효율		6		6
	3.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	2		3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재무예산 관리	3		4	
	- 자구노력 이행성과	6			
	- 재무예산 성과 (부채감축달성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6 (2) (2)		4
	- 계량 관리 업무비		3		6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보수 및 복리후생	6		6	
	- 총인건비 인상률		3		4
	- 노사관리	3		3	
	소 계	22	28	20	30
주요사업[227]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13	37	15	35
합 계		35	65	35	65

227) 개별기관의 현안과제, 성과지표 도출 한계 등의 특성에 따라 세부지표별 가중치 조정

3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중장기 제출		非 제출기관	
		비계량	계량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 전략 기획	2		4	
	- 국민평가		2		2
	- 정부 3.0		1.5		1.5
	- 경영정보공시 점검		1.5		1.5
	- 정부권장정책		5		5
	2. 업무효율		4		5
	3.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	2		3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예산 관리[228]	3		4	
	- 자구노력 이행성과	6			
	- 부채감축 달성도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229]		5		5
	- 계량 관리 업무비		4		6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보수 및 복리후생	6		6	
	- 총인건비 인상률		3		4
	- 노사관리	3		3	
	소 계	22	28	20	30
주요사업[230]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13	37	15	35
합 계		35	65	35	65

228) 합리적인 예산운용 등 예산관리 중심으로 평가
229) 기금운용평가(비계량+계량) 결과 활용
230) 개별기관의 현안과제, 성과지표 도출 한계 등의 특성에 따라 세부지표별 가중치 조정

4 강소형기관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중장기 제출[231]		非 제출기관	
		비계량	계량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 국민평가(국민체감도 평가제외)		2		2
	- 정부 3.0		1.5		1.5
	- 경영정보공시 점검		1.5		1.5
	- 정부권장정책		5		5
	2. 업무효율		5		5
	3.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 재무예산 관리	2			
	- 자구노력 이행성과	3			
	- 재무예산 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3[232]		1(2)[233]
	- 계량 관리 업무비		4		6(5)[234]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총인건비 인상률		3		3
	- 노사관리	2		2	
	소 계	10	25	5	25
주요사업[23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10	20	10	20
합 계		20	45	15	45

231) 부채감축 달성도 평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기관 중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만 적용

232) 사업비 집행률(1점), 부채감축 달성도(1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1점)임. 다만, 15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부채감축 계획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비 집행률(1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2점)으로 평가

233)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영화진흥위원회, 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1점)와 사업비집행률(1점)로 각각 평가

234)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영화진흥위원회, 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1점)와 사업비집행률(1점)로 각각 평가

235) 개별기관의 현안과제, 성과지표 도출 한계 등의 특성에 따라 세부지표별 가중치 조정

부록 10 2015년도 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 사례[236)]

1 공기업(8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리딩 공항!

경영관리부문

- **메르스로 인한 수요 위축에도 역대 최고의 공항운영 성과 창출**
  - 국제화물 3위, 국제여객 8위
- **재무건전성 제고로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
  - '16년 정부 배당액 2,706억원(36개 정부배당기관 총 배당액의 22.3%)
  -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 사업비(4조9천억원) 전액 자체 조달
- **공항운영 혁신으로 국민편의 제고**
  - 여객 증대로 인한 시설포화에도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 제공
    * 정부3.0 정책 운영 공기업 1유형 중 1위

주요사업부문

- **국내외 서비스 평가 최고등급 달성으로 공항서비스 선도**
  - 세계최초 ASQ 평가 11연패 달성
  - SKYTRAX 5-Star 인증 획득
  - 공기업 고객만족도 A(우수) 달성
- **국민중심의 상업시설 개선으로 공공성 강화**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식음료 가격 인하(1만원 이하 메뉴 82%)
  - 상업수익 국민환원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상생의 場 확대
- **미래성장 기반강화 및 新 시장개척으로 공항경쟁력 제고**
  -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유치(1.5조원) 및 국내최초 저비용항공사 공용정비고 착공
  - 해외사업 6건 신규 수주(유럽, 중남미 진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창사 이래 최고의 경영성과 달성!

경영관리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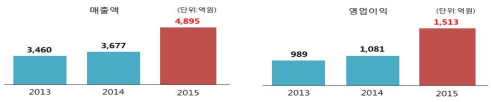
- **지속적 부채감축 노력으로 금융부채 'Zero' 무차입 자립 경영 실현!**
  - 선제적 부채감축 노력으로 금융부채 완전상환
  - 목표대비 금융부채 완전상환 3년 단축 ('18년→'15년)



- **국내 최초 투자기업 연계 청년인재 양성 및 해외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일자리 창출프로그램 성공적인 운영으로 공기업-투자자-정부- 지자체가 협업한 전국 최초 성공모델 제시
  - 투자기업 연계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도내 대학생 57명 해외 취업 성사

주요사업부문

- **국내 관광분야 단일사업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현**
  -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현안해결 및 맞춤형 투자지원으로 FDI 5,600억원 도착 실현
- **면세점 역대 최고 매출액(4,895억원), 영업이익(1,513억원) 달성!**
  - 매출액 33.1% 증가, 영업이익 40.0% 증가



- **국내 최초 외국의료기관 설립승인으로 의료관광 경쟁력 우위 선점**
  - 제주헬스케어타운 국내 최초 외국의료기관 설립 사업계획서 복지부 승인('15.12)

236)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사례(2016.6.19.일자)』 보도참고자료

한국감정원, 국민최우선의 혁신경영성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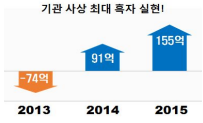
경영관리부문

- **국민최우선의 正道경영으로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 부패방지시책평가 최고등급 및 대통령상 수상

- **설립이래 사상 최대 매출 및 흑자 실현!**
  - 매출액 1,373억원 달성 (전년대비 20.7% 증가)
  - 영업이익 155억원 달성 (전년대비 70.3% 증가)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최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선도!**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5년간 인건비 증가 없이 신규 일자리 지속 창출

주요사업부문

- **국민 부동산 나침반『부동산 시장정보 앱』출시**
  - 시세, 실거래가, 아파트 관리비, 분석정보 등 25종의 국민 맞춤형 정보 제공



- **국민이 목말라하는 정확한 부동산 시장정보 제공체계 구축**
  - 조사표본(8만개→12만개) 및 실거래가 공개 확대로 3년연속 통계청 품질진단 최고등급 획득
  - 공동주택관리정보 정비 및 공개자료 대폭 확대로 아파트 관리 내실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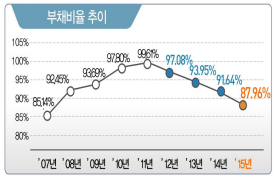


- **서민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권리금 최초 조사**
  - 자영업종사자 및 예비창업자가 활용 가능한 84개 상권, 8,000호에 대한 정보제공

한국도로공사, 국민의 눈으로 서비스 혁신 성과창출!

경영관리부문

- **강력한 자구노력으로 4년 연속 부채비율 감소!**



  - '07년 이후 최초 80%대 부채비율 달성
  - 자구노력만으로 '15년까지 4.67조 부채감축

-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신규일자리 1,077개 창출**
  - NCS 기반의 스펙초월 채용(176명), 도로관리원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91명)
  - 영업소·휴게소 활용 시니어 사원 등 채용(7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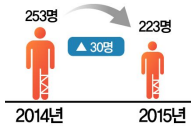
- **고객 현장 중심의 인력 전환배치로 도로안전 등 현장역량 강화**
  - 현장조직 단순화(6파트제→2팀제)로 교통소통·안전분야 인력 확충 (265명↑)



  - '원클릭 상황관리시스템' 全 현장 구축으로 긴급상황 골든타임 확보

주요사업부문

- **교통사고 사망자수 3년 연속 획기적 감소!**
  - 서울외곽선 행복드림쉼터 등 졸음쉼터 31개 확충(누계 194개소)
  - 일반도로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4.8배 수준 획기적 감소



- **'국민의 눈'으로 국민행복 서비스 제공!**
  - 고속도로에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환승정류장(ex-HUB) 구축·운영 (서울외곽고속도로 가천대역 등 2개소 일평균 5,000여명 이용, 15분 시간단축)
  - ex-OIL 주유소, 유가인하 주도(전국평균보다 77원/L, 알뜰주유소보다 45원/L 저렴)

- **고속도로 휴게소 활용, 청년창업의 꿈 실현 지원!**



  - 청년 306명, 전국 126개 청년창업매장 운영(임대료 면제, 컨설팅 제공 등)
  - 식품위생법 개정 등 규제개혁을 통한 졸음쉼터 내 청년창업 '푸드트럭 11대 설치

한국마사회, 국민 행복과 함께 달리다!

경영관리부문

• 개방형 직위 운영으로 조직문화 혁신 및 순혈주의 타파

- 新 사업분야 외부 전문 인력(12명) 수혈로 내부경쟁력 강화

• 성과연봉제 선도적 도입('15.12)

- 공기업 최초 노사합의를 통해 1~4직급 성과연봉제로 전환
- 혁신에 대한 자발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정부 권고안보다 선제적 도입



- 적용대상 : 1·2급 →1~4급 확대
- 차등폭: 3직급까지 1.3배→최대 2배(2천만원) 차등
- 연봉 테이블 폐지, 누적식 차등

주요사업부문

• 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공기업 전체 1위 달성

- 모바일 경마 이용 서비스 전사업장 확대로 고객 편의 제고

• 경마 혁신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박진감 넘치는 경주 선사

- 국가경마 등급 승격 : PARTⅢ(개도국 수준)→ PARTⅡ(OECD수준)
- 경주 해외 수출 국가·규모 지속적 확대

('14년) 프랑스, 싱가포르 139.5억 ▶ ('15년) 말레이시아 신규 수출 387억

• 주민친화형 장외발매소 운영으로 주민 복지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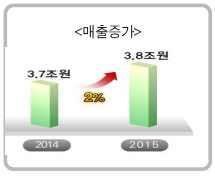
- 전국 장외발매소 내 승마교실 등 668개 고품격 문화센터 강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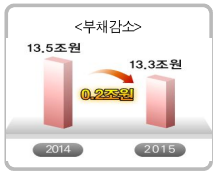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 국민 눈높이 혁신으로 국민행복 선도!

경영관리부문

• 강도 높은 경영혁신으로 사상 최대 경영성과 달성!

- 역대 최대 3.8조원 매출 달성





• 선진적 노사관계로 성과중심 인력운영 체계 확립!

- 보수체계 선제적 개편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기반 구축
- 全 직원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15.8.28)으로 청년채용 목표 112% 초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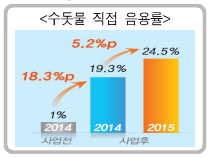
주요사업부문

• 43년만의 극한 가뭄극복으로 국민불편 Zero!

- 절수지원금 제도 신설,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설립 및 대체수원 확보 등을 통해 중단없는 용수공급 실현

• 최종 소비자가 만족하는 물복지 실현!

- Smart Water City 사업을 통해 수돗물 음용률 획기적 상승 (1⇨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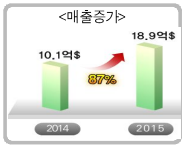


• 미급수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 등을 통해 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 군부대 급수시설 개선, 농어촌 수도시설 개선으로 2.1만명 급수혜택 확대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사업 획기적 성과 창출

- 최초 유럽시장 진출(조지아, 1.0조원), 최초 상수도 국제입찰사업 수주(필리핀,0.2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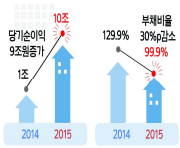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공공부문 개혁주도! 글로벌 수출 역군!

경영관리부문

• 고강도 경영효율화로 최대 재무성과 달성!

-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 10.2조원 달성(전년대비 9조원↑)
- 부채비율 두자릿수 안착(99.9%), 무차입 경영 달성 (12.6조원 자구노력, 차입금 6.3조원 감축)
- 글로벌 전력회사 중 신용등급 세계 최고(AA 획득)



• 공공기관 개혁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이행!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2,117명)

• 에너지밸리 조성을 통한 지역상생발전

- 기업투자 유치 77개사 (15년도 목표 50개사)

(투자액 4,261억원, 고용효과 3,307명)



주요사업부문

• 해외사업 사상 최대 매출액 4.9조원 기록



- 순이익 4,581억원(순이익률 9.4%)
- 일본 태양광(640억원), 요르단 풍력(1,900억원) 진출

•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 Dubai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수주(300만불)
- 세계 최대규모 ESS 구축 및 상업운전 개시



• 역대 최저 정전 및 고객중심 선제적 영업제도 개선

- 호당 정전시간 역대 최저(10.26분), 국가전력Map 오픈

한국조폐공사, 창립 이래 최고의 경영성과 달성!

경영관리부문

• 은행권 등 전통사업 감소 대비 사업체질 혁신으로 최고의 경영성과 달성!

- 매출액 4,595억원 (전년대비 7% 증가)
- 당기순이익 52억원(전년대비 58% 증가)



• 핵심역량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제고

- 장애인 복지카드 개별배송시스템으로 국민편익 증대 (배송기간 8일→2일)
- 불법 조작방지 보안모듈 개발로 안전망 확보 등

주요사업부문

• 글로벌 수준의 기술·품질로 세계 최고 수준의 화폐 공급

- 세계 최고수준의 고품질 화폐 제조·공급

구 분	한 국	미 국
유 통 수 명	100개월	55개월
위변조방지요소	22개	14개
위폐 발생량 (백만장당)	0.7장	40.6장

- 위폐발생량 전년대비 22% 감소(백만장당 0.9장→0.7장)

• 해외 자회사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실현으로 경영 안정화 달성

- 해외자원개발사업(면펄프) 생산량 증대.원가절감으로 흑자경영



2 준정부기관(12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형 대표브랜드 K-건보

경영관리부문

• 5년 연속 당기흑자 달성 및 사상 최대 규모(16.9조원) 보험재정 확보

- 사상 최대 자구노력 이행성과 달성 14,647억원(계획대비 191%)
- 금융성 부채 Zero, 충당성 부채비율 4년 연속 감소(97.9% → 49.3% → 34.6% →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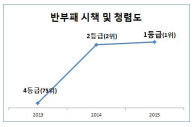
• 협력적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임피 임박직원 집중(28%, 3,318명), 재원조성 및 제도설계의 어려움 등 장애 극복
- 최대 규모 청년일자리 창출(881명, 전체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11.1%)

• 공공기관 최고수준의 청렴경영 및 무결점 정보보안 3관왕 달성

- 정보보안 1위, 해킹방어 1위, 기반시설 A등급
- 사이버침해 Zero, 해킹사고 Zero, 개인정보 무단열람 Z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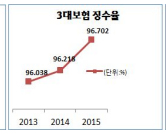


주요사업부문

• 사상 최대 규모의 부과재원 발굴과 4대보험 징수통합('11) 이후 최고 징수실적 달성

- 건강보험 부과재원 2조 5,591억원 발굴
- 건강보험 징수율 99.432%







•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국민부담 의료비 완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고액 비급여 축소로 환자부담 8,929억원 경감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화로 간병부담 줄이고, 입원서비스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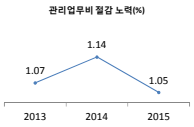
• 품격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수발부담 감소

- 장기요양 수급자 10.2% 증가 : ('14) 42만4천명 → ('15) 46만7천명
- 치매가족지원, 치매전담형 시설 도입 준비, 힘뇌체조 개발·보급,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모형개발

국민연금공단,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안정적 기금운용 수익 창출

경영관리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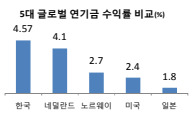
• 관리업무비는 줄이고, 업무효율성은 대폭 개선한 알뜰경영 추진





• 글로벌 연기금 중 최고 수익률, 자산운용평가 2년 연속 탁월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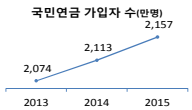
- 지속적인 투자다변화 및 위험관리 고도화 추진



주요사업부문

• 공공데이터 연계 및 협업으로 사상 최대 가입자 2,157만명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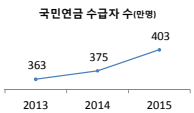
-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가입 확인으로 사각지대 해소



• '기초연금 미수급 방지망' 구축으로 어르신 40만명 신규 혜택

• 적극적인 청구안내로 수급자 403만명, 연금지급액 15조원 최초 돌파!

-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제도 개선, 무결점의 정확한 급여 지급으로 기금누수 방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리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경영관리부문

• 국가적 수출부진 극복을 위한 총력지원체제 운영

- 수출비상대책반을 연중 운영하여 정부의 수출활성화 정책 적극 지원

•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 고객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한 개방형 협업 문화 정착
- 다양한 고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 확대
  ('14) 177개 기관 150개 사업 → ('15) 303개 기관 221개 사업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S등급 달성

캐릭터 글로비	2015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 표창	2015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주요사업부문

• 정상외교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

- 대기업 위주 포럼에서 중소기업 1:1 상담회로 해외진출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
- 상시지원 전담조직을 통한 원스톱 지원체제 운영

•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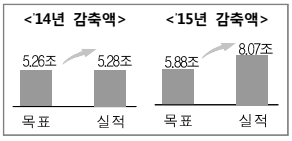
- 빅데이터를 온라인 마케팅에 접목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유통망 진출 지원
- 서비스 고객 수 19% 증가
  ('14) 13,516개사 → ('15) 16,117개사
- 신시장 개척지원 건수 35% 증가
  ('14) 1,922건 → ('15) 2,588건
- 맞춤형 서비스 참가기업 수출액 20% 증가
  ('14) 44억 달러 → ('15) 53억 달러

예금보험공사,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

경영관리부문

• 부채 8.07조원 순감축으로 2년 연속 부채감축 목표 초과달성

- '15년 부채감축 목표(5.88조원) 대비 137% 초과 달성



• 세대간 상생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조기도입

- 공사 인력특성에 최적화된 임금피크 모델 설계로 공공기관 모범사례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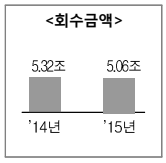
• 대규모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한 빈틈없는 위기대응체계 운영

주요사업부문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보법 개정완료로 예금보험제도 대폭 개선

- 퇴직연금 별도보호(5천만원) 시행, 예금보호 로고 표시제도 추진으로 노령자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공적자금 등 부실금융회사에 지원된 자금 2년 연속 5조원 이상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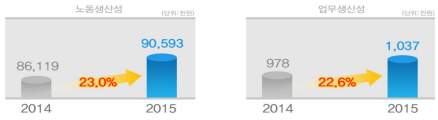


- 맞춤형 매각전략 및 이해관계인 협업을 통해 사상 최대 3.4조원 파산배당 회수 달성
- 한화생명 지분 매각 등 1.64조원의 공적자금 회수를 통한 민영화 진전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경영관리부문

- **경영효율을 통한 노동생산성 및 업무(검사)생산성 향상**



- **공공기관 최초 동반성장 실적평가 4년 연속 1위 달성**

주요사업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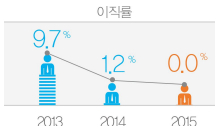
- **가스사고 백만가구당 인명피해 12.4% 감축** (14년 6.38명→5.98명)
  - 국가『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1차년도 과제 성공적 완수
  - 예방중심 '국민행복 가스안전 3.0' 3차년도 169개 과제 추진
- **재해 취약계층 가스안전 서비스 확대로 안전복지망 확충**
  - `15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고령자 타이머콕 보급 전년대비 14.6% 확대
  - 총 4만3천개소 재난취약시설 점검활동 강화로 선제적 사고예방 추진
- **기술지원 강화로 가스제품 해외인증 기업수출액 37.1% 증가**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20개국 59개 기관),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 지원 확대, 고부가가치 폭발 방지(방폭) 제품 인증분야 신규개척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민국 국토정보의 주춧돌

경영관리부문

- **10년 연속 무차입경영 유지**
-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제도 선도적 도입**
  - 8개 대학과 IPP 업무협약 체결하여 58명 선발
  - 공공기관 최초 NCS기반 채용(이직율 "ZERO")



-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
  - LX토지알림e 앱의 대피정보제공, 드론을 활용한 재해지역 신속한 복구 등

주요사업부문

- **국민참여형 LX국토정보기본도 무상 제공**
  - 3개월 만에 국가기관, 민간에서 177만건 이용
- **측량수수료 인하, 무료감면측량 확대 등**
-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프로젝트 실시**
  - 드론 신산업분야 안전성 검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술개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거정책 수립 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실용화 · 산업화 성과 대폭 향상 !!

경영관리부문

- **전사 차원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업무효율이 전년 대비 52% 향상**
-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무예산 성과 28% 이상 개선**
  -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사업비집행률이 전년 대비 29% 향상
  -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기관의 소모성경비 절감노력으로 관리업무 비율이 28% 이상 개선

주요사업부문

- **주요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통해 실용화 · 산업화 성과 향상**
  - 산업재산권 등록 실적 37% 증가, 기술 실시 및 제품 출시 등의 사업화 성과 33% 향상
- **온라인 컨설팅을 통해 농산업 현장애로를 실시간 해결**
  - 모바일 커뮤니티 운영 (13,878명 가입), 약 7천 건의 컨설팅 수행 (정부3.0 우수사례 선정)

사회보장정보원, 국민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중추기관!

경영관리부문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개선으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A' 등급 달성**
-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등급'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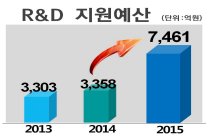
주요사업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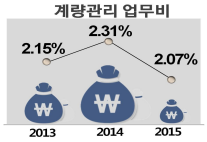
- **복지재정 관리 효율화를 통해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기반 마련**
  - 복지대상자 자격관리 강화로 복지예산 6,065억 원 절감 효과
  - 바우처 부정사용 관리체계 개선으로 약 80억 원 절감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시스템 구축으로 복지 수급자 33만 명 확대
    ※ [2014년] 131만 명→[2015년] 164만 명
- **사회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로 복지체감도 향상**
  - 사회복지급여 권리구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수혜자 120% 증가
    ※ [2014년] 24.6만 명→[2015년] 54.3만 명
-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출시로 국민 편의성 향상**
  - 6개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도전하는 중소기업의 R&D 파트너!

경영관리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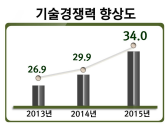
- **R&D 평가관리 품질경영 도입, 2년 연속 청렴도 상승**
  - ISO9001 인증 획득 및 우수 평가위원 양성(549명)
    * 중소기업 평가운영 만족도 : ('13) 80.2점→('14) 84.1점 →('15) 89.1점
-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 2.2배 확대, 관리업무비 비중 축소**
  - 중복기능 해소, 프로세스 통합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효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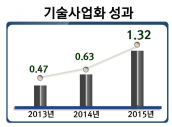




주요사업부문

- **R&D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의 선순환 고리 강화**
  - 기술경쟁력 향상도 : ('14) 29.9점 → ('15) 34.0점
    중소기업 R&D 효율성 제고로 R&D 지원액 1억원당 매출액 증가
    ('14) 0.63억원 → ('15) 1.32억원
- **공공기관 최초 R&D 온라인 평가 도입, 사업성 평가전문가 양성제도 신설 등 지속적인 평가관리체계 혁신**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조경제 거점으로 산업단지 변화 선도

경영관리부문

- **기관 역대 1인당 최대 매출액 달성(6.8억/인)**
  - '13년 3.4억원, '14년 4.5억원, '15년 6.8억원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국 확대(69개 단지) 운영으로 선순환 사업구조 정착
    (기업애로지원) ('14) 229건, ('15) 429건
    (중소기업수출실적) ('14) 75건 105백만불, ('15) 96건 128백만불

주요사업부문

- **기업규제 완화로 산업단지내 10조원대 신규투자 창출**
  - 산업입지 법률 및 제도개선(26건), 단지내 기업활동 저해요인 해소(37건)
  - 산업단지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매칭(6,006명)
  - 창사 이래 최대 산업입지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최고등급**
  - 클러스터 R&D 지원과제 사업화 매출액 역대 최대치 달성
    ('13년 4,269억원, '14년 4,811억원, '15년 6,435억원)

한국에너지공단,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 체질 개선!

경영관리부문

- **정부3.0 평가 및 고객만족도 A등급 달성!**
  - 116개 공공기관 정부3.0 평가결과 전체 2등, 강소형 유형 1등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A등급 달성
- **신규사업 확대 및 기존사업 강화를 통해 사업수익 1,390억원 증가**

주요사업부문

- **협업과 혁신으로 '에너지바우처'(난방이용권), 저소득층 대상 빠짐없이 전달**

유관기관 협업		프로세스 혁신			50만 저소득층 대상 성공적 지급
지자체 등 5만여 역할분담	+	원스톱 지급 시스템 구축, 편의성 제고	➡	목표 대비 91% 지급 / 목표 대비 60% 지급 (에너지 바우처 / 타 바우처 평균)	

- **해외시장 판로 개척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 1,813억원 수주**

국내 최대 전시회 개최 (맞춤형 바이어 매칭)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맞춤형 현지정보 제공)
14개 中企, **425억원** 계약	47개 中企, **249억원** 계약	2개사, **1,139억원**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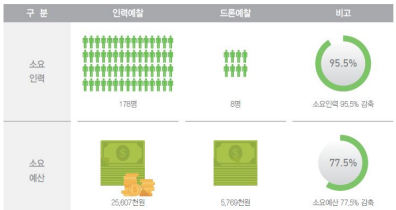
한국임업진흥원, 효율적인 기관·사업운영으로 최대성과 창출

경영관리부문

-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로 사업수행효율성 대폭 증가**
  - ('14) 90,178천원/명→ ('15) 126,367천원/명, 40.1% 증가

주요사업부문

- **청년 취·창업 지원, 산림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해결에 앞장서!**
  - 산림특성화고 맞춤형 지원으로 취업률 41.2% 증가(35.4%→50%)
  - 산림형 사회적기업 38.1% 증가, 근로자수 26.4% 증가
- **임업인 성장단계별 교육, 컨설팅, 유통지원으로 노동생산성, 단위면적당 생산량, 임업가구소득 역대 최고!**
  - 노동생산성 : ('14) 12,560원/시간 → ('15) 5,202원/시간
  - 단위면적당 생산량 : ('14) 4,611kg/ha → ('15) 5,028kg/ha
  - 임업가구소득 : ('14) 3,106만원 → ('15) 3,222만원
- **첨단 융복합 기술 활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탐지기술 혁신!**
  - 드론을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 탐지기술 도입 및 분석 소프트웨어개발로 소요인력 95.5% 감축, 소요예산 77.5% 감축



연구총괄

■ 변민정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분야별 집필진

■ 정예슬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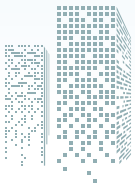
■ 장광남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서영빈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오윤미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문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044-414-2306)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oe.kipf.re.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16 공공기관 현황 편람

기획재정부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